國內言論關係判決集

第 4 輯

言論仲裁委員會

言論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放送法」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거 反論 및 訂正報道請求와 追後報道請求에 따른 紛爭을 仲裁하고, 言論侵害에 관한 사항을 審議합니다.

발 간 사

1995년과 1996년의 언론관련 판결례와 결정례를 모아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간하는 제4집부터 책자명을 國內言論關係判例集에서 國內言論關係判決集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본 판결집은 1990년에 제1집을 출간한 이후 줄곧 각급 법원의 그 당시까지의 판결문과 결정문을 수록해왔으므로,「判例」라는 용어로 인하여, 게재된 판결들을 '확정판결' 혹은 일종의 '法源'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니 이점 諒知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컴퓨터, 통신 기술의 혁신과 뉴미디어 개발로 인하여 각 분야마다 새롭게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의 양상도 전자투개표시스템이 곧 도입될 전망이어서 이른바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민이 한꺼번에 선거를 치르고, 밤샘작업을 하면서 개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위성방송을 통한 교육방송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양방향 원격학습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이러한 멀티미디어 교육이 확산되면 앞으로는 교실, 교사의 개념이 새롭게 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기술력의 발전을 토대로 자유민주사회로 성숙 발전해 옴으로써 근래에는 사회각계 두루 법의식이 높아졌으며, 우리생활과 법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나타내듯, 얼마전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검색대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판결과 법령, 그리고 법 관련 문헌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언론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중재업무와 관련하여 각급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들을 모아왔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언론관련분쟁도 법적인 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언론 관련 판결들이 상당수 축적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공개한 법률정보 이외에도 뉴미디어 업체들이 법령 및 판결들

을 모은 데이터베이스, CD-롬 등을 제작 · 판매함으로써 이러한 자료들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고 있지만, 언론관련 분야 판결만을 따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므로, 당위원회가 발간하는 본 판결집이 언론관련판결에 관한 국내 유일한 자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본 판결집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정보화사회 도입단계에서, 그리고 본 판결집 제4집을 발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수록되는 판결들의 자료적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 판결집 발간의 근본취지가 언론과 피해자간의 권익분쟁의 조정에 지침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바람직하고 건전한 언론보도문화를 정착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발간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판결 수집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겠고, 좀 더 분석적으로 판결자료를 제시, 게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본 판결집의 자료도 CD-롬으로 제작하거나 PC통신으로 열람 가능한 자료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제도 관련 법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당위원회는 피해구제제도의 효율성을 높인 개정법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년동안 중재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개정법의 취지와 효율성을 살려 앞으로는 대다수의 언론관련 분쟁들이 법원에까지 이르지 않고 중재위원회에서 해결되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나라 언론문화의 발전을 위해 본 판결집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각계에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본 판결집 발간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6월 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김 두 현

차 례

Ⅰ. 반론보도청구사례

1.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중 記事의 주인공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신청인들의 反駁이 사실에 反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訂正報道文을 게재하라

오 외 10인 對 조선일보사 (서울지방법원 94카기4881) ····· 13

2. 경찰청의 報道資料를 그대로 記事化 했을지라도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신청인은 반박할 권리가 있다

연 對 중앙일보사 (서울지방법원 94카기5463) ····· 19

3. 피신청인이 경찰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사와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권리가 있다

강 對 동아일보사 (서울지방법원 94카기5716) ····· 23

4. 원고들이 부른 노래에는 김일성을 지칭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김일성 찬가를 불러 구속되었다」는 표현으로 인해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으므로 訂正報道하라

허 , 최 對 조선일보사 (서울지방법원 94가합47709) ····· 28

5.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청인측의 반박을 함께 게재했으나, 기사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對 일요신문사 (서울지방법원 95카기1885) ····· 34

6.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를 10일간에 걸쳐 상당한 분량으로
반복 보도하였으므로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 횟수는
그 보도한 횟수와 동일하게 정함이 상당하다
박　　對 국민일보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카합1256,
95카기609, 95타기2543) ····· 42

7. 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함께 사과문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나, 정간물법 소정의 반론보도청구에 사과문의 게재를
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예술인주택 對 한서일보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5카기74) ····· 93

8. 한국통신 勞組의 성당, 사찰 농성이 北의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
한국통신노동조합, 도　　외 4인 對 중앙일보사
(서울지방법원 95카기3524) ····· 98

9. 국가전복의 底意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의견에 불과하고,
노조 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는 이유없다
한국통신노동조합 對 경향신문사 외 (서울지방법원 95카기3525) ····· 103

10. 문제의 기사에 原告의 反論이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신　　對 조선일보사 (서울지방법원 95가합41982) ····· 113

11. 반론 내지 반박보도문의 게재는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폐간된 경우에는 그 피신청인 적격을
상실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
이　　對 이　　(전 크리스천한국 발행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카합1011) ····· 118

12. 신청인회사가 요구르트 광고를 하면서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인격적, 재산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반박할 권리가 있다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對 서울신문사 (서울지방법원 95카기5706) ····· 122

13. 단체와 구성원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사실적 보도로 인하여 그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베뢰아 집단' 이라는 표현은 피신청인측이 신청인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용한 표현에 불과하다
교회 對 (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서울지방법원 95카기5440) ····· 128

14. 속보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원래 보도에 대한 특정이 미흡하고
지면의 위치나 크기 등에 있어서 원래 보도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고, 속보기사의 내용이 원 보도내용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이 속보기사만으로 이 사건 기사가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김　　對 국제신문사 (부산지방법원 95가합23258) ····· 130

15. 이 사건 방송은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원보도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익이 없다
강　　對 문화방송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카합1017) ····· 136

16. 종로구의회 의원 해외연수를 비밀리에 진행한 적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할 소명자료를 피신청인이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對 이　　(종로저널 발행인)
(서울지방법원 95카기6604) ····· 141

17.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일간신문들에는
구속자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신청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구속자 13명 중에 신청인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은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국　　외 5인 對 조선일보사, 세계일보사 (서울지방법원 95카기5816) ···· 145

18. 피신청인이 서울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뉴스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국　　외 8인 對 한국방송공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카합4287) ····· 151

19. 제목을 보면 신청인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제민일보사 對 제주신문사 (제주지방법원 95카기351) ····· 155

20.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또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벗어난 것이어서 그 게재를 허용할 수 없다
김　　對 조선일보사 (서울고등법원 95라216, 서울지방법원95카기5283) ·· 161

21. 취재원이 보도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어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포항제철 對 경북매일신문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카합1209) ····· 169

22.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보도와 신청인 정당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으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평가'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새정치국민회의 對 서울신문사 (서울지방법원 96카기2195) ····· 176

23.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그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

김　　對 경향신문사 (서울지방법원 96카기2442) ····· 179

2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1인이 언론중재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피해자는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신청인의 반박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라
강　　對 한국방송공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합999) ····· 183

Ⅱ. 손해배상청구사례

1. 원고가 폭력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사건방송의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작방해를 한 듯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
박　　對 한국방송공사, 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가합14378) ···· 190

2.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한약업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는 위 기사로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4억원을 손해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김　　對 한겨레신문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4가합5021, 96타기537,
서울고등법원 96카135) ····· 199

3.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원고의 피의사실을 실명으로 공표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유　　외 4인 對 대한민국 외 (서울고등법원 95나24946,
서울지방법원 93가합54908) ····· 216

4.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

정　　對 문화방송, 정　　(서울고등법원 95나25819, 인천지방법원 94가합16812) ····· 242

5. 연기자협회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원고가 임의로 변조하여 '프로듀서' 지에 실은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피고 일요신문사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었으므로 원고(반소피고)는 5백만원을 배상하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對 일요신문사, 이　　(서울지방법원 95가합26099, 95가합97978) ····· 251

6. 비록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소수의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49명 중 일부라는 점, 특히 원고 중 2명은 전주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주변사람들 사이에서는 추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　　외 14인 對 조선일보사, 신　　(서울지방법원 94가합91515) ····· 264

7. 취재원이 신빙성이 있고 사건기사가 일간신문에 게재될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인 점, 원고에게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진　　對 현대문화신문사, 이　　(서울고등법원 95나39467, 서울지방법원 94가합53636) ····· 272

8. 보도내용이 전체 국민의 보건위생에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식품검사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내용 또한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금호무역 對 부산매일신문사 (부산지방법원 95가합15356) ····· 285

9. 피고가 제작 · 방영한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에 관여한 것으로 묘사한 내용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터무니없는 억측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가 있는 극적 재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김　　對 한국방송공사 (서울지방법원 95가합90717) ····· 293

10. 원고의 피의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도 없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국가수사기관이
이를 공표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권　, 권　, 이　　對 대한민국, 김　, 정　, 진
(대법원 94다29928) ····· 302

11. 취재원이 수차례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고, 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신뢰할 만한 인물이며,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김일성 동상 사진을
제공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월간지로서 일간신문과는 달리
취재시간에도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문 對 조선일보사 (서울지방법원 94가합98592) ····· 307

12.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적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최　　對 한겨레신문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14198) ····· 319

13.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도 전재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했으며,
피고 신문사는 연합통신의 책임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손　　對 부산일보사 (서울고등법원 95나419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5가합3509) ····· 325

14. 제보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던 이상, 제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
최　　對 국제신문사 (부산지방법원 95가합9634) ····· 333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1.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친고죄와는 달리 그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이 (대법원 93도1689,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5251,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9700) ····· 338

2. 피고가 쓴 기사내용이 公共의 利益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무죄이다
이 (대법원 94도3191) ····· 351

Ⅳ. 헌법소원사례

1.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의해 재판한다」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일보사 (헌법재판소 95헌바25) ····· 356

Ⅰ. 반론보도청구사례[주)]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중 記事의 주인공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신청인들의 反駁이 사실에 反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訂正報道文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5. 1. 21.자 결정 (94카기4881)

事實槪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오 씨 외 10명이 월간지 「FEEL」을 발행하는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조선일보사에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월간지 「FEEL」은 1994년 8월호 『독점수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이라는 제하로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의 여학생이 운동권 선배와 연애끝에 배신당한 후 호스티스 생활과 재벌회장과의 동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총 48명 중 11명인 신청인들은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으로서 기사내용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전원이 주

주) 본 사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개정법률(제 5145호, 1995. 12. 30.)이 시행(1996. 7. 1.)되기 전에 법원에 청구된 사건들이어서 사건명이 정정보도청구로 표기되어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 그 권리의 성격에 적합하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되었으므로 본 판결집에서는 반론보도청구사례로 구분하여 게재한다.

인공과 같은 경력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위 기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문은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히면서, 신청인들의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이 기사가 보도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게재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했고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기사내용은 진실이며 다만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전주출신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전주출신에 대한 부분만 정정하는 정정보도문안을 제시하여 합의가 결렬, 불성립되자(94서울중재214 참조) 신청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청인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여 1996년 5월 14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94가합91515 손해배상(기)참조).

決定文

사　건 : 94카기4881 정정보도심판

신청인 : 1. 오
서울
2. 이
전주시
3. 김
서울
4. 김
서울
5. 김
서울
6. 정
서울
7. 김
서울
8. 김

서울
9. 라
서울
10. 신
서울
11. 류
진주시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종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공동대표이사 방상훈, 방우영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교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필(FEEL)지의 표지 왼쪽 하단부에 가로 2cm, 세로 1cm의 크기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의 표지활자로 게재하고, 목차란 첫번째면 상단부에 가로 13cm, 세로 2cm의 크기로 「지난해 8월호 호스티스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기사에 대한 반론문」이라는 목차를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126면 상단부에 가로 18cm, 세로 5cm의 크기로 위쪽에는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12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월간지 필(FEEL)지 표지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지활자로 게재하고, 49면 목차란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7.5센티미터 크기의 명조체로 「지난 8월호 호스티스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목차를 게재하고, 126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보도문신청인의 성명을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라는 결정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지인 필(FEEL)지 1994. 8.호(통권 12호) 표지에 다른 기사의 표제와 함께 『호스티스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고백』, 『서울대 사회대 입학-운동권선배와 연애끝에 배신당함-휴학-호스티스 생활-재벌회장과 아파트 동거-복학-두번째 휴학』이라는 표제가, 49면 목차란에 「독백수기」, 「호스티스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 「서울대 사회대입학-운동권 선배와 연애끝에 배신당함-휴학-호스티스 생활-재벌회장과의 아파트 동거-복학-두번째 휴학」이라는 목차가 각 게재되었고, 126면에 『독점수기 호스티스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이라는 제목으로 126면부터 131면까지 사이에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의 여학생이 운동권 선배와 연애끝에 배신당한 후 호스티스 생활과 재벌회장과의 동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127면에는 약간 벌린 입술부위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129면에는 배꼽부위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131면에는 얇은 속옷을 걸친 둔부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각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들 및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은 위 기사가 게재되어 공표됨으로써 신청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을 지명한 사실이 없고, 위 기사의 주인공을 서울대 여대생이라고도 보도하였다고 하여 위 필(FEEL)지 일반 독자들이 신청인들을 위와 같은 경력의 소유자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들은 위 기사에 의한 피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들은 보도의 정정을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으며 또한 위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먼저 신청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주체로서의 피해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에서 말하는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었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위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의 주인공이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으로서 여학생이라고 보도되었고, 한편 당원의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모두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총 48명 중 11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위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기사로 인하여 그 인격적 법익도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 소정의 피해자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신청인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정보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먼저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으로서 위 기사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위 반박을 주장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위 기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에 관한 정정보도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전원이 위 기사의 주인공과 같은 경력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위 기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은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내용의 정정보도문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다음으로 신청인들은 1989-87년경 서울대 사회대 공개써클에는 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물론 위 기사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정정보도청구내용은 위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과는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정정보도문의 크기

신청인들은 필(FEEL)지 표지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지활자로, 49면 목차란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7.5센티미터 크기로 「지난 8월호 호스티스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목차를 126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본문활자로 각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 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표지의 제목은 가로 20cm, 세로 1cm의 크기로, 목차는 가로 13cm, 세로 2cm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은 가로 18cm, 세로 5cm의 크기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1.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이 민 걸
판사 김 재 형

〈별지 1〉 반론문

지난 1994. 8. 호 FEEL지 126면부터 131면에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출신의 한 여학생의 독점수기라는 형식으로 서울대 사회대 입학, 운동권 선배와 연애끝에 배신당함, 휴학, 호스티스 생활, 재벌회장과의 동거 등을 내용으로 한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총 48명 중 위 기사내용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정정보도신청인

〈별지 2〉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지난 1994. 8.호 FEEL지 126면부터 131면에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으로서 전주를 모교로 한 여학생의 독점수기라는 형식으로 서울대 사회대 입학, 운동권 선배와 연애끝에 배신당함, 휴학, 호스티스 생활, 재벌회장과의 동거 등을 내용으로 한 기사가 게재되었는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은 총 49명으로서 그 중 전주를 모교로 한 여학생 2명은 물론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으로서 위 기사내용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또한 1986~87년 무렵 서울대 사회대에는 공개써클로서 사회대 평론편집실과 연극반 2개가 있었으나 위 2개의 써클에는 딘레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물론 위 기사내용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확인합니다.

정정보도신청인

□

경찰청의 報道資料를 그대로 記事化 했을지라도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신청인은 반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5. 1. 26.자 결정 (94카기5463)

事實槪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5년 1월 26일 서울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의 전 의장 연 씨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중앙일보사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994년 9월 29일자 중앙일보에 신청인과 관련해 「경찰청이 주사파 조직인 서울노동자 민족문화운동연합을 조직하여 공단근로자를 상대로 김일성 주체문예이론을 전파하고 불법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이 단체 의장인 연 씨와 조직원 등 7명을 구속했다」는 취지의 기사와 구속대상자 명단이 함께 보도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인 이외에 기사에 거론된 사람들도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 구속자 가족들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질의서를 제출한 내용, 사회 각계인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내용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담당 재판부는 연 은 신청인을 지칭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이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중앙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중앙일보의 사실에 관한 보도라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신청인과 위 단체에 관한 정정보도요구 사항만을 인정했다.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1994년 10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했다. 중재과정에서 피신청인측이 경찰자료에 근거한 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자(94서울중재252 참조)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4카기5463 정정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연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석 현
대리인 변호사 이 경 훈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중앙일보 제2사회면의 기사란 중 6단과 7단의 중앙부분에 세로 2단, 가로 5cm의 크기로, 오른쪽 윗부분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44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의 1994. 9. 29.자 제2사회면인 22면 6단과 7단의 중앙부분에 『노동계 주사파 7명 적발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은 28일 주사파 조직인 서울노동자 민족문화운동연합(노민문련)을 조직, 공단 근로자들을 상대로 김일성 주체문예이론을 전파하고 각종 불법집회에 적극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 이적단체구성 가입 등)로, 이 단체 의장인 연　　씨(40 · 서울대 식물학과졸)와 사무국장 임　　씨(29 · 서울대 법대졸) 등 조직원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구국의 전술〉 등 불온서적 71권, 〈사회주의와 사실주의〉 등 이적표현물 4백40여 종, 사상학습용 비디오테이프 2백44개, 컴퓨터 4대, 무비카메라와 프린터 각각 1대 등 8백여 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연씨 등은 90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문밖 교회에서 노민문련을 결성, 올 8월까지 북한원전인 〈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등 7종으로 사상학습을 실시, 서울과 경기지역 노동자들에게 학습시키고 알제리 민족해방운동가 〈알리〉의 통일전선 투쟁 영화를 서울 · 경기지역 공단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상영, 노동자들의 투쟁분위기를 조장한 혐의다. 구속영장 신청자는 다음과 같다. 연　　, 임　　,

김　　(29 · 여 · 숭의여전 관광과졸 · 문선국장), 이　　(26 · 신구전문대졸 · 중부지부장 의장대행), 김　　(28 · 여 · 이화여대졸 · 노래분과장), 이　　(31 · 서울대 법대졸 · 정책실장), 박　　(24 · 고졸 · 구로지부 교육책)』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신청인은 1990. 9. 경부터 위 단체의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94. 9. 27. 위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피신청인이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신청인의 본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명인 「연　　」이라고 표기하여 위 기사를 보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위 기사에 나오는 「연　　」은 신청인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중앙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중앙일보의 사실에 관한 보도로 되었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중앙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별지 1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①신청인 이외에 위 기사에서 거론된 사람들도 대부분 위 단체의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 ②구속자 가족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4개항의 질의서를 제출한 내용, ③구속자 가족과 학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속자 석방 및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도 정정보도문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항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은 신청인과는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것이고, 위 ②, ③항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은 신청인 등의 가족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신청인 등의 구속에 항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 기사를 반박하기 위한 사실적 진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는 모두 신청인의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 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크기는 세로 2단, 가로 5cm의 크기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6.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이 민 걸
판사 김 재 형

〈별지 1〉 반론문

중앙일보는 1994. 9. 29.자 22면 중앙부분에 『노동계 주사파 7명 적발 구속』이라는 제목 아래 「주사파조직인 노동자 민족문화운동연합을 조직, 공단 근로자들을 상대로 김일성 주체문예이론을 전파하고 각종 불법집회에 적극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위 단체의 의장인 연 (40) 등 7명이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다.그러나, 연 는 위 단체의 의장을 그만두고 현재 생활문제연구소 이사로 있으며 위 단체는 이미 5년 전에 창립되어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고, 6공 시절에도 그 활동이 문제되지 않았다.

정정보도신청인 연

〈별지 2〉 정정보도문(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본지 9월 29일자 사회면에 보도된 『노동계 주사파 7명 적발 구속』제목의 기사 중 노동자 민족문화운동연합 사건 관련기사에 대해 현재 구속 중인 전 의장 연 (40 · 서울대 문리대 제적, 현 생활문화연구소 이사), 임 (29 · 서울대 법대졸, 제36차 사법고시 1차 합격생), 이 (31 · 서울대 법대졸, 한국정밀금형 대리), 김 (28 ·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 (28 · 숭의여전졸, 놀이진행자), 이 (26 · 신구전문대 제적, 사진 전문가), 박 (24 · 노동자) 씨 등은 이 사건이 신공안 정국을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경찰은 노민문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했으나, 노민문련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민문련은 이미 5년 전에 창립되어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이며 6공 시절에도 그 활동이 문제되지 않았던 단체인데 뒤늦게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이미 1~3년 전에 활동을 그만둔 상태이며 지병을 치료 중이거나 임신 중에 있고, 사법고시 준비, 첨단기술개발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구속자 가족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4개항의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구속이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 구속자 가족과 학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자 석방 및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정정보도신청인 연 □

피신청인이 경찰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사와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5. 2. 20.자 결정 (94카기5716)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2월 20일 강 씨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신청인이 경찰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보도된 이상 이는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사와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994년 9월 9일자 31면에 『고교에 주사파 침투』라는 제목과 『지하조직 '샘' 적발』이라는 소제목 하에 신청인이 가입한 조직 '샘'이 서울 남부지역 고교생들에게 主體思想을 학습시키고 이들을 불법시위에 동원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94서울중재256).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경찰청 발표내용을 보도한 것이므로 발표내용과 정반대인 정정보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4카기5716 정정보도

신 청 인 : 강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병관, 권오기
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동아일보 31면의 기사란 중 1, 2, 3단 가운데 부분에 가로 15cm, 세로 3단의 크기로, 그 맨 윗부분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70급 고딕체활자로, 그 아랫부분에는 가로로 "'샘'은 주사파 조직이 아니다"라는 소제목을 50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세로로 별지 1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지 동아일보 1994. 9. 9.자 31면에 "고교에 주사파 침투"라는 제목과 "지하조직 '샘' 적발"이란 소제목 하에 "서울경찰청은 8일 서울 남부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 전파하고 이들을 불법시위 등에 동원한 주사파 조직 '샘'을 적발, 검거된 조직원 9명 중 회장 고 씨(21, 대헌공전 2년 중퇴) 등 3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강 씨(20, 단국대 농학과 2년)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해 6월 중앙대 루이스홀에서 고교생 70여 명과 조직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체사상에 입각한 고교생 운동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조직명칭을 '샘'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들은 샘을 결성한 뒤 풍물, 민족무예, 탈춤 등을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구로고 등 서울 남부지역 11개 고교생 38명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이들 중 18명을 정회원으로 선발, 1주일에 1~3회씩 서울 당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체사상을 학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원전인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의 책 내용대로 "주체사상은 우리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 등을 고교생들에게 가르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달 5일부터 2박 3일 동안 65명의 고교생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리산 노고단에서 '얼다

지기' 라는 수련회를 열어 미전향 출소 장기수인 이모 씨(67)를 강사로 초빙, 김일성을 미화하는 강연을 했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위 기사가 게재되어 공표됨으로써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은 보도의 정정을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고, 또한 위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다툰다.

먼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 중 (1) '샘'은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를 가르치는 청소년문화단체이지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 전파하고 이들을 불법시위 등에 동원한 주사파 조직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도 아니며, (2) '샘'에서는 고교생들에게 북한원전인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의 책을 사용하여 "주체사상은 우리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등으로 1주일에 1~3회씩 주체사상을 학습시킨 사실이 없고, (3) '샘'에서는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의 위와 같은 정정보도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신청인이 경찰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옮겨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기사와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있다.

또한 신청인들은 '샘' 회원들이 경찰 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강제 연행되었다거나, 경찰 수사관이 어린 고교생들에게 유도신문을 하여 허위진술을 이끌어 냈다는 등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정정보도청구내용은 위 기사와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제3자인 경찰 수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3. 정정보도문의 크기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정정보도문의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3단의 크기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이 민 걸
판사 김 재 형

〈별지 1〉 반론문

'샘'은 주사파 조직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1994. 9. 9.자 31면에서 "고교에 주사파 침투"라는 제목과 "지하조직 '샘' 적발"이란 소제목 하에 "서울경찰청은 8일 서울 남부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 전파하고 이들을 불법시위 등에 동원한 주사파 조직 '샘'을 적발, 검거된 조직원 9명 중 회장 고 씨(21 · 대헌공전 2년 중퇴) 등 3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강 (20 · 단국대 농학과 2년)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해 6월 중앙대 루이스홀에서 고교생 70여 명과 조직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체사상에 입각한 고교생 운동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조직명칭을 '샘'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들은 샘을 결성한 뒤 풍물, 민족무예, 탈춤 등을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구로고 등 서울 남부지역 11개 고교생 38명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이들 중 18명을 정회원으로 선발, 1주일에 1~3회씩 서울 당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체사상을 학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북한원전인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의 책 내용대로 "주체사상은 우리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 등을 고교생들에게 가르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달 5일부터 2박 3일 동안 65명의 고교생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리산 노고단에서 '얼다지기'라는 수련회를 열어 미전향 출소 장기수인 이모 씨(67)를 강사로 초빙, 김일성을 미화하는 강연을 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1) '샘'은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를 가르치는 청소년문화단체이지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 전파하고 이들을 불법시위 등에 동원한 주사파 조직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도 아니다. (2) '샘'에서는 고교생들에게 북한원전인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의 책을 사용하여 "주체사상은 우리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등으로 1주일에 1~3회씩 주체사상을 학습시킨 사실이 없다. (3) '샘'에서는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강

〈별지 2〉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1994년 9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동아일보가 지난 9월 9일자 사회면에 '고교에 주사파 침투'의 제목과 '지하조직 [샘] 적발'이란 소제목 하에 "샘은 93년 6월 중앙대 루이스홀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고교생 운동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결성하였다. …고교생 38명을 회원으로 모집, 일주일에 1~3회씩 서울 당산동에 있는 샘 사무실에서 주체사상을 학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이란 북한 원전으로 주체사상은 우리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 등을 고교생에게 가르쳐 왔으며 지난 8월 5~7일에 전라남도 구례군 소재 지리산 노고단에서 미전향 장기수 이모 씨를 강사로 초빙 김일성을 미화하는 강연을 개최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측은 청소년회 샘은 주사파 단체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를 가르치고 입시경쟁의 고교생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자 했던 청소년문화단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창립자료를 제시하면서 1993년 8월 중앙대 루이스홀에서 창립을 한 것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고교생 운동조직'이 아니라, '자주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 실천하는 삶'을 청소년들과 함께 민족문화를 매개로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고,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 북한 원전은 샘의 부회장인 최 이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던 책으로 실제 이 책들은 샘 사무실이 아닌 부회장의 독서실에서 발견되었으며, 학생들의 자술서에 따르면, 샘은 고교생들에게 주체사상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수입개방 반대 강연, 통일 강연회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김일성 우상화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94년 8, 9월 「말」지를 읽고, 당시 한참 여론에 논의되었던 '김일성 조문 논쟁', '김일성 사망 원인'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토의를 한 것일 뿐인데, 학생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던 수사관이 "김일성 조문 논의를 했으면 그것이 '주사파'지 뭐냐"는 식으로, 나이가 어린 고교생들에게 유도신문을 하여 허위진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9월 29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샘 회장 고 등 9명을 상대로 낸 공소장에는 경찰조사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이적단체' 조항이 빠져 있어 94년 여름 총장의 주사파 발언이 계기가 된 공안정국의 여파가 청소년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샘 회원들은, 시경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강제 연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고 , 김 , 문 가 이적표현물을 소지, 집시법위반 혐의로 공판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고등학생들은 9월 초순에서 중순 무렵 학교에서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일부 학교 3명의 학생은 이 일로 퇴학 조처되었다가 다시 복학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보도신청인 강 □

원고들이 부른 노래에는 김일성을 지칭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김일성 찬가를 불러 구속되었다」는 표현으로 인해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으므로 訂正報道하라

서울지방법원 1995. 5. 2.자 판결 (94가합47709)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1995년 5월 2일 노래패 [희망새] 단원 허　　씨와 최　　씨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조선일보가 「노래패 희망새 단원 3명이 김일성 찬가를 불러 구속됐다」며 원고들의 구속사실을 보도하자 자신들은 노래를 부른 사실조차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가 중재불성립되자(94서울중재103) 법원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을 냈다.

判 決 文

사　건 : 94가합47709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1. 허

김해시

2. 최

부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이덕우, 전해철, 임종인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정주교, 최승인, 장원찬, 이병선, 최광률

변론종결 : 1995. 4. 11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조선일보의 모든 판에 별지 제1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제2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판결.

이 유 :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4. 4. 17.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노래패 희망새 3명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제목 아래 「부산경찰청은 16일 각종 집회에서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노래패 [희망새] 기획부장 허 씨(26 · 여 · 경남 김해시)와 최 씨(25 · 여 · 부산시)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허씨 등은 93년 1월 김 씨(26 · 구속) 등과 함께 노래패를 결성한 뒤 지난 1일 부산대에서 열린 한총련집회와 9일 부산역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 저지 시민대회 등 각종 집회에 참석, 〈붉은 산 검은 피〉를 각색한 〈아침은 빛나라〉 등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위 [조선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라 위 [조선일보]에 원고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기사는 피고 소속 사회부 기자 소외 양　　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와 담당수사관들과의 접촉, 구속영장의 열람 등을 통하여 얻은 자료들을 기초로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서 진실한 보도이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어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민법 제751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의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원문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에 부합되는 원문보도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원문보도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 2546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

나. 가사 피고들의 위 주장이 위 기사의 작성경위가 위와 같으므로 위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는 보도이나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그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을제1호증의 1(수사상황보고), 2내지 8(각 사진), 9(동향보고), 10(대의원대회 개최결과), 13내지 15, 18내지 20(자술서), 17(수사지휘품신), 을제2호증(보도자료), 갑제2호증의 5, 6(각 피의자신문조서), 갑제3, 4호증의 3, 4(각 피의자신문조서), 갑제5호증(공소장), 갑제6호증(판결문)의 각 기재와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위 엔 · 엘 · 피 · 디 · 알(NLPDR,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해방)론을 주장하는 [희망새]라는 노래패(후에 노래극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과 그 수괴인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붉은 산 검은 피」라는 시집에 언급된 혁명전통에 대한 자료를 학습하고 이에 동조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 기소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원고들이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선동용 이적노래(을제2호증)」 또는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을제1호증의 17)」라는 표현만이 있을 뿐이고, 「아침은 빛나라」라는 무용서사극에 삽입된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것은 소외 안 1명일 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제8호증(김 노래창작이야기), 갑제9호증(잡지기사), 갑제10호증의 2(음악무용서사극 「아침은 빛나라」대본), 3(붉은 산 검은 피)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오 이 지은 「붉은 산 검은 피」라는 시집에는 「압록 건너 만주벌에서 일어선 ○○○ 장군이여」, 「이때 조선반도 구석구석 몰아치는/소문 소문들이 있었다/○○○ 장군은 축지법을 쓴다더라/두 팔을 벌리고 이 산 저 산 날고/두 다리 벌리고 산에 걸터앉는/○○○ 장군은 하늘에서 왔다더라」, 「모두가 믿고 있었다/전설처럼 불리어진 이름/○○○ 장군이 있기에/아니 북풍을 타고 휘몰아쳐 온/전설 같은 소문 소문들이 있기에/조선의 독립은 멀지 않았다고/조선 빨치산이 있는 한/조선의 해방은 멀지 않았다고/삼천리 방방곡곡 일어나는 노래가 그것이었다」는 등의 김일성을 지칭·찬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구절들이 있으나, 이를 각색한 「아침은 빛나라」라는 무용서사극은 일제시대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 등의 활동과 해방 이후 화순탄광사건을 소재로 한 점에 있어서는 「붉은 산 검은 피」와 동일하나 아직 그 대본이 미완성인 상태인데다가 「붉은 산 검은 피」에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김일성을 지칭하거나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실, 피고가 「붉은 산 검은 피」를 각색하였다고 기사화한, 「아침은 빛나라」라는 무용서사극의 주제가인 「아침은 빛나라」라는 노래는 1992. 이전에 소외 가 작곡하여 발표한 곡으로서 원래는 「붉은 산 검은 피」와는 관련이 없는 곡이었으나 다만 위 「아침은 빛나라」라는 무용서사극의 주제곡으로 삽입된 노래일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반인이 보기에 다른 시국사범들과는 달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불러 구속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기사화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게재한 기사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정정보도문의 내용

다만, 원고는 별지 제2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문을 게재할 것을 구하나, 정정보도의 취지, 위 기사의 제목, 게재부위, 기사내용의 원고에 대한 관련정도, 정정보도

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별지 제1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별지 제1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하는 외에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2.

재판장 판사 박 장 우

판사 이 회 기

판사 김 주 형

제 1 정정보도문

1. 기사형태 : 2단×7cm 크기의 박스기사
2. 게재면수 : 제1사회면(단, 아래쪽의 다섯단 광고게재 부분 제외)
3. 박스제목 : 정정보도
4. 기사제목 :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양 사실무근』
   (활자크기 16급 이상, 길이 6cm 이상)
5. 기사본문

조선일보는 1994년 4월 17일자 사회면에 『노래패 [희망새] 3명,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제하의 기사에서 「각종 집회에서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붉은 산 검은 피〉를 각색한 〈아침은 빛나라〉라는 노래를 부른 노래패 [희망새] 기악부장 허 씨(26 · 여 · 경남 김해시)와 최 씨(25 · 여 · 부산) 등 3명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했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위 허 , 최 씨가 「아침은 빛나라」라는 노래를 부른 것은 사실이나, 위 노래는 「붉은 산 검은 피」를 각색한 노래가 아니며,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제 2 정정보도문

1. 기사형태 : 2단×7cm 크기의 박스기사
2. 게재면수 : 제1사회면(단, 아래쪽의 다섯단 광고게재 부분 제외)
3. 박스제목 : 정정보도
4. 기사제목 : 『「김일성 찬양」 사실무근』
   (활자크기 16급 이상, 길이 6cm 이상)
5. 기사부제 : 노래패[희망새]명예훼손 유감
   (활자크기 11급 이상, 길이 3cm 이상)
6. 기사본문

본사는 본보의 1994년 4월 17일자 사회면 『노래패 [희망새] 3명,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제하의 기사에서 「각종 집회에서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노래패 〈희망새〉 기악부장 허 씨(26 · 여 · 경남 김해시)와 최 씨(25 · 여 · 부산)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내용 중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 「〈붉은 산 검은 피〉를 각색」이라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 위 노래패 및 그 단원인 허 , 최 씨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본사는 위 노래패가 「아침은 빛나라」라는 노래를 부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거나 「붉은 산 검은 피」를 각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독자 여러분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본사는 앞으로 이러한 오해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보도에 충실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청인측의 반박을 함께 게재했으나, 기사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5. 7. 5.자 결정 (95카기1885)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5년 7월 5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일요신문사측에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하면서 아울러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주 금 1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일요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일요신문」 1995년 2월 17일자 표지 및 6면에서 9면까지 걸쳐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진정서 사건에 대해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보가 발행하는 〈프로듀서〉가 연기자협회가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 사본을 게재하면서 당초 이 회장 명의로 제출된 진정서를 변조했다' 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진정서 변조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청구소송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으로서는 위 보도내용이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준 적절치 않은 인상에 대하여 반박할 권리를 갖는다' 고 전제한 후 '피신청인 소속기자가 연기자협회 이 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기사를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 보도 중에 신청인협회 대표자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기사 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정정보도 인용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측이 요구한 정정보도내용 중 '연예계 비리사건과 PD연합회는 무관하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사가 연예계 비리사건에 신청인이 연루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보도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충적 반론권은 허

용하지 않았다.

신청인측은 1995년 3월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제기했으나 정정보도문을 표지에 게재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중재가 성립되지 않자(95서울중재47),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반론보도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가 신청인을 상대로 맞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1996년 2월 15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천만원을, 신청인은 이　　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95가합26099, 95가합97978)

決定文

사　건 : 95카기1885 정정보도청구심판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서울
대표자 회장 김승수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의 35
대표이사 심상기, 백승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황의인, 한이봉, 류광현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일요신문」지의 표지 오른쪽 중간 부분에 가로 3cm, 세로 1.3cm의 크기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8급 고딕체의 표지활자로 게재하고, 제6면 왼쪽 상단 부분에 가로 8cm, 세로 6cm의 크기로 위쪽에는 『「PD연합회보 진정서 변조 의혹」기사에 대한 반론문』 이라는 제목을 18급 고딕체활자로 2줄에 걸쳐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 신청인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주 금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일요신문」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제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제1항의 이행기간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매주 금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지인 「일요신문」지 1995. 2. 17.자(제144호) 제1면 표지에 다른 기사의 표제와 함께 『연예계 비리 전 추적, 이 폭탄발언, 큰손이 빠졌다, PD연합회보 이 진정서 변조의혹, PD연합회 vs 연기자협회 전면전 조짐』이라는 표제가 게재되었고, 제6면에 『막바지 연예계 비리수사 총추적』이라는 제목 하에 『진정서 변조의혹』이라는 소제목의 기사가, 제8면에 『연기자협회 진정서 변조의혹, PD연합회보에 청와대 민원서류 원문 전재, 연예인 불륜 · 금전관계 · 연기자 생활고 언급, 이 회장 「공개된 사본은 우리가 쓴 것 아니다」변조됐다』라는 소제목의 기사가 각 게재되었고, 제6면부터 제9면까지 사이에 「지난 1월 28일자로 발행된 프로듀서연합회보 〈프로듀서〉가 '연예계 비리 사건의 제보자가 연기자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 씨' 라고 주장하면서 프로듀서연합회와 연기자협회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다. 한편 이를 바라보는 방송관계자들은 〈골리앗〉과 〈다윗〉, 〈범〉과 〈하룻강아지〉, 〈편의점〉과 〈구멍가게〉로 표현하면서 최후의 승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자로 발행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보〈프로듀서〉에 게재된,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가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이 밝힌 것으로 이 회장은 전재된 사본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확인했다. … '본질 왜곡하는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 라고 명명되어 〈프로듀서〉 9면에 전재된 이 공문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방송국 직원들의 생활상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 연기자들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을 비회원들의 출연으로 인해 회원 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체까지 〈불협화음〉을 내게 되었고 '이런 외인부대 같은 연기자들은 매니저라는 돈의 힘으로 밀고 있는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중간부분에는 ※의 부언을 통해 '신인들의 NG로 인한 시간외 수당의 증가' '불륜의 관계' '금전관계' 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제6면과 제7면에서 이 연기자협회장과의 인터뷰기사를 실으면서 「…먼저 그에게 PD연합회 회보에 실린 진정서 사본을 내밀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몇 번을 되풀이해 읽어본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PD연합회쪽에서 조작했다는 얘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내가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진정서 문안은 누가 작성했나. '… 집행부가 작성한 걸 내 이름으로 제출한 것이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기사가 각 게재된 사실, 신청인 연합회는 방송사 프로듀서협회의 회원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사 및 비방송사의 프로듀서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이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1), (3), (4)항 정정보도문은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으로서 이 부분 신청은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일한 사건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통하여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법원에 정정보도심판청구를 하면서 구하는 정정보도내용이 동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추가, 보완, 또는 삭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1) 위 보도내용 중 『PD연합회보 이 진정서 변조의혹, 진정서 변조의혹, 연기자협회 진정서 변조의혹, PD연합회보에 청와대 민원서류 원문 전재, 이 회장 「공개된 사본은 우리가 쓴 것 아니다」 변조됐다』라는 표제 및 소제목 부분 「지난 1월 28일자 발행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보 〈프로듀서〉에 게재된,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가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이 밝힌 것으로 이 회장은 전재된 사본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본문 부분, 위 이 연기자협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먼저 그에게 PD연합회 회보에 실린 진정서 사본을 내밀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데…' 몇 번을 되풀이해 읽어본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PD연합회쪽에서 조작했다는 얘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내가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본문 부분이 각 게재, 공표됨으로써 신청인이 마치 위 이 의 진정서를 변조하여 위 「프로듀서」에 게재한 것 같은 왜곡된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보도내용이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준 적절치 않은 인상에 대하여 반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이 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PD연합회보에 실린 진정서의 내용이 위 이 가 쓴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게재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

장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신청인 대표자의 반박내용을 위 기사에 게재하여 신청인에게 반박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을제1호증의 1, 2의 각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기자가 위 이 ·와 인터뷰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위 기사를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위 진정서를 변조한 바 없다는 신청인의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소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 보도기사 중 제8면에 「이에 대해 프로듀서연합회의 김 PD는 '공보처 장관 명의로 KBS사장에게 보내졌고 이를 최 부주간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며, '그렇다면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한 서류를 공개하라' 고 요구하고 있다」고 신청인의 대표자인 김 ·의 발언내용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앞서의 기사 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충분한 반론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3)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은, 위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중 (1), (3)내지 (6)항과 같은 정정보도문도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중 (1), (5), (6)항에 관하여는, 위 보도 내용 중 연예계비리에 관한 부분은 주로 방송국 직원 또는 불특정 프로듀서에 관한 내용으로서, 신청인이 직접 지명된 바 없고 또한 연예계비리사건이 신청인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단체와 구성원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사실적 보도로 인하여 그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프로듀서 개인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프로듀서들을 회원으로 하는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는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리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중 (3)항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정노력을 도외시한 채 신청인이나 그 소속 PD들이 마치 연예계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하여 방어적 반론권 내지 보충적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사가 연예계 비리사건에 신청인이 연루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보도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충적 반론권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은 신청인의 자정 노력 등에 관한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정정

보도청구는 이유없다.

또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중 (4)항에 관하여 보건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기사는 그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비평, 논평 등 의사표현 내지 가치판단의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기사는 신청인과 연기자협회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주관적 가치평가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논평의 당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3. 정정보도문의 크기

신청인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 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표지의 제목은 가로 3cm, 세로 1.3cm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은 가로 8cm, 세로 6cm의 크기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부분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5.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재 형
판사 신 광 렬

〈별지 제1목록〉「PD연합회보 진정서 변조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문

지난 1995. 2. 19.자(제144호) 「일요신문」의 표지 및 제 6, 7, 8면에 『PD연합회보 이덕화 진정서 변조의혹』 등의 제하로, 「지난 1월 28일자로 발행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보 〈프로듀서〉에 게재된,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가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이 밝힌 것으로 이 회장은 전재된 사본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위 이 명의의 청와대 제출 진정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위 「프로듀서」 제67호에 실린 이 명의의 진정서는 이 가 1994년 말경 청와대에 제출

한 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정정보도신청인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별지 제2목록〉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

가. 정정보도문

연예계 비리, PD연합회와 관련없다.

PD연합회보, 이 진정서 변조없다.

이 , PD연합회보에 실린 청와대 진정서 변조사실 없다는 사실확인

정정보도신청인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나. 정정보도문

대제목 : 연예계 비리, PD연합회와 관련없음이 밝혀져

중제목 : 이 의 진정서를 변조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

PD연합회, 이 진정서 조작한 사실이 없다.

소제목 : PD연합회, 연기자협회를 지배하거나 무시한 적 없다.

본 문 : 본지 제144호(1995. 2. 19.자) 제6면에서 제9면은 『막바지 연예계 비리수사 총추적』 제하로 『진정서 변조의혹』, 『연기자협회 진정서 변조의혹』, 『PD연합회보에 청와대 민원서류 원문전재, 연예인 불륜, 금전관계, 연기자생활고 언급』, 이 회장 『공개된 사본은 우리가 쓴 것이 아니다』, 『변조됐다』라는 제목 하에 「지난 1월 28일자로 발행된 프로듀서연합회보 〈프로듀서〉가 '연예계 비리 사건의 제보자가 연기자협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이 씨' 라고 주장하면서 프로듀서연합회와 연기자협회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다. …한편 이를 바라보는 방송 관계자들은 〈골리앗〉과 〈다윗〉, 〈범〉과 〈하룻강아지〉, 〈편의점〉과 〈구멍가게〉로 표현하면서 최후의 승자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자로 발행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보 〈프로듀서〉에 게재된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가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질 왜곡한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 라고 명명되어 〈프로듀서〉 9면에 전재된 이 공문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방송국 직원들의 생활상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 연기자들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은 비회원들의 출연으로 인해 회원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체까지 〈불협화음〉을 내게 되었고 '이런 외인부대 같은 연기자들은 매니저라는 돈의 힘으로 밀고 있는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고 아래의 사실들이 진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1) 지난 연초에 발생한 이른바 「연예계 비리 사건」은 PD연합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PD연합회보인 「프로듀서」 제67호(1995. 1. 28.자)에 실린 연기자협회 회장 이 명의의 청와대 제출 진정서는 변조된 사실이 없고 이 가 1994년 12월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3) PD연합회는 금년초 이른바 「연예계 비리사건」이 보도된 직후부터 소속 회원 중 일부 PD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분노와 자성의 뜻을 표하면서 위 사건을 계기로 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작으로 국민들의 영상문화를 고양시키는데 진력하며 연예계 비리를 낳게 할 수도 있는 제작환경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4) PD연합회와 연기자협회의 관계를 「골리앗」과 「다윗」, 「범」과 「하룻강아지」 등으로 표현하며 마치 PD연합회가 연기자협회에 대하여 또는 프로듀서가 연기자에 대하여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있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5) 또한 연기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린 반면 프로듀서들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6) 연기자협회 이 회장이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에 담긴 연예인 불륜, 금전관계에 대한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신청인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별지 제3목록〉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요신문」 제1면 표지의 우측 최상단부분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8센티미터의 크기로, 4각 외 각은 두께 5밀리미터의 크기로 검은색 테를 그리고,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내용은 그 아래에 70급 명조체 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그 아래에 50급 고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일요신문」 제6면의 좌측 최상단부분에 별지 제2목록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 활자로, 대제목은 검은색 바탕에 흰글씨인 상태로 하여 100급 명조체 활자로, 중제목은 70급 명조체 활자로, 소제목은 50급 명조체 활자로, 본문은 13급 명조체 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50급 고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를 10일간에 걸쳐 상당한 분량으로 반복 보도하였으므로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 횟수는 그 보도한 횟수와 동일하게 정함이 상당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 7. 14.자 판결 (95카합125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 8. 1.자 결정 (95카기60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 8. 4.자 결정 (95타기2543)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995년 7월 14일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　　씨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판결에서 『신청인은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일간신문 국민일보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은 1995. 3. 20. 국민일보 제1면에 위 운동본부가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수혜자들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상당한 분량으로 게재한 이후 10여 명에 이르는 기증자 및 수혜자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해 4. 1.까지 10일간에 걸쳐 연이어 또는 격일 간격으로 거의 유사한 내용을 발표기사나 그와 관련된 설명을 덧붙인 보도 또는 사설 등의 형식으로 한 면이나 두 면에 걸쳐 계속하여 상당한 분량으로 반복 보도한 사실, 보건복지부가 위 보도 이후인 1995. 3.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3개 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1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2개 사항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는데,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위 각 보도에 나타난 비리부분에 대하여는 기증자 1인에게 보로금 85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점 이외 달리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그 횟수는 그 보도한 횟수와 동일하게 정함이 상당하다' 고 밝히면서 제1의 반론문부터 제10반론문까지 전체 13개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는 1995년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臟器기증, 非理 진실밝혀 '숭고한 사업' 활성화 해야』, 『기증 · 수혜자 상대 '회유공작' 』 등의 제목의 기사들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이식 수술을 주선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보로금을 가로채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95서울중재63).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100여 명의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직접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한 진실된 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정정보도게재 판결 후, 피신청인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은 당해 재판부에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며, 피신청인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담당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전체 13개 정정보도문 중 4개 반론문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신청인의 간접강제신청에 대해서는 위 4개 반론문을 제외한 9개 반론문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진행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화해제의를 받아들이고 본 소송을 취하했다.

判決文

사　　건 : 95카합1256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박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대표이사 이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변론종결 : 1995. 7.14.

주 문 : 1. 피신청인은 국민일보에 별지 반론문게재방법표 기재 제4항 방법에 따라 별지 제1 내지 10 반론문목록 기재 반론문을 같은 표 제2항의 위치에 같은 표 제3항 기재의 크기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50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제목 아래쪽에 별지 제1 내지 10 반론문목록 기재의 각 소제목을 가로로 38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며, 별지 제1 내지 10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문 및 반론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위 소제목의 아래쪽에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일간 국민일보에 별지 제2 정정보도문게재방법표에 따라 별지 제1 내지 2 정정보도문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국민일보의 1995. 3. 20.자 제1면 우측 상단 부분에 신청인의 사진과 함께 머릿기사로 "장기기증운동본부 「보로금」 가로챘다" 라는 큰 제목 하에 그 아래부분에 "수혜자들에 거액 사례금 받아"라는 소제목과 기사 우측 상단에 "최고 수천만원… 순위(順位, 신문기사상 한자로 표기된 부분은 괄호안에 한자를 표기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조작도" , "기증자엔 감사패 · 행운의 열쇠만 전달" 이라는 중제목과 「"금품(金品)수수 성립취지 어긋나 위법(違法)" 복지부」 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 」가 장기이식 수술을 주선하면서 이식을 받는 사람들(수혜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또 장기기증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겠다며 수혜자로부터 받은 「보로금」도 상당부분 전해주지 않고 중간에 가로챘음이 20일 본사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 (중략) 지난 2월 장기본부를 통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박 씨(41 · 가명)는 장기본부측의 요구에 따라 수술비 외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93년 4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강 씨(37 · 여 · 가명)도 장기본부로부터 「수술받는 대가」를 요구받고 8백만원을 냈다. 강(姜)씨는 「장기본부를 통해 이식수술을 받는 상당수 수혜자가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본부는 이처럼 거액의 후원금을 거둬들이면서 수술대기자의 순위까지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기본부에 수술대기자 등록을 한 뒤 2년 6개월을 기다린 김 씨(43 · 가명)는 가족이 장기본부관계자를 만난지 1주일만에 신장이식수

술을 받았다. 김(金)씨의 수술을 지켜본 병원관계자는 「김씨가 장기본부에 최소 1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기본부는 또 수혜자로부터 「기증자의 보약과 휴식기금으로 주겠다며」 받은 보로금 1백20만원도 상당수 기증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중략) 본사 취재진이 지금까지 장기본부에 신장을 기증한 70여 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보로금을 받지 못했으며 대신 장기본부에서 만들어준 감사패나 금10돈짜리 행운의 열쇠(50만원 상당)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장기기증본부는 그러나 수혜자로부터 거둬들인 거액의 후원금과 가로챈 보로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동환(李東煥) 의정국장은 20일「복지부 등록재단법인인 장기본부가 수혜자로부터 기증자 수술비와 검사비용 외에 별도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운동본부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며 「더욱이 기증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수혜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챘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같은 신문 같은 일자 같은 면 왼쪽 상단에 적시된 후원금 · 보로금의 도표 옆부분에 『본부측은 임의로 수혜자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고 기증자에게 전달하겠다며 받은 보로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2) 위 제1.가의 (1)항과 같은 신문 같은 일자 제22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사랑의 장기(臟器)」로 "돈벌이" 라는 큰 제목 하에 "보로금으로…"라는 중제목과 "수혜자에 내부규정(規定) 보이며 '내라' 요구, 기증자에게 거의 전달안하고 가로채" 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기증자가 돈이나 기타 보상을 전혀 바라지 않는 「순수한 심성의 소유자들」 이라는 점과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 만나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을 교묘히 이용해 보로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왔다. (중략) 장기본부는 수혜자로부터 보로금 1백20만원(93년까지는 90만원)을 일률적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돈을 받아야 할 기증자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달과정」 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장기본부는 보로금으로 감사패와 금10돈중짜리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기증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93년 1월 신장을 기증한 이 씨(40 · 가명)는 「수술 후 장기본부로부터 감사패만 하나 달랑 받았다.」며 「보로금이라는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고 말했다. 93년 2월 장기본부에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신장을 받아 딸의 이식수술을 마친 김 씨(여)도 보로금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金)씨는 「딸이 신장을 이식 받을 때 분명히 보로금을 냈으나 내가 신장기증자

가 되었을 때는 보로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고 감사패만 받았다.」 고 말했다. (중략) 92년 2월 신장을 기증한 김 씨(32 · 여 · 가명)는 수혜자의 직장동료들이 모은 성금 1백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로금을 받지 못했다. 장기본부는 김씨에게 「이미 기증자측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았으니 보로금을 줄 수 없다.」며 전해주지 않았다. 92년 10월 신장을 기증한 한 씨(45 · 여 · 가명)는 「보로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장기본부가 감사패 제작비를 내라고 권유해 10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한(韓)씨도 「기증자들이 모두 그렇게 제작비를 내는 것으로 알았다.」며 「보로금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장기본부는 그러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기증자나 뒤늦게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분개해 강력히 항의하는 기증자에게는 뒤늦게 보로금을 전달했다. 93년 신장을 기증한 황 씨(45 · 여 · 가명)는 수술 후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기본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끝에 결국 보로금을 받아냈다. 장기본부가 「달라고 조르는 이들에게만 주겠다」는 식으로 보로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또, 같은 신문 같은 일자 같은 면 같은 부분에 "후원금으로..." 라는 중제목과 "정부(政府)보조금 등 불구하고 수혜자에게도 받아 유명인사(人士) 기증 경우엔 「홍보」 노려 '무료'"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각종 비리가 표면화됨에 따라 장기본부는 그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한 「선행」 에도 불구하고 기증자가 순수한 뜻으로 내놓은 장기로 돈벌이를 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장기본부는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반면 생사의 기로에 선 채 장기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가 많은 현실적인 상황을 이용, 대소 후원금을 받아온 것이다. 순수생명운동단체임을 표방하는 장기본부는 2천여명의 일반후원자들이 매달 5천~1만원씩 내는 후원금을 받는 한편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보조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측은 수혜자들에게 「장기본부의 운영이 어렵다」며 사례금조로 별도의 후원금을 낼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본부는 조직검사 등을 통해 수혜자가 결정되면 자체적으로 책정한 기증자검사비용(조직검사비 96만원, 건강관리기금 80만원,보로금 1백20만원) 용지에 후원금 항목을 끼워 넣어 수혜자가 이 돈을 내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93년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8백만원의 후원금을 낸 강영숙(姜榮淑) 씨(여)는 「기본적으로 장기본부에 내야하는 기증자 검사비용 항목에 후원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수혜자들이 수술 전 이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姜)씨는 그해 11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연말정산을 위해 장기본부에 후원금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장기본부가 후원금을 정식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1천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박 씨는 「수술대기자 중 최우선순위는 아니었다」 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장기본부와 연락을 취한 김· 씨도 단 1주일만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주변에서는 「김(金)씨가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냈을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떠돌고 있다. 김(金)씨는 자신이 낸 후원금 액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수술대기자 순위는 중요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언제나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과는 달리 수혜를 위해 몇년째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長期) 대기자들은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93년 5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최 씨(36 · 여 · 가명)는 남편이 막노동을 하는 등 생활이 어려웠지만 수술 전 후원금을 내기로 약속하고 그해 10월 계를 탄 뒤 이 돈을 납부하기도 했다. 장기본부는 또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의 경우 병원까지 찾아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3년 8월과 94년 8월 각각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김· 씨(27 · 가명)와 서 군(18 · 가명)은 병원에서 장기본부에 2백만원씩의 후원금을 냈다. 장기본부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 「홍보효과」를 노려 일절 금품을 받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수혜자로부터 받는 각종 비용은 물론 후원금에 대해 말도 꺼내지 않고 무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기택(李基澤)민주당총재 부인 이 여사가 신장을 기증한 뒤 수혜자로 선정된 이(李)모 씨(48 · 여)는 장기본부측에 일체의 돈을 내지 않고도 이식수술을 마쳤다.』

나. (1) 국민일보 1995. 3. 21.자 제1면 우측 상단부분에 「"보로금 못받았다"폭로 잇달아」 라는 큰제목 하에 그 아랫부분에 "기증자들 「장기(臟器)본부」 비리(非理)의혹 확산" 이라는 중제목, 기사 우측 상단에 "박(朴)본부장 해명은 거짓"분노」라는 중제목과 기증 수혜 모녀회견(母女會見) "5백만원만 내고 감사패만 받아" 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장기기증운동본부측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로금과 관련, 이를 받지 않았다는 새로운 기증자들의 폭로가 20, 21일 곳곳에서 잇달아 장기본부의 비리의 혹이 확산되고 있다. (중략) 94년 신장을 기증한 김(金)모 씨(40)는 「수술 뒤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 외엔 받은 것이 없다」고 박(朴)본부장의 발언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장기본부측에서 교통비라며 10여 만원을 줬으나 순수한 뜻으로 장기를 기증했기 때문에 이 조차도 받지 않았다」 면서 「장기기증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외에는 사인을 해 준 영수증같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날 본사취재팀이 확인한 다른 4명의 기증자 및 관계자들도 모두 「보로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보로금이라는 것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 고 말했다. 박 (47) 김 (22) 씨 모녀는 이날 밤 본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보로금은 받지 못했으며 감사패만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박(朴)씨는 딸 김(金)씨가 빨리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 93년 2월 장기본부를 통해 자신의 신장을 제3자에게 기증했고 딸은 장기본부를 통해 신장을 기증받았다. 박(朴)씨는 「딸의 수술비(8백만원) 외에 기증자에게 일어날지도 모를 후유증에 대비한다는 명목(보로금을 의미)으로 90만원과 후원금 50만원 등 모두 5백10만원 정도를 별도로 냈다.」면서 그러나 내가 신장을 기증한 뒤에는 감사패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박(朴)씨는 이어 장기본부가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후 겪을 수 있는 후유증과 재수술 등에 관한 모든 재량권을 갖고 있어 수혜자가 불만을 쉽게 토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딸의 목숨을 되살린 사실이 너무 고마워 보로금 등 돈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기자와 만난 이(李) 씨(48 · 여 · 93년 8월 수술)는 「신장을 기증한 뒤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만 받았고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다만 나중에 장기본부에서 알아서 쓰라며 3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93년 1월 수술한 주(朱) 씨(41 · 여)도 「감사패, 행운의 열쇠만을 받았고 기증자가 받을 수 있는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20일)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또, 같은 신문 같은 일자 같은 면 같은 부분에 "검찰 내사(內査)착수" 라는 중제목 하에 "복지부 특감(特監)… 유용 드러나면 고발(告發)" 이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검찰은 21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 」 가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보로금과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정밀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와 별도로 이 단체의 비리여부에 대한 방증수집과 법률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결과 비리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대검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시키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힘에 따라 고발 즉시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기를 받은 환자가 기증자에 대한 보로금 명목으로 낸 돈을 박(朴)본부장 등이 기증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후원금을 강요한 뒤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게 횡령 · 배임 등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 중이다.』 연이어 위 기사의 아래부분에 '관련법(法) 제정키로' 라는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감사관실 직원 5명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 (중략) 정부가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지원하는 연간 6천2백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사결과 후원금이나 보로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이 법인체

의 이사진도 개편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민간단체 주도의 장기기증운동이 잡음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연내에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정부가 장기이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관리키로 했다.』

(2) 같은 신문 같은 일자 제3면 우측 상단부분에 "생명의 「매매화(賣買化)라니…"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생략) 한치의 의혹도 있어선 안된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장기본부는 신장을 이식받는 환자 당사자로부터 수술 직전 후원금을 받았다. 1천만원을 낸 의사도 있고 8백만원을 낸 주부도 있다. 1천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수혜자도 상당수 있다고 들린다. 본인들은 드러내놓고 말하길 꺼린다. 이 부분에 대해 장기본부는 본부의 운영비로 쓰기 위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당연시한다. 그러나 장기본부는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2천여 명의 일반후원자들이 내는 후원금을 매달 받는다. (중략) 장기본부와 같은 순수 사회봉사단체는 이런 깨끗한 돈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장기기증운동의 미래가 보장된다. 장기본부는 장기 수혜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절박한 상대의 수혜자로부터 수술 직전 돈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순수성이 없다. 더군다나 기증자보다는 수혜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아닌가. (중략) 장기기증운동은 이제 특정인이 주도하는 사회단체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나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이 수혜자라는 40대 남자는 「장기본부가 수혜자에게 후원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은 병원의료진들도 아는 사실」 이라며 「수혜자들은 장기를 이식받고 재발할 경우 다시 이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폭로하지 못할 뿐」 이라고 말했다. 30대의 한 신장기증자는 「장기본부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듯이 장기기증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다. (1) 국민일보 1995. 3. 22.자 제3면 우측 상단부분에 「신청인 사진 및 헌혈증서 착복 의혹 체계도」 라는 도면과 함께 "70년대 혈액 팔아 '착복' 의혹"이라는 큰 제목 하에 기사 우측 상단에 "「장기(臟器)기증」 본부장 박 누구인가"라는 소제목과 기사 중간 부분에 "당시 헌혈협이사… , 중서 · 알선료 챙겨 「물의」 빚자 84년 도미(渡美) 뒤 90년에 귀국 숙소 2곳 · 원목(院牧) 약력 등 의문투성이" 라는 중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박 본부장의 진면목은 무엇일까. 박(朴)본부장이 70년대초 벌였던 민간헌혈운동과 관련된 의혹은 아직도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중략) 그와 활동했던 헌혈협회 초대 이사장 김 씨와 전(前) 혈액학회 회장 이

씨 등이 공동 집필한 「한국헌혈운동사」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단체의 재정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박(朴)본부장이 벌인 행적들이 오히려 우리 나라 헌혈운동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박(朴)본부장이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 헌혈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헌혈자 수와 혈액원에 기록된 헌혈자 수가 달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가 혈액기증자들을 혈액원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알선료를 받거나 일부 헌혈자의 혈액을 팔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헌혈자들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헌혈증서를 불우한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혈을 한 당사자에게는 증서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朴)본부장이 지급하지 않은 증서를 모아 현금으로 바꿔 착복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보사부는 헌혈자에게는 반드시 증서를 교부하도록 명시한 혈액관리법령을 들어 이를 중지시켰다. 84년 5월 19일. 그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외 관련된 구설수도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중략) 그러나 수혜자들로부터 장기이식수술을 받는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했으며 수혜자들로부터 장기수술치료비와 별도로 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로금을 받아 이를 중간에서 착복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일보 취재팀의 취재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고 마침내 보건복지부의 특감과 검찰의 내사로 이어지고 있다. (중략) 그의 약력은 홍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결국 하나로 집결되고 만다. 박 , 그는 진정 누구인가.』

(2) 1. 다의 (1)항과 같은 면 중간 부분에 "「장기본부」 어떻게 운영되나" 라는 사이 제목하에 "정부(政府)보조 · 후원금 사용내역 '베일'", "박(朴)씨 91년 설립… 절대적 권한" 이라는 중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생략). 이에 따라 장기본부도 서울 이외에 8개 지역본부를 둘 만큼 규모가 커졌으나 운영실태가 공개리에 제대로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중략) 그러나 이는 법인체로서의 형식적인 모양새를 갖춘 것일 뿐 실제로는 창립 때부터 박 본부장의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 운영돼 왔다.이 때문에 장기본부의 각종 업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장기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체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이 낸 후원금과 복지부로부터 매년 6천2백만원씩 받는 보조금이 쓰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중략) 현재 장기본부를 통해 연결된 수혜자는 자신과 기증자 수술비용을 제외하고도 장기본부에 기증자 검사비용 명목으로 2백96만원의 기본경비와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40~70만원의 교통비를 이식받기 전에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또 장기본부가 수술받기 전 수혜자에게 제시하는 「기증자 검사비용」에는 후원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융기관 계좌번호도 명시돼 있다.』

라. (1) 국민일보 1995. 3. 24.자 제22면 좌측 상단부분에 「"후원금 못낸다"하자 "수술 못함" 통보」라는 제목 하에 기사 중간부분에 '어느 수혜자의 증언(證言)', '장기본부 이렇게 했다', 나중 다시 불러 「이식」 후 '2백만원 내라'", "뇌사자 가족에 전달않고 영수증 안 줘"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후원금과 보로금에 이어 뇌사자의 장례비용까지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가 생체이식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수술. (중략) 생명을 되살리는 숭고한 「작업」에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개입된 것이다. 94년 12월 22일 서울 강동 성심병원에서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수술한 김 씨(44 · 대구). (중략) 영세민보호1종으로 신장병을 앓아오던 金씨가 도움을 받기위해 장기본부의 문을 두드린 것은 94년 11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서울의 장기본부를 찾은 김씨는 장기본부가 제시한 검사비 80만원, 보로금 1백20만원 등 3백여 만원의 수술비 내역을 설명받았다. 장기본부 관계자는 이어 「후원금으로 3백만원을 내야한다」 고 요구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김씨는 「후원금으로 낼 돈이 없다」고 말했다. 며칠 뒤 장기본부는 「신장기증을 하려했던 사람의 부인이 기증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술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중략) 그러나 김씨는 12월 21일 갑자기 장기본부 이(李)모 간사로부터 서울에 와서 수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급히 상경한 김(金)씨는 다음날인 22일 누구인지도 모르는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병실에 누워 몸조리를 하는 김씨에게 장기본부 직원 김(金)모 씨가 찾아왔다. 기증한 뇌사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던 김(金)씨는 먼저 「뇌사자 장례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본부 직원 김씨는 「우리가 다 해결했으니 장기본부에 2백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중략) 보조금을 전달하는 조촐한 자리에 본부직원 김(金)씨도 나타났다. 그는 부친 김(金)씨를 바로 건물화장실로 불러 2백만원을 받은 뒤 그 자리를 떴다. 부친 김(金)씨는 「장례비라면 뇌사자 가족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면서 「돈을 받아 가는 명목도 불확실했고 당시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 고 말했다.(중략) 서울대 장기이식 프로그램 관계자는 「94년 2월 장기본부를 통한 뇌사자 장기이식 수술뒤 장기본부직원이 찾아와 조화비와 장례비 등 50여 만원이 들었다며 병원측에 2백여 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 위 1. 라.의 (1)항과 같은 일자 제23면 우측 상단 부분에 "수혜자에 「뇌사자 장례비」도 거뒀다"라는 제목 하에 "장기(臟器)기증본부 병원비에 포함 불구 별도로 요구"라는 중제목과 「50대(代) 어머니 "팔의 신장 수술 뒤 2백만원 줬다"」, 「병원측 "장기본부 뇌사자 소개 뒤 돈 요구했다"」 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 」가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에게서도 뇌사자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중략) 장기본부는 수혜자 측이 병원에 장례비용을 지불한 것과는 별도로 또다시 비용을 요구해 왔다. 94년 12월 서울강동성심병원에서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은 김 씨(44)는 수술비 3백80만원 외에 장기본부 직원 김모 씨의 요구에 따라 2백만원을 줬다. (중략) 서울대병원 장기이식 프로그램 담당자 이모 씨(35 · 여)는 「장기본부가 뇌사자를 병원에 소개시켜준 뒤 항상 돈을 요구해 병원측과 자주 다퉜다며 91년 2월에는 병원측이 수혜자에게 장기본부에 돈을 내지 말라고 설득한 적도 있다.」 고 말했다.』

마. (1) 국민일보 1995. 3. 25.자 제23면 우측 상단부분에 "장기臟器)기증비리(非理) 진실밝혀 「숭고한 사업」 활성화해야" 라는 제목 하에 '골수 은행(銀行)회장 옥 목사 본지 인터뷰' 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생략) 93년 12월부터 골수은행 회장을 맡고 있는 옥(玉)목사는 장기본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간 6천2백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것과 수혜자로부터 「보로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옥(玉)목사는 「이전에는 박(朴)본부장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박본부장이 헌혈관계 일을 하면서 헌혈증서를 착복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중략) 옥(玉)목사는 22일 보도된 박본부장의 개인 신상에 관한 기사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며 「사실이냐」 고 되물으며 재차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2) 위 1. 마의 (1)항과 같은 면에 기증 · 수혜자 상대 "회유공작" 이라는 사이 제목 하에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에 유리한 증언(證言)요구" 전화(電話) 공세」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 」가 지난 20일 본지에 비리관련 기사가 게재된 이후 기증자와 수혜자들을 필사적으로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이후 본사에 전화를 하거나 기자와 직접 만난 기증자와 수혜자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됐다. 장기본부 박(朴)본부장 등 핵심 간부들은 보로금을 받지 못한 기증자들과 장기본부의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낸 수혜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장기본부에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중략) 장기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감사가 시작된 뒤에도 이같은 회유 설득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장기본부가 의도적으로 비리를 감추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바. 국민일보 1995. 3. 27. 제23면 우측 상단부분에 「"돈 미리 내면 「이식」 바로 주선 2천만원 선불(先拂)강요"」라는 대제목 하에 "박 씨, 수혜자에 직접 요구", 「"스

스로 냈다" 주장 거짓 드러나」라는 중제목과 「40대(代) 여인(女人) 폭로, "분노 느꼈으나 위독상황에 응대 기증자 조직과 달라 포기 · 끝내 동생 것 이식받아"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본부장 박 」가 일부 장기 수혜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선불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93년초 장기본부에 수혜자 등록을 한 김 씨(45 · 여 · 가명)는 26일 국민일보기자와 만나 「장기본부에 등록하자마자 박 본부장이 2천만원의 후원금을 선불로 내면 신장을 곧바로 이식받게 해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폭로했다. 김(金)씨는 「93년 3월 친정부모와 함께 서울공덕동 장기본부를 찾아가 이식문제를 논의하던 중 박본부장이 친정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집무실에서 '후원금 2천만원을 선불로 내면 조직이 맞는 기증자를 연결해 주겠다' 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략) 라는 기사와 「어느 40대(代) 여인(女人)이 고발하는 '장기비리(非理)' 라는 사이 제목 하에 기사 중간에 "돈만 내면 조직 안 맞아도 주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장기기증운동본부의 후원금 강요를 폭로한 김 씨는 「생명을 담보로 돈을 챙기려는 박 본부장의 비도덕적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 고 말했다. (중략) 박(朴)본부장은 김(金)씨의 친정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2천만원을 내면 기증자를 물색해 빨리 수술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중략) 김(金)씨는 박(朴)본부장이 후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줬다고 밝혔다. 김(金)씨는 「박(朴)본부장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자신이 수술비모금을 위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낼테니 그 헌금으로 우리에게 후원금을 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략) 김(金)씨는 「이번 기회에 장기본부의 비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 (1) 국민일보 1995. 3. 28.자 제21면 중간부분에 "용기있는 제보"라는 중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생략)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와 박 본부장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일보에는 제보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문보도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수혜자들은 「거액 · 선불 · 순위조작」 등 순수생명운동단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실들이 장기본부에 현존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거액 후원금을 어쩔 수 없이 냈다는 한 수혜자는 당시의 절박했던 심정과 분노를 되새기며 울먹였다. 수혜자들은 장기본부의 비리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략) 후원금이나 그에 따른 순위조작이 사라지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본부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조건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선불」 로 요구받았다고 폭로

한 김 씨(45 · 여 · 가명 · 본보 27일자보도)는 27일밤 본사에 전화를 걸어 「박 본부장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국민일보 기자를 정말 만났느냐' 고 묻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2) 위 1. 사의 (1)항과 같은 일자 제22면 좌측 상단부분에 "검찰 「장기(臟器)비리」 수사 나서라 각계(各界) 목소리"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 」와 관련한 비리의혹이 사직당국에 의해 규명되고 장기기증운동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장기본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충격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공신력을 갖춘 순수한 장기기증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서울대 교수(48 ·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는 「장기기증에 있어 금품수수, 특히 수혜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일은 윤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중략) 「장기본부에 대한 신부전증환자들의 불평이 많아 몇 차례 주의를 촉구했으며 각종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장기기증과 관련한 비리의혹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인 목사(50 · 갈릴리교회)는 「신체 일부를 주고 받는 장기기증은 그 자체가 성스러운 사랑의 실천이니 만큼 금전적인 면에서 단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중략) 김 변호사(55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는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자원봉사인 장기기증 과정에서 금전수수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기를 매매한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당장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 전 남대교수(62 · 전국기독자교수협의회장)는 「장기기증과 관련해 정말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이는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검찰이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장기기증운동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서울대교수(43 · 사회복지학)는 「장기기증이 깨끗한 도덕적 종교적 운동이므로 박 본부장은 기증자 등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면서 「장기본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는 단체이므로 보건복지부나 검찰은 엄격한 감사와 수사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한양대 신장이식인회장(46)은 「장기기증운동이 올바르게 이뤄지려면 무엇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해야 한다. 이 운동이 어느 한 사람의 명예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한 이식인연합회장(82년 신장이식)도 「장기본부비리의혹은 기증자나 수혜자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겨줬다. 장기본부는 이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 국민일보 1995. 3. 30자 제1면 우측 상단부분에 "「장기(臟器)나눔 기구」 연내 발족"

이라는 큰 제목 아래 "민간(民間)주도 부작용 방지책 기증 – 수혜자 연결 전산망(電算網) 설치"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생략)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매매나 순위조작 등의 부작용을 막고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장기공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장기공여관리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는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 국민일보 1995. 3. 31.자 제3면 사설란에는 "「장기(臟器)비리」 검찰이 나서라"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사설이 게재되었다.

『(생략) 이러한 숭고한 과정에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 혹은 저속한 명예욕 등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눔 본래의 인간애를 상처내는 악덕으로 단정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금전이 개재되어 상거래의 형식까지 취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체를 상품화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사랑의 실천」이란 미명 아래 특정인의 사욕을 채우는 일은 일종의 기만행위에 속한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이같이 우려할 만한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본지가 최근 중점 보도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비리는 장기기증이란 「사랑의 실천운동」이 영리적 차원에서 운영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비리의 내막은 수혜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초점이다. 장기본부측은 후원금을 강요한 바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제보는 속속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선불을 강요한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중략) 이같은 비리의 의혹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차. 국민일보 1995. 4. 1.자 제22면 우측 상단 부분에 공여 이식 종합적 관리 급선무라는 큰 제목 아래 "장기기증운동 이렇게" 이라는 중제목 아래 "체계없어 「매매」 등 부작용 많아" 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중략) 국내에서는 현재 장기공여 및 이식이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일부 병원에서 체계없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장기이식을 기대할 수 없고 장기 매매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2. 가.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일간신문인 국민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에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반론문의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실적으로 사회나 개인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언론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그 보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상충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므로 반론내용의 적정 여부는 위 각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1991. 11. 8. 장기 기증운동, 국민 서로간의 새생명 나눔의 사랑, 실천운동을 통하여 국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기 이식 필요자의 실태조사, 살아서 신장을 기증토록하는 사업, 심장 등 이식 가능한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촉진사업 등을 수행하여 온 사실, 장기기증은 자신의 생명의 일부분을 아무런 보상없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기증운동을 수행한 결과 1995. 3. 20.까지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가 168명에 이른 사실, 피신청인은 1995. 3. 20. 국민일보 제1면에 위 운동본부가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수혜자들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머릿기사로 상당한 분량으로 게재한 이후 10여 명에 이르는 기증자 및 수혜자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해 4. 1.까지 10일간에 걸쳐 연이어 또는 격일 간격으로 거의 유사한 내용을 발표기사나 그와 관련된 설명을 덧붙인 보도 또는 사설 등의 형식으로 한 면이나 두 면에 걸쳐 계속하여 상당한 분량으로 반복 보도한 사실, 보건복지부가 위 보도 이후인 1995. 3.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3개 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1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2개 사항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는데,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위 각 보도에 나타난 비리 부분에 대하여는 기증자 1인에게 보로금 85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점 이외 달리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그 횟수는 그 보도한 횟수와 동일하게 하면서 별지 제1 내지10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신청인은 ① 별지 제3의 1 기재 정정보도문 제3,7항의 내용, ② 별지 제3의 2 기재 정정보도문 제1 내지 5항의 내용, ③ 별지 제5 기재 정정보도문 제2항의 내용 및 ④ 별지 제7의 1 기재 정정보도문 제1 내지 5항의 내용도 정정보도문으로 게재하여 달라고 구하나 ①②③항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은 그 분량적인 면에서나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위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아주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

을 뿐이어서 반론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고, ④항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은 그 대상이 사실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보도에 해당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모두 신청인의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 내지 반박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인데 신청인은 원문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는 취지와 그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위법한 내용을 포함시킨 별지 제11목록 기재의 반론문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보도된 기사에 대한 본인의 사실주장을 담는 내용과 함께 이를 보충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반론문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신청인은 별지 정정보도문 게재방법표 기재 방법으로 별지 제1 내지 10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구하나, 위 기사들의 제목, 각 게재 면의 위치 및 부위, 제목 및 본문 활자의 크기, 전체 기사의 내용, 반론문의 글자수 등을 고려하면 별지 제1 내지 10 목록 기재의 반론문은 별지 반론문게재방법표에 따라 같은 표 제2항의 위치에, 같은 표 제3항 크기로 하되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50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별지 제1 내지 10 반론문 목록 기재의 각 소제목을 따로 붙여 정하는 외에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으로 제목을 따로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고 그 중제목의 활자는 38급 명조체활자로, 반론문 내용 및 반론신청인 성명은 10급 명조체 본문활자로 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14.

재판장 판사 손 용 근
판사 박 익 수
판사 윤 현 주

반론문게재방법표

순위	(1) 반론문목록	(2) 위치	(3) 크기	(4) 방법
1	제1의 1 반론문	제1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3단	이 사건 판결송달후 편집이 완료되지
	제1의 2 반론문	제22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3단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2	제2의 1 반론문	제1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2단	제1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제2의 2 반론문	제3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2단	국민일보
3	제3 반론문	제3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2단	제2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4	제4의 1 반론문	제23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9cm, 세로 4단	제3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제4의 2 반론문	제22면 좌측 상단부분	가로 15cm, 세로 3단	국민일보
5	제5 반론문	제23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2단	제4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6	제6 반론문	제23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2단	제5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7	제7 반론문	제21면 중간부분	가로 18cm, 세로 1단	제6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8	제8 반론문	제1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9cm, 세로 3단	제7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9	제9 반론문	제3면 좌측 상단부분	가로 15cm, 세로 2단	제8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10	제10 반론문	제22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9cm, 세로 2단	제9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제 1-1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보로금」가로챈 사실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0.자 1면에 "장기기증운동본부「보로금」가로챘다"라는 큰 제목과 "수혜자들에 거액 후원금 받아" 및 "최고 수천만원 순위(順位, 이하 괄호안의 한자는 반론문 게재시 한자에 상응한 한글과 괄호를 없애고 한자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조작도", "기증자엔 감사패, 행운의 열쇠만 전달" 이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 」가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받았고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주는 보로금을 가로챘으며 장기이식수술의 순위(順位)를 조작하는 등의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비리(非理)를 저질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측의 요구로 후원금을 냈다는 박 씨(41 · 가명)는 신장이식수술을 주선해 준 호의에 감사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냈으며, 강 씨(37 · 가명)도 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장을 기증받게 해 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원금을 냈던 것이며,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이식수술을 받는 상당수 수혜자가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순위조작에 의해 1주일만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고 보도된 김 씨는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등록한 지 10개월이 지나서 수혜자와 장기의 조직형이 맞아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더욱이 그는 수천만원이 아닌 2백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는 보로금을 가로채거나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 등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혜자들의 수술에 관한 순위(順位)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고, 수혜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보로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명세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를 통하여 감독을 받고 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1-2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臟器)로 돈벌이 한 사실 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0.자 제22면에 "「사랑의 장기(臟器)」로 돈벌이"라는

큰 제목과 "보로금으로…", "수혜자에 내부 규정 보이며 '내라' 요구", "기증자에게 거의 전달 안하고 가로채"라는 소제목 및 "후원금으로…"라는 중제목 및 "정부(政府) 보로금 등 불구하고 수혜자에게도 받아 유명인사(人士) 기증경우엔 「홍보」노려 '무료'"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받았고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주는 보로금을 가로챘으며 장기이식수술 순위를 조작하였고, 장기기증운동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였는 등의 비리(非理)를 저질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2백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보도된 김 , 서 씨는 가공인물로 밝혀졌고, 보로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도된 기증자 한 , 황 씨는 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 보로금과 감사패 등을 모두 받았으며, 후원금을 내고 순위에 비해 빨리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된 박 씨는 순서에 따라 수술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냈고,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고 순위보다 빨리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된 김 씨는 기증자와 신장의 조직형이 잘 맞아 수술을 받게 된 것이며 수술 후 자발적으로 금 2백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이며,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해 10월 민주당총재부인인 이 여사의 신장을 기증받은 이모 씨로부터 규정에 따라 사전검사비, 사후건강관리기금, 교통, 보로금 등을 받는 등 유명인사가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장기수혜자로부터 소요비용 등을 수령하고 있으며, 약 1,350여 명의 후원자로부터 매달 2천~1만원씩의 후원금과 정부로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운영비가 아닌 골수기증 운동캠페인의 홍보비로 1994년 동안 금 6천2백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수혜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제로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수혜자로부터 받은 보로금을 기증자에게 전액 전달해 왔으며, 돈을 받고 수술대기자의 순위를 바꾼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2-1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자 보로금 못받은 사실 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1.자 제 1면에 「"보로금 못받았다" 폭로 잇달아」라는 큰 제목과 "기증자들 「장기(臟器)본부」 비리(非理)의혹 확산", 「"박(朴)본부장 해명은 거

짓" 분노」라는 중제목 및 "기증 수혜자 모녀 회견 5백만원 내고 감사패만 받아"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주는 보로금을 가로챘고 검찰 및 복지부에서 비리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자들이 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 보로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고, 94년 신장을 기증한 뒤 보로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김(金)모 씨는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신장을 기증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박 김 모녀의 경우 장기수혜자로서 장기기증운동본부에 후원금 30만원을 포함하여 사전검사비, 건강관리기금 등으로 510만원이 아닌 280만원을 냈고, 기증자로서 감사패를 받은 외 사무착오에 의해 현금 보로금을 받지 못한 것이며, 보로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된 이 , 주 씨 모두 보로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대한 검찰의 내사와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에서 부당한 금품 거래를 하였다거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2-2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를 매매(賣買)한 사실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1.자 제3면에서 "생명의 「賣買化」라니…" 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까지의 후원금을 강요하여 받았고 장기기증운동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수혜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부로부터는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운영비가 아닌 골수기증운동 캠페인의 홍보비로 1994년 한해에 금6천2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약 1,350여 명의 후원인으로부터 2천원에서 2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받고 있고, 수혜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그들의 형편에 따라 후원금을 받아 왔으나 후원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장기를 매매한 사실이 없고, 그동안 생명사랑의 숭고한 뜻으로 장기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장기기증운동을 펼쳐왔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3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박 본부장, 혈액 팔아 착복한 사실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2.자 제3면에서 "70년대 혈액(血液) 팔아 「착복」 의혹" 이라는 제목과 "「장기기증」 본부장 박 누구인가", "당시 헌혈협이사…, 증서·알선료 챙겨 「물의」 빚자 84년 도미(渡美) 뒤 90년에 귀국이라는 소제목으로, 박 이 헌혈증서나 알선료를 챙기고 혈액(血液)을 팔아 착복한 것으로 물의를 빚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사랑의 장기운동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착복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 왔으며,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주는 보로금을 가로챘다고 보도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박 본부장은 민간헌혈운동과 관련하여 혈액기증자들을 혈액원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알선료를 받거나 일부 헌혈자의 혈액(血液)을 팔아 착복하지 않았고,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헌혈증서를 모아 현금으로 바꿔 착복하지 않았으며, 장기기증 수혜자로부터 보로금을 받아 착복하지 않았고, 후원금을 직접 받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4-1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후원금」 없다는 이유로 수술 거부한 적 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4.자 제22면에 「"후원금 못낸다"하자 "수술 못함"통보」 라는 큰 제목과 '어느 수혜자의 증언(證言)', '장기기증운동본부 이렇게 했다' 라는 중제목, "나중 다시 불러 「이식」 후 '2백만원 내라' ", "뇌사자 가족에 전달않고 영수증 안 줘"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수술을 거부하였으며, 규정과 달리 별도로 뇌사자 장례비를 거두었다는 취지의 김 씨 등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본부는 김 씨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그에게 후원금을 못낸다고 하여 수술 못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었으며, 뇌사자 장례비를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김씨는 수술대기자 순서에 따라 신장이식수술을 할 예정이었으나 기증자의 부인이 신장기증을 반대하여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가 수술 후 후원금 2백만원을 내었고, 서울대 병원관계자가 장기기증운동본부직원이 병원측에 장례비 등을 요

구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4-2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수혜자에게 「뇌사자 장례비」 거둔 사실 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4.자 제23면에 "수혜자에 「뇌사자 장례비」도 거뒀다"라는 큰 제목과 "장기(臟器)기증본부 병원비에 포함 불구 별도로 요구" 라는 중제목 및 「50대(代) 어머니 "딸의 신장수술 뒤 2백만원 줬다"」, 「병원측 "장기기증운동본부 뇌사자 소개 뒤 돈 요구했다"」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이식 등과 관련하여 저질렀다는 각종 비리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본부장 박

가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로부터 소요비용 외에 별도로 장례비도 거두었고 뇌사자를 소개한 후 돈을 요구해 병원측과 자주 다투었다는 취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뇌사자장례비로 금2백만원을 주었다고 보도된 김 씨는 장기를 기증받은 후 장례비가 아닌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냈고, 최 씨도 장례비로 금250만원을 낸 것이 아니라 후원금 2백만원을 낸 것으로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수혜자에게 뇌사자 장례비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뇌사자를 병원에 소개시켜 준 뒤 항상 돈을 요구해 병원측과 자주 다퉜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서울대 병원의 이(李)모 씨(35 · 여)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5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사업에 비리 없었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5.자 제23면에 「"장기(臟器)기증 비리(非理) 진실 밝혀 「숭고한 사업」 활성화 해야"」라는 제목과 '골수 은행회장 옥 목사 본지 인터뷰', 기증수혜자 상대 회유공작이라는 소제목으로 박 이 헌혈관계 일을 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

)가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들을 상대로 비리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유리한 증언(證言)을 해달라는 취지의 회유 설득작업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박 본부장은 헌혈 관계와 관련된 비리(非理)가 없었고,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위 비리보도와 관련하여 기증자와 수혜자들을 회유하거나 본부에 유리한 증언(證言)을 요구하는 설득작업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6 반론문

소 제 목 : 박 본부장, 장기수혜자에게 2천만원 선불(先拂) 강요한 사실 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7.자 제23면에 「돈 미리 내면 「이식」 바로 주선 2천만원 先拂강요」라는 큰 제목과 "박 씨, 수혜자에 직접요구", 「"스스로 냈다" 주장 거짓드러나」라는 중제목 및 「40대(代) 여인(女人)폭로, "분노 느꼈으나 위독 상황에 응대"」, "기증자 조직과 달라 포기 … 끝내 동생 것 이식받아"라는 소제목으로 ,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인 김 씨(45 · 여 · 가명)에게 후원금을 강요하여 2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김 씨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박 본부장이 그녀가 다니던 구리시 아천동 교회의 담임목사를 통해 장기이식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 김(金)씨에게 한양대학병원을 소개해준 적이 없으며, 후원금에 관하여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김(金)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7 반론문

소 제 목 : 본지에 알려온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대한 비리제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8.자 제21면에 「용기 있는 제보」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이식 등과 관련하여 저질렀다는 각종 비리에 관하여 보도하

면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강요하여 받았고 장기이식수술의 순위(順位)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박 본부장은 장기기증을 받은 수혜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후원금을 강요하여 선불로 받거나 장기이식수술의 순위(順位)를 조작하지 않았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8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를 매매하거나 수술 순위를 조작한 사실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30.자 제1면에 "「장기(臟器)나눔 기구」 연내 발족"이라는 제목과 "민간(民間)주도 부작용 방지책 기증 – 수혜자 연결 전산망(電算網) 설치"라는 소제목으로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매매나 순위조작 등의 부작용을 막고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장기공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장기공여관리기구를 설치키로 했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는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를 매매하거나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사람들의 수술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그동안 장기기증운동본부의 활동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와 부작용도 없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왔고, 보건복지부는 1995년 3월 30일 현재 장기공여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장기공여관리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거나 설치키로 했다고 밝힌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9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한 비리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31.자 제3면 사설란에서 "「장기(臟器) 비리」 검찰이 나

서라" 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 가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후원금을 강요하여 받았고 장기기증운동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였다 등의 장기이식과 관련한 형사처벌이 되기에 충분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수혜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거나 선불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박 본부장 역시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하여 장기를 매매하거나 또는 생명체를 상품화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없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10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운영에 장기매매 등 부작용 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4. 1.자 제22면에 "공여이식 종합적 관리 급선무"라는 큰 제목과 "장기기증운동 이렇게", "체계없어 「매매」 등 부작용 많아" 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 매매하는 등 그 운영에 부작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장기를 매매한 사실이 없고 그 운영에 어떠한 부작용도 없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1-1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이하 같다)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보로금」 가로챈 사실 없다.

중 제 목 :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 등 거액 사례금을 받은 사실없다.

장기기증본부, 수술 「순위(順位, 신청인이 한자표기를 구하나 판결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괄호안에 한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조작한 사실도 없다.

기증자에겐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를 비롯한 보로금을 지급하였음이 밝혀져

소 제 목 : "금품(金品) 수수 위법(違法)"이라는 복지부 발표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0일자 1면에서 "장기기증본부「보로금」가로챘다" 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장기이식 수술을 주선하면서 이식을 받는 사람들(수혜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또 장기기증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겠다며 수혜자로부터 받은「보로금」도 상당부분 전해주지 않고 중간에 가로챘음이 20일 본사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 지난 2월 장기본부를 통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박 씨(41 · 가명)는 장기본부측의 요구에 따라 수술비 외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93년 4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강 씨(37 · 여 · 가명)도 장기본부로부터「수술받는 대가」를 요구받고 8백만원을 냈다. 강(姜)씨는「장기본부를 통해 이식수술을 받는 상당수 수혜자가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본부는 이처럼 거액의 후원금을 거둬들이면서 수술대기자의 순위까지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기본부에 수술대기자 등록을 한 뒤 2년 6개월을 기다린 김

씨(43 · 가명)는 가족이 장기본부 관계자를 만난지 1주일만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金씨의 수술을 지켜본 병원관계자는「김씨가 장기본부에 최소 1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기본부는 또 수혜자로부터「기증자의 보약과 휴식기금으로 주겠다」며 받은 보로금 1백20만원도 상당수 기증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본사 취재진이 지금까지 장기본부에 신장을 기증한 70여 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보로금을 받지 못했으며 대신 장기본부에서 만들어준 감사패나 금10돈짜리 행운의 열쇠(50만원상당)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본부는 그러나 수혜자로부터 거둬들인 거액의 후원금과 가로챈 보로금의 규모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 煥) 의정국장은 20일「복지부 등록 재단법인인 장기본부가 수혜자로부터 기증자 수술비와 검사비용 외에 별도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운동본부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며「더욱이 기증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수혜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챘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제1면 왼쪽 상단에 적시된 후원금 · 보로금의 도표에 대한 설명에는 "본부측은 임의로 수혜자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고 기증자에게 전달하겠다며 받은 보로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본지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1)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가「보로금」을 가로채거나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 등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2) 또 장기기증본부가 수혜자들의 수술에 관한「순위(順位)」를 조작했다는 본 보도도

허위임이 밝혀졌다.

(3) 이와 관련하여 위 기사에서 언급된 박 씨(41 · 가명)의 경우 장기기증본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장이식수술을 주선해 준 장기기증본부의 호의에 감사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장기기증본부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4) 또한 강 씨(37 · 가명)도 장기기증본부로부터 「수술받는 대가」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신장을 기증받게 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원금을 낸 것이며 특히 강(姜)씨는 「장기본부를 통해 이식수술을 받는 상당수 수혜자가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 또 순위조작에 의해 1주일만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한 김 씨(43 · 가명) 경우도 김(金)씨가 장기기증본부에 등록한 지 10개월이 지나서 수혜자와 장기의 조직형이 잘 맞아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더욱이 김(金)씨는 수천만원이 아닌 2백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6)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수혜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보로금을 가로챈 사실이 없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명세는 이사회에 보고되어 처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를 통하여 감독을 받고 있어 돈과 관련한 의혹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7) 본지에서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수혜자가 있다는 보도도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1-2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장기(臟器)로 돈벌이 한 사실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수혜자에게 후원금 강요한 사실없다.
장기기증본부, 기증자에게 주는 보로금 가로챈 사실없다.
장기기증본부가 수혜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유명인사 기증 때도 「홍보」노려 「무료」로 시술해 준 사실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0일자 22면에서 "「사랑의 장기(臟器)」로 돈벌이" 라는

큰 제목하에 "보로금으로…"라는 중제목으로 "수혜자에 내부 규정 보이며 '내라' 요구" "기증자에게 거의 전달 안하고 가로채"라는 소제목으로 하고 또 "후원금으로… " 라는 제목으로 "정부(政府) 보조금 등 불구하고 수혜자에게도 받아", "유명 인사(人士) 기증 경우엔 「홍보」 노려 '무료' "라는 소제목을 달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기증자가 돈이나 기타 보상을 전혀 바라지 않는 「순수한 심성의 소유자들」 이라는 점과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 만나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을 교묘히 이용해 보로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왔다. 장기본부는 수혜자로부터 보로금 1백20만원(93년까지는 90만원)을 일률적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돈을 받아야 할 기증자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본부는 보로금으로 감사패와 금 10돈중짜리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기증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93년 1월 신장을 기증한 이

씨(40 · 가명)는 「수술 후 장기본부로부터 감사패만 하나 달랑 받았다」 며 「보로금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93년 2월 장기본부에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신장을 받아 딸의 이식 수술을 마친 김 씨

도 보로금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였다. 김(金)씨는 「딸이 신장을 이식받을 때 분명히 보로금을 냈으나 내가 신장 기증자가 되었을 때는 보로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고 감사패만 받았다」고 말했다. 92년 2월 신장을 기증한 김 씨(32 · 여 · 가명)는 수혜자의 직장동료들이 모은 성금 1백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로금을 받지 못했다. 장기본부는 김씨에게 「이미 기증자측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았으니 보로금을 줄 수 없다」 며 전해주지 않았다. 92년 10월 신장을 기증한 한 씨(45 · 여 · 가명)는 「보로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장기본부가 감사패 제작비를 내라고 권유해 10만원을 냈다」 고 말했다. 한씨도 「기증자들이 모두 그렇게 제작비를 내는 것으로 알았다」며 「보로금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장기본부는 그러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기증자나 뒤늦게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분개해 강력히 항의하는 기증자에게는 뒤늦게 보로금을 전달했다. 93년 신장을 기증한 황 씨(45 · 여 · 가명)는 수술 후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기본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끝에 결국 보로금을 받아냈다. 장기본부가 「달라고 조르는 이들에게만 주겠다」는 식으로 보로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각종 비리가 표면화됨에 따라 장기본부는 그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한 「선행」 에도 불구하고 기증자가 순수한 뜻으로 내놓는 장기로 돈벌이를 해 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장기본부는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반면 생사의 기로에 선 채 장기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가 많은 현실적인

상황을 이용, 대소 후원금을 받아온 것이다. 순수생명운동단체임을 표방하는 장기본부는 2천여 명의 일반후원자들이 매달 5천~1만원씩 내는 후원금을 받는 한편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보조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측은 수혜자들에게 「장기본부의 운영이 어렵다」며 사례금조로 별도의 후원금을 낼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본부는 조직검사 등을 통해 수혜자가 결정되면 자체적으로 책정한 기증자 검사비용(조직검사비 96만원, 건강관리기금 80만원, 보로금 1백20만원) 용지에 후원금 항목을 끼워 넣어 수혜자가 이 돈을 내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93년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8백만원의 후원금을 낸 강 씨(여)는 「기본적으로 장기본부에 내야하는 기증자검사비용 항목에 후원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수혜자들이 수술 전 이 돈을 내고 있다」 고 말했다. 강(姜)씨는 그해 11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연말정산을 위해 장기본부에 후원금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장기본부가 후원금을 정식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1천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박 씨는 「수술대기자 중 최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장기본부와 연락을 취한 김 씨도 단 1주일 만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주변에서는 「김(金)씨가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냈을 것」 이라는 말이 설득력있게 떠돌고 있다. 김(金)씨는 자신이 낸 후원금액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수술대기자 순위는 중요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언제나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들과는 달리 수혜를 위해 몇년째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長期)대기자들은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93년 5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최 씨(36 · 여 · 가명)는 남편이 막노동을 하는 등 생활이 어려웠지만 수술 전 후원금을 내기로 약속하고 그 해 10월 계를 탄 뒤 이 돈을 납부하기도 했다. 장기본부는 또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의 경우 병원까지 찾아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3년 8월과 94년 8월 각각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김 씨(27 · 가명)와 서 군(18 · 가명)은 병원에서 장기본부에 2백만원씩의 후원금을 냈다. 장기본부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 「홍보효과」를 노려 일절 금품을 받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수혜자로부터 받는 각종 비용은 물론 후원금에 대해 말도 꺼내지 않고 무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기택(李基澤) 민주당총재 부인 이 여사가 신장을 기증한 뒤 수혜자로 선정된 이(李)모 씨(48 · 여)는 장기본부측에 일체의 돈을 내지 않고도 이식수술을 마쳤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1)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보로금을 강제로 징수하거나 또 이를 중간에 가로챈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장기기증본부는 수혜자로부터 보로금을 받아 이를 기증자에게 전액 전달해 왔다. 보로금은 장기기증인이 수술 후 약 1달간 일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위로금이므로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가 전액 부담하여 왔다.

(2) 92년 10월 신장을 기증한 한 씨(45 · 여 · 가명)의 경우 장기기증본부로부터 보로금과 감사패 등을 모두 받았으며 93년 신장을 기증한 황 씨(45 · 여 · 가명)의 경우도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 보로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장기운동본부가 장기로 돈벌이를 해왔다는 보도는 허위다. 장기운동본부는 약 1,350여 명의 후원자로부터 매달 2천~1만원씩의 후원금을 받아 왔으며 정부로부터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운영비」가 아닌 골수기증운동 캠페인의 「홍보비」로 1994년 한 해에 한해 금 6천2백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4) 장기기증본부는 돈을 받고 수술대기자의 순위를 바꾼 사실이 없다. 순위조작에 의해 빨리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된 박 씨의 경우 정당한 순서에 따라 신장을 기증받았고 박(朴)씨가 낸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낸 것이다.

(5)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고 순위보다 빨리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된 김 씨의 경우 기증자와 신장의 조직형이 잘 맞아 수술을 받게 된 것이며 수술후 자발적으로 금 2백만원의 후원금을 장기기증본부에 보냈음이 밝혀졌다.

(6) 장기본부에 2백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보도된 김 씨(27 · 가명) 서 군(18 · 가명)은 허위의 가공인물임이 밝혀졌다.

(7) 장기본부는 유명인사가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장기수혜자로부터 장기기증자의 검사비용, 보로금 등을 받았으며 홍보효과를 노려 수혜자로부터 일절 금품을 받지 않은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이 여사의 신장을 기증받은 이(李)모 씨(48 · 여)는 장기본부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사비, 사후건강관리기금, 교통비, 보로금 등을 냈으며 다만 이 여사가 보로금의 수령을 사양하여 지급치 못한 것임이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2-1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자가 보로금 못 받았다." 는 보도는 사실무근

중 제 목 : 박 본부장 해명, 사실로 밝혀져

검찰 , 장기기증본부에 대한 내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드러나

복지부 특감에서도 장기기증본부의 비리없음이 밝혀져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1일자 국민일보 제1면 머릿기사로 「"보로금 못 받았다" 폭로 잇달아」라는 큰 제목 하에 "기증자들 「장기(臟器)본부」 비리(非理) 의혹 확산", 「"박(朴)본부장 해명은 거짓" 분노」라는 중제목 하에 "장기기증운동본부측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로금과 관련, 이를 받지 않았다는 새로운 기증자들의 폭로가 20, 21일 곳곳에서 잇달아 장기본부의 비리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94년 신장을 기증한 김(金)모 씨(40)는 「수술 뒤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 외엔 받은 것이 없다」고 박(朴)본부장의 발언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장기본부측에서 교통비라며 10여 만원을 줬으나 순수한 뜻으로 장기를 기증했기 때문에 이조차도 받지 않았다」면서 「장기기증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외에는 사인을 해 준 영수증 같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사 취재팀이 확인한 다른 4명의 기증자 및 관계자들도 모두 「보로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보로금이라는 것이 있는 지 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박 (47) 김 (22) 씨 모녀는 이날 밤 본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보로금은 받지 못했으며 감사패만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박(朴)씨는 딸 김(金)씨가 빨리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 93년 2월 장기본부를 통해 자신의 신장을 제3자에게 기증했고 딸은 장기본부를 통해 신장을 기증받았다. 박(朴)씨는 「딸의 수술비(8백만원) 외에 기증자에게 일어날지도 모를 후유증에 대비한다는 명목(보로금을 의미)으로 90만원과 후원금 50만원 등 모두 5백10만원 정도를 별도로 냈다」면서 「그러나 내가 신장을 기증한 뒤에는 감사패만 전달받았다」 고 밝혔다. 인천에서 기자와 만난 이 씨(48 · 여 · 93년 8월 수술) 는 「신장을 기증한 뒤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만 받았고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다만 나중에 장기본부에서 알아서 쓰라며 3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93년 1월 수술한 주 씨(41 · 여)도 「감사패, 행운의 열쇠만 받았고 기증자가 받을 수 있는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20일)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으며 한편 제1면 중간부분에서는 "검찰 내사(內査)착수" 라는 제목으로 "복지부 특감(特監) 유용 드러나면 고발(告發)"이라는 소제목 하에 "검찰은 21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

)가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보로금과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정밀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와 별도로 이 단체의 비리 여부에 대한 방증수집과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고 또 위 기사의 하단 부분에 '관련법 제정키로' 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는 20일 감사관실 직원 5명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지원하는 연간 6천2백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사결과 후원금이나 보로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이 법인체의 이사진도 개편키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기증자들이 장기기증본부로부터 소정의 보로금을 못받았다는 기사는 허위로 밝혀졌다.

(2) 94년 신장을 기증한 뒤 보로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김(金)모(40) 씨의 경우 장기기증본부에 신장을 기증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모녀의 경우 장기본부에 후원금으로 5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포함하여 사전검사비, 건강관리기금 등으로 510만원이 아닌 280만원을 냈고 장기본부로 부터 보로금의 일부인 감사패를 받았으나 나머지 현금 보로금은 사무착오에 의해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 또 보로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된 이 씨(48 · 여)도 수술직후 통장을 통해 보로금이 지급되었고 주 씨(41 · 여)도 보로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5) 장기기증본부에 대한 검찰의 내사와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에서도 장기기증본부나 박 본부장이 부당한 금품거래를 하였다거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비리가 없음이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2-2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를 이용해 돈벌이 한 사실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그동안 깨끗한 장기기증운동을 해 왔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1일자 제3면에서 "생명의「매매화(賣買化)」라니 … "라

는 제목 하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처럼 생명사랑의 숭고한 뜻이 담긴 장기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회봉사단체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기본부의 운영은 투명해야 한다. 한치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된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장기본부는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 당사자로부터 수술직전 후원금을 받았다. 1천만원을 낸 의사도 있고 8백만원을 낸 주부도 있다. 1천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수혜자도 상당수 있다고 들린다. 본인들은 드러내 놓고 말하길 꺼린다. 장기본부는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2천여 명의 일반 후원자들이 내는 후원금을 매달 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5천원을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2만원도 낸다. 교회나 기업들도 적지않은 특별후원금을 낸다. 자원봉사자도 있다. 무슨 보상을 바라서가 아닐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고 이 운동의 「순수성」을 믿기 때문이다. 장기본부와 같은 순수 사회봉사단체는 이런 깨끗한 돈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장기기증운동의 미래가 보장된다. 장기본부는 장기 수혜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장기기증운동은 이제 특정인이 주도하는 사회단체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나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가 장기를 이용해 돈벌이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 장기기증본부의 운영에 있어 어떠한 의혹도 없음이 밝혀졌다.

(2) 장기기증본부는 수혜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부로부터는 장기기증본부의 「운영비」가 아닌 골수기증운동 캠페인의 「홍보비」로 1994년 한 해에 한해 금6천2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장기기증본부에 대한 후원금은 약 1,350여 명의 후원인이 2천원에서 2만원까지 내고 있다.

(4) 장기기증본부는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그들의 형편에 따라 후원금을 받아왔으나 후원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

(5) 장기기증본부는 장기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그 동안 생명사랑의 숭고한 뜻으로 장기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장기기증운동을 펼쳐왔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3-1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박 본부장, 혈액 팔아 착복한 사실없다.

중 제 목 : 박(朴)본부장, 헌혈증서나 알선료 챙긴 사실없다.

박(朴)본부장, 「물의」빚자 도미(渡美)한 것이 아니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2일자 제3면에서 "「장기(臟器)기증」 본부장 박 누구인가" 라는 제목 하에 "70년대 혈액(血液) 팔아 「착복」 의혹" 이라는 대제목과 "당시 헌혈협 이사… 증서 · 알선료 챙겨", "「물의」 빚자 84년 도미(渡美) 뒤 90년에 귀국" 이라는 중제목으로, 게다가 「헌혈증서 착복의혹 체계도」 라는 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박 본부장의 진면목은 무엇일까. 박(朴)본부장이 70년대초 벌였던 민간헌혈운동과 관련된 의혹은 아직도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매혈이 성행하던 60년대말 그는 민간차원의 헌혈운동조직이었던 「피주는 운동」의 간사로 근무했다. 이어 69년에는 헌혈활동과 헌혈계몽운동을 주도한 사회단체인 한국 헌혈협회 이사직을 맡았다. 당시 그는 「헌혈운동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활동했던 헌혈협회 초대이사장 김 씨와 전(前) 혈액학회 회장 이 씨 등이 공동 집필한 「한국헌혈운동사」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단체의 재정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박(朴)본부장이 벌인 행적들이 오히려 우리 나라 헌혈운동에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朴)본부장이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 헌혈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헌혈자 수와 혈액원에 기록된 헌혈자 수가 달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가 혈액기증자들을 혈액원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알선료를 받거나 일부 헌혈자의 혈액을 팔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동안 움츠리고 있던 박(朴)본부장은 80년 7월 서울에 「헌혈의 집」을 마련, 다시 헌혈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헌혈자들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수혜자들로부터 장기이식수술을 받는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했으며 수혜자들로부터 장기수술치료비와 별도로 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로금을 받아 이를 중간에서 착복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일보 취재팀의 취재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고 마침내 보건복지부의 특감과 검찰의 내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63년부터 우석대학에서 원목(병원목사)을 맡았다고 약력에서 쓰고 있다. 신학대를 졸업하지 않은 그가 어떻게 목사안수를 받고 더욱이 대학병원에서 있었는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박(朴)본부장은 숙소도 두 군데에 마련했다. 장기본부가 공식으로 밝히는 그의 주소는 호. 그러나 확인 결과 그는 서울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남들에게는 오피스텔의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처럼 알리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기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또한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그렇다면 그의 약력은 홍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결국 하나로 집결되고 만다. 박 , 그는 진정 누구인가."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 박 본부장이 민간헌혈운동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2) 박(朴)본부장이 혈액기증자들을 혈액원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알선료를 받거나 일부 헌혈자의 혈액을 팔아 착복했다는 의혹은 허위로 드러났다.

(3) 혈액은 생명과 직결되고 헌혈시 반드시 각종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헌혈자 수와 혈액원에 기록된 헌혈자 수가 다를 수 없다.

(4) 또 박(朴)본부장이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헌혈증서를 모아 현금으로 바꿔 착복했다는 의혹도 허위로 밝혀졌다.

(5) 박(朴)본부장이 장기기증 수혜자로부터 보로금을 받아 착복한 사실이 없다.

(6) 박(朴)본부장이 장기기증받은 수혜자로부터 후원금을 직접 받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다.

(7) 박(朴)본부장이 63년부터 우석대학에서 원목활동을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박(朴)본부장의 숙소는 2곳이 아니라 1994년 10월전까지는 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3-2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운영 · 재정 위법사실 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매년 보건복지부 감사받아

장기기증본부, 이사회가 운영 주도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2일 제3면 하단에서 "「장기본부」 어떻게 운영되나" 라는 제목 하에 "정부(政府) 보조 · 후원금 사용내역 '베일' ", "朴씨 91년 설립 · 절대적 권한", "서울본부 · 8개 지부 등 규모 커져", "정관엔 이식관련 「금전거래」 금지" 라는 소제목 하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91년 1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장기기증운동

이 국민의 관심과 매스컴의 캠페인성 보도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운동본부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빠른 성장을 해 왔다. 80년대만 해도 국내에선 장기기증이 드물었으나 최근 수년 사이에 급증해 지난해 말 현재 장기본부에 등록된 수혜자와 기증자 수는 신장과 골수각막 사후 시신 기증을 포함, 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본부도 서울 이외에 8개지역본부를 둘 만큼 규모가 커졌으나 운영실태가 공개리에 제대로 밝혀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장기본부는 일반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회장과 이사 감사 이사회 등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인체로서의 형식적인 모양새를 갖춘 것일 뿐 실제로는 창립 때부터 박 본부장의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장기본부의 각종 업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장기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체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이 낸 후원금과 복지부로부터 매년 6천2백만원씩 받는 보조금이 쓰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의 운영상이나 재정상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장기기증본부는 매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기감사를 받아왔는 바, 지금까지 한 번도 특별히 위법사실을 지적받은 바 없다.

(3) 장기기증본부는 정관에 따라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되어 왔고 그 운영실태나 재정상황은 법인 내에서 완전 공개되어 왔다.

(4) 장기기증본부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승인하에 장기이식을 받은 수혜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왔다.

(5) 장기기증본부는 1994년 한 해에 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비가 아닌 골수기증운동의 캠페인 홍보비로 금6천2백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돈은 홍보비로 전액 집행되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4-1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수혜자에게 「뇌사자 장례비」 거둔 사실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수혜자에게 「뇌사자장례비」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 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4일자 제23면 첫머리에서 "수혜자에 「뇌사자 장례비」

도 거뒀다" 라는 대제목 하에, "장기(臟器)기증본부 병원비에 포함 불구 별도로 요구"라는 중제목으로, 「50대(代) 어머니 "딸의 신장수술 뒤 2백만원 줬다"」, 「병원측 "장기본부 뇌사자 소개뒤 돈 요구했다"」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

)가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에게서도 뇌사자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할 경우 병원측은 자체규정에 따라 수혜자 측으로부터 장례비 명목으로 1백만원 정도를 병원비에 포함시켜 이를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본부는 수혜자 측이 병원에 장례비용을 지불한 것과는 별도로 또다시 비용을 요구해 왔다. 94년 12월 서울강동성심병원에서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은 김 씨(44)는 수술비 3백80만원 외에 장기본부 직원 김모 씨의 요구에 따라 2백만원을 줬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 프로그램 담당자 이모 씨(35 · 여)는 「장기본부가 뇌사자를 병원에 소개시켜 준 뒤 항상 돈을 요구해 병원측과 자주 다퉜으며 91년 2월에는 병원측이 수혜자에게 장기본부에 돈을 내지 말라고 설득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본부가 장기수혜자에게 「뇌사자 장례비」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뇌사자장례비로 금2백만원을 주었다고 보도된 김 씨(44)의 경우 장기를 기증받은 후 한참 뒤에 「장례비」가 아닌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3) 최 씨(33)도 장례비로 금250만원을 낸 것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2백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4) 또 '장기본부가 뇌사자를 병원에 소개시켜 준 뒤 항상 돈을 요구해 병원측과 자주 다퉜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서울대병원의 이(李)모 씨(35 · 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4-2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후원금」 없다는 이유로 수술거부한 적 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후원금 강요한 적 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4일자 제22면에서 '어느 수혜자의 증언(證言)', 장기

본부 이렇게 했다' 라는 제하로 「"후원금 못낸다" 하자 "수술 못함" 통보」라는 대제목 하에 "나중 다시 불러 「이식」 후 '2백만원 내라' ", "뇌사자 가족에 전달않고 영수증 안 줘" 라는 소제목으로 "후원금과 보로금에 이어 뇌사자의 장례비용까지도 사랑의 장기기증본부"가 생체이식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수술 생명을 되살리는 숭고한 「작업」에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개입된 것이다. 94년 12월 22일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수술한 김 씨(44 · 대구) 영세민보호 1종으로 신장병을 앓아오던 김(金)씨가 도움을 받기 위해 장기본부의 문을 두드린 것은 94년 11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서울의 장기본부를 찾은 김씨는 장기본부가 제시한 검사비 80만원, 보로금 1백20만원 등 3백여 만원의 수술비 내역을 설명받았다. 장기본부관계자는 이어 「후원금으로 3백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김씨는 「후원금으로 낼 돈이 없다」고 말했다. 며칠 뒤 장기본부는 「신장기증을 하려했던 사람의 부인이 기증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술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12월 21일 갑자기 장기본부 이(李)모 간사로부터 서울에 와서 수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급히 상경한 김(金)씨는 다음날인 22일 누구인지도 모르는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병실에 누워 몸조리를 하는 김씨에게 장기본부 직원 김(金)모 씨가 찾아왔다. 기증한 뇌사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던 김(金)씨는 먼저 「뇌사자 장례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본부직원 김씨는 「우리가 다 해결했으니 장기본부에 2백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 보조금을 전달하는 조촐한 자리에 본부직원 김(金)씨도 나타났다. 그는 부친 김(金)씨를 바로 건물 화장실로 불러 2백만원을 받은 뒤 그 자리를 떴다. 부친 김(金)씨는 「장례비라면 뇌사자 가족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장기이식프로그램 관계자는 「94년 2월 장기본부를 통한 뇌사자 장기이식수술 뒤 장기본부직원 이 찾아와 조화비와 장례비 등 50여 만원이 들었다며 병원측에 2백여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는 수혜자에게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후원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2) 장기기증본부는 김 씨(44 · 대구)에게 수술하기 전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또 그가 후원금을 못낸다고 하여 수술 못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김(金)씨는 수술대기자 순서에 따라 대구 거주 정 씨의 신장을 기증받게 되어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수술을 할 예정이었으나 기증자인 정씨의 부인이 신장기증을 반대

하여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장기기증본부는 김(金)씨에게 뇌사자 장례비를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김(金)씨는 수술 후 한참 뒤에 성결교단으로부터 받은 성금 3백만원 중에서 후원금으로 2백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4) "장기본부직원이 병원 측에 장례비 등으로 금2백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라고 보도된 서울대병원 관계자의 말은 본지가 허위로 만들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정보도신청인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제 5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사업에 비리 없었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박(朴)본부장에 대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장기기증본부, 기증 · 수혜자 상대로 "회유공작"한 사실없다.

소 제 목 : 박본부장의 헌혈증서착복비리는 사실과 달라
장기기증본부, "본부에 유리한 증언(證言)"을 요구한 사실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5일자 23면 머릿기사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산하기구의 대표자인 '골수 銀行회장 옥 목사 본지 인터뷰' 기사를 「"장기기증 非理 진실 밝혀 「숭고한 사업」 활성화해야"」라는 제목으로

"93년 12월부터 골수은행회장을 맡고 있는 옥(玉)목사는 장기본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간 6천2백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것과 수혜자로부터 「보로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옥(玉)목사는 「이전에는 朴본부장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박본부장이 헌혈관계 일을 하면서 헌혈증서를 착복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에 대해 박본부장은 분명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玉)목사는 22일 보도된 박본부장의 개인 신상에 관한 기사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며 「사실이냐」고 되물으며 재차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옥(玉)목사는 「기자들이 근거없이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 「어차피 국민일보가 보도한 것인 만큼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고 또 같은 면에서 「기증 · 수혜자 상대 "회유 공작" 이라는 대제목 하에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에 유리한 증언(證言) 요구" 전화(電話) 공세」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

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지난 20일 본지에 비리관련기사가 게재된 이후 기증자와 수혜자들을 필사적으로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이후 본사에 전화를 하거나 기자와 직접 만난 기증자와 수혜자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됐다. 장기본부 박(朴)본부장 등 핵심 간부들은 보로금을 받지 못한 기증자들과 장기본부의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낸 수혜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장기본부에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기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감사가 시작된 뒤에도 이같은 회유 설득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장기본부가 의도적으로 비리를 감추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는 장기기증사업에 있어 비리가 없었고 또 장기기증본부 박 본부장의 비리의혹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 장기기증본부 산하 골수은행회장인 옥 목사가 '장기본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간 6천2백만원의 보로금을 받고 있다는 것과 수혜자로부터 「보로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았다.' 고 말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며 옥(玉)목사는 위 사실을 골수은행의 회의 때 수차 서면보고를 받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국민일보 기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장기기증본부는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기증자와 수혜자들을 회유하거나 본부에 유리한 증언을 요구하는 전화공세를 한 사실이 없음이 판명되었다.

(4) 장기기증본부는 그동안 비리를 감추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6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박 본부장, 장기수혜자에게 2천만원 선불(先拂) 강요한 사실 없다.

중 제 목 : 박(朴)본부장, 2천만원 미리 내면 「이식」 수술 바로 주선 말한 사실없다.

소 제 목 : 40대(代) 여인(女人), 장기기증본부에 후원금을 낸 사실도 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7일자 23면 첫머리에서 『돈 미리 내면 「이식」 바로 주선 2천만원 선불(先拂)강요』라는 대제목 하에 "박 씨, 수혜자에 직접 요구",

「"스스로 냈다" 주장 거짓 드러나」라는 중제목으로, 「40대(代) 여인(女人)폭로, "분노 느꼈으나 위독상황에 응대"」, "기증자 조직과 달라 포기… 끝내 동생 것 이식받아" 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일부 장기수혜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선불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93년 초 장기본부에 수혜자등록을 한 김 씨(45 · 여 · 가명)는 26일 국민일보기자와 만나 「장기본부에 등록하자마자 박 본부장이 2천만원의 후원금을 선불로 내면 신장을 곧바로 이식받게 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고 폭로했다. 김(金)씨는 「장기본부의 비도덕적인 처사에 분노를 느꼈으나 당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 박(朴)본부장의 제의에 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후원금을 1천만원씩 두 차례 내기로 하고 한달 뒤 한양대병원에서 수술하려 했으나 「장기본부에서 연결해 준 기증자와의 조직이 너무 달라 수술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 는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수술을 포기했다." 라고 보도하였고 같은 면 중간 윗부분에서 「어느 40대(代) 여인(女人)이 고발하는 '장기비리(非理)' 라면서 "돈만 내면 조직 안 맞아도 주선" 이라는 제목 하에 "장기기증운동본부의 후원금 강요를 폭로한 김 씨는 「생명을 담보로 돈을 챙기려는 박 본부장의 비도덕적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고 말했다. 김(金)씨는 93년 3월 중순 친정부모와 함께 이식수술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공덕동 풍림오피스텔 내 장기본부 사무실로 찾아갔다. 박(朴)본부장은 김(金)씨의 친정아버지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2천만원을 내면 기증자를 물색해 빨리 수술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김(金)씨 가족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우선 1천만원을 내고 기증자가 정해지면 나머지 1천만원을 내겠다고 결정한 뒤 이를 장기본부측에 알렸다. 얼마되지 않아 장기본부는 김(金)씨에게 「조직이 잘 맞는 기증자가 있다」는 연락을 해왔다. 이어 김(金)씨는 장기본부의 소개에 따라 한양대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김(金)씨는 담당의사로부터 어이없는 반응을 들었다. 담당의사는 김(金)씨의 조직검사내용을 검토한 뒤 「기증자와 조직이 잘 맞지 않아 수술성공률이 높지 않다」면서 그 자리에서 박(朴)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조직이 맞지 않는 사람을 보내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김(金)씨는 장기본부를 통한 이식수술을 포기하고 94년 8월 동생의 신장을 이식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임이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가 일부 장기 수혜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선불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는 기사는 허위임이 밝혀졌다.

(2) 박 본부장으로부터 2천만원의 후원금을 선불로 내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보

도된 김 씨(45 · 여 · 가명)의 경우 그녀가 다니던 구리시 아천동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 朴본부장에게 장기이식을 요청하였으나 박(朴)본부장은 이 요청에 대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을 뿐, 후원금에 관하여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3) 또 장기기증본부는 김(金)씨에게 한양대학병원을 소개해 준 사실이 없으며 김(金)씨가 장기기증본부에 후원금을 낸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7-1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비리없어 수사받은 사실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장기기증운동과 관련 의혹 없다.

장기기증본부, 장기기증운동과 관련 규정 외 금품수수한 적 없다.

소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장기를 매매한 사실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8일자 21면 첫머리에서 "검찰 「장기(臟器)비리」 수사 나서라"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와 관련된 비리의혹이 사직당국에 의해 규명되고 장기기증운동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장기본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충격을 표시했다. 장기기증과 관련된 비리의혹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인 목사(50 · 갈릴리교회)는 「신체일부를 주고받는 장기기증은 그 자체가 성스러운 사랑의 실천이니 만큼 금전적인 면에서 단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면서 「엄정한 수사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막 싹튼 장기기증운동의 취지를 살리는 길」 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한이식인연합회장(82년 신장이식)도 「장기본부 비리의혹은 기증자나 수혜자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겨줬다. 장기본부는 이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임이 밝혀졌다.

(1)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와 관련된 비리의혹은 사실무근 임이 밝혀졌다.

(2) 장기기증본부의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로 신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이

제 막 싹튼 장기기증운동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인 목사(50 · 갈릴리교회)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알려졌다.

(3) 또 장기본부 비리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권 대한이식인연합회장(82년 신장이식)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장기기증본부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5) 장기기증본부는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하여 규정 외 금품을 수수하거나 또 장기를 매매하거나 그 외 어떠한 위법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7-2 정정보도문

제 목 : 본지에 알려온 장기기증본부에 대한 비리제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8일 22면에서 현장기자의 "용기 있는 제보"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박 본부장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일보에는 제보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문보도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수혜자들은 「거액 · 선불 · 순위조작」 등 순수생명운동단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실들이 장기본부에 현존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후원금이나 그에 따른 순위조작이 사라지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본부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조건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선불」로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김 씨(45 · 여 · 가명 · 본보 27일자 보도)는 27일 밤 본사에 전화를 걸어 「박 본부장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국민일보 기자를 정말 만났느냐' 고 묻는 전화가 왔다」 고 말했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임이 밝혀졌다.

(1)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박 본부장의 비리의혹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며 또 이들에 대한 비리제보전화의 내용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2) 장기기증을 받은 수혜자들이 「거액 · 선불 순위조작」 등 사실들이 장기본부에 현존하고 있다는 고백은 사실과 다르며 장기기증본부에는 이러한 비리가 있지 아니함이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진 탁

제 8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장기를 매매하거나 수술순위를 조작한 사실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장기이식과 관련, 불법사실 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30일자 제 1면에서 "「장기(臟器)나눔기구」 연내 발족"이라는 대제목 하에 "민간(民間)주도 부작용 방지책 기증 - 수혜자 연결 전산망(電算網)" 설치라는 중제목으로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매매나 순위 조작 등의 부작용을 막고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장기공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장기공여관리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 단체에는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임이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는 장기기증운동을 전개하면서 장기를 매매하거나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사람들의 수술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그동안 장기기증본부의 활동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판명됐다.

(3) 장기기증본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4) 보건복지부는 1995년 3월 30일 현재 정부가 장기공여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장기공여관리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거나 설치키로 했다고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9 정정보도문

제 목 : 「장기(臟器)비리」 의혹 혐의 없음이 밝혀져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31일자 3면 사설란에서 "「장기(臟器)비리」 검찰이 나서

라" 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금전이 게재되어 상거래의 형식까지 취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체를 상품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사랑의 실천」이란 미명 아래 특정인의 사욕을 채우는 일은 기만행위에 속한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이같이 우려할 만한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본지가 최근 중점 보도한 「사랑의 장기기증본부」의 비리는 장기기증이란 「사랑의 실천 운동」이 영리적 차원에서 운영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비리의 내막은 수혜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초점이다. 장기본부측은 후원금을 강요한 바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제보는 속속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선불을 강요한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비리의 의혹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어찌된 까닭인지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생명을 담보로 사회사업을 위장한 기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사정당국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 투명하게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검찰이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임이 밝혀졌다.

(1) 장기본부나 박 본부장이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하여 장기를 매매하거나 또는 생명체를 상품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장기기증본부는 1991년 설립이후 국민 서로간의 새생명 나눔의 사랑, 실천운동을 통하여 국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며 본지가 보도한 사랑의 실천이란 미명 아래 사욕을 채우는 일은 일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사랑의 장기운동본부」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영리활동을 해오거나 장기수혜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거나 선불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다.

(4) 장기기증본부에 대한 비리의혹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10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장기를 매매한 사실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의 활동에 있어 장기매매나 순위조작 등 부작용 없음이 밝혀져

본　문 : 본지는 1995년 4월 1일자 22면에서 "장기기증운동 이렇게", "체계없어 「매매」 등 부작용 많아"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장기공여 및 이식이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일부병원에서 체계없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장기이식을 기대할 수 없고 장기매매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임이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가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하여 장기를 매매하거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의 수술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다.

(2) 「사랑의 장기기증본부」는 1991년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설립목적인 살아서 신장을 기증토록 하거나 각막기증에 대한 제도 등 사업을 충실히 하여 왔으며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비리나 부작용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별지〉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1.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1면 우측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1-1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대제목 부분 바로 좌측 부분에 별지 제1 사진목록을, 사진부분은 가로 5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의 크기로, 본문 부분은 위 사진의 바로 밑 부분에 20급 명조체활자로 각 게재하여야 하고,

나. 같은 날 제22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1-2 정정보도문을, 제목「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가. 피신청인은 제1항 이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2-1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고,

나. 같은 날 제3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2-2 정정보도문을, 제목「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8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각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3. 가. 피신청인은 제2항 이행후 최초로 발행하는「국민일보」제3면 우측 최상단부분에 별지 제3-1 정정보도문을, 제목「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호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대제목 부분의 바로 좌측 부분에 별지 제2사진목록을, 사진부분은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의 크기로, 본문부분은 위 사진의 바로 밑 부분에 20급 명조체활자로 각 게재하여야 하고,

나. 같은 면 우측 제 7, 8, 9단 부분에 별지 제3-2 정정보도문을, 제목「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로 10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7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4. 가. 피신청인은 제3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국민일보」제23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 4-1 정정보도문을, 제목「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8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고,

나. 같은날 제22면 좌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4-2 정정보도문을, 제목「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10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7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은 제4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국민일보」제23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5 정정보도문을, 제목「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각 5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

체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은 제5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23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6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0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70급 명조체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7. 가. 피신청인은 제6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21면 좌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7-1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게재하여야 하고,

나. 같은 날 제22면 가운데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7-2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00급 고딕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8. 피신청인은 제7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8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8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9. 피신청인은 제8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3면 좌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9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제목 부분은 100급 고딕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10. 피신청인은 제9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22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10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0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70급 명조체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사진목록

사진

본문 :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朴　　장기기증본부장은 보로금을 가로채거나 장기수혜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별지〉 제2사진목록

사진

본문 :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朴　　장기기증본부장은 보로금을 가로채거나 장기수혜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609 강제집행정지

신 청 인 :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대표이사 차일석
위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피신청인 : 박
서울

주　　문 :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95카합1256 정정보도게재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이 법원에 담보로 금 10,000,000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위 판결 중 별지 반론문 목록 제1의 1, 제2의 2, 제6

및 제8 반론문 부분에 한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본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주문에서 인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음으로 인함.

1995. 8. 1.

재판장 판사 정 은 환

판사 김 대 응

판사 고 재 민

決定文

사 건 : 95타기2543 간접강제

신 청 인 : 박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민일보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대표이사 차일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주 문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에 별지 제1 반론문게재방법표 기재 제4항 방법에 따라 별지 제1반론문목록 기재 제1내지 제8반론문을 같은 제1반론문게재방법표 제2항 기재 위치에 같은 표 제3항 기재 크기로 게재하되, 반론문이라는 제목은 가로로 50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제목 아래쪽에 같은 제1 반론문목록 기재 제1 내지 제 8 반론문의 각 소제목을 가로로 38급 명조체 활자로 각 게재하며, 같은 제1반론문목록 기재 제1내지 제8반론문 본문 및 반론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위 소제목의 아래부분에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각 기간 내에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같은 제1반론문목록 기재 제1 내지 제8반론문을 게재하여야 할 기간 만료의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시까지 같은 제1반론문

목록 기재 제1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금 8,000,000원, 제2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금 12,000,000원, 제3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금 5,000,000원, 제4의 1 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6,000,000원, 제4의 2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6,500,000원, 제5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금 4,000,000원, 제6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2,000,000원, 제7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4,500,000원, 제8반론문 대하여는 매일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주문 제1항과 같은 결정 및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에 별지 제2반론문게재방법표 제4항 기재 방법에 따라 별지 제2반론문목록 기재 제1 내지 제4 반론문을 같은 제2반론문게재방법표 제2항의 위치에 같은 표 제3항 기재의 크기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50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제목 아래에 같은 제2반론문목록 기재 제1 내지 제4반론문의 소제목을 가로로 38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며, 같은 제2반론문목록 기재 제1 내지 제4반론문 본문 및 반론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위 소제목의 아래쪽에 가로로 게재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위 이행기간 경과일로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각 1일 금 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95카합1256 정정보도게재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93조, 제694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원 제1민사부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음)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4. □

재판장 판사 손 용 근

판사 박 익 수

판사 윤 현 주

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함께 사과문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나, 정간물법 소정의 반론보도청구에 사과문의 게재를 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5. 8. 16.자 판결 (95카기74)

事實槪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1995년 8월 16일 (주)예술인주택(대표이사: 이　　)이 (주)한서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게재 소송에서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쌍방합의에 의해 위 분할 토지의 문제를 종료하였고, 위 토지분할 경위와 관련 안산시 지적계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 사항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당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부지가 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이 증가되고, 그 증가된 부분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분양될 수 없어 이를 적법하게 분양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이를 분할하였음에도 마치 신청인이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토지를 관계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위법하게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 양 오해하게끔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이 요구한 사과문 게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된 내용에 대해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어서 그 내용에 그 보도 담당자의 사과문의 게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면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예술인주택은 한서일보 1995. 1. 12.자 11면 『(주)예술인주택 아파트 설계도면 이중작성, 시가 1백30억 不動産 도둑질』 제하의 기사에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아파트단지 내 공용대지가 특정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 · 분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시에 접수된 설계도면이 서로 상이한 두 개의 도면으로 작성되어 있어 도면변조 및 단지 내 필지 분

양을 둘러싸고 당시 공무원들의 개입의혹이 짙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했다(95경기중재3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 일부에 대해서는 수긍하나 앞으로 있을 입주민 대표와 회사측의 공청회를 지켜본 후에나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요구를 거부, 중재불성립 되자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5카기74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주식회사 예술인주택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1의 3(한일은행3층)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서일보사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59의 6 터미날 빌딩 5, 6층
대표이사 김학인

변론종결 : 1995. 5. 26.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일자 전체의 한서일보 제11면의 기사난 중 우측 상단부분에 가로 4cm, 세로 7단의 크기로, 1단 중앙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40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밖의 여백에는 별지 기재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 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문 제1항 및 피신청인의 발행인 및 담당기자는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소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한서일보의 1995. 1. 12. 제857호 11면 우측 상단 부분에 『시가 1백30억 부동산 도둑질』이라는 큰 제목을 붙이고 그 위에 『(주) 예술인주택, 아파트 설계도면 이중 작성』이라는 큰 제목을, 기사 우측에 『주차장 등 공용부지 흙으로 덮어 위장』, 『시에 필지분할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주민 공무원 관련 여부 조사 촉구』라는 작은 제목을 각 붙이고 「토지분할이 불가한 아파트단지 내 공용대지가 특정회사로 소유권 이전 분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매매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시가 이를 불법적으로 매매 승인해… 시로 접

수된 설계도면이 서로 상이한 두 개의 도면으로 작성돼 있어 도면 변조 및 단지 내 필지분할을 둘러싸고 당시 공무원들의 개입 의혹이 짙게 대두…」, 「준공 당시 설계도면상에 있던 단지 내 테니스장 2천2백 77m 와 스타프라자 상가 옆 진입로 일대(주차장 부지 등) 2천여㎡가 흙으로 교묘히 매립, 잔디로 씌워진 채 당시 개발주체인 (주)예술인주택으로 불법분할, 소유권 이전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갑제1호증, 소갑제2호증, 소갑제6호증, 소갑제7호증, 소갑제8호증, 소갑제9호증, 소갑제10호증, 소갑제11호증의 4내지 20, 24, 2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3. 12. 28.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반월 신도시 191가구(아파트 용지)67,500㎡를 대금 3,792,015,000원에 대수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1984. 9. 3. 위와 같은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청인은 1984. 7. 11. 위 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예술인 회원에게는 1984. 6.부터, 일반인에게는 1985. 4. 16. 주택공급공고를 하여 입주자 모집을 마치고 위 사업을 시행하여 1985. 12. 경에는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부분에 관하여는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 그런데 건설부 장관이 1985. 11. 9. 위 사업부지 인근 도로 폭을 70미터에서 50미터로 축소하는 도시계획변경을 함에 따라 위 반월 신도시 91가구의 확정면적이 71,852㎡로 당초 신청인이 매수한 면적보다 4,352.5㎡ 가 늘어나게 되자 위 산업기지개발공사가 1986. 1. 23. 위 추가부지 4,352.5㎡를 신청인에게 추가분양하니 그 추가대금 244,514,745원을 정산할 것을 통보한 사실, 이에 신청인이 이미 아파트에 입주한 분양자들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계약상 「가감증산」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이와 같은 추가대금 부담은 부당하다는 거부회신을 받고 부득이 신청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분양받게 되었고 따라서 신청인은 당초 분양면적인 500㎡만을 위 아파트 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되므로 이를 위하여 1986. 4. 21. 분양받은 총 면적 71,582.㎡에 관하여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24. 당시 지적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지적사무처리지침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중 4,352.5㎡를 분할신청하였고, 주거지역 내에서의 토지분할은 분할 당시 건축법 제39조의 2규정(대지의 초소한도, 대지와 도로와 관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에 적법하여 분할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관할 안산시청 주택과로부터 적법 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분할처리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주택사업의 설계도면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준공 당시의 도면이 최후 확정 도면이어서 도면이 변조되지도 아니한 사실, 게다가 주민들이 위 토지분할을 문제삼기 때문에 안산시청에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이 1990. 12. 28. 위 분할토지의 소유권은 신청인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고 인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10개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 분할토지의 문제를 사용승인결의를 하였고 신청인이 1991. 2. 이를 받아들여 쌍방합의 하에 위 분할토지의 문제를 종료하였고 또한 안산시 지적계장 및 지적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위 토지분할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감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위법사항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한편 연성신문 등 일부 언론이 1994.경 피신청인이 게재한 기사와 유사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었으나 모두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정정보도한 바도 있는 사실, 또한 테니스장 및 주차장 부지 등을 흙으로 덮어 위장하였다는 것은 공연장(잔디광장)을 만들면서 대지정리작업으로 인하여 부토된 것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아파트 부지의 분할 경위에 관한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당초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부지가 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이 증가되고 그 증가된 부분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분양될 수 없어 이를 적법하게 분양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이를 분할하였음에도 마치 신청인이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토지를 관계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위법하게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 양 오해하게끔 만들었다 할 것이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한서일보에 공표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명예와 신용 등의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지의 분할이 불법이고 그 분할과정에 관련 공무원과의 결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서일보에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함께 피신청인 발행인 및 담당기자의 사과문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됨)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어서 그 내용에 그 보도 담당자의 사과문의 게재를 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달리 신청인이 이를 구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16.

재판장 판사 최 세 모
판사 노 소 라
판사 최 영 헌

〈별지〉 정정보도문

한서일보 1995. 1. 12.자 11면 『시가 1백30억 부동산 도둑질 (주)예술인주택 아파트 설계도면 이중작성』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기사내용 중,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아파트단지 내 공용대지가 특정회사로 소유권이 이전 분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로 보도된 내용은 본 건 토지의 분할은 분할당시 지적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지적사무처리지침 제33조 및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본 건 토지에 관하여 1986. 4. 25. 소유권 이전등기한 (주)예술인주택이 토지분할을 신청하여 안산시청에서 분할에 관한 적법 여부를 관계과(주택과)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분할처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며, 「매매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수자원개발공사와 시가 이를 불법적으로 매매승인해 주었다」는 내용은,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부지 4,352.5㎡의 소유자인 수자원 개발공사가 (주)예술인주택에 정산 및 소유권 이전할 것을 통고하여 이에 의해 정산 추가분양한 것이므로 잘못 보도된 것이며, 「안산시에 접수된 설계도면이 서로 상이한 두 개의 도면으로 작성되어 있어 도면 변조 및 단지 내 필지분할을 둘러싸고 당시 공무원들의 개입 의혹이 짙게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도 설계도면을 적법한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준공 당시 도면이 최종 확정도면이므로 사실과 다르다.

또한 「준공 당시 설계도면에 테니스장과 상가 옆 진입로 일대(주차장 부지)를 흙으로 교묘히 매립, (주)예술인주택이 불법분할 소유권 이전, 반환요구」 내용은 늘어난 면적 1천3백여평이 주민이 땅값을 부담하여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수개공과 대지 정산 과정에서 증가된 면적으로서 (주)예술인주택에서 매입한 추가면적이며, 사업 승인시 사업 부지면적 67,500㎡를 지적분할하였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가 아니라 (주)예술인주택의 재산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며, 진입로 일대를 교묘히 흙으로 매립했다는 내용도 대지정리작업으로 인하여 부토된 것이므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한국통신 勞組의 성당, 사찰 농성이 北의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30.자 결정 (95카기3524)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5년 9월 30일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과 조합원 도　　씨 등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측에게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은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할 권리가 있다」며 정정보도게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신청인들은 중앙일보가 1995년 6월 15일자 『「노조원들의 성당 – 사찰 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 박　총장』제하의 기사에서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는 서강대 박　총장의 발언을 인용보도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문을 1면에 게재해줄 것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재 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수용할 수는 있으나 1면에 게재할 수는 없다하여 불성립되자 (95서울중재169) 신청인들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3524 정정보도

신 청 인 : 1.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서울 종로구
대표자 조합장 유
2. 도
안양시
3. 이
서울 동대문구
4. 박
경기 화성군
5. 박
군포시
6. 정
서울 노원구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안상운, 이상경, 김기중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석 현
대리인 변호사 이 경 훈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의 제1면 제3, 4, 5단의 중앙좌측부분에 세로 3단 가로 5cm의 크기로, 그 우측에는 세로로 『「北韓의 조종에 따라 勞組員들 농성」 기사에 대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활자로 2줄에 걸쳐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목록 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청구인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 기간만료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금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같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에 별지목록 제2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제1항의 이행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1995. 6. 15.자 제1면 제3 내지 7단의 중앙좌측부분에 『「노조원들의 성당 - 사찰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 박 총장』이라는 제목으로, 「서강대 박 총장은 '이번에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총장은 14일 한림대 수요세미나에 참석해 〈세계화 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란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총장은 또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후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27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6월27일 전에 남한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총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며 '대학내 주사파들이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 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 대학 학생회장의 90%가 주사파'라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이하 신청인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2. 1. 6.설립되어 위 공사 소속 근로자 약 62,000여명 중 신청인 도 , 이 , 박 , 박 , 정 (이하 「위 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약 52,000여명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사실, 신청인 도 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육홍보국장, 신청인 이 은 여성국장, 신청인 박 는 교섭국장, 신청인 박 은 임금국장, 신청인 정 은 서울지방본부 사무국장으로서 「위 신청인들」은 모두 신청인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인 사실, 신청인 노동조합은 정부의 통신정책에 반대하고 정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일련의 행위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응하여 투쟁하던 중, 조합장인 유 과 「위 신청인들」 및 다수 조합원들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곤란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일부 조합원들을 보내 그곳에서 농성

을 전개하며 투쟁하기로 결정한 후 「위 신청인들」과 신청인 노동조합의 간부 등 총 13명이 1995. 5. 22.부터 1995. 6. 6.까지 명동 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신청인들은 위 성당, 사찰에서의 농성은 북한의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위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은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정정보도의 내용으로서는 위 기사 중 신청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별지 목록 제1 기재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게재를 구하는 별지 목록 제3 기재의 정정보도문 중 위 인정한 반론문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신청인들의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 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30.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목록 제1〉「北韓의 조종에 따라 勞組員들 농성」 기사에 대한 반론문

지난 1995. 6. 15.자 중앙일보 제1면 제3단 중간부분에 『「노조원들의 성당 - 사찰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 박 총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성당과 사찰에서 농성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 조합간부들을 구속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노사간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한

것일 뿐 북한의 조종을 받아 한 것이 아니다.

정정보도청구인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도 , 이 , 박 , 박 , 정

〈별지목록 제2〉 신청인들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중앙일보」 제1면 중간 부분에 별지 목록 제3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 활자로, 제목 부분은 80급 명조체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3〉 신청인들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제 목 : 한국통신노동조합, 북한과 무관함 밝혀져

소 제 목 : 한국통신 조합원, 북한으로부터 조종받은 사실 없다.

본지 6월 15일자 1면에 실린 『노조원들의 성당 – 사찰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한국통신의 노사협상 과정에서 한국통신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출입한 것이 북한의 사전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박 서강대 총장의 최근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임이 밝혀졌다.

한국통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출입을 한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쟁의 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조합간부들을 대량 구속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노사간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된 것이며, 조합원들이 북한의 조종을 받아 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은 그동안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민주적인 조합운영과 자주적인 조합활동을 하여 왔으며 조합의 운영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북한이나 그 외 어떤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조종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본지의 미확인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한국통신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함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

정정보도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도 , 이 , 박 , 박 , 정 □

국가전복의 底意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의견에 불과하고, 노조 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는 이유없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30.자 결정 (95카기3525)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5년 9월 30일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이 경향신문사 등 7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경향신문사 등 6개 언론사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신청인은 경향신문이 1995년 6월 15일자 11면 『한통 분규 안보차원 엄단』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국제언론인협회 한국위원장 등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밝힌 내용 중 「한국통신노조가 불법적인 노조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의지가 있다」고 인용보도하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왔고 국가전복의 저의를 갖거나 국가 안정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1995년 6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문제의 보도는 대통령의 담화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고, 발언내용 또한 대통령 통치행위로 생각되어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가 불성립되자(95서울중재155~162)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은 "김 대통령은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반대 주장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 "이라는 부분과, 경향신문의 '홍부총리는… 일부 불순 노조원을 중심으로… 한국통신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라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노조간부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 」고 밝히고 「나머지 보도내용은 대통령의 의견이나 논평 내지 비평에 관한 기사일 뿐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다」며 위와 같이 결정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3525 정정보도

신 청 인 :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서울 종로구
대표자 조합장 유
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안상운, 이상경, 김기중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최 종 률, 안 신 배
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서정우, 백윤재, 김 철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권 오 기
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복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3.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종로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손 주 환
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복대리인 변호사 김 시 현
4.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의 1
대표이사 황 환 채

5.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우 영, 방 상 훈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 광 률, 장 원 찬, 최 승 인
6.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석 현
대리인 변호사 이 경 훈
7.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근, 장 재 국
대리인 변호사 이 인 철

주 문 : 1.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신청인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경향신문에 별지 목록 제1-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 1-2 기재 정정보도문을,
나.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동아일보에 별지목록 제2-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2-2 기재 정정보도문을,
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서울신문에 별지 목록 제3-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3-2 기재 정정보도문을,
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세계일보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세계일보에 별지 목록 제4-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4-2 기재 정정보도문을,

마.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조선일보에 별지 목록 제5-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5-2 기재 정정보도문을,

바,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에 별지 목록 제6-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6-2 기재 정정보도문을,

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한국일보에 별지 목록 제7-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7-2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이행기간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각 매일 금 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제1 내지7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신청인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위 공사라고만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2. 1. 6. 설립된 노동조합인데, 위 공사 소속 근로자 약 62,000여명 중 약 52,000여명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2) 피신청인들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일간 「경향신문」을,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일간 「동아일보」를,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일간 「서울신문」을, 주식회사 세계일보는 일간 「세계일보」를,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일간 「조선일보」를,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일간 「중앙일보」를,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일간 「한국일보」를 각 발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들의 각 보도내용

(1)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경향신문」 1995.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 분규 안보차원 엄단』이라는 대제목하에, 『김 대통령 「통신망 파업은 국가전복 저의」』라는 중제목으로, 『불법분규엔 즉각 공권력 3부 장관 회견』이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1-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동아일보」 1995.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 파업 위협 국가전복 저의』라는 대제목하에, 『「분규 차원」넘어…단호 대처』라는 중제목으

로 별지 목록 제2-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서울신문」 1995.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 파업 위협 국가전복 저의』라는 대제목 하에, 『김대통령 노사분규 차원 이탈… 엄중 대처』라는 중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3-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세계일보는 「세계일보」 1995.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 분규 국가전복 저의』라는 대제목하에, 『김대통령 파업강행 땐 안보차원 조치』라는 중제목으로, 『군 통신요원 2천명 대기』, 『정부 통신망 장애발생하면 즉각 투입』이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4-4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 1995. 5. 20.자 1면 왼쪽 상단부분에 『한통 파업 땐 국가위협 간주』라는 대제목 하에, 『김대통령 불법분규 엄벌 경고』라는 중제목으로, 『통신비상대책 마련 홍부총리』, 『3자 개입 단호대처 박통상』이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5-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6)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중앙일보」 1995.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 사태」안보차원 대처』라는 대제목 하에, 『김대통령 「통신방해는 국가안전 위협」』이라는 중제목으로, 『국민생활 등 혼란 엄중 처리』, 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6-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7)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한국일보」 1995.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 사태 국가안전 위협』이라는 대제목 하에, 『김대통령 파업강행 땐 법따라 엄단』이라는 중제목으로, 『향후 불법분규도 강력대처』, 『통신마비 없게 군요원 투입』이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7-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별지 목록 제5-2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바, 우선 직권으로 이 부분 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8조 제4항, 제5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을마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제2회 중재기일(1995. 7. 3. 09 : 30)에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 중재신청은 철회한 것

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신청인이 위와 같은 보도내용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심판의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위 피신청인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 3, 4, 6, 7의 각 2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인정될 뿐 그 기사의 내용이 가치판단 내지는 의견이나, 비평, 평가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위 피신청인들의 위 보도내용 중 신청인에 관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위 피신청인들이 공통적으로 보도한 「김대통령은 '한국통신노조가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부분과 피신청인 경향신문사의 보도내용 중 「홍부총리는… 일부 불순 노조원을 중심으로…한국통신공사에서 불법 · 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이라는 부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내용 부분은 김대통령이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임원들과의 오찬에서 당시 전개된 한국통신공사의 일련의 사태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 즉 국가의 통신망을 관장하는 위 공사가 파업을 하게 되면 국가의 통신망 마비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줌은 물론 입법, 행정,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가 마비되고 그에 따라 일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현재 전개되는 위 공사의 일련의 행위들에 비추어 위 공사가 파업할 경우 이는 국가전복의 저의를 의심케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음을 피력하면서 정부는 위 공사의 향후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김대통령의 발언내용을 보도한 기사인 바,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김대통령의 위 공사의 현 사태 및 향후 파업을 할 경우에 대한 의견이나 논평 내지는 비평에 관한 기사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은 국가의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신청인들은 위 보도내용은 김대통령과 홍부총리의 발언내용 내지는 브리핑 자료를 보고 이를 그대로 인용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피신청인들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신청인이 게재를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피신청인들이 타인의 발언 내용이나 정부의 브리핑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라면 위 피신청인들 발행의 각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위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고, 한편 소갑제9호증의 1, 2, 소을가제1호증, 소을바제1, 2호증, 소을사제2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조합의 노조위원장 유 외 노조간부 34명과 지방대의원, 지방간부 등 500여명은 1994. 7. 26. 대전 소재 위 공사 중앙연수원에 모여 정부의 통신구조개편사업에 반대하기 위하여 본사 및 정보통신부에서 집단농성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다음, 위 유 , 노조지도위원 양 , 노조조직처장 유 등을 포함한 노조 간부 및 일부 노조원들은 1994. 7.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공사 본사 1층 현관 통로와 승강기 입구 등을 점거하고,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등의 구호와 노동가를 부르며 북, 꽹과리 등을 시끄럽게 두들기면서 정보통신부 및 위 공사 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며, 위 공사 본사 12층 내지 14층의 정보통신부 사무실 복도를 점거하여 농성을 하였고, 1994. 12. 19. 위 공사 본사 11층 회의실에서 한국이동통신 주식매각 특별이익금 처리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한 위 공사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회의실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위 공사 이사등의 출입을 막고, 위 공사 본사 9층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는 이사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으며, 성명불상 대의원 1명이 출입문이 아닌 옆방 천장 환기통을 통하여 이사회장에 들어가 잠긴 출입문을 열어주어 노조원들이 침입, 이사들을 둘러싸고 고함을 지르며 이사회의 개최를 위력으로 방해하였으며, 1994. 12.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이사회에서 노조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원 200여명을 동원하여 위 공사 본사 사장실 앞 복도를 완전 점거한 다음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1994. 12. 21. 정보통신부 소속 직원인 천 이 장관 퇴진과 관련된 불법부착물을 철거하자 노조간부들이 위 천 의 팔을 꺾고 욕설을 퍼부으며 현관바닥에 넘어뜨려 동인에게 흉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1995. 4. 13. 노조에서 위 공사 본사 외벽에 부착한 현수막이 철거되자 노조 간부들이 정보통신부 장관실

부속실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위 공사측은 1995. 4. 25. 위와 같은 여러 사유들을 들어 노조 간부 6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 고발을 하여 그 중 위 양 등 일부노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과 그 조합원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정부의 통신정책에 반대하고 그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내지는 불법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30.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 목록 제1-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경향신문」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목록 제1-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목록 제1-2〉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한국통신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 제 목 : 한국통신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 제 목 : 한국통신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분규, 안보차원 엄단/통신망 파업은 국가전

복 저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 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 목록 제1-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통신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순히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한국통신노조가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장 등 이사진 21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중추신경인 한국통신이 파업할 경우 국민생활에 주는 불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며 신문 방송의 제작도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등 일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특히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파업과 같은 극한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일 오후 이형구 노동부 장관,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 등 3부 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불법행위관련자는 법에 따라 처리하며 노조원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洪부총리는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공사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때에 일부 불순 노조원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공사에서 불법 · 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 앞으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공권력 투입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직장에 복귀하도록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소용없었다」면서 「이런 권유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대답했다.

경장관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한국통신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현대와 한국통신 사태는 다른 사안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7은 별지목록 제1-1, 1-2, 1-3 참조〉

〈별지목록 제8〉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색 바탕의 흰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9〉

한국통신노동조합이 불법으로 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국통신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하거나 국가의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노동조합에 대하여 국가전복 저의가 있다고 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된 허위내용임이 드러났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은 그동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 국가를 전복하려 하였거나, 노조의 활동으로 국가안전이 위협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바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익에 직결되는 정부의 통신개방정책과 대미 통상협상 자세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통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시해 왔다.

한국통신 노사는 지난 5월 중순경 3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절차 등의 논의를 마치고 5월 19일부터 임금과 단체교섭에 임할 예정이었다.

한국통신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상에 임하는 조합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5월 19일 전남대학교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노조는 쟁의에 돌입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쟁의를 유보하며, 5월 21일부터 10일간 냉각기간을 갖기로 하는 등 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유보하면서까지 국가통신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등 적법절차를 지켜 왔다.

또한 한국통신 노사간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한국통신노동조합을 위하여 제3자가 개입하거나 조종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정정보도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

문제의 기사에 原告의 反論이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5. 10. 24.자 판결 (95가합41982)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1995년 10월 24일 전 보사부 약정국장 신 씨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문제의 기사 속에서 원고의 반론이 차지하는 위치, 그 게재된 양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반론이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며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신씨는 조선일보 1995년 4월 6일자 39면 『한-약 분쟁 유발 약사법 개정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 제하의 기사에서 전 보사부 장관 안필준 씨의 「당시 신 약정국장에 속아 93년 2월 한-약 분쟁을 유발시켰던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결재했다」는 편지내용을 보도하자, 신씨는 서신 내용에 「속아서 결재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전 장관의 서신을 그대로 따온 것처럼 표현하여 자신이 장관을 속이고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보도했다며 1995년 4월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했다(95서울중재88).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반론을 수용할 의사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재대상기사에 잘못이 없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5가합41982 정정보도 등

원 고 : 신

과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운 영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 광 률, 장 원 찬, 최 승 인

변론종결 : 1995. 10. 10.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조선일보의 모든 판 제39면(제1사회면) 기사란에 세로 4단 크기로 별지 1 기재 반론문을, 『반론문』이라는 제목은 32급 고딕체 활자로 위쪽에 가로로, 『약사법 개정안 결재 속고 속인 일 없다』란 부제목은 16급 명조체 활자로 제목밑에 가로로 각 기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1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제2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판결.

이 유 :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 1995. 4. 6.자 제39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에 신청외 안필준의 사진과 그가 보냈다는 편지 사본과 함께 『한-약 분쟁 유발 약사법 개정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라는 제목과 『안필준 전 보사 일(日)서 편지 보내 주장』이란 소제목을 가로로 달고, 다시 그 아래에 『약국서 한약 완제품 판매 강조 당시 약정국장 강력허용 요청』, 『신 전 국장 「거짓보고 한 적 없다」』란 소제목을 세로로 달고 그 옆에 별지 기사문 기재와 같은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위 「조선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 「조선일보」에 원고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위 기사는 피고의 사회부 기자 소외 김 , 김 이 1995. 3. 말경 한의사인

소외 신 으로부터 위 신 이 같은 달 7.경 전 보사부 장관이던 소외 안필준으로부터 받은 서신을 입수하게 되어 이 서신의 작성자인 위 안필준에게 국제전화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외에 당시 이른바 한-약 분쟁의 당사자들인 한의사협회의 홍보이사인 소외 안 , 약사회의 수석부회장인 소외 정 와 회견 또는 전화로 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하여 얻은 자료들을 기초로 위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게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의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이 위 기사의 작성경위가 위와 같으므로 위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는 보도이니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 법 제16조 제3항단서에 따라 피고가 그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을제1호증의 1, 2(각 국제전화서비스), 을제3호증(정기간행물 등록사실에 대한 회신), 갑제6호증(편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것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위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 및 약사회측의 반론주장도 함께 충분히 게재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을 새로이 게재하는 것은 형평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사 게재 당시 원고의 주장내용도 일부 게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나 위 기사 속에서 원고의 반론이 차지한 위치, 그 게재된 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반론이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3.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크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별지 제2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구하나, 위 기사의 제목, 게재부위 및 크기, 반론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세로 4단의 크기로 하여 별지 제1 반론문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별지 제1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이 하는 외에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24.

재판장 판사 박 장 우
판사 이 회 기
판사 김 주 형

기사문

93년 2월 한-약 분쟁을 유발시켰던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해 당시 보사부 장관이던 안필준 씨(63 · 체일 중)가 「당시 신 약정국장에 속아 개정안에 결재했다」는 장문의 편지를 한 한의사 앞으로 보내와 파문이 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 11조 1항 7호는 「약국내 한약장 설치 금지」 조항. 약사들은 10여년 전부터 「이 조항이 조제권은 약사에게 있다고 규정한 모법인 약사법과 배치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이 조항의 삭제로 인해 약사들의 한약조제가 본격화 된 것.

5일 대한한의사협회 안 홍보이사가 공개한 편지에서 안 前 장관은 「보사부의 시행규칙개정 움직임을 안 당시 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처음 들었으며 그 후 신 前 국장에게 그런 기안을 하지 말도록 강력히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安씨는 그러나 신 前 국장이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황청심환 등) 공장제품을 팔도록 하는 이외 아무것도 없다」 「현재 수출까지 되고 있는 생약을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것 뿐」이라며 강력히 결재를 요청했으며, 그는 이 말을 믿고 결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랜 將軍생활에서 감히 부하가 상관을 속이는 일은 상상치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의사에게 피해를 주었고, 부탁 한 번 받은 일도 없는 약사회의 로비를 받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신 前 국장은 「安 前 장관이 약사법을 개정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安씨가 주장하는 대로 거짓보고를 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安 전 장관은 93년 5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이 시행규칙 개정 시비와 관련, 경희대 한의대 학부형의 고소로 검찰에 소환될 형편에 처하자 귀국하지 않은 채 작년 7월부터 일본에 머물고 있다. 그는 본사 기자와의 국제전화통화에서 「매일 일지를 쓰는 습관이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부하에게 속았다는 분하고 억울한 심정 때문에 체중이 50kg으로 줄었고 당뇨병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데 공부가 끝나면 들어가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정 수석부회장은 「문제된 시행규칙의 삭제가 약사회의 숙원과제로 여러번 보사부에 건의한 일은 있으나 安 前 장관이나 申 前 국장을 상대로 로비를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별지 1〉 반론문

「약사법 개정안 결재 속고 속인 일 없다」

본보는 1995. 4. 6.자 39면 우측 상단부분에 『한-약 분쟁 약사법 개정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라는 제목 아래 「93년 2월 한-약 분쟁을 유발시켰던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해 당시 보사부 장관이던 안필준 씨(63 ·)가 '당시 신 약정국장에 속아 개정안에 결재했다' 는 장문의 편지를 한 한의사 앞으로 보내와 파문이 일고 있다. 安씨는 '오랜 將軍생활에서 감히 부하가 상관을 속이는 일은 상상치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의사에게 피해를 주었고, 부탁 한번 받은 일도 없는 약사회의 로비를 받았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前 보사부 국장 신 씨는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13년간 사문화된 법조항을 법령정비 차원에서 정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약사의 한약조제판매 위헌 여부심판청구에 대한 '약사는 한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 는 1991. 9. 16.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부하직원이 상사를 속이거나 상사가 속아서 결재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안 前 장관의 편지는 한쪽의 이야기일 뿐이며 결코 안 前 장관을 속인 일이 없다」 고 주장했다.

정정보도신청인 신

〈별지 2〉 반론문

「약사법 개정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 사실과 달라」

전 보사부 약정국장 신 씨는 『한-약 분쟁유발 약사법 개정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 기사 (본보 1995. 4. 6. 39면)와 관련 안필준 前 장관이 보냈다는 서신을 확인한 결과 담당국장에 속고 속아서 결재했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처럼 기사화한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1993. 3. 5.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7호 재래식 한약장 조항은 13년간 사문화된 조항을 법령정비차원에서 정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약사의 한약조제 판매 위헌여부 심판청구에 대한 「약사는 한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 는 1991. 9. 16.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결재받기까지 관련단체와의 협의조정내용을 안필준 당시 보사부 장관에게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주무장관이 어느 특정단체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여 부하에게 그 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본인은 상사를 속인 일이 없고, 안 前 장관도 부하에게 속아서 결재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신청인 신 □

반론 내지 반박보도문의 게재는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폐간된 경우에는 그 피신청인 적격을 상실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2. 14.자 결정 (93카합1011)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1995년 12월 14일 이 씨가 주간신문 '크리스천 한국' 발행인인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정보도의 신청은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그 반론 내지 반박보도문의 게재도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인 '크리스천 한국' 신문이 폐간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더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될 수 없어 그 피신청인 적격을 상실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피신청인이 발행했던 '크리스천 한국' 은 1993년 4월 28일자 18면과 19면에 걸쳐 『기하성 교단총합 왜 시비가 되나?』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밀린 봉급을 받아내기 위해 재단 이사장과 서로 짜고 원 · 피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으나(93서울중재105)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위 '크리스천 한국' 은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1월 16일까지 전혀 발행하지 아니하다가 1995년 11월 17일 폐간되었고

이후 신청인은 '크리스천 한국' 신문이 폐간되었으므로 그 신문이 아닌 '목양신문' 에 정정보도를 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決定文

사　　건 : 93카합1011 정정보도

신 청 인 : 이

서울 종로구

피신청인 : 이

서울 영등포구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목양신문 1면 1단에 12포인트 활자로 2회에 걸쳐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1 내지 3, 5, 각 호증, 소갑6호증의 1 내지 8, 소갑7호증의 1, 2, 3, 4, 소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참고인 이　　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순복음교회는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의 양 교단이 분열되어 있다가 1991.경 통합을 추진하면서 양교단 내에 각기 통합을 주장하는 파와 잔류를 주장하는 파로 나뉘어 양교단 내에서 통합을 주장하던 파들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로 통합교단을 만들어 잔류측과 상호 대립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위 통합 전의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에서 목사로 임직받아 1987. 4. 16. 부산순복음중앙교회에 담임목사로 있던 자로서 1989. 6. 1.부터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간사로 있는 자이다.

(2) 피신청인은 1992. 12. 14. 서울 영등포구　　에서 정기간행물인 '크리스천 한국' 신문을 창간하여 그 발행인으로서 공보처 장관에게 등록을 하였는 바, 위 '크리스천 한국' 신문은 대판 24면으로 매주 수요일에 발행되었고 전국의 기독교 신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주간신문이다.

나. 피신청인의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1993. 4. 28.자 위 '크리스천 한국' 신문 7호의 19면에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2 교단 · 교권주의' 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과 관련하여 "박 전 재단이사장이 교회 재산을 재단에서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재단간사였던 이 목사를 부산순복음교회에 파송시켰다. 그러나 재단간사의 명분으로 당회장을 지내오던 이 목사는 교회 건물을 임의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를 빚어 교인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내용과 "박 , 이 목사는 교인 상대로는 불가능한 교회의 돈을 타내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들끼리 짜고 원고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의 제스처지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신청인의 중재신청과 위 '크리스천 한국' 신문의 폐간

신청인은 위 기사가 게재된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1993. 6. 16. 이 사건 신청을 하였던 바, 위 '크리스천 한국' 신문은 1994. 1. 1부터 1995. 11. 16.까지 전혀 발행, 납본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피신청인의 폐간신청에 따라 1995. 11. 17. 공보처 장관에 의하여 폐간수리되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크리스천 한국' 신문이 폐간되었으므로 그 신문이 아닌 목양신문에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및 본질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위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피해자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은 발행인 등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등과 그 정정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같은 정기간행물에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그 발행인 등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반론 내지 반박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위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및 정정보도의 절차에 관한 법규정, 그리고 위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정정보도심판의 신청은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그 반론 내지 반박 보도문의 게재도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인 위 '크리스천 한국' 신문이 폐간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더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될 수 없어 그 피신청인 적격을 상실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14.

재판장 판사 김 태 훈
판사 박 성 하
판사 김 은 미

정정보도문

(1) 피신청인은 크리스천 한국 1993. 4. 28.자 18면 19면에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2『기하성 교단통합 왜 시비가 되나?』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박 전 재단이사장이 교회 재산을 재단에서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재단간사였던 이 목사를 부산순복음교회에 파송시켰다. 그러나 재단간사의 명분으로 당회장을 지내오던 이목사는 교회건물을 임의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를 빚어 교인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내용 및 김 목사의 말을 인용 "박 , 이 목사는 교인 상대로는 불가능한 교회의 돈을 타내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들끼리 짜고 원고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의 제스처지요"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본보의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3) 이 목사는 재단간사 재임시 위 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고 위 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된 2년 후 재단간사로 임명되었고, 위 교회당이 재단법인 소유로 되어 있어 박 이사장과 교회 재무, 회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신청인회사가 요구르트 광고를 하면서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인격적, 재산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반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6. 1. 3.자 결정 (95카기5706)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3일 신청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심판소송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일간지인 서울신문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재산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제품과 경쟁회사의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여 분쟁을 야기하여 그러한 분쟁사실 자체가 보도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존재와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거두는 등 교묘한 광고수법을 쓰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정정보도신청도 이와 같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학계에서 신청인의 위 광고내용에 대하여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신청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1995년 9월 30일자 제23면에 『파스퇴르에 행정처분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는 29일 파스퇴르유업이 엔토로 요구르트를 광고하면서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할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으며 학계에서는 위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요구르트 광고를 하면서 의약품으로 혼돈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95서울중재256).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중재대상기사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근거해 관계공무원들에게 보충취재 후 기사화한 사실보도이며, 조만간 파스퇴르측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요구에 응할 수 없다' 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5706 정정보도심판

신 청 인 :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강원 횡성군
대표이사 조
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손주환
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되는 서울신문 제23면(사회 Ⅱ)의 기사란에 중 상단 우측부분에 세로 3단 가로 6.5㎝의 크기로, 그 상단 우측부분에 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세로 2㎝, 가로 5㎝ 지문의 흑밭 컷 속에 56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밖의 여백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10분 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

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서울신문 제23면(사회Ⅱ)의 기사란 중 상단 중앙 부분에 세로 4단, 가로 18㎝의 크기로, 그 중앙 윗 부분에는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세로 5㎝, 가로 18㎝ 지문의 흑밭 컷 속에 세로 2㎝, 가로 1.2㎝의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밖의 여백에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 신청인의 성명을 본문활자로 2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서울신문의 1995. 9. 30.자 제23면(사회Ⅱ)의 제1 내지 8단의 우측부분에 " '콜레스테롤 저하' 광고 의약품과 혼동우려, '파스퇴르'에 행정처분명령"이라는 제목과 "복지부, 강원도에 지시, 엔토로 요구르트 판촉에 의약용어 사용 식품위생법규 위반"이라는 부제하에, "보건복지부는 29일 파스퇴르유업의 요구르트 광고가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아울러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라고 시달했다. 복지부는 파스퇴르유업이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 엔토로 요구르트를 광고하면서 「질병을 갖지 않은 성인을 상대로 실시한 임상적 연구결과 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등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엔토로 요구르트는 식품인만큼 의약품의 약효 등에만 사용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임상적 연구결과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파스퇴르유업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엔토로 요구르트는 물론 사과, 파인애플 등 요구르트류는 모두 품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쟁업체와 학계에서는 파스퇴르유업의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신청인은 시유가공업, 버터, 치즈가공업, 분유제조업, 특수영양식제조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보건복지부가 1995. 9. 15. 강원도지사에 대하여 파스퇴르유업의 엔토로 요구르트 광고 중 "세계적인 발명품", "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집니다." "임상연구결과", "정상콜레스테롤치가 된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직접 위 광고내용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 강원도지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며, 한편 학계에서 엔토로 요구르트의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반응을 보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일간지인 서울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재산

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별지 1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가 위 광고내용이 엔토로 요구르트를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소정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로 인정하여 15일의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하라고 시달한 것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내용도 정정보도문으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원래의 기사에는 15일의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하라고 시달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 정정보도내용은 반론권의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피신청인은, ① 신청인은 자사제품과 경쟁회사의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여 분쟁을 야기하여 그러한 분쟁사실 자체가 보도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존재와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거두는 등 교묘한 광고수법을 쓰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정정보도신청도 이와 같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② 학계에서 신청인의 위 광고내용에 대하여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신청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4.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 1〉 반 론 문

서울신문은 1995. 9. 30.자 제23면 상단 우측부분에 『파스퇴르에 행정처분명령』이라는 제목 아래 '보건복지부는 29일 파스퇴르유업이 엔토로 요구르트를 광고하면서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할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위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995. 9. 15. 강원도지사에게 위 광고 중 "세계적인 발명품, 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집니다, 임상연구결과, 정상콜레스테롤치가 된다"라는 부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라고 한 것일 뿐 직접 위 광고가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 행정처분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 한편 학계에서 위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한 사실도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별지 2〉 정정보도문 (신청인들이 게재를 구하는 것)

1995. 9. 30.자 서울신문 제23면에 『"'콜레스테롤저하' 광고 의약품과 혼동우려" '파스퇴르'에 행정처분명령, 복지부, 강원도에 지시』라는 제목과 『'엔토로 요구르트' 판촉에 의약용어 사용 식품위생법규위반』이라는 부제로 보건복지부는 29일 파스퇴르유업의 요구르트 광고가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할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아울러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라고 시달했다.

복지부는 파스퇴르유업이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 엔토로 요구르트를 광고하면서 「질병을 갖지 않은 성인을 상대로 실시한 임상적 연구결과 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등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엔토로 요구르트는 식품인만큼 의약품의 약효 등에만 사용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임상적 연구결과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1조는 「식품 등의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식품 · 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로 인정된 때」는 1차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동안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종전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같은 품목류는 모두 제조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파스퇴르유업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엔토로 요구르트는 물론 사과, 파인애플 등 요구르트류는 모두 품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하나의 품목이 제조정치처분을 받더라도 같은 품목류는 그대로 제조할 수 있어 법규위반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쟁업체와 학계에서는 파스퇴르유업의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에 대하여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의 "엔토로 요구르트" 광고 중 "세계적인 발명품", "임상적 연구결과", "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졌다", "정상콜레스테롤치가 된다"라는 내용이 식품의 허위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확인하여 식품위생법 제11조 소정의 허위표시광고에 해당되면 행정처분을 하라고 한 것일 뿐 보건복지부가 위 광고내용이 엔토로 요구르트를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4조 소정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로 인정하여 15일의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하라고 시달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학계의 어느 누구에게도 파스퇴르유업의 엔토로 요구르트의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정정보도신청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

단체와 구성원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사실적 보도로 인하여 그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베뢰아 집단' 이라는 표현은 피신청인측이 신청인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용한 표현에 불과하다

서울지방법원 1996. 1. 8.자 결정 (95카기5440)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8일 교회(담임목사 김)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단체와 구성원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사실적 보도로 인하여 그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교회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베뢰아 집단' 이라는 표현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교회가 신앙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마치 불순한 집단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는 바,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표현은 피신청인측이 신청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용한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밝혔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기독신보' 는 1995년 8월 19일과 26일, 9월 2일자 기사에서 『이단대책 이래도 되나』, 『베뢰아 집단 활개…기성교회 '충격' 』 등의 제목으로 신청인인 교회와 담임목사인 김 을 이단으로 보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신청인 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95서울중재235).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교단이 신청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 근거한 보도' 라며 정정보도를 거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5카기5440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교회

서울 영등포구

대표자 담임목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한주, 한택근

피신청인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서울 강남구 대치3동 1007의 3
대표자 이사 정석홍
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 발행의 '기독신보'가 1995. 8. 19.자 제3면, 1995. 8. 26.자 제2, 3면, 1995. 9. 2.자 제2면의 각 기사에서 신청인교회의 광복50주년 기념 평화통일희년대회 참석을 보도하면서 신청인교회의 대표자인 김 을 '김 목사'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김 씨'라고 표기하고, 위 김 의 위 희년대회 공식직함이 희년대회 준비위원회 '부총재' 임에도 '부대회장'이라고 표기하였으며, '기독만평'이라는 삽화란에 '희괴한 일'이라는 제목을 붙여 위 김 을 유령으로 그려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정정보도를 구하나, 어떤 단체와 구성원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사실적 보도로 인하여 그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교회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는 신청인에게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유없다.

신청인은 또한, 위 '기독신보'가 1995. 8. 26.자 제3면에 신청인교회 교인들의 위 희년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베뢰아 집단 활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베뢰아 집단'이라는 표현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교회가 신앙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마치 불순한 집단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는 바,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표현은 피신청인측이 신청인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용한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8 □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속보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원래 보도에 대한 특정이 미흡하고 지면의 위치나 크기 등에 있어서 원래 보도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고, 속보기사의 내용이 원 보도내용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이 속보기사만으로 이 사건 기사가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1996. 1. 10.자 판결 (95가합23258)

事實槪要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10일 타운 대표인 김 씨가 국제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국제신문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기사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 기사로 인하여 그의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비록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속보가 국제신문에 게재되었으나 그 기사는 원래의 보도인 이 사건 기사에 대한 특정이 미흡하고 지면의 위치나 크기 등에 있어서 원래의 보도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이 사건 기사내용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이 속보기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으로서는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 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신문은 1995년 7월 17일자 27면 우측 상단부분에 『昌原 타운 붕괴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타운은 불법 증축과 냉각탑 설치 및 용도변경을 하였고, 3 내지 5층 천장과 기둥 등에 심한 균열이 생겨 제2의 삼풍참사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건축물 안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95부산중재20).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1995년 7월 21자에 중재대상기사와 같은 크기로 『 타운 '안

전이상 없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므로 정정요구에 응할 수 없다' 하여 불성립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5가합 23258 정정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김
창원시 중앙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제신문(國際新聞)
부산 연제구 거제동 76의 2
대표이사 남 정 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무근

변론종결 : 1995. 12. 1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27면 이상의 지면으로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국제신문 제27면의 기사란 중 우측 가장자리 최상단 부분에 세로 3단, 가로 8cm의 크기의 박스기사 형태로, 윗부분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1호 고딕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가로로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문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을 6호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국제신문 27면(사회면) 머릿기사로 2일간 연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국제신문의 1995. 7. 17.자 제27면 우측 상단 부분에 "昌原　　타운 붕괴위험"이라는 큰 제목 하에, "慶南도 진상조사, 감리 건축기사가 진정서"라는 작은 제목과 "不法증축 · 냉각탑 설치 용도변경, 3~5층 천장기둥 등 심한 균열, '제2삼풍' 慘事 우려"라는 작은 제목을 붙여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기사' 라고 부른다)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갑제5호증 내지 소갑제8호증, 소갑제10호증, 소갑제12증, 소을제5호증의 1, 소을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 강　　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타운은 창원시 지상에 건축된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지하 4층, 지상 18층 연건평 33,850.655㎡의 업무, 위락, 근린생활, 숙박(관광호텔)시설 등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그 건물의 약 65% 정도는 신청인이 대표인 타운 총괄관리단에서 직영하고 있고, 오피스텔 300호실은 분양되어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그 외 약 150명 정도의 소규모 상인들이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위 타운의 건축주이자 위 타운 총괄관리단의 대표자인 사실,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신청외 강 은 국제신문사 제2사회부 소속으로 창원에 주재하면서 경남도청에 출입하여 취재를 하는 기자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이틀 전인 1995. 7. 15.경 경남도청 기자실에 들러 그 내용이 "위 타운이 무단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이 되어 그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 건축주인 신청인을 고발한다"는 취지인 신청외 김 명의의 같은 해 6. 5.자로 된 진정서(소갑제5호증)을 본 다음, 위 김 에 대한 확인 또는 위 타운 현장 조사 등 위 진정서 내용에 관한 확인절차도 없이 위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위 진정서에는 작성명의자가 타운의 현장시공감리를 담당한 건축기사 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타운의 현장시공감리를 담당한 건축기사 중에는 김 라는 사람이 없는 사실, 이 사건 기사가 국제신문에 보도된 다음 위 타운 입주상인들이 피신청인에게 거센 항의를 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1.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속보의 형식으로, 큰 제목을 " 타운 안전 이상 없다"로 하고 작은 제목을 "설계감리사 · 건축사 등 합동 1차조사 건물구조 등 균열없어"로 하여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소명된다.

2.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국제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 기사로 인하여 그의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비록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속보가 국제신문에 게재되었으나 그 기사는 원래의 보도인 이 사건 기사에 대한 특정이 미흡하고 지면의 위치나 크기 등에 있어서 원래의 보도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이 사건 기사내용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이 속보기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으로서는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국제신문에 별지 1.과 같은 반론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 보도내용이 위 강 이 위 김 및 경남도청에 직접 알

아보는 등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다음 게재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상 신청외 김 의 진술서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신청인 자신의 사실주장에 관한 기사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한 소명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가 설사 피신청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나아가 피신청인이 위 진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국제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국제신문의 사실에 관한 보도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게 된 경위 및 그 후의 사정,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비록 미흡하나마 같은 해 7. 21.자로 다시 이를 해명하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점,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정정보도문의 크기에 관하여는 세로 3단, 가로 8cm의 크기로 하되, 윗부분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1호 고딕체로, 그 나머지 여백에 가로로 반론문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6호 명조체 본문활자로 게재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내용에, 이 사건 기사는 취재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운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잘못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달라고 구하나,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 내지 반박은 원래 보도된 기사를 반박하기 위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정정보도문 게재횟수에 관하여 2회로 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있어 미흡하나마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속보기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론문게재횟수는 1회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 10.

재판장 판사 서 현 석
판사 장 홍 선
판사 이 규 홍

〈별지 1〉 반론문

국제신문은 1995. 7. 17.자 27면 우측 상단부분에 창원시 에 있는 타운에 관하여, "昌原 타운 붕괴위험"이라는 제목 아래 타운 건축 당시 건축감리기사로 자칭하는 김 가 경상남도청에 진정한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위 타운은 불법 증축과 냉각탑설치 및 용도변경을 하였고, 3 내지 5층 천장과 기둥 등에 심한 균열이 생겨 제2의 삼풍참사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는 위 김 의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 후 확인한 결과 진정인 김 는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임이 밝혀졌고, 위 타운은 창원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문건축가의 감리하에 적법하게 시공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안전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정정보도신청인 김

〈별지 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1995년 7월 17일자 27면에 "창원 타운 붕괴위험"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창원시 소재 타운 건축 당시 건축감리기사로 자칭하는 김 가 경상남도청에 진정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타운은 불법증축과 냉각탑설치 및 불법용도변경을 하였고, 3~5층 천장과 기둥 등에 심한 균열이 생겨 제2의 삼풍참사가 우려된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는 취재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운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위 진정서 내용만을 토대로 작성된 잘못이 있으며, 확인결과 진정인 김 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임이 밝혀졌고, 타운은 창원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문건축가의 감리하에 적법하게 시공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안전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정정보도신청인 김

〈별지 3〉 국제신문 1995. 7. 17.자 제27면의 기사내용

창원시내 최대의 복합건물인 창원시 ' 타운'이 건축주의 무리한 설계 변경과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붕괴위험이 높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남도에 접수돼 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자신을 타운 건축 당시 현장에서 설계 및 시공 감리를 맡은 건축기사라고 밝힌 김 는 진정서에서 이 건물은 △ 18층 1개층을 구조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했고 △ 옥상 물탱크의 용량을 변경했으며 △ 공조기와 냉각탑 광고탑을 설치하고, 4개층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지상 3층부터 5층까지 천장바

닥과 건물전면 기둥에 심하게 금이 가 붕괴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타운은 신축 당시 창원시로부터 지하 4층 지상 17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종합건설에서 건물골조공사 완료 후 건축주가 공사를 직영하면서 18층으로 증축했으며 설계사무소에서는 구조계산을 17층으로 했다는 것.

또 지난 89년 착공시에는 건물용도가 오피스텔 건물이었으나 분양이 되지 않자 판매시설과 관광호텔로 변경, 건축주 임의로 지상 6~11층까지 무단 불법공사를 해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복합건물로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특히 "지하 2층의 볼링장은 레인을 추가하기 위해 기둥 5개의 일부를 절단,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위험천만"이라면서 "지상1층 출구는 설계 당시 건물하중을 줄이기 위해 유리벽으로 설치, 좌우측 상가매장이 보이도록 설계됐었으나 건축주가 공사마감시 임의로 호텔출입문을 만들기 위해 조적마감을 한 후 외부를 대리석으로 변경 시공해 건물의 중앙하중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호텔부분인 6, 7, 17, 18층은 인테리어 공사시 건물골조인 철골보에 구멍을 뚫어 배관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 천장높이를 높였으므로 원상복구 후 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별지 4〉 국제신문 1995. 7. 21. 자 기사내용

창원시내 최대 복합건물인 창원시 ' 타운'은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경남도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 건물의 설계감리자인 부산 ' 라인'의 유 차장(43)과 변경설계자인 서울의 종합건축사사무소인 ' 그룹'의 건축사 황 소장(45), 그리고 시공자인 그룹계열사인 (주) 의 박 건축대리(44)를 불러 건물안전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건물구조가 일반건축공법인 철근콘크리트와는 달리 H빔 철골철근콘크리트공법을 사용해 건물자체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타운의 건축물구조와 기초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건축물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진정을 받았으나 △ 당초 지하 5층 지상 17층 구조를 지하 4층 지상 18층으로 변경한 것은 공사하던 중 암반이 나와 지하를 4층으로 하는 대신 지상을 18층으로 한 것이며 △ 지하 3층 지상 5층 천장바닥과 건물전면기둥의 균열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건축주인 측도 건축물 신축 당시 기초공사를 특별히 보강한데다 지하 암반층이 두터워 건축물 안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 사건 방송은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원보도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익이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1. 11.자 결정 (94카합1017)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 1민사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11일 기도원 목사 강 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PD수첩」에서는 가 의 실명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신청인의 주장(가 이 자해하여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다는 취지)이 방송되었으므로, 방송을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방송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가 이 병원에서 투신하여 나머지 눈마저 실명하였다' 는 취지의 정정보도 요구는 원보도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정당한 이익이 없다' 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MBC-TV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수용시설인 기도원의 실태를 다루면서 1994년 3월 15일 『충격보고, 정신질환자 기도원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을 치료한다면서 눈을 누르고 폭행하며 안수하여 실명케 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같은 달 22일 『충격보고 Ⅱ 난립하는 기도원, 그 실상은』 제하의 방송에서는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가 사망

하였는데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매장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94서울중재80)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보도내용에는 신청인측의 해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차후 요양원 실태를 좀 더 깊이 있게 취재하여 이를 방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때 가서 신청인측의 반론도 함께 방송해 줄 수 있다' 고 주장, 불성립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4카합1017 정정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강

현재주소 소재불명

최후주소 충남 태안읍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 받은 후 처음 방송되는 "피디(PD)수첩"의 방영 시작 전 별지 정정보도문을 그 기재와 같이 보도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1, 8 각 호증, 소을3, 8, 9 각 호증의 각 기재 및 참고인 노　　의 진술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 속한 목사로 충남 태안군　　소재 산 속에　　기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피디(PD)수첩"이라는 프로를 방송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방송내용

피신청인은 1994. 3. 15. 및 같은 달 22.에 "피디(PD)수첩"이라는 프로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수용시설인 기도원의 실태와 만행을 다루면서, 1994. 3. 15. "충격보고, 정신질환자

기도원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위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신청외 가 을 치료한다면서 위 가 의 눈을 누르고 폭행하며 안수하여 실명케 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같은 달 22.자 "충격보고(Ⅱ) 난립하는 기도원, 그 실상은"이라는 제목으로 위 3. 15.에 방송된 위 가 에 대한 화면을 다시 비추면서 '가 이 기도원에서 안수 도중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위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신청외 김 이 사망하였는데, 기도원 측은 환자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리해서 공동묘지에 묻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다. 신청인의 중재신청

신청인은 위 방송이 보도된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1994. 5. 10.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여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살펴본다.

나. 위 가천을 관련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신청인은, 위 가 은 동인이 자해를 하여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위 가 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을 3호증의 기재 및 참고인 노 의 진술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3. 22.자 방송은 위 3. 15.자 방송의 후속 프로로서 위 가 에 대하여 동인 주장의 실명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고, '위 3. 15.자 방송이 나간 뒤 원장(신청인)은 지난 주 방송 중 기도원에서 눈이 멀었다는 위 가씨 관련 방송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해명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방송하고 신청인이 직접 '위 가 이 자해하여 자기 눈을 멀게 하였다, 증인이 100명도 넘는다'고 말하는 것을 방송하고, '목사님(신청인) 말씀은 가 씨가 자해한 것이다' 등의 방송을 한 뒤 다시 신청인의 말을 종합하여 신청외 노 이 '원장(신청인)의 말로는 가씨가 스스로 멀쩡한 눈과 이를 뽑았는데, 방송이 일방적으로 정신질환자 이야기만 방송하였다는 주장'을 한다는 취지로 방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위 3. 22.자 "피디(PD)수첩"에서는 위 가 의 실명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신청인의 주장(가 이 자해하여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다는 취지)이 방송되었으므로, 위 3. 22.자 방송을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방송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가 이 병원에서 투신하여 나머지 눈마저 실명하였다'는 취

지의 정정보도 요구는 원보도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결국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망 김 관련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다시 신청인은, 위 망 김 이 사망하자 기도원 측은 그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입원시의 주소지인 '성남시 ' 로 연락하였으나 이사하고 없어 다시 '서울 성동구 ' 로 찾아갔으나 다시 부산으로 이사하여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별지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장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소갑3, 11, 각 호증, 소갑1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참고인 최 의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소갑2, 11, 13 각 호증의 각 기재 및 소갑10호증의 일부기재(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오히려 소을5호증의 기재와 소갑10호증의 일부 기재 및 참고인 노 의 진술,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위 망 김 의 처는 1988. 8. 27.경 위 망 김 을 기도원에 맡긴 후 같은 해 9. 8. 기도원으로 면회를 갔을 때, 그 무렵 자신이 성남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면서 신청인에게 위 성남의 주소와 함께 위 망 김 의 아버지인 신청외 김 이 거주하는 서울 하왕십리 의 전화번호( )를 가르쳐 주었고, 위 전화번호는 신청인이 보관하는 주소록에 기재된 사실, 위 김 은 1982. 10. 13. 이후 사망시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위 망 김 의 모인 신청외 남 이 위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위 망 김 의 가족이 이사하여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위 망인을 변사자로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위 망 김 에 대하여 '1988. 10. 9. 11:30경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 2호 검사의 지휘하에 서산경찰서 경찰관의 입회하에 부검하였고, 장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후 태안군청의 허가를 받아 이장한 것으로 정정보도하라' 는 부분은, 원 방송 내용이 위 망 김 의 가족에게 위 김 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동인을 매장하였다는 것에 그 주안점이 있고, 그 후 처리과정은 원 방송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그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신청인의 위 정정보도신청도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11.

재판장 판사 김 태 훈
판사 박 성 하
판사 김 은 미

정정보도문

(1) 피신청인은 1994. 3. 22. "MBC PD수첩"에서 강 의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환자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리해서 공동묘지에 묻었다는 취지의 방송은 사실과 다르고, 위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는 김 이고 위 환자가 사망 후 기도원에서 가족 주소지로 연락하였으나, 가족들이 이사하여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경찰에 변사자로 신고하였고, 1988. 10. 9. 11:30경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시청 2호 검사의 지휘하에 서산경찰서 경찰관의 입회하에 부검하였고, 장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후 태안군청의 허가를 받아 이장한 것으로 정정보도하고,

(2) 피신청인이 1994. 3. 22. "MBC PD수첩"에서 강 가 강 의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가 의 두 눈을 누르고 폭행하며 안수하여 실명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은 사실과 다르고, 위 기도원에서 가 이 정신착란 증세로 소리를 질러 모두 놀라 일어나 보니 가해자의 손에 피가 묻어 있어 천안 병원에 후송하였는데 며칠 후 다시 발작 증세가 일어나 3층 병동에서 뛰어 내려 완전실명된 것임을 정정보도합니다. □

종로구의회 의원 해외연수를 비밀리에 진행한 적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할 소명자료를 피신청인이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6. 1. 15.자 결정 (95카기6604)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의장 김　　)가 종로저널(발행인 이　　)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 소송에서 「신청인의 정정보도신청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소명 자료가 없다」며 정정보도인용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종로저널 1995. 10. 30.자 3면 『모두들 제 발이 저리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종로구의원들의 해외 연수 계획이 아무도 모르게 구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만 알면서 진행되어 의아심을 갖게 한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자, 의회에서 3차에 걸쳐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전 의원 모두에게 설명회를 갖고 공개적으로 신청을 접수했다며, 1995년 11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5서울중재282). 그러나 피신청인측이 의원들의 해외 연수결과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도해 줄 용의는 있으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과성 정정보도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6604 정정보도심판

원　　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

대표자 의장 김

피신청인 : 이

서울 종로구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발행되는 종로저널 제3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 부분에 가로 7cm, 세로 11cm의 크기로, 위쪽에는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이름을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 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종로저널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3단에 걸쳐 제목은 본문 기사 제목 활자 크기로,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신문인 종로저널의 1995. 10. 30.자 제3면의 우측 부분에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는 제목 하에 「종로구 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 차원으로 유럽 시찰을 다녀온다. 오는 11월 1일부터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여러 나라의 도시 행정 및 지방자치 실태를 파악 및 견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의원들의 이러한 해외 연수 계획은 그 동안 아무도 모르게 구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만이 알고 진행되어 의아심을 갖게 한다. 모 구의원에게 해외 연수 내용을 묻자 모 구의원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철저히 보안 유지를 했는데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수 내용은 고사하고 오히려 보안(?)이 새나간 원인처가 어디냐고 추궁을 당했다. 또 모 구의원 역시 '모른 척 하라. 좋게 생각해 주고 내버려둬라' 하는 식의 부탁성 조언도 들었다. 구의회 사무국도 마찬가지이다. 구의원들의 나중 질책이 두렵기만 한 듯

'우리 공무원들이 무얼 아느냐? 구의원들이 시키는 대로만 할 뿐 할 말이 없다. 의원들이나 의장에게 물어보라' 는 식으로 답변을 피한다.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는 내용의 칼럼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종로저널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별지 1.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종로저널이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 라고 하여 종로구 의회 의원 모두가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표현을 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보도를 한 것임을 밝힌다」라는 내용도 정정보도문으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는 기사 부분는 칼럼 필자가 자기의 의견을 나타낸 주관적인 가치판단 부분에 불과하고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는 신청인의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피신청인은, 위 기사의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신청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소명 자료가 없다.

4.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 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 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15.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 1〉 반론문

종로저널은 1995. 10. 30.자 제3면 우측 부분에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는 제목 하에 「종로구 의원들의 해외 연수 계획이 아무도 모르게 구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만 알면서 진행되어 의아심을 갖게 한다. 모 구의원에게 묻자 '어떻게 알았느냐. 보안유지를 했는데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의 칼럼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종로구 의회는 구의원의 해외 연수를 비밀리에 진행한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였으며, 구의원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종로구 의회

〈별지 2〉 정정보도

서울시 종로구 의회는 종로저널이 1995. 10. 30.자 3면 저널 칼럼에서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당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종로저널은 위 보도에서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구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만이 알고 진행되어 의아심을 갖게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타지역 신문(종로 신문)과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된 사실을 종로저널에서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며, 「모 구의원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철저히 보안 유지를 했는데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종로구 의회 의원들이나 사무국 직원들 등 누구도 종로저널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고 하여 종로구 의회의원 모두가 마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표현을 하는 등 종로저널은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보도를 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일간신문들에는 구속자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신청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구속자 13명 중에 신청인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은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서울지방법원 1996. 1. 25.자 결정 (95카기5816)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25일 '5 · 1 동맹사건'으로 구속된 국 외 5인이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각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신청인들은 각 기사에서 말하는 '5 · 1 동맹'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13명 중에 포함되고, 위 '5 · 1 동맹'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다른 일간신문들에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13명의 구속자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신청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 각 기사에 보도된 구속자 13명 중에 신청인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은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각 기사로 인하여 그 인격적 법익도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각 기사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정한 반론 이외에 신청인들이 구하는 나머지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거나, 원문기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 또는 원문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는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각각 1995년 9월 5일자에 『'5 · 1 동맹' 13명 구속』과 『主思派 조직 '5 · 1 동맹' 적발』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노동현장에 위장취업해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95서울중재248, 249), 중재결과 피신청인측은 신청인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발표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었다. 신청인들은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5816 정정보도

신 청 인 : 1. 국
서울 금천구
2. 김
인천 남구
3. 김
서울 구로구
4. 이
서울 노원구
5. 조
서울 종로구
6. 한
서울 강서구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장원찬, 최승인
2.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의 1
대표이사 황환채
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신필종

주 문 : 1. 피신청인 조선일보사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되는 일간신문 '조선일보'의 제39면(또는 사회면) 제8, 9단의 중앙좌측부분에 세로 2단, 가로 6㎝의 크기로, 그 우측 윗부분에는 세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0급 고딕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목록 제1.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청구인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세계일보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되는 일간신문 '세계일보'의 제31면(또는 사회면) 제 8, 9단의 중앙좌측부분에 세로 2단, 가로 6㎝의 크기로, 그 우측 윗부분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32급 고딕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목록 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청구인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조선일보' 1995. 9. 5.자 제39면(사회면) 6단 내지 10단의 왼쪽부분에 "5 · 1 동맹 13명 구속"이라는 대제목과 "간첩 이 남로당 잔존조직"이라는 소제목으로 "거물급 간첩 이 (70 · 북한 정치국후보위원 · 월북)이 구축했던 '남한조선노동당'의 전위단체 '5 · 1 동맹'이 남한조선노동당의 와해 직후 지하로 잠적한 뒤 2년 11개월만에 실체가 드러나 핵심 조직원 14명이 검거됐다. 서울 경찰청 보안부는 4일 '남한조선노동당의 지령 아래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의 편지 및 3천8백여만원의 정성금 전달, 한민전 문건의 수도권 배포, 군사기밀탐지 등의 활동을 해왔고 92년 10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직후 지하로 잠입해 노사분규 개입, 범민련 개입을 통한 사

회불안 조장 등의 이적행위를 해온 반국가단체 '5 · 1 동맹' 조직원 14명을 붙잡아 이 중 조 씨(28 · 여 · 고려대 지리학과 제적) 등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고 발표했다. 구속된 13명 전원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J실업 택시기사, H유리 회사원, S수산 직원, 모방송 편송국 사원 등으로 위장취업한 후 활동을 벌여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세계일보가 발행하는 '세계일보' 1995. 9. 5.자 제31면(사회면) 8단과 9단의 좌측부분에 "주사파 조직 '5 · 1 동맹' 적발" 이라는 대제목과 "경찰, 북지령청취-분규조종…13명 구속"이라는 소제목으로 "서울경찰청은 4일 주사파지하조직 '5 · 1 동맹' 을 적발, 조직책 조 씨(가명 · 27 · 여 · 고려대졸) 등 13명을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구성 및 가입 등)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S사 노조사무국장 김모 씨(28 ·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기관지 '새날의 주인' 과 강령-규약을 담은 문건 등 2백 33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 단체의 나머지 조직원 20여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91년 10월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지향하는 '5 · 1 동맹' 을 결성,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의 편지' 와 '정성금' 및 '농업통계 연감' 등 국가기밀자료를 최 씨(39 · 간첩혐의로 복역 중)에게 넘겨주고 북한지령청취 등 반국가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92년 남한조선노동당이 당국에 적발되자 노동현장에 침투, '남한조선노동당 구속자후원회' 를 조직해 자금모금과 노조활동개입을 통해 S사 등의 노사분규를 조종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북한 정치국후보위원인 이 (70 · 여 · 월북)이 총책으로 활동했던 '남한조선노동당' 의 중부지역당 총책인 황 (39 · 구속)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단체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속자 조 , 한 (32 · 여 · 고려대졸), 권 (27 · 고려대 4년 제적), 신 (31 · 인천대졸), 김 (31 · 서울시립대졸), 정 (26 · 여 · 총신대졸), 현 (29 · 고려대졸), 이 (30 · 인천대 4년 제적), 국 (26 · 서울대졸), 이 (31 · 인천대졸), 이 (28 · 서울대졸), 정 (27 · 인천대졸), 김 (29 · 여 · 인천대졸)"이라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 피신청인들은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구속자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보도하거나 직업만을 사용하여 보도하였는데, 신청인들은 모두 위 '5 · 1 동맹'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13명 중에 포함되고, 위 '5 · 1 동맹'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1995. 9. 5. 자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13명의 구속자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신청인들이 위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주체로서의 피해자인지 여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주체로서의 피해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었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위 각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직접 지명되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위 각 기사에서 말하는 위 '5 · 1 동맹'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13명 중에 포함되고, 위 '5 · 1 동맹'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1995. 9. 5.자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13명의 구속자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신청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 각 기사에 보도된 구속자 13명 중에 신청인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은 위 각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또한 위 각 기사로 인하여 그 인격적 법익도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 소정의 피해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위 각 기사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 각 기사 중 신청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하여는 별지목록 제1. 반론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세계일보에 대하여는 별지목록 제2. 반론문의 각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신청인들은 위 인정된 반론 이외에도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구하는 나머지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거나, 원문기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 또는 원문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들은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것이어서,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 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5.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 제1〉 반론문

지난 1995. 9. 5. 자 조선일보 제39면에 "5 · 1 동맹 13명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은 남한조선노동당의 잔존조직인 5 · 1 동맹의 조직원 13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1992년 10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직후에 지하로 잠입하여 노사분규에 개입하고 위장취업을 해 왔다' 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인들은 '5 · 1 동맹'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사실이나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 취직하여 근무하였을 뿐이지 위장취업을 하거나 노사분규에 개입하지 않았다.

정정보도청구인 국 , 김 , 김 , 이 , 조 , 한

〈별지 제2〉 반론문

지난 1995. 9. 5.자 세계일보 제31면에 "주사파 조직 '5 · 1 동맹' 적발" 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은 주사파 지하조직 5 · 1 동맹을 적발, 조직원 13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이 당국에 적발되자 노동현장에 침투, 노조활동개입을 통해 노사분규를 조종해 왔다' 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인들은 '5 · 1 동맹'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사실이나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 취직하여 근무하였을 뿐이지 노동현장에 침투하거나, 노조활동개입을 통해 노사분규를 조종하지 않았다.

정정보도청구인 국 , 김 , 김 , 이 , 조 , 한 □

피신청인이 서울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뉴스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5. 9.자 결정 (95카합4287)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1996년 5월 9일 '5·1 동맹사건'으로 구속된 국 외 8인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를 방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의 범위 내에서 요약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뉴스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가 1995년 9월 4일자 KBS-TV 9시뉴스 프로그램에서 신청인들이 노동현장에 위장취업해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신청인들은 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다(95서울중재252). 중재결과 중재불성립 되어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5카합4287 정정보도

신 청 인 : 1. 국
서울 금천구
2. 김
인천 남구
3. 김
서울 구로구
4. 이
서울 노원구
5. 이
서울 중구
6. 정
서울 중랑구
7. 조
서울 종로구
8. 한
서울 강서구
9. 현
대전 대덕구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방송되는 KBS 제1텔레비전 9시 뉴스 프로그램의 중간 부분에 텔레비전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KBS 제1텔레비전의 1995. 9. 4.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소위 '5 · 1 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반국가활동을 벌여온 13명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2년 간첩단 사건으로 적발된 남한조선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 그동안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 · 1 동맹이 지난 90년 북한의 거물급 남파간첩 이 ㅣ 결성한 남한조선 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 조직원을 북한에 몰래 보내 그들의 지령에 따라 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결과 5 · 1 동맹은 김일성의 빨치산 등지의 이름을 딴 들격소조를 만들어 결정적 시기에 무장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해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목표와 강령, 규약을 채택하고…' 이들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의 편지와 정성금을 전달하고 북한방송을 청취, 유인물을 만들어 수도권지역에 배포해 온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92년 남한조선노동당 간첩단 사건 이후에는 학원과 공단지역에 위장침투해 농업과 군사분야 기밀자료를 빼돌리고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는 등 이적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안법 위반 구속자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고 간첩단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매체에 기고하는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담하게 활동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14명 외에도 10여명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5 · 1동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한 사실, 신청인들은 모두 위 '5 · 1동맹' 사건과 관련하여 13명 중에 포함되고, 위 '5. 1동맹'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1995. 9. 5.자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13명의 구속자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되었는 바, 위와 같이 위 보도와 다음날 보도된 위 각 신문 기사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위 보도내용이 신청인들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의하여 각 인정되는 사실이다.

2. 판단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의 범위 내에서 요약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뉴스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한다.

신청인들은 위 인정된 반론 외에도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구하는 나머지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거나, 원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들은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9.

재판장 판사 심 명 수
판사 최 종 길
판사 윤 태 호

반론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1995. 9. 4. KBS 9시 뉴스에서 "5 · 1동맹"이라는 제목하에, 경찰이 남한조선노동당의 잔존조직인 5 · 1 동맹의 조직원 13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들은 1992. 남한조선노동당 간첩단 사건 이후 학원과 공단지역에 위장침투해 노사분규를 배후 조정하는 등의 이적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국 , 김 , 김 , 이 , 이 , 정 , 조 , 한 , 현 씨는 그들이 모두 5 · 1 동맹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 취직하여 근무하였을 뿐이지 위장취업을 하거나 노사분규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

제목을 보면 신청인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제주지방법원 1996. 1. 25.자 결정 (95카기351)

事實槪要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25일 제민일보사가 제주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제주신문사측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제주신문은 1995년 8월 22일자 신문에 『미화부도 3백39억』이라는 대제목 아래, 『제민일보도 25억 3천만원』 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경찰의 수사결과 부도 규모는 3백39억여원으로 드러났다. 제민일보 명의로도 당좌와 어음 25억 3천만원을 발행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제민일보측은 제민일보 명의로 발행된 수표 및 어음의 액면합계금에 대해서는 모두 결제, 지급됨으로써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담당재판부는 「본문기사에는 신청인의 부도사실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목 내용에 의하여 마치 신청인 회사 또한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오인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문제의 보도 이후 10월 25일자 제주신문에서 미화사건과 관련된 부도내역을 밝히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청인 회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타 일간지들을 통해서도 신청인 회사가 미화부도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므로 정정보도청구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신청인으로서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피신청인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다시 25일자 기사를 읽었다 하여도 신청인 회사에 부도가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기는 어렵다」며 피신청인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자 지난 1995년 9월 20일 신청인 제민일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제주일보측에서 「신문의 속성상 제목은 간략히 표현할 수 밖에 없고, 기사내용을 보면 독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정정요구를 거절, 사건이 불성립되자(95제주중재8), 신청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351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주식회사 제민일보
제주시 연동 290의 64
공동대표이사 홍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진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제주신문사
제주시 연동 2036
대표이사 김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제주신문 제19면의 기사란 중 좌측 중단부에 세로는 3단의 크기로, 가로는 10cm 범위 내의 크기로 한 사각 테두리 내에 우측 부분에는 세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2포인트 명조체활자로, 그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이 제주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제주신문의 1995. 8. 22. 자 제19면의 오른쪽 상단부에 머릿기사로 『미화부도 3백39억』이라는 제목과, 그 우측 하단에 『제민일보도 25억 3천만원』이라는 소제목 아래 「속보=경찰의 미화부도사건 수사결과 부도 규모는 모두 3백39억 5천3백99만원으로 드러났다. 김　　제주경찰서장은 21일 미화부도사건과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6월 17일 미화주택과 부도 이후 경찰의 미화관련업체 자금추적 결과 미화주택과 미화개발, 제민일보 등에서 발행된 당좌수

표 및 어음 등은 모두 3백39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8일 검거된 미화주택 사장 강 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날 김 서장이 밝힌 부도 규모 내역을 보면 미화주택이 2백2억 6천1백20만원, 미화개발이 48억 6천1백60만원으로 나타났고 미화주택의 직원 개인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린 것은 모두 14억 18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내 모기업으로부터 무수천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20억원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됐고 제민일보 명의로도 당좌와 어음 25억 3천1백만원을 발행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갑제3호증(거래상황확인서), 소갑제4호증(경찰수사발표문), 소을제4호증(1995. 8. 22.자 제민일보)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5. 6.경 미화주택 및 신청인회사의 전(前) 회장인 신청외 안 등이 미화주택 및 미화개발 등의 명의로 발행한 막대한 액수의 당좌수표 및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제주경찰서장은 1995. 8. 21. 이와 관련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배임 등 사건의 수사발표를 하면서 위 안 등이 신청인 명의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액면 합계 금25억 3,100만원을 발행, 제2금융권 및 사채업자 등에 할인 후 미화주택의 자금으로 이를 유용하였다는 내용도 아울러 발표한 사실, 그러나 신청인 명의로 발행된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액면 합계금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이를 모두 결제, 지급함으로써 부도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피신청인은 1995. 8. 22. 위 경찰수사발표에 기하여 이 사건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미화부도 3백39억』이라는 제목하에 『미화주택 개발 2백51억원, 제민일보도 25억 3천만원』이라는 소제목을 덧붙이고, 본문에 「제민일보 명의로도 당좌와 어음 25억 3천1백만원을 발행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 위 안 가 미화주택 및 신청인 회사의 전(前)회장인 점은 제주지역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 각 소명되고 반증은 없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본문기사에는 신청인의 부도사실은 명시되지 않고 다만 위 안 가 신청인 명의의 당좌수표 및 어음을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위와 같이 『미화부도 3백39억』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민일보도 25억 3천만원』이라는 소제목이 게재됨으로써 제주지역에서는 위 소제목 내용에 의하여 마치 신청인 회사 또한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오인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제주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명예나 사회적 신용도 등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

주신문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첫째 이 사건 기사는 제주경찰서장의 발표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된 것일 뿐 피신청인이 이를 왜곡하여 보도한 바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소정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둘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의 본문에서 소제목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위 인정과 같이 「제민일보 명의로도 당좌와 어음 25억3천1백만원을 발행해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 회사에 부도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직접적으로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그 이후인 1995. 10. 25.자 제주신문에서 미화사건과 관련된 부도내역을 밝히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청인 회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일자의 한라일보 등 타 일간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면서 신청인 회사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이 미화부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제주지역에서는 간접적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신청인으로서는 더이상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신청인이 제주경찰서장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제주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제주신문의 사실에 관한 보도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첫째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다음으로 소을 제21호증(1995. 10. 25.자 제주신문, 소갑제5호증의 4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95. 10. 25. 미화부도와 관련된 기사를 마무리 형식으로 게재하면서 부도내역 중 신청인 관련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그 기사내용은 미화부도내역을 개괄적으로 밝힌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사람들 다시 위 1995. 10. 25.자 기사를 읽었다 하여도 과연 시청인 회사에 부도가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다른 신문기사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위 1995. 10. 25.자 기사나 타 일간지의 기사 등으로 이 사건 기사가 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여전히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둘째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정정보도문의 내용

한편, 정정보도의 내용은 위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이외에 『제민일보측에 사과』라는 내용의 가로

20cm, 세로 6.5cm의 표제컷을 그 상단에, 그리고 0호 고딕활자(제민일보 기준)의 『부도오해 소지 5단 제목 사건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내용의 세로 5단 크기의 부제를 그 우측 하단에 각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또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내에 『본지 1995. 8. 22. 미화부도에 관한 보도 중 제민일보가 부도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4호 고딕활자(제민일보 기준)의 소제목도 아울러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나, 이 사건 기사의 제목, 게재부위 및 본문활자의 크기, 전체기사의 내용, 그리고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위 정정보도문 이외에 신청인 주장의 위 표제컷이나 부제를 게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정정보도문 자체의 내용 중에서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 외에 따로 소제목을 게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외에 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내용으로서 피신청인의 보도가 '잘못된' 보도임을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반론 내지 반박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가치판단적 내용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반론권 내지 반박권의 범위를 벗어난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부위

이 사건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정정보도문은 제19면의 기사란 중 좌측 중단부에 세로는 3단의 크기로, 가로는 10cm 범위 내의 크기로 한 사각 테두리를 만들어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우측 부분에 세로로 22포인트 명조체활자로,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은 그 밖의 여백에 본문활자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5.

재판장 판사 정 장 오
판사 홍 지 욱
판사 이 규 진

〈별지 1〉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5. 8. 22. 제19면에 『미화부도 339억』이라는 제목과 『미화주택 개발 2백51억원, 제민일보도 25억 3천만원』이라는 소제목 아래 미화개발 등 부도사건에 관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수사발표에 의하더라도 위 25억 3천만원은 미화주택 전 회장 안 가 제민일보명의로 발행하여 사용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액면 합계금일 뿐이고 주식회사 제민일보의 부도액수는 아님이 명백한 바, 본지는 기사본분에 같은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였으나, 청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 위 액수에 관하여 기사본문의 내용과는 다소 다른 표현의 소제목을 게재함으로써 마치 주식회사 제민일보에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조지가 있는 표현의 소제목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제민일보의 정정보도심판청구에 따른 제주지방법원 95카기351호 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는 바이다.

정정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제민일보

〈별지 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본지 1995. 8. 22. 미화부도에 관한 보도 중 제민일보가 부도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본지는 1995. 8. 22.자 사회면 머릿기사에서 『미화부도 3백39억』이라는 컷과 『미화주택 개발 2백51억원, 제민일보도 25억 3천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미화개발 등 부도사건에 관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발표 자료를 보면 미화주택이 제민일보 명의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등 합계 25억 3천1백만원을 발행, 유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 25억 3천만원은 미화주택 안 회장이 제민일보에 진 부채로서 현재 청산절차가 종료된 것인 바, 이상과 같은 보도로써 마치 제민일보가 발행한 당좌 및 어음이 부도가 난 것으로 일반의 오해를 받는 등 물의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민일보는 지금까지 전혀 부도가 발생한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지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주식회사 제민일보의 명예와 신용도가 손상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제민일보 □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또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벗어난 것이어서 그 게재를 허용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1996. 3. 14.자 결정 (95라216)
서울지방법원 1995. 11. 16.자 결정 (95카기5283)

事實槪要

서울고등법원 제 16민사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996년 3월 14일 미전향 장기수였던 김　　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심판 항소심에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며 당국의 전향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향제도 자체의 논리적 전제상의 오류와 수단상의 폭력성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남로당에 가입한 것은 해방 후 친일파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신청인은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신청인이 남로당원으로서 6 · 25 전쟁 당시 인민군 병사로 철원지구를 정찰하다가 포로가 되어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전향을 거부하였고 가석방 직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사실 등과는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의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또한 사실상의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 아니라 전향제도

에 대한 신청인의 일방적 이해와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관적인 주장 및 비판에 불과하므로, 결국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또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벗어난 것이어서 그 게재를 허용할 수 없다' 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기사를 논평으로 볼 수 있으나 논평에 있어 전제로 삼거나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사실에 관한 서술임이 분명하고 또 그 중 신청인이 적화통일을 꿈꾼다는 부분은 필자의 추측처럼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적 주장에 있어서의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 ·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가능성의 추측 또는 암시와 의문의 제기도 사심없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사실상의 시인적(是認的)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표현 역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파악하면 이를 사실상의 시인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며 기사 중 일부는 신청인에 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995년 8월 17일자 2면 '기자수첩' 란에 『'공산주의자' 사면』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세계최장기수로 특별사면된 신청인이 '골수 공산주의자' 이며 신청인이 꿈꾸는 조국통일은 '적화통일' 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고(95서울중재228) 중재결과 피신청인 측이 " '신청인이 공산주의자' 라는 용어와 '적화통일의 꿈' 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정법상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므로 보도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됐다.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문제된 기사가 '사실적 주장' 이 아니라고 하여 기각됐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2심 決定文

사 건 : 95라216 정정보도심판

신청인, 항고인 : 김

서울 관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신청인, 피항고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원심결정 : 서울지방법원 1995. 11. 16.자 95카기5283 결정

주 문 :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일간 조선일보에 별지 제 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피신청인의 신문기사 게재

피신청인은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로서 그 발행 1995. 8. 17.자 조간 2면 오른쪽 하단부분의 '기자수첩' 이라는 란에 "「공산주의자」사면"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최장기수」라는 김 가 특별사면으로 광복절에 43년 10월의 형기를 끝내고 대전교도소 문을 나섰다. 26세 때 철창에 들어갔다가 고희가 돼서야 푸른 수의를 벗게 된 그의 삶은 새삼 분단조국의 아픔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씨의 출소를 감상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뭔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씨는 「전향」을 거부,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한 골수 공산주의자이다. 남로당원이던 그는 9 · 28 수복 후 인민군과 함께 월북한 뒤 51년 10월 인민군 31사단 정찰대 소속으로 철원지구를 정찰하다 포로가 됐다. 이후 간첩죄가 추가돼 53년 4월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음해 2월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인물이다. 그의 말대로 『73년 박정희정권이 폭력배와 한 방에 몰아넣은 뒤 그들로 하여금 폭력을 사용케 하면서 전향을 요구했을 때도 이를 거부했다』고 할 만큼 그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남기를 고집했다. 하지만 그가 애타게 그리고 있을 북한에는 아직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년째 강제 억류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숱하게 있다. 가까이는 순복음교회 안 목사와 동진27호 납북선원부터 69년 KAL기 납치사건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가족과 조국을 그리며 피눈물을 삼키는 억류인사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발표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사실이 알려진 전 수도여고 교사 고 씨 가족의 애틋한 사연이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린 게 바로 1년 전의 일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과 노르웨이를 통해 고씨의 송환 협조를 요청했지만 북은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일 뿐이다. 정부가 끝내 전향을 거부하는 이 공산주의자를 광복 50주년의 대화합 정신에 맞춰 석방했을 때 북한은 과연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출소한 김씨는 꽃다발을 목에 건 채 『여생을 조국통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해 힘쓰는 젊은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가 꿈에도 그리는 「조국통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자신이 44년

간 0.7평 독방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적화통일」이 그의 꿈이 아닐까. 그런 그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심지어 남아프리카의 만델라와 비교하면서 「민주화의 영웅」인 양 치켜세우는 분위기다. 오늘밤에도 납북자들의 생사여부조차 모른 채 베갯잇을 적시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다. 이들의 아픔에 대해 김씨는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지…"라는 내용의 신청인의 가석방에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존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95. 12. 30. 법 제 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 16조 제1항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등에 의한 보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적 주장의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고 논평 등의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기사가 과연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기사는 ① 그 첫머리에 신청인의 가석방을 보는 필자의 느낌을 대체적으로 표현한 부분과 ② 이른바 '미전향 장기수' 였던 신청인의 과거 사상 및 행적을 열거한 부분, ③ 신청인을 가석방한 우리정부의 조치와 대조하여 북한당국의 납북자에 대한 태도를 소개한 부분, ④ 신청인이 가석방 후 표명한 조국통일 및 보안법폐지에 관한 결의와 신청인의 석방을 환영하는 사회일각의 분위기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 및 ⑤ 마지막으로 납북자 가족과 신청인의 처지를 대비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 중 ① 글 첫머리의 신청인의 가석방을 보는 필자의 느낌을 표현한 부분, ③ 북한당국의 납북자에 대한 태도를 소개한 부분, ④의 신청인의 석방을 환영하는 사회일각의 분위기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 및 ⑤ 납북자 가족과 신청인의 처지를 대비한 부분 등은 그 대체적인 내용이 신청인의 가석방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미전향 장기수에 대한 정책과 북한당국의 납북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신청인의 가석방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분위기 등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와 의견을 피력한 것이어서 이를 논평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신청인의 과거 사상 및 행적을 열거한 부분과 신청인의 가석방 후 통일 및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고 언급한 부분, 즉 "김씨는 「전향」을 거부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한 골수 공산주의자이다. 남로당원이던 그는 9 · 28 수복 후 인민군과 함께 월북한 뒤 51년 10월 인민군 31사단 정찰대 소속으로 철원지구를 정찰하다가 포로가 됐다. 이후 간첩죄가 추가돼 53년 4월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음해 2월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인물이다. 그의 말대로 『73년 박정희정권이 폭력배와 한 방에 몰아넣은 뒤 그들로 하여금 폭력을 사용케 하면서 전향을 요구했을 때도 이를 거부했다』고 할 만큼 그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남기를 고집했다" 및 "전향을 거부하는 이 공산주의자"라

는 부분과 "출소한 김씨는 꽃다발을 목에 건 채 『여생을 조국통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해 힘쓰는 젊은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가 꿈에도 그리는 「조국통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자신이 44년간 0.7평 독방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적화통일」이 그의 꿈이 아닐까."라는 부분은 비록 위와 같은 논평에 있어 전제로 삼거나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사실에 관한 서술임이 분명하고 또 그 중 신청인이 적화통일을 꿈꾼다는 부분은 필자의 추측처럼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적 주장에 있어서의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 ·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가능성의 추측 또는 암시와 의문의 제기도 사심없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사실상의 시인적(是認的)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표현 역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파악하면 이를 사실상의 시인적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기사 중 위와 같은 내용은 신청인에 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법률 제1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과 개별적 관련성이 있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정보도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며, 한편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함은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며 당국의 전향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향제도 자체의 논리적 전제상의 오류와 수단상의 폭력성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남로당에 가입한 것은 해방 후 친일파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신청인은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나, 우선 신청인이 위 기사 내용에 대응하여 게재를 구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전제 또는 그 내용의 골격을 이루는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신청인이 남로당원으로서 6 · 25전쟁 당시 인민군 병사로 철원지구를 정찰하다가 포로가 되어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전향을 거부하였고 가석방 직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사실 등과는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외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또한 사실상의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 아니라 전향제도에 대한 신청인의 일방적

이해와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관적인 주장 및 비판에 불과하므로, 결국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또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벗어난 것이어서 그 게재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이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14.

재판장 판사 황 인 행
판사 허 근 녕
판사 조 해 현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송달 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 제2면 오른쪽 하단, 광고지면 바로 위에 별지 제2목록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정정보도문은 이중의 검은색 사각형 테두리를 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공산주의자 사면 관련 정정보도문"으로 하되 3급 고딕활자로, 나머지 본문은 본문활자로 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목록〉 (정정보도문)

제 목 : 공산주의자 사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5. 8. 17.자 1년 기자수첩에 『공산주의자 사면』 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골수 공산주의자」 이며, 신청인이 꿈꾸는 조국통일은 「적화통일」이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 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신청인은 지난 43년 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였다. "전향제도"란 인간의 내면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두 가지로 나눈 다음, "공산주의"는 절대

악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절대선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절대악은 북한을, 절대선은 남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가 "좌익수"로 분류한 재소자들을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단정한 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향제도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분법으로 시작하는 논리적 전제부터, 각 단계의 논리전개와 결론 모두가 잘못된 것으로서 실제로 복잡·다기한 사람의 내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재단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과 악으로 나눔으로써, 악으로 규정된 사람, 즉 전향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절대악"으로 규정하여 무제한의 폭력을 가할 수 있게 하는 흑백논리이며, 또한 폭력의 논리이자 관행이다.

신청인은 이처럼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흑백논리에 의하여 "이것 아니면 저것"하는 식으로 재단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현실정치에서 대립되는 두 가지 가치관을 하나는 절대선, 다른 하나는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것도 반대하며, 대립하는 두 개의 사회 중 한쪽은 절대선을 대표하고 다른 쪽은 절대악을 대표하는 주장에도 동조할 수 없었다. 또한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사람의 양심을 폭력에 의하여 바꾸려 하는 생각 자체에 반대하여 전향을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다시 권력을 잡고 독립운동가들이 미군정과 친일파들의 박해를 받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로당에 가입하였으며 전쟁 중 인민군에 가담하였다가 포로로 붙잡혔다. 신청인은 전쟁 전에는 물론 43년 10개월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공산주의에 관하여 공부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였으며 가족과의 면접은 커녕 책이나 신문도 보지 못하였고 심지어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조차 금지당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흑백논리와 그것이 기반을 두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는 폭력의 논리가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청인은 남북이 이러한 흑백논리에 기반한 폭력대결의 지양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룸으로써 더 이상의 비극이 없기를 지금까지 기원하였고 지금도 그렇기를 바랄 뿐이다.

정정보도청구인 김

1심 決定文

사 건 : 95카기5283 정정보도심판

신 청 인 : 김
서울 관악구

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장원찬, 최승인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기사는 그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정정보도의 내용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비평, 논평 등 의사표현 내지 가치판단에 관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나, 사실적 진술이 아닌 의사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는 이른바 논평기사로서 신청인의 석방사실을 전제로 하여 정부의 장기수에 대한 정책, 이에 대한 사회일각의 분위기, 납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 등에 대한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 내지 가치평가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도 전향제도에 대한 비판,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 등 신청인의 주관적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적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사의 논평내용의 당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16. □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취재원이 보도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어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6. 3. 26.자 판결 (95카합1209)

事實槪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 2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1996년 3월 26일 포항제철이 경북매일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판결에서 '취재원인 최 교수가 보도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되어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며 정정보도게재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이 일부 정정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 교수의 이의에 의한 것이고 그 정정보도 내용에 비추어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고 밝혔다.

경북매일신문은 1995년 10월 8일자 1면 『영일만 해저에 청산가리층』 제하의 기사에서 '포철을 비롯한 연관단지에서 배출된 청산가리가 영일만 바닥에 10cm 두께로 퇴적층을

형성하면서 각종 어장을 황폐화시켰고 맹독성 적조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는 내용을 동국대 최'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한 바 있고 1995년 10월 10일자 1면에는 『영일만 해저 오염실태 조사촉구』라는 제목으로 해당지역의 피해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신청인 포항제철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95대구중재8),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보도내용은 동국대 최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이러한 최교수의 주장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정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었다.

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5카합1209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대표이사 김 , 김
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북매일신문(慶北每日新聞)
포항시 동빈로 1가 60의 14
대표이사 이승완
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경북매일신문 제1면의 기사란 중 좌측상단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본문기사 제목활자 크기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의 성명은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정정보도문의 위치를 제1면의 우측상단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별지 제2 기재와 같이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경북매일신문의 1995. 10. 8.자(제1512호) 1면인 중앙 상단 부분에 『영일만 해저에 청산가리층』이라는 제목으로 "영일만 일대에서 최근 우렁쉥이(멍게)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영일만 해저에 청산가리층과 무산소층이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최 동국대 자연과학대학장이 발표한 영일만 생태연구논문 결과에서 드러났다. 최학장은 이 논문에서 포철을 비롯한 연관단지에서 배출된 청산가리가 현재 영일만 밑바닥에서 10㎝두께로 퇴적하여 거대한 청산가리층을 형성하면서 5~6m의 크기의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십년에 걸쳐 각종 어패류가 잇따라 폐사했고, 원인을 모르는 가운데 어장과 양식장이 황폐화됐다고 주장했다. 최학장은 특히 보름째 경북 동해연안 양식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맹독성 적조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근 경북 동해연안 적조가 코클로디니움균에 이어 세라미움풀카균이 합세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철강생산시 온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청산가리 사용이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또 1995. 10. 10.자(제1513호)1면인 중앙 부분에 『영일만 해저 오염실태조사 촉구』라는 제목으로 "속보=영일만 해저에 청산가리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퇴적되면서 거대한 무산소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정밀 오염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9일 최 동국대 교수와 박 박사(환경연구소)는 영일만 해저에 형성된 중금속층과 무산소층이 이번 적조와 무관치 않다고 재차 지적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오염실태 조사를 벌여 어민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철 관계자는 영일만 해저 오염에 따른 어민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피신청인은 12면을 일간으로 발행하여 오다가 1995. 3. 1.경부터는 16면으로 증간하여 경상북도 일원에 배포하여 온 신문사이고, 신청인은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루지 않는 사실이고, 소갑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 의 증언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보도내용에 대하여 최 동국대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자 1995. 12. 3.자 제2면에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동국대 최 교수의 논문을 인용, 청산가리 퇴적과 맹독성 적조와는 무관치 않다는 보도는 적조와 청산가리는 무관한 것으로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지인 경북매일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로 말미암아 그의 법익에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담은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위 기사내용은 모두 피신청인 신문사 소속 기자들인 신청외 김 , 김 이 위 최 교수와의 대담을 기초로 한 것으로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며, 위 최 교수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다고 하여 그 말을 사실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1995. 10. 8.자 보도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소명자료로는 위 김 , 김 이 위 최 교수와의 대담 내용을 메모한 소을제1 내지 3호증 및 위 김 , 김 의 사실확인서로서 소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그리고 증인 김 의 증언이 있으나 위 자료들은 모두 위 최 교수가 위 보도내용과 같은 논문을 준비하거나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나 앞서 판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스스로 위 최 교수의 이의를 받아들여 청산가리 퇴적과 적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정보도를 하였음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보도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거나, 위 최 교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 반면에, 소갑제4호증, 소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최 의 증언 및 이 법원에서의 소외 최 환경정책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최 동국대 교수는 위 김 , 김 기자와의 인터뷰 및 전화대담에서, ① 영일만 생태계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해역에 대한 미 발표내용을 언급한 것이고, ② 포철을 비롯한 연관단지에서 배출한 청산가리가 영일만 밑바닥에서 10㎝두께로 퇴적되어 있다고 대답한 적은 없고,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에서 배출된 유기오염 물질인 기름, 구리 등 중금속이 발견되었다고 했을 뿐이며, ③ 포철 및 그 연관단지에 철강 생산시 온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청산가리가 영일만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고, ④ 맹독성 적조와 위 청산가리층의 퇴적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위 생활오수 등에서 배출된 구리, 아연 등 중금속과 적조와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의 위 1995. 10. 8.자 보도로 인하여 마치 신청인이 청산가리를 배출함으로써 영일만에 청산가리 퇴적층을 10㎝정도나 형성시켜 어장과 양식장을 황폐화시키고 맹독성 적조를 유발시킨 것으로 독자들에게 인식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법익에 상당한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

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단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최 교수가 위 보도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되어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5. 12. 3.자로 일부 정정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최 교수의 이의에 의한 것이고 그 정정보도 내용에 비추어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1995. 10. 10.자 보도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포철관계자는 영일만 해저오염에 따른 어민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 보도한 내용이 오도된 사실을 근거로 어민 피해보상까지 언급하여 보도한 것을 자칫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신청인 회사의 관계자를 인용보도한 부분은 신청인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용, 제재한 것으로 신청인 회사의 관계자가 청산가리 배출 등 오염원인 제공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포철관계자가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보도한 것이 반드시 포철관계자가 영일만 해저 오염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만 국한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신청인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자칫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부분은 위와 같은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신청인 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 회사 관계자를 인용보도 하였고, 청산가리 배출 등 오염원인 제공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부분도 피신청인이 지역 일간신문을 발간하는 언론매체의 자격으로 신청인 회사 관계자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와 같은 1995. 10. 10.자 피신

청인의 보도내용에서 위 1995. 10. 8.자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위 정정보도청구는 반론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별지 2기재 내용 중 앞서 배척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 1기재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 위치와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이 실렸던 면수와 그 위치, 글자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참작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방법과 위치 및 크기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6.

재판장 판사 황 성 재
판사 이 인 규
판사 이 담

〈별지 1〉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5. 10. 8.자 1면 『영일만 해저에 청산가리층』라는 제목 하의 기사에서 '포철과 연관단지에서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되고 배출된 청산가리가 영일만 바닥에 10㎝두께로 퇴적층을 형성하면서 각종 어장을 황폐화시켰고 맹독성 적조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는 동국대 최 교수의 논문을 인용한 바 있고, 1995. 10. 10.자 1면 『영일만 해저 오염실태 조사촉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위와 같은 피해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최 교수가 포철에서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된 청산가리가 영일만에 배출된다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포철에서 청산가리를 배출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영일만 바다에 10㎝두께로 청산가리층이 형성되었다거나 이것과 맹독성 적조와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청산가리층의 형성과 맹독성 적조와의 관계에 대

하여도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정정보도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신청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별지 2〉 정정보도문

본 지는 1995. 10. 8.자 1면 『영일만 해저에 청산가리층』제하의 기사에서 '포철과 연관단지에서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되고 배출된 청산가리가 영일만 바닥에 10센티 두께로 퇴적층을 형성하면서 각종 어장을 황폐화시켰고 맹독성 적조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는 동국대 최 교수의 논문을 인용한 바 있고, 1995. 10. 10.자 1면 『영일만 해저 오염실태 조사촉구』 제하의 기사에서 최 교수 등과 포항시의 사회단체와 포항시의회, 시민 등이 피해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과 포철 관계자가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겠다' 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철은 생산공정 중에 청산가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방류수에도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그로 인해 어장과 양식장이 황폐화되었고 맹독성 적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보도와 동국대 최 교수의 논문내용과 주장을 게재한 부분도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도된 사실을 근거로 어민 피해보상까지 언급하여 보도한 것을 자칫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었으며, 포철관계자가 인용 보도한 부분은 본지에서 포철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용, 게재한 것으로 포철관계자가 포철의 청산가리 배출 등 오염원인 제공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혀둡니다.

정정보도신청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보도와 신청인 정당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으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평가'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서울지방법원 1996. 5. 27.자 결정 (96카기2195)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5월 27일 새정치국민회의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96. 3. 16.자 기사의 내용은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인 김대중씨가 과거 민주당 대표로 재직하던 때에 발생한 일을 기사화한 것에 불과할 뿐 신청인 정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기사는 아니므로,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보도기사와 신청인 정당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3. 18.자 기사에서 소제목을 〈'공천헌금' 국민시선 부담감〉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회의가 시국강연회를 취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취소이유나 배경을 기자 나름대로 분석평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실적 주장'이 아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의 본문보도에서 국민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시국강연회를 취소하였다는 신청인측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어 위 소제목 부분 기사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입장이 충분히 언급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신문사는 1996년 3월 16일 1면 『DJ 14代 공천 1백30억 받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14대 총선시에 공천당비 130억원 중 일부를 김대중 총재가 유용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고 같은 달 18일 『野, '時局 강연회' 돌연 취소』라는 대제목과 『선관위 강력대응 · 유

권자 거부감 의식, '공천헌금' 국민시선 부담감, 국민회의 취소 이어 민주도 오늘 결정』이라는 소제목으로 국민회의가 공천헌금이 폭로되자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의식하여 시국강연회를 취소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1996. 3. 23.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96서울중재82), 중재결과 불성립되자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6카기2195 정정보도

신 청 인 :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의 31 한양빌딩 4층
대표자 총재 김대중
대리인 변호사 박상천, 추미애, 이성재, 천정배, 유선호, 신기남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손주환
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서울신문 1996. 3. 16.자 기사에 관하여

위 기사의 내용은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인 김대중 씨가 과거 민주당 대표로 재직하던 때에 발생한 일을 기사화한 것에 불과할 뿐 신청인 정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기사는 아니므로,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위 보도기사와 신청인 정당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 정당은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선거시기에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 개인에게 마치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던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하여 신청인 정당이 법률상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정당의 직무집행과도 무관한 대표자 개인에 관한 그와 같은 기사로 인해 신청인 정당의 이미지가 사실상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사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대표자 개인이지 신청인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 정당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서울신문 1996. 3. 18.자 기사에 관하여

위 기사는 〈야, '시국강연회' 돌연 취소〉라는 대제목 하에 〈선관위 강력대응 · 유권자 거부감 의식, '공천헌금' 국민시선 부담감, 국민회의 취소 이어 민주도 오늘 결정〉이라는 소제목으로, 새정치국민회의가 시국강연회를 취소하였음을 보도하면서, 본문 기사로 〈…공천헌금 폭로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자칫 유권자로부터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는 …선관위가 김대중 총재에게 보낸 시국강연회 자제요청 공문에 대한 당의 방침을 논의, …장외 시국강연회를 모두 취소키로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시국강연회를 선관위의 경고를 받아 들여 이종찬 의정보고회로 이름을 바꿔 개최했다. …국민회의 이해찬 단장은 "시국강연회가 위법이라는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해석은 정당의 정상적인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잘못된 견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강연회를 취소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위 제목들과 본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대제목과 관련한 소제목인 〈'공천헌금' 국민시선 부담감〉이라는 부분은 국민회의가 시국강연회를 취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취소 이유나 배경을 기자 나름대로 분석평가한 기사라고 할 것이어서 위 소제목 부분은 '사실적 주장'이 아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소제목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의 본문보도에서 국민회의가 시국강연회를 취소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취소하였다는 신청인측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어 위 소제목 부분 기사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입장이 충분히 언급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위 소제목 부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27. □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그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6. 6. 12.자 결정 (96카기2442)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6월 12일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종로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 씨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기사에 대하여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 고 하며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중 '사건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입었다' 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허용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1996년 4월 11일자 『법정선거운동 16일 …이색기록들』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 '당선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정치가 너무썩어서 이번 기회에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나니 속이 시원하다' 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6년 4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6서울중재94).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기사내용은 신청인 부인과 직접 전화통화한 내용들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 신청인

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6카기2442 정정보도

신 청 인 : 김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京鄕新聞社)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안 신 배

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김성용, 김 훈, 김태영, 김동하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되는 일간신문 '경향신문'의 제21면 우측 상단 부분에 가로 5cm, 세로 6.5cm의 크기로, 그 상단에는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활자로,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각 가로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일간 경향신문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제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1항의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1996. 4. 11.자 제21면 우측 상단 부분에 『법정 선거운동 16일… 이색기록들』이라는 제목 아래 제15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박스기사가 게재된 사실, 위 박스기사 중의 일부로서 "당선과는 무관한 기록을 주장하는 후보도 있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 후보는 선거운동원이 부인인 이 씨(42) 단 1명. 김(金)씨가 홍보물을 붙인 봉고차를 타고 유세를 벌이는 동안 부인 이(李)씨는 봉고차를 개조해 만든 선거사무실에서 전화기 2대로 선거운동을 벌였다. 김(金)씨는 '당선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며 '정치가 너무 썩어서 이번 기회에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고 밝혔다" 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위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정정보도의 내용으로서는 위 기사에 대한 반론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별지 제3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 중 위 인정한 반론문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신청인의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 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인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2.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여 훈 구
판사 신 광 렬

〈별지 1〉 반론보도문

1996. 4. 11.자 경향신문 제21면에 "종로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　　국회의원 후보는 '당선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고 밝혔다" 는 요지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본 신청인은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세장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바도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김

〈별지 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되는 일간신문 '경향신문' 의 제1면 상단 부분에 별지 제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3회에 걸쳐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3〉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반 론 문

지난 1996. 4. 11.자 경향신문은 제21면의 『법정선거운동 16일 …이색기록들』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의 선거운동원이 신청인 본인의 부인 李　　단 1명 뿐이며, 봉고차를 개조해 만든 선거사무실에서 전화기 2대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신청인 본인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당선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정치가 너무 썩어서 이번 기회에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전부 허위입니다. 신청인은 위 기사를 작성한 박　　기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유세장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신청인은 명예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번 총선에 낙선하는 피해를 입게 되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종로구 무소속 후보 기호 7번 김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1인이 언론중재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피해자는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신청인의 반박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6. 27.자 결정 (96카합999)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1996년 6월 27일 부안군수인 강　　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심판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결정했다.

한국방송공사는 1996년 2월 3일 07:00 KBS 제1텔레비전의 『KBS 아침 뉴스의 광장』 프로그램 중 전주권 뉴스부분에서 「부안군은 이미 승인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설계비와 보상비가 투입된 국도개설도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가뭄대책사업비의 국고지원도 군수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 강　　은 기왕의 도시계획이 국립공원 등 주변 여건을 고려치 않아 전면 재검토한 것이며, 시행 중인 국도개설은 도심과 공원을 양분하는 등 생활환경에 적절치 못해 주민의 진정에 따라 공사를 중지한 상태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변론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를 신청한 자는 강　　개인인데 이 사건 청구에 앞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안군일 뿐 신청인은 언론중재절차를 경유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신청인의 입장이 아닌 부안군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므로 보도 관련성을 결여한 부당한 청구이며 그 내용도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의 1인이 중재절차를 경유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재고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절차에서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다른 피해자가 정정보도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다시 똑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를 넘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나머지 피해자는 위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정정보도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군수로서 신청인이 군정을 수행했다는 반박내용으로 보여지므로 보도관련성이 없다는 피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 또 「신청인의 주장내용이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신청인의 반박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라고 결정했다.

이 기사가 보도되자 지난 1996년 3월 2일 부안군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측에서 「민선군수의 공약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주민의 제보로 현장 취재한 것이므로 사실보도」라며 정정보도를 거부, 사건이 불성립되자(96전북중재5) 신청인은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96카합999 정정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강
전북 부안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주 교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방송되는 KBS 제1텔레비전 『KBS 아침 뉴스의 광장』 프로그램의 중간 부분에 텔레비젼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5일의 기간 내에 위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

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KBS 제1텔레비전의 1996. 2. 3. 07:00 『KBS 아침뉴스의 광장』 이라는 프로그램 중 전주권 뉴스부분에서 『자치단체 행정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라는 제목 하에 「민선군수가 출범한 뒤로 부안군의 굵직한 개발사업 대부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선군수의 독주에 군의회나 군민들의 견제마저 미약하기 때문에 표류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라는 앵커의 소개 다음에 KBS의 기자가 「8만4천명의 부안군, 새정치국민회의의 강 군수체제를 출범시켰지만 오히려 민선권위주의의 행적이 뚜렷합니다. …부안군은 지난 94년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완성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고도 지난해부터 또 다시 2,900만원을 들여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부안읍 중심에서 벗어나 군수 출신지인 행안면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처입니다. 5년마다 재검토하는 관례를 무시한데다 주민의 여론수렴조차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지방국토관리청은 20여억원의 설계비와 보상비를 투입한 국도 23호선의 부안읍 우회도로 개설도 부안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공사 중단상태, 가뭄대책 사업비 3억4천여만원의 국고지원도 물거품, 군비 부담능력이 없다는 군수의 소극적 태도 때문입니다. …부안군수의 독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보수소방수로서 부안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장을 일방적으로 해임시켜 80명의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군의회 견제기능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과 같이 하자면, 민선군수의 독주는 지역의 갈등과 낙후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부안군 도시과장이나 해임된 의용소방대장과의 인터뷰 장면과 함께 방영한 사실, 신청인은 1995. 6. 27. 실시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같은 해 7. 1.부터 부안군수의 직을 수행해 오고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2. 판단

가. 위 방송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를 신청한 자는 강 개인인데, 이 사건 정정보도심판청구에 앞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신청외 부안군일

뿐 신청인은 언론중재절차를 경유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송법 제42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기에 앞서서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구제의 기회를 부여하고, 언론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전문성도 살리면서 언론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재고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며, 미리 쟁점을 정리하여 법원의 심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의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인 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의 1인이 중재절차를 경유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재고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절차에서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다른 피해자가 정정보도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다시 똑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필요를 넘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는 나머지 피해자는 위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정정보도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부안군은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의 여론수렴조차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안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공사 중단 상태」 「…군수의 소극적 태도 때문입니다. 부안군수의 독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등 신청외 부안군의 군정과 신청인에 대한 사실적 표현과 평가를 함께 보도하였으므로, 위 부안군과 신청인은 모두 위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동일한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위 두 피해자 중 부안군이 중재절차에서 이 사건 정정보도심판청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중재절차에서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정정보도심판청구를 하면서 다시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신청인의 입장이 아닌 부안군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므로, 보도관련성을 결여한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보도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은 신청인이 부안군수로서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같이 군정을 수행했다는 반박내용으로 보여지므로, 보도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문안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는 방송기관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동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상의 용어와는 달리 어떤 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그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그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반론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보도 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이를 보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의 전파는 사회 공익에도 반하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누구든지 언론기관에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구하는 반박문의 주장내용이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신청인의 반박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명한 기간 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그 외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거나 위 1일 금 10,000,000원의 범위를 넘어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7.

재판장 판사 심 명 수
판사 최 종 길
판사 윤 태 호

〈별지 1〉 반론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1996. 2. 3. 『KBS 뉴스광장』에서 『부안군 표류』라는 제목하에 「94년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만에 재검토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가 강 군수가 예산을 낭비하고, 국도 23호선의 부안읍 우회도로 개설도 부안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가뭄대책사업비 3억4천만원의 국고지원도 군수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고, 무보수 의용소방대장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해임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부안군수는, 부안군의 남서쪽 지역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기존의 국립공원 변산반도, 변산해수욕장 등도 부안군의 남서쪽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데도 기왕의 도시기본계획이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위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것이며, 국도 23호선은 변경계획된 노선이 도심과 서림공원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를 양분하는 등 적절치 못하여 그에 대해 부안군민 2만7천여명이 선형변경을 요구해 오므로 이리 국토관리청에 그 선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또한 3억4천여만원의 가뭄대책비는 이를 지원받게 되면 같은 금액의 군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바, 그것보다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 부안댐 온라인 사업과 연계하는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되어 위 가뭄대책비 지원금을 반납한 것이며, 의용소방대장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해임하고 후임 의용소방대장을 임명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별지 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본 방송 1996. 2. 3. 『KBS 뉴스광장』에서 방영한 『부안군 표류』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부안군은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대비하여 부안군의 발전방향에 관해 정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서해안에 인접한 부안군은 남서쪽 지역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올해 완공예정인 부안댐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기존의 국립공원 변산반도 및 변산 · 격포 · 상륙 · 고사포 · 해수욕장과 묵정온천이 자리잡고 있어 향후 부안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현재 부안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그 타당성 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부안군에서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군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부안군은 부안 - 김제간 국도 23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심을 관통하는 현재의 선형을 바꿔 도심을 우회하여 시행해 줄 것을 수차 이리 국토관리청에 요청하였으나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는 당초의 도시계획선대로 공사를 강행하여 왔습니다. 부안군은 당초 계획대로 국도가 포장될 경우 부안읍 유일의 서림공원이 훼손되고 심한 소음과 공해가 유발되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리 국토관리청에 서림공원을 우회하여 국도가 건설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여 왔습니다.

부안군민 2만7천여명도 작년 11월 관계당국에 선형변경을 요청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부안읍 우회도로 공사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부안군민의 공사 우회건의와 동절기인 관계로 일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한편 부안군은 열악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군비 지출없이 전액 국고부담으로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당장 급하지도 않은 3억4천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경우 같은 금액의 군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그것보다는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가뭄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환경부에 농특세 162억원,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55억원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곧 완공될 부안댐 온라인 사업과 연계하는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주식회사 변산온천으로부터 지난 1월 12일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받고 6일만인 1월 18일 이를 허가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도로점용완공과 함께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부안군은 1994년말로 임기가 완료된 군내 의용소방대장에 대하여 1995년 9월 1일 임기만료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였고 후임 의용소방대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부안군은 강　　민선군수가 취임한 이후 군민들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들을 부안군의 실정과 능력에 맞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군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

Ⅱ. 손해배상청구사례

원고가 폭력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사건방송의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작방해를 한 듯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8. 3.자 판결 (94가합14378)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1995년 8월 3일 서울신문 문화부 기자인 박 씨가 한국방송공사와 「사건 25시」 담당 프로듀서 조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이 사건 방송부분이 그 내용 자체는 정확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방송보도는 쌍택이파라는 폭력조직과 무언가의 연관을 갖고 있는 원고가 그 폭력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이 사건 방송의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작방해를 한 듯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방송은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래 방송에 대하여는 방송이 다른 언론매체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그 전파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한 점을 고려하여 방송법은 방송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법 제4조 제3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같은법 제5조 제1항)고 규정하여 그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시청각 효과가 동시에 수반되는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이 사건 방송과 같은 이른바 사회고발 프로그램 내지 탐사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언론고유의 환경감시기능을 통하여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척결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시청자들의 깊은 신뢰가 형성되는 반면 그 제작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우려가 있고, 한편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른바 기획프로그램이어서 속보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사전에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오보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다른 언론매체보다 사전에 방영,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실성의 확인에 대하여 훨씬 무거운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방송의 내용은 단순한 추측에 의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 판시했다.

한국방송공사는 1994는 7월 12일 20:00시 KBS-1TV 「사건 25시」 프로그램에서 『조직폭력! 텍사스의 황제』라는 제목으로 서울 미아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박 이 두목으로 있는 쌍택이파라는 폭력조직의 범죄행각을 주제로 삼아 범죄조직의 활동을 상황재현하는 형식으로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의 중간부분에 제작중단과 방해의 한 사례로 신청인이 마치 수배자 박 의 동생으로서 촬영대본을 훔치고 제작진을 협박한 것처럼 묘사했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가(94서울중재167) 취하했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4가합14378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서울 마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재호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두표

2. 조

같은 번지 한국방송공사내 TV(티브이)제작1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김정은

변론종결 : 1995. 7. 20.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7. 2.부터 1995. 8. 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7.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내지 5, 갑2호증의 1 내지 19, 갑3 내지 5 각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 이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1994. 9. 22.자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및 원고 본인 신문결과와 피고 조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1. 12.경 서울신문사에 입사하여 1994. 3. 경부터 같은 신문사의 문화부에 근무하면서 방송분야의 취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출입기자이고, 피고 공사는 국내외 방송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시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1994.경 같은 피고가 방송하는 케이.비.에스(K.B.S)제1 티브이(TV)에서 매주 토요일 20:0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사회비리 고발적인 성격의 이른바 사회고발 프로그램 내지 탐사 프로그램인 「사건 25시」라는 프로를 제작 방송하여 왔고, 피고 조 은 피고 공사의 티브이(TV)제작1국에 근무하면서 1994. 당시 위 「사건 25시」의 제작을 담당한 연출자이다.

(2) 피고 조 은 1994. 6.초 경 제작팀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해 7. 2. 방송될 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의 주제(아이템)로 서울 성북구 미아리 일대의 조직폭력배 사건을 다루기로 하여, 서울 성북경찰서 근무 당시 미아리 관내 조직폭력 수사를 처음

시작하여 1994. 봄 위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라는 소외 박 을 직접 지명수배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수사대 소속 소외 한 형사반장의 협조로 당시의 경찰수사서류를 토대로 사건의 검토 및 사전답사를 마친 후, 위 프로그램의 제목을 『조직폭력! 텍사스의 황제』로 하고, 그 주된 내용은 위 박 과 그가 두목으로 있는 쌍택이파라는 폭력조직의 범죄행각을 주제로 삼아 위 범죄조직의 활동을 상황재현 형식으로 방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촬영개시 전인 1994. 6.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3차례에 걸쳐 수배자의 동생인 소외 박 가 이 사건 방송의 작가인 소외 정 에게 '왜 사건같지 않은 것을 다루려고 하느냐, 자기 형님이 성북일대에서 알아주는 건달이나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 있다, 실제로는 경찰수사와 다른 부분이 많으니 자신을 만나 달라' 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1994. 6. 16.경부터는 제작팀이 현지촬영에 들어갔으나 같은 달 17. 사전에 촬영약속이 되어 있었던 나이트클럽의 촬영이 위 나이트클럽측의 갑작스런 장소사용 거절로 예정되었던 촬영이 중단되는가 하면, 같은 달 18.경 위 한 형사반장까지 갑자기 소식이 끊겨 수사과정의 재연, 조직폭력 관련 피해자의 탐문수사, 피해자 및 관계주민과의 인터뷰가 모두 무산됨으로써 제작이 난항에 이르렀으며, 그러던 같은 달 21. 위 박 가 다시 위 정 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모 신문사 기자로부터 이 사건 방송의 촬영대본을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본내용에 문제제기를 하여 왔다.

(4) 한편, 원고는 위 서울신문사 소속의 피고 공사 출입기자로서 피고들이 제작 중인 이 사건 방송의 촬영대본 내용에 사실과 달리 과장된 점이 많다는 제보를 위 박 의 동생인 위 박 로부터 입수한 후 그 사실확인 및 그 확인 결과에 따라 이를 기사화할 목적으로 취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 박 가 대본을 입수했다고 위 정 에게 전화를 한 다음날인 1994. 6. 22.경 이 사건 방송 제작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담당연출자인 피고 조 을 만나려 하였으나 마침 같은 피고가 부재 중이자 이 사건 방송의 책임 연출자인 소외 문 을 만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촬영대본을 꺼내놓고 '촬영대본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관할권이 없는 지하철수사대 소속의 형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경찰의 감정수사가 아니냐' 는 등으로 다소 지명수배자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거칠게 대본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문 및 그 주위에 있던 피고 공사의 다른 직원 등은 이 사건 방송의 대본은 경찰의 수사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제작진이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원고는 따지는 듯한 태도에 불쾌감을 나타내어 원고는 더 이상의 취재를 중단하고 신문사로 돌아왔다.

(6) 다음날인 같은 달 23. 경 피고 조 은 그의 부재 중 원고가 방문하여 자신의 직장상사인 위 문 등과 위와 같이 말다툼한 사실을 전해 듣고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당시 방문목적과 촬영대본의 입수경위 등을 규명하려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단지 취재하러 갔을 뿐이고 대본 입수경위는 취재원 보호의 필요상 이를 밝힐 수 없다는 대답만을 듣게 되자, 위 피고는 원고와 수배자 박 의 이름이 비슷함을 들어 위 박 과의 관계 등을 따지며 원고의 방문사실을 제작중단압력사례의 하나로 제작일지의 형식으로 이 사건 방송에 삽입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방송국 출입기자로서의 신분이 무시당한 느낌에 원고는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내어 서로의 감정이 격앙되는 바람에 통화가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위 통화 직후 원고는 위 피고의 직장상사인 위 문 과 피고 공사의 홍보부에 각 항의전화를 걸어 위 방송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은 사람으로 제작일지에서 취급하려는 피고 조 의 언동에 대한 해명과 그 제작일지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7) 그 후 피고 조 은 담당 연출자로서 피고 공사를 통하여 1994. 7. 2. 20:0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하면서, 이 사건 방송의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각종의 제작 방해사례들을 폭로하기 위하여 중반부에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인 소외 이 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저희 취재진에게 각종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제작방해 사건 사례들을 일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방해압력은 사건 25시 사무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라는 내용의 대사를 낭독하게 한 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음향과 함께 화면의 절반 정도는 정지화면으로 전화기를 계속 보여주면서 나머지 절반 정도의 화면상에 자막으로 '① 6. 13. 14:00경 박 의 동생 사건25로 1차 전화, ② 6. 14. 23:00경 작가의 집으로 2차 전화, ③ 6. 15. 13:40경 사건 25시 사무실로 찾아옴, ④ 6. 15. 21:00경 작가의 집으로 3차 전화, 24:00경 박 이 직접 작가의 집으로 전화, ⑤ 6. 17. ○○나이트클럽에서 예정된 촬영, 갑작스런 사용거절로 제작 중단, ⑥ 6. 21. 22:40경 박 의 동생, 작가의 집으로 4차 전화, 촬영대본을 입수했다고 밝힘' 등의 제작방해압력 사례들을 소개하다가 뒤이어 원고의 위 방문사실을 '6. 22. 14:00경 S신문사 박 ○기자, 사건 25시 사무실로 찾아와 촬영대본 내용에 문제제기' 라는 내용의 자막(이하 이 사건 방송부분이라 한다)으로 약 5초간 삽입하여 방영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제작방해 압력사례를 보도함에 있어 원고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을 제작방해 사례의 하나로 다룸으로써 원고가 마치 폭력조직과 어떤 연관을 맺고 부당하게 이 사건 방송의 제작방해를 한 것처럼 방영하여 언론

에 종사하는 원고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익명으로 자막을 처리하여 원고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방송부분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국내의 신문사 중에 'S신문사'로 지칭되는 신문은 원고가 근무하는 서울신문사밖에 없고, 서울신문사 내에 '박 ○기자'는 원고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방송에 있어서 'S신문사의 박 ○기자'로만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위 사정상 적어도 원고가 근무하는 서울신문사의 시청자들은 물론 원고가 서울신문사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생활 주변의 신문사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방송에서 지칭하는 인물이 원고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문제된 단편적인 방송장면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시청자가 보도에 접하는 통상의 태도를 전제로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 사용된 어휘나 영상의 일반적인 의미, 관련된 전후장면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방송부분이 그 내용 자체는 정확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방송보도는 쌍택이파라는 폭력조직과 무언가의 연관을 갖고 있는 원고가 그 폭력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이 사건 방송의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작방해를 한 듯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방송은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위법성조각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결여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의 목적, 방영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영된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는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당초 이 사건 방송대본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지명수배자인 위 박

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편파적 언어를 사용하여 다소 통상적인 취재활동의 범위 내지 관행을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취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비난은 살지언정 어디까지나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문제가 된 폭력조직을 위하여 부당하게 방송

제작 중단의 압력을 가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마치 부당하게 제작방해 압력을 가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방송부분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피고 조 으로서는 일응 원고방문 이전의 일련의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방송대본의 작가인 위 정 이 수배자의 동생인 위 박 로부터 모기자에게서 촬영대본을 입수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바로 그 다음날 서울신문사의 기자라는 원고가 분실된 그 대본을 가지고 와 대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과 원고의 이름이 수배자인 박 의 이름과 비슷한 점, 같은 피고가 원고에게 촬영대본의 입수경위 등을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취재원 보호를 구실로 그 입수경위를 밝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시로서는 원고의 방문과 대본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같은 피고가 제작하고 있는 이 사건 방송에 대한 부당한 제작방해의 압력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도 일단 있었다고 보여지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7호증의 1(수사의뢰에 대한 회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 은 원고의 방문 이후 원고와의 확인전화에서 이 사건 폭력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원고의 강력한 부인에 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 공사를 통하여 촬영대본의 도난사건에 대하여 종암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 1994. 6. 26.경 위 경찰서로부터 위 촬영대본은 피고들 제작팀이 같은 달 17.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촬영을 한 후 현장에 두고 간 대본 1부를 위 단란주점의 주인인 소외 양 이 습득한 후 소외 최 , 임 을 거쳐 위 박 에게 건네준 것이라는 내용의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쯤 같은 피고는 이미 원고가 위 촬영대본을 피고들로부터 몰래 입수하여 위 박 에게 건네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되기 전까지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와 위 박 등 폭력조직과의 연관관계 및 원고의 방문목적 등에 대하여 더 이상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한 바 없이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래 방송에 대하여는 방송이 다른 언론매체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그 전파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한 점을 고려하여 방송법은 방송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 법 제4조 제3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고 규정하여 그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시청각효과가 동시에 수반되는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이 사건 방송과 같은 이른바 사회고발 프로그램 내지 탐사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언론고유의 환경감시기능을 통하여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척결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시청자들의 깊은 신뢰가 형성되는 반면 그 제작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우려가 있고, 한편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른바 기획프로그램

이어서 속보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사전에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오보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다른 언론매체보다 사전에 방영,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실성의 확인에 대하여 훨씬 무거운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방송의 내용은 단순한 추측에 의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 은 원고와의 1회의 전화통화 이외에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같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되기 전인 1994. 6. 26.경에는 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고 적어도 원고의 대본입수경위에 대한 의심은 풀렸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그동안의 원고의 강경한 부인태도, 그의 신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 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방송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폭력조직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방송제작 중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의심한다거나 이 사건 방송부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같은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것은 위법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고, 피고 공사는 피고 조 의 사용자로서 같은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기사보도를 위한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적극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 수반되는 취재행위는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과 충돌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수단,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한편 방송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방송순서의 편성, 제작에 관하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같은 법 제3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재의 명목으로 방송의 주제(아이템)만이 확정된 후 아직 그 촬영, 제작단계에 있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취재관행상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촬영대본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방송편성에 부당한 간섭을 가하는 듯한 언동을 취하였고, 피고 조 으로부터 방문목적 및 제보입수경위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그에 대하여 취재원보호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피고로부터 의심을 사는 등의 잘못이 있었던 점, 또한 을 3호증의 1, 2, 을 3, 4 각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1995. 3. 30.자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

후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1994. 7. 16 방송된 이 사건 방송과 동일한 프로그램인 사건 25시의 '사기당한 농심' 편의 중간부분과 끝부분에 이 사건 방송부분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할애하여 각 28초와 24초간 2차례에 걸쳐 "지난주 사건 25시에서 방송된 조직폭력 텍사스 황제편 제작에서 S신문 박 ○기자가 프로그램 제작을 방해하기 위하여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자막방송된 부분은 이 사건에 대한 취재활동을 오해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문제의 박 과 박기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회자의 멘트와 동시에 자막으로 " '조직폭력! 텍사스의 황제' 편 사건일지 중 (S신문 박 ○기자, 문제제기)로 자막방송한 부분은 직접 관련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라고 각 정정보도를 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경위, 그 후의 피고들의 정정방송의 경과 및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보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단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쉽사리 회복되기는 어려우리라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방송의 시청률, 이 사건 방송부분이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고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수액은 금 10,000,000원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1994. 7. 2.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5. 8.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3. □

재판장 판사 김 태 훈

판사 박 성 하

판사 김 정 숙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한약업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는 위 기사로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4억원을 손해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 26.자 판결 (94가합502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2. 21.자 결정 (96타기537)
서울고등법원 1996. 2. 27.자 결정 (96카135)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26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 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피고 한겨레신문사측에 4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한겨레신문사는 1994년 4월 27일자 한겨레신문 1면과 19면에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 『한약업사 보복수사 의혹』이란 제목 아래 「김 씨가 1992년 대통령선거 직전 한약업사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들의 구제를 조건으로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았고, 그 후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정치자금전달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자 김 씨가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자 구제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정 에게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협박하였으며, 이에 불응하는 정 에 대해 원고의 압력으로 보복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위 돈이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보도처럼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물리쳤다. 나아가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

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위 보도는 보복수사를 당하여 구속되었다고 믿고 있는 정 의 출감시의 인터뷰만을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보여지고, 인터뷰 내용의 진위 여부를 위 사건 당사자나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여 보았다거나 정 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고 행해진 것도 아니다」고 판시하고 「위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사측에서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인 김 씨는 1심 담당재판부에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1996년 2월 21일, 정정보도 이행을 촉구하고,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피고측인 한겨레신문사는 원판결 중 정정보도 게재에 가집행을 명한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제기, 1996년 2월 27일 「정정보도문 게재는 항소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원고는 본 사건 소송을 취하했다.

判決文

사 건 : 94가합5021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서울 종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석진, 한이봉, 표재진

피 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권근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김기중, 정연순

변론종결 : 1995. 12. 29.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27.부터 1996. 1. 2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제1면의 중앙 상단부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제1면에 게재된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라는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내용은 위 1994. 4. 27.자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의 4분의 3 금액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제1면의 중앙상단부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위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제1면의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라는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내용은 위 1994. 4. 27.자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라.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

원고는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소외 김영삼의 둘째 아들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7. 12. 15. 설립되어 그 이후 일간신문인 「한겨레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4. 4. 27.자 위 한겨레신문의 1면에 별지 제3목록과 같이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라는 큰 제목 아래 다시 『한약업사 정 씨 주장 대선 직전 김씨 사무실서 전달』, 『김씨 민원 정책 반영 노력 편지 보내』, 『93년 1월엔 김영삼 당선자 편지도 받아』라는 작은 제목을 단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일자 한겨레신문의 제19면에는 별지 제4목록과 같이 『한약업사 보복수사 의혹』이란 큰 제목 아래 『정 씨 민원 내자 계속 떠벌리면 죽는다 협박』, 『이 씨 등 만난 뒤 수사착수』라는 작은 제목을 단 기사를 게재하여, 이 신문을 전국의 독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비록 한약업사인 소외 정 이 정치자금 명목의 금 1억여 원을 「김 씨」에게 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 「원고의 압력에 의하여」 위 정 에 대한 보복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위 기사의 제목과 그 배치, 본문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는 결국 독자들에게, 원고가 1992년 대통령선거 직전 위 정 으로부터 한약업사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들의 구제를 조건으로 한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았고, 그 후 위 불합격자들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정치자금 전달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자 원고가 정 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협박하였으며, 이에 불응하는 위 정 에 대해 원고의 압력으로 보복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기사가 전국의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에 따라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따른 사실의 인정과 판단

(1) 사실의 인정

갑 제4호증의 27 내지 31, 33 내지 37, 39, 40, 41, 44 내지 112, 114, 115, 117, 118, 119, 132, 133, 134, 135, 148 내지 177, 갑 제5호증의 3, 4, 13, 14, 17, 40의2, 50의2, 50의3, 52의2, 55의2, 55의3, 56의2, 72, 을 제1호증의 7, 11, 12, 13, 14, 15, 16, 94 내지 99, 110, 112, 122, 128, 을 제2호증의 4 내지 15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113, 179, 을 제2호증의 16내지 19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지 , 채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합쳐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고,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 이외에는 달리 볼 증거없다.

(가) 1983. 11. 27. 시행된 한약업사시험에서 전국적으로 2,100여 명이 응시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1,395명 가운데서 한약업사가 없는 각 면에 1명씩 합격시킨다는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방침에 따라 528명이 합격하였고, 나머지 867명이 불합격처분되었다.

(나) 위와 같이 60점 이상을 얻고도 불합격한 자들은 스스로 억울하게 생각하여 자격을 얻고자 노력하던 중 불합격자 중의 한 사람인 소외 지 가 1989. 6. 21. 한약업사자격취득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불합격자들의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한 단체결성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1989. 4.경 전국적으로 107명 가량이 대전유성관광호텔에 모여 83 전국 한약업사자격취득 구제위원회(이하 83회라 줄인다)를 결성하여 회장과 각 지역을 맡을 지역장을 선출하는 한편, 위 모임을 잘 이끌어가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지면이 넓다고 인정되는 또 앞에서 본 한약업사 시험의 실시를 위해 노력한 한약업사시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소외 정 (정 은 위 시험에 합격하여 한약업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위와 같이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고서도 불합격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위 정 에 대해서 위 83회 회원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구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히 사례할 계획이었다)과 위 지 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위 정 으로 하여금 행정부나 국회쪽에, 위 지 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 쪽에 위 모임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위 모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 모임 당시 참석회원들로부터 각 금 50,000원 씩 합계금 3,450,000원(50,000×107명)을 모금하고, 다시 같

은 해 9.경 부담금으로 각자 금 300,000원 씩 합계금 32,700,000원(300,000×109명)을 모금하여 그 돈으로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소 소원을 위해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대학의 교수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히는 학술논문 등을 써서 발표하게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 1990. 봄 무렵 위 83회에서 특별모금을 반대하던 대구회원 23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 별도모임을 만들고 나머지 회원 84명 정도가 다시 대전유성관광호텔에 모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기로 하고 그 변호사비용 등으로 회원당 금 3,000,000원 씩 위 지 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하여 위 지 가 약 금 250,000,000원 가량을 모금하였다.

(라) 한편 위 지 는 1989년 서울고등법원에 자신이 원고가 되어 한약업사자격 인증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위 83회 회원 대부분이 위 83회 결성 이후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음)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던 1991. 10. 23. 소외 변호사를 선임(착수금 일천만원, 성공보수 구천만원으로 하되, 성공보수 역시 착수금과 같이 지급하며 다만 패소의 경우는 위 성공보수는 되돌려 받는 조건)하였으나, 위 소송이 1992. 9. 2. 패소로 끝나고 반환약정된 위 성공보수 명목의 금 90,000,000원은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되었다. 위 지 는 위 소송 중인 1990. 6. 8. 위 83회 회원들의 보조참가 하에 약사법 제37조 제2항 한약업사 개업지 제한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1. 9. 16. 위 위헌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마) 이 무렵 위 지 는 같이 한약업사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후배인 소외 김 과 그 친구인 소외 조 의 소개로 변호사인 소외 이 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이 과 상담을 통하여 입법청원을 통한 법령의 개정 및 행정조치의 방법으로 한약업사 자격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를 선임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1992. 10. 14. 위 이 과 착수금 일억이천만원(1992. 10. 14.에 현금 4,500만원, 1992. 12. 14.에 어음 7,500만원 지급하기로 약정), 성공보수 이억원으로 정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위 지 는 착수금 중 계약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 45,000,000원 중 금 15,000,000원만을 당일 국민은행 위 이 계좌(079-)에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 금 105,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이 의 양해를 얻어 1992. 11. 12. 대전직할시 농협중앙회 유성지점 약속어음 지급기일 1992. 12. 12.로 액면 금 2,000만원권 4매(어음번호 자가 01558311, 자가01558312, 자가01558314, 자가01558315)와 액면금 2,500만원권 1매(어음번호 자가01558313)를 발행교부하여 주었으나, 위 지급기일 무렵인 1992. 12. 9. 위 변호사로부터 돌려 받기로 하였던 변호사 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관계로 자금부족이 생겨 위 이 과 협의하여 위 약속어음 5매를 모두 회수하고 대

신 같은 농협중앙회의 지급기일 1993. 1. 8.로 된 액면금 3,000만원권(어음번호 자가 01558317), 5,000만원권(어음번호 자가01558319), 2,500만원권(어음번호 자가 01558320)을 발행교부하여 주었는데, 만기일 전인 1992. 12. 7. 위 이 이 위 2,500만원권과 5,000만원권 2장을 그 사무실 아래층에 있는 조흥은행 을지로지점에 예금하여 만기일에 어음교환으로 정상 결제되었으며 위 이 은 당일 위 금 75,000,000원을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고, 나머지 3,000만원권은 위 지 가 이에게 만기에 제시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위 이 이 이를 받아들여 제시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 지 가 1992. 1. 20. 전 현금 30,000,000원을 위 이 에게 지급하고 위 어음을 반환받아 자신이 1992. 1. 20.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지급받음으로 현금화하였다.

(사) 위 지 는 1990. 2. 3. 3당 합당 전까지 신민주공화당의 간부로 있다가 합당시부터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으로 있었는데, 위와 같이 위 이 을 선임한 후 위 이 이 1992. 12.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시 민주자유당의 대통령후보인 김영삼의 선거운동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이 에게 83 한약업사자격취득 국제위원회의 회원들로 하여금 김영삼 후보를 만나서 그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 위 이 은 위 김영삼 후보의 아들인 원고 김 의 중학교 3년 선배로서 그와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살고 대학 다닐 때까지 서로 교류하여 온 다정한 사이로, 1985년에 시행된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8년부터 변호사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1989년경부터는 위 김영삼 후보의 정치적 일들도 거들고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왔다.

(자) 위와 같이 위 지 의 부탁을 받은 이 은 1992. 11. 26. 서울 팔레스호텔 소회의실로 지 를 비롯한 위 83회 회원 70여 명을 데리고 가 원고를 만나게 하였는데, 원고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온 것이나 우리 아버지가 온 것이나 마찬가지니 우리 아버지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면 당선 후에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인사를 하였다.

(차) 위 지 는 1992. 1.경부터 1980년 초에 결성된 전국 그린벨트해제추진위원회(이하 그린벨트해추위라 줄인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위 이 을 통하여 원고를 만난 후 이 이 에게 위 그린벨트해추위는 회원이 28만세대에 유권자만 60만명이나 되고 똘똘뭉쳐 있으니 그린벨트해제공약만 해주면 그린벨트해추위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여, 1992. 12.초 위 이 과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원고를 만나 그와 같은 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그린벨트해추위 대표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듣고, 1992. 12. 12. 그린벨트해추위 대표 30여명과 함께 여의도 한서빌딩 내에 있는 원고 사무실로 가 원고를 만났다.

(카) 위와 같이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해추위 대표들이 그린벨트해제건을 선거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여 원고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대표들이 말로만은 안되고 각서로 보장하라고 하므로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일단 헤어진 후, 원고는 1992. 12. 14. 위 지 에게 별지 제5목록과 같이 작성된 서면을 모사전송기를 통해 보내 주었고, 위 지 는 이를 그린벨트해추위 대전지회장인 소외 황 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황 은 이를 그린벨트해추위 전국 회장인 소외 김 에게 전달하여 위 김 이 그 사본을 전국의 그린벨트해추위 지회장들에게 송부하였다.

(타) 위 83회 회원들은 그들이 지지하였던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더구나 자기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선임하였던 위 이 이 1993. 3. 3.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취임하자 한약업사자격취득의 기대가 커졌으나, 그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고 더구나 위 이 이 같은 해 8.경 위 사정비서관 자리에서마저 물러나자 위 지 에게 자기들의 문제가 지지부지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파) 1994. 1.초 대전시 유성에 있는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렸던 위 83회 회원 총회에서 회원들이 위 지 에게 회비를 1인당 300만원 씩이나 거둬 가고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거칠게 항의하자(위 83회 회원 중 소외 정 은 1994. 1. 6. 위 지 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됨) 위 지 는 자기가 사실은 위 이 을 통하여 1억2,000만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니 금방은 해결이 안되더라도 기다리면 좋은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을 무마하는 한편, 전에 위 이 에게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한 어음의 부전지들을 아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어음부전지들의 적요란에 원고 이름을 써넣은 후 이를 지니고 다니면서 자기가 만나는 위 83회 회원들에게 제시하였다.

(하) 한편 위 정 은 1990년 봄 대구지역회원들과 함께 위 83회 전국 모임에서 떨어져 나갔으나 꾸준히 대통령, 국무총리, 보사부장관, 민정당, 감사원 등에 호소문과 건의서 탄원서 등을 보내 위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특히 1992. 10. 1.과 같은 해 12. 8.에는 민주자유당 민원조사부장 하 에게 부탁하여 민주자유당 사무총장 명의로 각 보사부장관과 감사원에 한약업사자격시험 불합격자 구제를 촉구하는 공문까지 기안하여 보내게 함), 1994. 2. 1. 지 를 만나 그 간의 서로의 활동상황을 이야기하다가 위 지 의 활동상황도 정 이 알고 있는 청와대 모사전송기 번호로 전송하기로 하고 헤어져 그날 위 지 로부터 원고가 1992. 12. 14. 위 지 를 통하여 위 그린벨트해추위에 보낸 위 서면과 위 어음부전지를 역시 모사전송기를 통해 건네받았다.

(거) 이를 받은 정 은 1994. 2. 2.「전국한약업사 시험추진 위원회 위원장 정 」의 명의로『민원해결관련 정치자금지불건 요약』이라는 제목 아래 위 지 가 이 을 통

해 1992. 11. 12. 원고의 개인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자 구제를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1억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이 원고가 관련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고는 물론 대통령에게까지 중대한 물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어 위 문건 뒤에 위 어음부전지와 원고가 그린벨트해추위에 보낸 위 서면(이건 서면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정책 건의해 주신 내용 중 대부분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김 1992. 12. 14.」이라고만 되어 있어 위 서면을 위 부전지 및 위 문건내용과 같이 보면 마치 원고가 위 83회 회원들에게 보낸 것처럼 보인다)을 첨부하여 역시 청와대 내 대통령집무실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였다.

(너) 위 문건이 같은 해 2. 3. 위 이 에게 전달되어 같은 해 2. 4 위 이 이 지 를 통하여 정 을 롯데호텔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여(그 자리에는 원고나 원고의 누나는 참석하지 않았고 소외 김 , 조 이 동석하였다) 위 문건에 담긴 내용의 취하를 종용하였으나 정 이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2. 14. 「한약업사자격시험합격대상자 구제촉구에 관한 탄원서」를, 다시 2. 28. '대민공약건에 관한 민원해결 건의서'를 연이어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 모사전송기로 보내었다.

(더) 1994. 2. 25.경 수사기관에서 정 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결국 정 은 1994. 3. 2. 위 83회로부터 금 4,000,000원을 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사실 및 1989. 12.부터 1990. 7.까지의 사이에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사실로 구속되었다

(러) 그 이후인 1994. 4. 26. 위 정 은 서울지방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는데, 석방되던 날인 위 1994. 4. 26. 14:00경 서울구치소에서 세계일보 기자 소외 채 과 만나 위 채 의 질문에 피고의 위 보도내용과 같은 답변을, 다시 같은 날 22:30경 출소하기 직전 각 언론사 기자들(피고측에서는 소외 이 , 유 이 취재함)과 인터뷰하면서도 역시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다만 위 채 과의 인터뷰 때와는 달리 1994. 2. 4. 롯데호텔에서 원고를 만난 바 없다고 진술하였음), 피고 소속 소외 성 은 데스크로부터 취재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로부터 보내오는 기사와 청와대 확인사항 등을 조합, 정리해 1면 머릿기사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화로 현장에 나가 있는 이 기자와 연락하여 취재내용을 반복 확인하면서 기사를 작성, 피고는 이를 위와 같이 같은 달 27. 자 피고의 한겨레신문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였다.

(2) 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지 로부터 정치자금으로 금 1억여 원을 받았고 이 정치자금을 받은 후 한약업사시험에 불합격한 자들의 구제를 위한 자필서신을 보냈었으며 이를 문제삼고 나오는 소외 정 을 만나 그에게 위

문제 등을 더이상 문제삼지 말도록 부탁하기 위하여 1994. 2. 4. 롯데호텔에 갔고 이를 거절하는 정 에 대하여 보복수사를 하게 하였다는 피고의 위 보도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이 과 원고가 친근한 사이로, 위 이 이 위 지 와 사건수임계약을 하고 착수금을 받을 무렵 위 지 와 위 83회 회원들을 원고에게 인사시킴으로써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자구제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착수금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의 위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도 그 돈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원고에게 위 돈이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보도처럼 원고가 위 지 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8, 을제5호증, 을 제7호증의 4의 각 일부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한겨레신문의 취재기자들이 최선의 취재를 통하여 얻어 낸 내용을 당시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고 신속한 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보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행위자가 언론기관인 경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사실이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위 인정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보도는 원고에 의하여 보복수사를 당하여 구속되었다고 믿고 있는 위 정 의 출감시의 인터뷰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여지고, 달리 피고나 피고 소속기자들이 위 기사를 작성, 보도함에 있어서 위 사건의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지 , 이 , 원고 및 정 을 수사한 수사기관 등에 위 정 의 인터뷰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았다거나 위 정 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보도를 하였다고 볼 자료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위 기사가 게재된 위 1994. 4. 27.자 한겨레신문이 전국에 배포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

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나이, 입장 및 피고의 규모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신문발행부수, 위 기사 내용과 크기, 위 기사의 게재경위, 위 기사 게재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광고의 게재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위 기사로 인해 원고가 명예훼손을 당한 데 대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제1면의 중앙 상단부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위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제1면에 게재된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라는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내용은 위 1994. 4. 27.자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는 1994. 4. 27.자 한겨레신문에 위 기사를 게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1994. 4. 27.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6. 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제1면의 중앙 상단부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제1면에 게재된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라는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내용은 위 1994. 4. 27.자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1996. 1. 26.

재판장 판사 정 은 환

판사 김 대 웅

판사 고 재 민

〈제 1목록〉

제 목 : 김 정치자금수수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지난 1994년 4월 27일자 한겨레신문 제1면 상단부에 『김 씨 쪽에 1억여원 줬다』, 『대선직전 김씨 사무실서 전달』, 『김씨 '민원정책반영노력' 편지보내』라는 제목 아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구속됐던 한약업사 정 씨는 26일 지난 92년 대선 직전 무자격 한약업사들이 자신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 씨 쪽에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92년 대선 직전인 12월 12일 유성농협 발행어음 5장(총액 1억5백만원)과 수표 · 현금 1천5백만원 등 모두 1억2천만원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 있던 김 씨 사무실로 한약업사 구제위원회 고문인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 자리에는 김 씨도 있었다는 말을 지씨한테 전해 들었다」, 「이 돈은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한약업사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의 정치자금이었다」, 「돈을 전해준 뒤 김 씨 자필로 서신이 왔는데 '귀하의 민원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또… 2월 4일 이 씨로부터 연락이 와 롯데월드 커피숍에서 이 씨를 포함해 4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김 씨는 이 문제에서 빼달라. 계속 떠벌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고 협박했으며 그 뒤 경찰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이 씨와 지 씨, 김 씨, 김 씨의 누나 등과 만났으며 김 씨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 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위 정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금 1천5백만원과 약속어음 5장 총액면금 1억5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지 씨가 위 이 변호사를 선임한 데 따른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된 것으로 정치자금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고, 위 돈과 약속어음이 건네지는 자리에 김 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무허가 한약업사의 구제와 관련하여 정 씨에게 김 씨 자필서신이 전달된 사실도 없고, 또 김 씨와 김 씨의 누나는 1994. 2. 4.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정 을 만난 적이 없고, 정 씨에게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 라는 말을 한 적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1994. 4. 27.자 기사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제 2목록〉

제　　목 : 김　　정치자금수수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1994년 4월 27일자 한겨레신문 제1면에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 『대선직전 김씨사무실에서 전달』, 『김씨 '민원정책반영노력' 편지』라는 제목 아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구속됐던 한약업사 정　　씨는 26일 지난 92년 대선직전 무자격 한약업사들이 자신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　　씨 쪽에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건네주었다고 밝혔다」「92년 대선직전인 12월 12일 유성농협 발행어음 5장(총액 1억5백만원)과 수표 · 현금 1천5백만원 등 모두 1억2천만원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 있던 김　　씨 사무실로 한약업사 구제위원회 고문인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 자리에는 김　　씨도 있었다는 말을 지씨한테 전해들었다」, 「이 돈은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한약업사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의 정치자금이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1992. 10. 14.경 온라인 송금으로 무허가 한약업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법적대리건에 관한 변호사 착수금으로 금 1천5백만원을 전달하고, 1992. 11. 12.경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으로 금 1억5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 자리에 김　　씨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치자금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면에 「돈을 전해준 뒤 김　　씨 자필로 서신이 왔는데 '귀하의 민원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는 내용이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정　　씨에게는 무허가 한약업사의 구제에 관하여 김　　씨 자필서신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면에 「정씨는 또… 2월 4일 이　　씨로부터 연락이 와 롯데월드 커피숍에서 이　　씨를 포함 4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김　　씨는 이 문제에서 빼달라. 계속 떠벌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고 협박했으며 그 뒤 경찰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이　　씨와 지　　씨, 김　　씨, 김　　씨의 누나 등과 만났으며 김　　씨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 는 말을 했다」라는 기사와 같은 일자의 한겨레신문 제19면에 『한약업사 보고수사 의혹』, 『정　　씨 민원내자 「계속 떠벌리면 죽는다」 협박』, 『이　　씨 등 만난 뒤 수사착수』라는 제목 하에 「지난 2월 4일 이씨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났을 때에도 '계속 떠벌리면 죽는다. 약방도 문을 닫도록 하겠다' 고 협박했다」, 「이씨를 만난 이후 경찰이 내가 경영하고 있는 천안 해동한

약방 전화를 도청하고 집안 동정을 감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1994. 2. 4. 이 변호사가 정 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김 씨나 김 씨의 누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정 에게 어떠한 협박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정 에 대한 경찰수사와 김 씨 및 이 변호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기사들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제 3목록〉 한겨레신문 1994. 4. 27.자 기사

제 목 :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

내 용 :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구속됐던 한약업사 정 씨는 26일 지난 92년 대선 직전 무자격 한약업사들이 자신들을 구제해달라는 조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 씨 쪽에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정씨는 「92년 대선 직전인 12월 12일 유성농협 발행어음 5장(총액 1억5백만원)과 수표 · 현금 1천5백만원 등 모두 1억2천만원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 있던 김 씨 사무실로 한약업사 구제위원회 고문인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 자리에는 김 씨도 있었다는 말을 지씨한테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이 돈은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한약업사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의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돈을 전해준 뒤 김 씨 자필로 서신이 왔는데 '귀하의 민원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는 내용이었다」면서 「또 93년 1월 19일에는 김영삼 당선자 명의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 는 내용의 편지도 왔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1년 4개월이 지나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지난 2월2일 청와대에 김 씨에게 돈을 주었는데 민원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해결 관련 정치자금 지급 요약서」를 팩시밀리로 보내자 이틀 뒤인 2월 4일 이 씨로부터 연락이 와 롯데월드 커피숍에서 이 씨를 포함 4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김 씨는 이 문제에서 빼달라. 계속 떠벌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고 협박했으며 그 뒤 경찰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기 전에 만난 한 언론인에게 「지난 2월 4일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이 씨와 지 씨, 김 씨, 김 씨의 누나 등과 만났으며 김 씨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 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변호사가 받은 1억5백만원짜리 어음과 관련해 「어음책 부표에 이 (김)이라고 쓴 것이 있어 경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지 씨의 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어음책 부표는 정 씨의 수사기록에도 첨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 4목록〉

경찰이 한약업사 대선자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 내역을 청와대 등에 보내 민원 해결 압력을 넣은 정 씨의 입을 막기 위해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씨는 26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대선 직전 제공했는데도 민원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을 문제삼자 이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신변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다」며 「지난 2월 4일 이씨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났을 때에도 계속 떠벌리면 죽는다. '약방도 문을 닫도록 하겠다' 고 협박했다고」고 주장했다.

◇ 수사착수 배경 = 경찰청 수사2과는 정씨에 대한 수사배경에 대해 「정씨가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보내면서 첨부한 민자당 사무총장 명의의 공금이 우리 정보망에 포착돼 내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착수 시기가 정씨가 이 씨 등을 만나 경고를 받은 직후이고 경찰청 수사2과 주로 청와대 하명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막음용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수사과정 = 정씨는 이씨를 만난 이후 경찰이 내가 경영하고 있는 천안 한약방 전화를 도청하고 집안 동정을 감시했다며 「경찰이 나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엮기 위해 천안 어느 파출소장을 보내 진료를 받게 한 뒤 혐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등 함정수사를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정씨가 자신이 개발한 특효약 광고를 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돼 정씨의 한약방을 뒤져 관련 장부를 찾아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와는 달리 한약업사 자격증도 없이 무면허 진료를 한 지 씨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많은 다른 한약업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 검찰 기소 = 경찰에서는 원래 정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약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정씨가 구제위원회로부터 4백만원의 돈을 받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 위원회 일을 해준 것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 부분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정씨가 이 위원회 고문으로 일한 것을 자신의 사무가 아닌 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서로의 법률적 판단이 달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과 검찰의 달랐던 부분은 정씨가 받은 4백만원의 성격」이라며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정씨가 받은 4백만원 일부가 민원서류 작성 등에 부인 사실이 밝혀지고 또 그 액수가 별로 많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 사건에 대한 보안과 수사기록 은폐 =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이 사건 수사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특히 수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 가산점을 받게 돼 구속 때 언론에 발표한 경찰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숨긴 점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또 검찰은 정씨를 기소한 뒤에도 이례적으로 해당 재판부로부터 사건기록을 대출 형식으로 자주 가져가 정씨의 변호인이 지난 20일 첫 공판 때까지 사건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

또 정씨가 「1억2천만원은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진술했던 사실과 관련해 이 부분이 경찰의 수사기록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치자금이라는 진술은 경찰 수사기록에 있으나 씨 관련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현철 씨 관련 부분도 경찰 수사기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決定文

사 건 : 96타기537 간접강제

신 청 인 : 김
서울 종로구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석진, 한이봉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권근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유현석, 김창국, 이석태, 조용환, 김형태, 김기중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제1면의 중앙 상단부에 별지 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제1면에 게재된 『김 씨 쪽에 1억여 원을 줬다』라는 제목과 같

은 크기로, 본문내용은 위 1994. 4. 27.자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8,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신청인의 이 법원 94가합5021 손해배상(기)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1.

재판장 판사 정 은 환
판사 김 대 웅
판사 고 재 민

〈목록〉

제 목 : 김 정치자금수수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지난 1994년 4월 27일자 한겨레신문 제1면 상단부에 『김 씨 쪽에 1억여원 줬다』, 『대선 직전 김씨 사무실서 전달』, 『김씨 '민원정책반영노력' 편지 보내』라는 제목 아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됐던 한약업사 정 씨는 26일 지난 92년 대선 직전 무자격 한약업사들이 자신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 씨 쪽에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92년 대선 직전인 12월 12일 유성농협 발행어음 5장(총액1억5백만원)과 수표 · 현금 1천5백만원 등 모두 1억2천만원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 있던 김 씨 사무실로 한약업사 구제위원회 고문인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 자리에는 김 씨도 있었다는 말을 지씨한테 전해들었다」, 「이 돈은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한약업사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의 정치자금이었다」, 「돈을 전해준 뒤 김 씨 자필로 서신이 왔는데 '귀하의 민원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또 2월 4일 이 씨로부터 연락이 와 롯데월드 커피숍에서 이 씨를 포함해 4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김 씨는 이 문제에서 빼달라. 계속 떠벌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협박했으며 그 뒤 경찰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이 씨와 지 씨, 김 씨, 김 씨의 누나 등과 만났으며 김 씨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

지 말라. 자제하라' 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위 정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금 1천5백만원과 약속어음 5장 총액면금 1억5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지 씨가 위 이 변호사를 선임한데 따른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된 것으로 정치자금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고, 위 돈과 약속어음이 건네지는 자리에 김 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무허가 한약업사의 구제와 관련하여 정 씨에게 김 씨 자필서신이 전달된 사실도 없고, 또 김 씨와 김 씨의 누나는 1994. 2. 4.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정 을 만난 적이 없고, 정 씨에게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 라는 말을 한 적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1994. 4. 27.자 기사내용을 바로잡습니다.

決定文

사 건 : 96카135 강제집행정지

신 청 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대표이사 권 근 술
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유현석,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신청인 : 김
서울 종로구

주 문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 26. 선고 94가합5021호 손해 배상(기)청구사건의 판결 중 주문 제2항 정정보도문 게재에 가집행을 명한 부분의 강제 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사건인 서울고등법원 96나7214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7. □

재판장 판사 김 상 기
판사 강 신 섭
판사 이 홍 철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원고의 피의사실을 실명으로 공표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1996. 2. 27.자 판결 (95나24946)
서울지방법원 1995. 5. 19.자 판결 (93가합54908)

事實槪要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996년 2월 27일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 달라며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유　　씨 등이 국가와 이 사실을 보도한 동아일보사 등 7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쌍방항소심에서,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한 항소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측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고, 1심에서 패소한 국가, 중앙일보, 경향신문사가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고측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와, 관련 7개 언론사로부터 모두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언론의 범죄보도는 각 단계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상황에 유의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진행 중인 단계를 넘어 혐의정도를 높이는 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건의 경우 보도는 원고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 바 이는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단계로 공공을 위한 지대한 정보의 이익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더구나 설명으로 보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죄보도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혐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고, 보도의 사실적 영향은 법적인 책임의 유무가 적법절차에 따라 확정되기 이전에 관계인에 대하여 명예손상과 사회로부터의 배척을 받게 되는,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실

상의 처벌을 가하는데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중매체가 시사성을 위해 신속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신원을 밝힌다면 그것은 예단한 판결과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보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안의 보도와 그에 관계된 인물의 제시를 엄밀히 구분하여 그 관계 인물의 신원을 밝히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익명보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범죄내용 자체가 청부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살해하려고 기도하였다고 하는 극히 반인륜적 범죄로 이를 사회에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업무행위였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보유하며 이혼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사회윤리에 비추어 심각한 비판을 면치 못할 사안임을 인정, 그 신원을 명시한 보도가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경우도 보도혐의 사실이 진실로 확정된 이후라 할 것이다」며, 이 건의 경우 「원고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 바 이는 피의사실 공표금지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도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침해받은 명예 및 인격권에 비추어 비교형량한다면 공공의 이익이 보다 무거웠다고 생각할 수 없다」며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경찰의 공식발표를 취재보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에서 경찰의 공보관으로서의 직무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여부가 불분명한 담당경찰관이 아무런 내부적 결재절차를 거침이 없이, 기자에게 취재를 요청한 것으로 경찰의 공식발표라 할 수 없다」며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사의 기자들은 그 동안의 관행에 따른 이러한 부적법한 제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이나 조사를 행함이 없이 피의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이를 그대로 사실인 양 보도하였던 것이므로 취재 및 보도 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보도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각 기사내용은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며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하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는 「피고가 문제된 피의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본지 통권 56호 156면 참조).

2심 判決文

사　건 : 95나2494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 1. 유
서울 은평구
망 정　　의 소송수계인
2. 조
3. 정
4. 정
5. 정
원고 2-5 주소 서울 서초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 홍승기

피고, 항소인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안우만
소송수행자 신　　, 함

피고, 피항소인 :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병관, 권오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항소인 : 3.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필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인형무, 오두환

피고, 항소인 : 4.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안신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피고, 피항소인 : 5.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재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피고, 피항소인 : 6.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정원찬, 김성기, 정주교, 강정면, 최승인

피고, 피항소인 : 7.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이사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김정은

변론종결 : 1996. 1. 16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5. 5. 19. 선고 93가합54098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원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각 원고 유 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666,666원씩,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 유 에게 금 7,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1,666,666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1,111,111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1996. 2. 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각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는 각 원

고 유 에게 각 금 30,000,000원, 원고 조 에게 각 금 166,667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 (1) 원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는 각 원고 유 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1,666,667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의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 1.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3, 갑제5호증의 1 내지 6, 갑제6, 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21, 갑제9호증의 1 내지 36, 갑제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5, 갑제13증의 1 내지 4,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 2, 3호증의 각 1, 2, 을제 4 내지 8호증, 을제 9호증의 1, 2, 을제 10호증, 을제 11호증의 1, 2, 을제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홍 , 허 , 당심증인 김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김 , 곽 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유 는 1975. 7. 23. 소외 이 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1990년 무렵 전주지방법원 88드4793호로 위 이 과 이혼소송이 계류 중이었으며, 망 정 은 위 원고 유 의 오빠인 소외 유 의 친구였다.

나.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0. 5. 24.경 소외 윤 으로부터 「유 등에게 집단으로 감금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같은 해 5. 29.자로 「피고소인 유 는 내연관계에 있는 성명불상의 50대 남자 및 수명의 폭력배와 함께 남편 이 을 이혼재판이 끝나기 전에 청부살해하여 남편재산을 고스란히 상속받거나 또는 그를 공갈 협박하여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1990. 5. 18. 23:00경 남편의 친구인 고소인 윤 을 서울 서초구 소재 석주호텔 커피숍으로 유인한 다음 그를 다시 강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대화카페 지하실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같은 날

23:30경부터 이튿날 05:00경까지 남편의 소재를 대라며 무차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되었며, 같은 해 6. 27.경에는 위 이 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이 사건을 살인예비음모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으로 보고 원고 유 등을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수사는 처음에는 위 윤 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하였던 서초경찰서 형사계 형사7반 소속 경장 에게 배당되어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와 피고소인인 원고 유 에 대한 피의 사실조사 및 공범으로 지목된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신원파악 및 검거활동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담당경찰의 원고 유 등에 대한 구속수사 건의가 검찰의 보강수사지시와 함께 거부되고 원고 유 로부터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라는 항의까지 받게 되자, 그 이후의 수사는 같은 경찰서 형사계 강력2반, 소속 경사 곽 , 경장 공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소인 윤 이 감금 폭행을 당하였다고 지적한 현장에 원고 유 외에 망 정 과 소외 김· 이 같이 있었던 것을 밝혀내고 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그들이 한결같이 그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고소인들의 진술로 미루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고 같은 해 8. 1.경 피의자들 중 원고 유 , 망 정 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다.

마. 같은 해 8. 1. 14:00경 서초경찰서 형사계 소속 형사계장 소외 김 는 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경찰출입기자들이 모여 있는 강남경찰서 출입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굵직한 사건을 해결하였으니 취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접한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이 서초경찰서에 취재를 위해 모이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원고 유 등에 대한 살인예비음모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건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아울러 수사가 개시되게 된 경위와 그 경과 및 피의자 검거경위 등 사건 전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취재편의를 위해 관련 수사기록을 자유로이 열람토록 하였으며, 또 같은 해 8. 2. 오전 중 뒤늦게 이 사건 관련기사를 취재하러 온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속기자 홍 및 같은 해 8. 10. 역시 이 사건 관련기사를 취재하러 온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소속 주간경향 기자 이 에게도 같은 내용의 설명과 취재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고들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에게 원고 유 및 망 정 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바. 이에 피고들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관련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

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같은 해 8. 2.에 위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의 사회면에 원고 유 및 망 정 등의 피의사실 관련기사를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도하였고,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같은 해 8. 2. 19:00경 정규 뉴스시간에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피의자 유 가 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청부폭력배 정 등에게 남편을 혼내주고 위자료조로 5억원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남편의 친구인 피해자 윤 을 불러내어 남편의 소재를 대라며 감금 폭행하였다」는 요지의 기사를 약 30초 내지 1분간에 걸쳐 원고 유 등의 얼굴모습과 함께 방영하였고, 또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같은 해 8. 19.자 주간경향 31, 32면에 원고 유 등에 대한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과 과장되고 선정적으로 표현된 범죄경위 등을 추가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사. 원고 유 , 망 정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 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8. 3. 발부되었고, 같은 해 8. 29. 위 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원고 유 등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1991. 12. 19. 위 법원에서 「고소인 윤의 진술은 상호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무죄판결은 1992년 11. 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소외 윤 은 그 후 1993. 6. 25. 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가중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같은 해 10. 30.경 다시 원고 유 등에 대한 위 고소와 관련하여 그가 「피해자 유 와 그 남편 이 간의 이혼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가 형사재판을 통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으며(헌법 제27조 제4항), 또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공판청구 전에는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형법 제126조)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 예하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담당 경찰관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유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에는 이를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 기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원고 유 및 망 정 등의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이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각 해당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원고 유 및 망 정 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위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대한민국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이외의 피고들은 대중매체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그 소속기자들은 위 원고 유 및 망 정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 원고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서 그들의 혐의사실을 취재·보도함으로써 원고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하여 피고들은 범죄내용 자체가 청부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기도하였다고 하는 극히 반인륜적인 범죄였으므로 이를 사회에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으로,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행위이며, 나아가 원고 등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보도가 사후에 무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소속기자들은 경찰의 공식발표를 취재보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허위사실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평범한 시민이었고 원고 유 는 소외인과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을 뿐 하등 공적인 지위에 있었거나 공적인 활동을 한 바 없었던 점, 피고들은 고소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에서 후에 무죄로 판명된 원고 등의 혐의사실을 보도하였으며, 그 보도에 있어서 원고 등의 실명을 써서 보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요소들을 참고로 범죄행위나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가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범죄 또는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

(1) 범죄보도의 의의

범죄는 공동사회생활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위반으로서 그에 대한 보도는 비정상적인 특수상황과 그 속에서 감행된 일탈적 행위가 제시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중의 흥미를 충족하는 동시에 범죄행태에 대한 비판적 조명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며, 그 외에도 범죄의 경과와 그 수사 및 처벌에 관한 보도는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강구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언론

이 행하는 공적 과업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과 그 수사경과에 관하여 알려는 대중의 강한 관심은 사실상 그에 관하여 다수의 대중이 원한다는 것만으로 공공의 정당한 정보의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 관심의 대상이 실질적인 정보가치를 갖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아 범죄와 그에 대한 추궁은 공공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범죄 또는 범죄혐의보도의 개인에 대한 영향

이렇게 범죄에 대한 공공의 정보의 이익이 크다 할 지라도 그 보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 대한 사건보도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범죄자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정착된 기본적인 가치를 공격함으로써 사회의 법적인 질서를 교란하거나 법공동체를 이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이러한 범죄의 유무와 그 관계자를 밝혀내고 법원에 죄를 청구하는 절차라 할 수 있고 사법권이 독립된 법치국가에서 법원은 형사판결에 의해 범죄자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을 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벌 때문에 주위로부터 멸시당하거나 배척받게 되며, 그 차별의 범위는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경중에 의존한다. 동료간에서 그의 명예는 손상되고 그의 일반적 가치평가는 실추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보도하는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공적 과업 중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 보도의 결과 범죄자에게 위와 같은 명예 손상과 차별대우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열린 사회에서 사회의 공동가치를 침범한 범인에 대한 일반의 반응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이 범죄자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인간의 존엄권은 부인되지 않으며, 그 유죄판결로 선언된 자유박탈 이외의 법정되지 않은 처벌은 가할 수 없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언론보도는 억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특히 문제되는 것은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혐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고, 보도의 사실적 영향은 법적인 책임의 유무가 적법절차에 따라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관계인에 대하여 명예손상과 사회로부터의 배척을 받게 되는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처벌을 가한다는 데에 있다.

즉, 사회적 현실에 있어서는 범인이라는 추정 내지 단순한 범죄혐의만으로도 그 관계자의 명예는 손상된다. 단순한 혐의는 오류의 개연성이 클 뿐 아니라 수사결과 증거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않는 일반독자는 수사의 개시만으로도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범죄에 연루됨에 대한 인식은 강한 집착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사회학적 연구의 결과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일단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면 그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그 보도의 효과는 쉽게 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3) 실명보도의 폐해와 익명보도의 원칙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중매체가 시사성을 위해 신속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신원을 밝힌다면 그것은 예단적 판결과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언론의 보도가 있기 전에 수용자의 대부분은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이 보도대상이 된 자가 미지의 인물인 경우 수용자는 언론이 보도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쉽게 수용하게 되며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에서 일률적 · 반복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벗어나지 않게 되므로 그 묘사는 절대다수의 대중의 생각에 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범죄보도에 있어서 객관적 사안의 보도와 그에 관계된 인물의 제시를 엄밀히 구분하여 그 관계 인물의 신원은 밝히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계한 인물의 신원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이 그 범죄와 그 수사에 관하여 알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범죄보도에 관한 언론의 과업은 객관적인 범죄의 현상과 그에 대한 처벌 및 범죄에 대한 대책의 보도에 국한될 뿐이지 범죄를 탄핵하고 관계인에게 응징을 가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에 범죄혐의자를 명시하는 것은 그의 효과에 비추어 추후에 법원에 의해 부과된 형벌보다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범죄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신원을 밝힐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익명보도주의).

(4) 범인의 인물에 대한 공개의 정당한 이익-익명보도주의의 예외

익명보도주의가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실명이나 초상의 보도에 의해 관계자의 신원을 공공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원명시의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이 공적인물인지의 여부, 범죄사건의 중요성, 배경 또는 비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과 공공의 정보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 이론에 의하면 범죄보도에 있어서 그 신원에 대한 정당한 공적인 이익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또는 그 사회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형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물은 그의 행위가 평범함과 빈번함을 상회하여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에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그것이 일상적인 범죄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나 그 혐의자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 일반에게 중요성을 갖게 되거나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시사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공적 지위나 공적 생활에 등장한 바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던 바, 이러한 원고 등에 대한 혐의사실의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범위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관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신원확인보도는 공적인물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한다고 하여야 한다. 첫째로 그 범죄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사에 관한 포괄적 정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여론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기사작성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범행이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을 갖는 것이어서 그 중대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둘째로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원을 명시한 실명보도나 그 초상의 보도가 허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의 증명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사전에 보도하여야 할 특별히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그의 범행이 자의로 진술된 신빙할 만한 자백에 의해 증명되었거나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 소속기자들이 취재한 범죄내용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혼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원고 유　　가 남편을 협박해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폭력배를 시켜 청부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 것이었던 바, 그 내용을 보면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고도의 악성을 보유하며 이혼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사회윤리에 비추어 심각한 사회적 비판을 면치 못할 사안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일응 그 신원을 명시한 보도가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위 원고에 대한 위 보도혐의사실이 진실로 확정된 이후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취재 보도된 것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그 보도시점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수사 및 재판의 진행과 보도

범죄의 보도는 범죄의 혐의가 구체화되고 그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법적으로도 달리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범죄의 처리과정을 보면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관계자의 고소 · 고발 등이 있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는 현실화되고,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입건에 의해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수사 결과 중한 범죄의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면 피의자가 구속되고,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상소가 있으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에 이르게 된다. 각 단계마다 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율도 달라지게 되는데, 형법에 의하면 공판청구 전까지 피의사실의 공표는 금지되고(형법 제 126조),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7조) 현행법에 의하면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의할 것은 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이 적용되며, 그것이 직접 언론을 수명자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론은 그 취지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보도는 이러한 각 단계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상황에 유의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진행 중인 단계를 넘어 혐의의 정도를 높이는 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등에 대한 피고들의 보도는 원고 등에 대한 소외인들의 고소가 있은 후 2개월 간의 수사를 거친 후에 원고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 바, 이러한 단계에서는 아직 피의사실의 공표가 금지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공공을 위한 지대한 정보의 이익이 없는 한 그 보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실명을 써서 보도하는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범인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은 공적인 정보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국한되며, 그와는 무관한 범인의 인격의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이나 사사적 영역에 관한 언급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범인에 대한 보도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비난을 가져오는 과장이나 왜곡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의 보도 내용에는 원고 유　　가 춤바람이 났다든가 카바레에서 만난 폭력배를 청부폭력을 위해 고용했다든가 하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가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을 표현내용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의 경우에는 선정적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 등의 인격상이 왜곡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도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침해받은 명예 및 인격권에 비추어 비교형량한다면 공공의 이익이 보다 무거웠다고 생각할 수 없고, 이 점에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오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항변

피고들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가사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은 조각되는 것이고,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

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먼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후에 원고 유 등이 무죄확정판결을 받고 반면 고소인 윤 은 위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기소됨으로써 허위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허위보도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그 보도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앞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지 않는 수사단계에서 공적 인물도 아닌 원고 등의 혐의내용을 실명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명예훼손의 손해를 끼친 피고들의 행위는 이익형량의 법리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피고들의 보도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다름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 피고들의 항변을 판단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과연 경찰의 공식발표가 있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의 형법이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수사기관이 그 관할 처리사건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발표를 할 수 있는 경우란 그 사건의 국민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지대하여 국민대다수의 간절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청 때문에 경찰의 공보에 관한 규율은 법령에 의한 공보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식으로 기자는 기타 일반인에게 수사의 경과나 내용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공보관으로서의 직무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여부가 불명한 담당 경찰관이 아무런 내부적 결재절차를 거침이 없이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니 이를 가리켜 공식발표라 할 수는 없다(또 피고들은 공식발표가 아니더라도 사건을 담당한 수사경찰관 등 신뢰할 만한 수사담당자로부터 취재하여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소사건의 수사가 종종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보면 또 수사담당자가 수사성과를 과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기자들은 그 동안의 관행에 따른 이러한 부적법한 제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이나 조사를 행함이 없이 피의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이를 그대로 사실인 양 보도하였던 것이므로, 취재 및 보도경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 보도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액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 및 보도로 인하여 원고 유 및 망 정 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 유 , 망 정 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유 , 망 정 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피고들이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 및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의 정도 및 무죄판결 확정 후의 명예회복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유 에게 금 15,000,000원, 망 정 에게 금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한국방송공사는 각 원고 유 에게 금 7,000,000원, 망 정 에게 금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유 에게 금 10,000,000원, 망 정 에게 금 7,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각 원고 유 에게 금 5,000,000, 망 정 에게 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망 정 이 1994. 10. 20. 사망한 사실,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조 , 자녀들인 원고 정 , 정 , 정 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조 , 자녀들인 원고 정 , 정 , 정 이 각 상속분에 상응하여 망 정성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유 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3,333,333원(1,000,000원×3/9, 이하 원미만 버림),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2,222,222원씩 (10,000,000원×2/9),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한국방송공사는 원고 유 에게 금 7,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1,666,666원(5,000,000원×3/9),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1,111,111원씩(5,000,000원×2/9),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유 에게 금 10,000,000, 원고 조 에게 금 2,333,333원(7,000,000원×3/9),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금 1,555,555원씩(7,000,000원×2/9),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각 원고 유 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1,000,000원(3,000,000×3/9),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666,666원씩(3,000,000원×2/9)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불법행위일인 1990. 8. 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5.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

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는 불법행위일인 1990. 8. 2.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6. 2.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다만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만이 항소하여 위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27.

재판장 판사 박 용 상
판사 박 태 동
판사 황 정 규

각 피고들 별 보도기사

1. 1990. 8. 2.자 동아일보

이혼訴 제기당한 간통 女人

남편 請負 폭행

위자료 받아 내려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달라며 청부폭력을 한 俞 (39 · 서울 恩平구)와 俞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鄭 씨(43 · 상업) 등 청부폭력배 2명에 대해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俞씨는 지난 88년 남편 李모 씨(41 · 회사원)로부터 자신이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카바레에서 만나 알게 된 鄭씨 등에게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5억원을 받아내면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1990. 8. 2.자 중앙일보

춤바람 主婦 이혼소송 당하자

폭력배에 위자료 請負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이혼소송을 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폭력배들에게 청부, 남편의 친구를 납치, 폭행한 俞 씨(39 · 여 · 서울)와 俞씨의 청부로 폭력을 휘두른 씨(43 · 의류판매상 · 폭행치상 등 전과5범 · 서울)를 비롯한 폭력배 2명 등 모두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폭력배 씨(32 · 노점상 · 서울)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俞씨는 남편 李모 씨(41 · 회사원 · 전북 전주시)가 88년 9월 춤바람이 난 자신을 간통혐의로 고소, 법원에 계류 중인 이혼소송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평소 카바레 등에서 만나 알게 된 鄭씨 등에게 「남편을 협박해 위자료 5억원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한 혐의다.

3. 1990. 8. 2.자 조선일보

離婚소송 30代 남편 친구 請負폭행

폭력배 등 3명 영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폭력배들을 시켜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내려한 俞 씨(39 · 주부 · 서울 은평구)와 俞씨의 부탁을 받고 俞씨의 남편의 친구를 폭행한 鄭 (43 · 의류판매상 · 서울 서초구), 丁 씨(34 · 의류판매상 · 서울 동작구)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俞씨는 남편 李모 씨(41 · 회사원 · 전북 전주시)가 지난 88년 9월 자신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 이혼을 당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카바레에서 알게 된 鄭씨 등에게 「남편을 혼내고 위자료 5억원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俞씨는 그러나 남편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지난 5월 18일 밤 11시 40분쯤 鄭씨 등과 함께 남편의 친구 尹모 씨(44 · 운수업)를 모 호텔로 불러내 李씨의 행방을 대라며 尹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 1990. 8. 2.자 경향신문

離婚소송 主婦가 청부폭력

남편친구 감금… 폭력배 등 3명 令狀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달라며 청부폭력을 부탁한 俞 씨(39 · 서울 은평구)와 鄭 (43 · 상업 · 서울 서초구)등 청부폭력배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

고 달아난 金 (32 · 상업)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俞씨는 남편 李모 씨(41 · 회사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카바레에서 만나 알게 된 鄭씨에게 「남편에게서 위자료 5억만 받아주면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한 혐의이다. 또 鄭씨 등은 지난 5월 18일 하오 11시 40분쯤 남편 李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李씨의 친구인 尹모 씨(44 · 운수업 · 서울 송파구)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호텔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준비한 승용차로 서초구 반포동 ㄷ카페로 납치해 옷을 벗기고 흉기로 위협, 李씨의 행방을 댈 것을 요구하며 6시간 동안 감금, 폭행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俞씨는 2년 전부터 사교춤을 배운 뒤 카바레 등에서 알게 된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해오다 남편 李씨에게 발각,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5. 1990. 8. 2.자 한국일보

위자료 5億 받아내려 소송남편에 청부폭행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청부폭행을 의뢰한 俞 씨(39 · 주부 · 서울 은평구)와 俞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鄭 씨(43 · 의류판매상 · 서울 서초구)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난 金 씨(32 · 상업 · 서울 송파구)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俞씨는 남편 李모 씨(41 · 회사원)로부터 간통혐의로 피소, 소송이 계류 중인데,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평소 카바레에서 알게 된 鄭씨 등에게 「남편을 납치폭행, 위자료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했다는 것.

6. 1990. 8. 19.자 주간경향

간통녀 청부폭행 5억 진상

수없는 불륜을 드러나자 해결사와 짜고 남편재산 노려

남성편력 소문 나

방탕한 결혼생활로 남편에게 외면당한 한 간통녀가 오히려 남편을 청부 폭행,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쇠고랑을 찼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3일 유 씨(가명 · 39 · 주부 · 서울시 은평구)와 정 씨(가명 · 43 · 상업 · 서울 서초구)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달아난 김모 씨(32 · 상업) 등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월 18일 남편 이 씨(가명 · 전북)의 친구인 윤모 씨를 서울 역삼동 소재 한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이씨의 행방을 말하라면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것. 윤씨는 정체불명의 건장한 사

내들에 둘러싸여 계속 협박조의 추궁을 당했으나 끝까지 친구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유 씨는 사내들에게 「다른 곳으로 끌고가 혼을 내주자」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반포동의 ㄷ카페로 윤씨를 데려가 감금하다시피하여 폭행과 욕설을 자행했는데, 유씨는 2년 전부터 사교춤을 배우기 시작해 카바레를 돌아다니며 뭇 남성들과 춤을 추다 급기야 남편 이 씨에 의해 간통혐의로 피소, 아직 전주지법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별거상태에 들어갔으며 남편 이 씨는 대치동 O 아파트에 2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또한 송파동에서 패션구두 대리점을 하는 등 꽤 부유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동산 등 이 씨의 재산은 대략 30억 정도에 이른다고. 별거 중에도 이씨는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종종 유씨의 행방을 수소문하기도 했는데 유씨의 행동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방탕한 것이었다고. 남편 이씨의 고소장에 의하면 첫 간통으로 고소된 뒤에도 유씨는 청주에서 한 남자와 살다 2차 피소, 전남 광주의 모대학 교수와도 3차 간통피소를 당하는 등 유씨의 남성편력은 절정을 이루었다고 한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 이씨도 아예 포기, 부부의 관계에서 원수사이로 변해버렸다. 사실 이전에도 유씨는 친정 오빠 등과 함께 이씨의 사무실과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곤 했다는 것. 심지어 이씨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까지 공갈협박을 일삼았다 한다. 전주지법에 계류 중인 간통사건이 확정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씨는 위자료 한푼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계에 위협을 느낀 유씨는 일당과 작당, 남편 이씨를 살해하거나 위협해서 위자료로 5억원을 받아내고자 한 것. 만약 살해했을 경우에는 이씨의 전 재산이 법적으로 아직 부부상태에 있는 유씨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졸지에 벼락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모의의 조건은 살해시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가담자들에게 주고, 위협해 위자료로 5억원을 받아내면 그 중 1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남편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자기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죽이고 과실치사로 위장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지난 5월 18일 죄없는 이씨의 친구 윤모 씨는 레스토랑과 카페에 끌려 다니면서 온갖 폭력을 당했다. 나무젓가락에 얼굴을 찔리고 콜라병으로 중요부위를 구타당하는 등 전치 5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윤씨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팬티만 남긴 채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는데, 이씨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가위로 혓바닥과 성기를 잘라 버린다고 위협했다 한다. 결국 5시간 30여분 동안의 감금에서 풀려난 윤씨는 이씨에게 연락해 이들을 폭력 및 살인미수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유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기도. 2년여의 불륜행각 끝에 드디어 남편에 의해 쇠고랑을 찬 유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으로 노래, 가야금, 탈춤 등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기의 소유자라고 한다.(이 기자)

1심 判決文

사　　건 : 93가합54908 손해배상(기)

원　　고 : 1. 유

서울 은평구

망 정　　의 소송수계인

2. 조

3. 정

4. 정

5. 정

위 원고들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 홍승기

피　　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안우만

소송수행자 신배식, 함융호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병관, 권오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봉진, 차형근

3.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필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4.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최종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5.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재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6.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정주교, 강정면, 최승민
7.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이사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8.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변론종결 : 1995. 4. 21.

주 문 :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유 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666,666원씩,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유 에게 금 7,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666,666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444,444원씩 및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 유 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666,666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금 444,444원씩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1995. 5. 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각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 유 에게 각 금 30,000,000원, 원고 조 에게 각 금 166,667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36, 을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홍 , 허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 , 곽 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유 는 1975. 7. 23. 소외 이 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1990.경 전주지방법원 88드4793호로 위 소외인과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며, 망 정 은 위 원고 유 의 오빠인 소외 유 의 친구인 자이다.

나. 1990. 5. 24.경 위 이 의 친구인 소외 윤 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원고 유 , 망 정 , 소외 김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면서 위 서초경찰서 소속 경장 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받은 후 1990. 5. 29.자로 「피고소인 유 가 위 계속 중인 이혼소송에서 위 이 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망 정 등과 함께 위 이 을 살해할 것을 공모한 후 1990. 5. 18. 23:00경 위 이 의 친구인 윤 을 납치한 후 이 이 의 소재를 대라며 같은 날 23:30경부터 같은 달 19. 05:00경까지 감금, 폭행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1990. 6. 27. 위 이 은 서초경찰서에 「① 피고소인 유 가 1990. 3. 11.경 위 이 의 집안에 침입하여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② 이혼재판이 끝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폭력배를 고용하여 이혼이 끝나기 전 위 이 을 살해하면 상속 재산의 1/2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자료로 금 5억원을 받으면 1억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일을 맡기고, ③ 피고소인 유 는 폭력배를 시켜 위 이 의 아파트 및 양화점 매장을 감시하고 1990. 5. 17.부터 20.까지 가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④ 피고소인 유 의 오빠인 소외 유 과 짜고 위 유 이 국세청에 다니는 다른 직원을 시켜 국세청에 조사할 것이 있다며 전화를 하고 위 이 이 나타나면 살해하려 기도하였으며, ⑤ 위 이 의 친구인 위 윤 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유인, 위 윤 을 피고소인 유 와 50대 남자 폭력배들이 미리 준비해 둔 서울 서초구

대화카페 지하실로 강제납치 감금하여 1990. 5. 18. 23:00부터 5. 19. 05:00까지 위 이 의 거처를 대라고 하면서 무차별 폭행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서초경찰서 형사계 형사7반 소속 경장 및 같은 경찰서 형사계 강력2반 소속 경사 곽 , 경장 공 등은 원고 유 , 망 정 등을 살인예비음모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한 후 1990. 8. 2. 원고 유 , 망 정 외 1인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다.

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계 소속 형사계장 소외 김 등 수사담당 경찰관 등은 위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기 전인 1990. 8. 1. 14:00경 피고들을 포함하여 도하 신문사 소 속기자들에게 위 사건의 구속영장의 신청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마. 이에 도하 각 신문사 기자들은 피의사실의 요지가 기재된 보도자료 외에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1990. 8. 2.에 위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의 사회면에 원고 유 및 망 정 등의 피의사실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1990. 8. 19.자 같은 피고 발행의 주간경향 31, 32면에 위 잡지사 소속의 기자가 위와 같은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서초경찰서의 수사담당 경찰관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위와 같은 윤 및 이 의 고소장 기재내용 등을 참조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바. 원고 유 , 망 정 등은 1990. 8.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991. 12. 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1992. 11. 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의 공무원인 서초경찰서 수사 담당 경찰관과 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그 공소제기 전에는 이를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하여 그것이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 유 및 망 정 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유 및 망 정 등에 대한 위 서초경찰서의 피의사실 공표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그 보도내용의 진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유 및 망 정 등이 피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고 등의 위와 같은 부인주장은 전혀 보도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 등의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원고 등의 실명과 주소를 그대로 보도하여 원고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유 및 망 정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한 진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인 서초경찰서 수사담당 경찰서 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자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한 직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 유 및 망 정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는 이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등의 피의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하여

(1)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주장하기를 위 피고들의 별지 기재 기사는 위 서초경찰서가 원고 유 등에 관하여 그 내용과 같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기사화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 유 등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정확한 의미내용에도 불구하고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본문의 내용 외에 특히 제목 및 전문의 내용, 배치, 본문의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기사들은 그 제목에 별지 기재와 같이 『이혼소 제기당한 간통 여인 남편 청부폭행』『춤바람 주부 이혼소송 당하자 폭력배에 위자료 청부』『이혼소송 30대 남편 친구 청부폭행』『이혼소송 주부가 청부폭행』『위자료 5억 받아내려 소송 남편에 청부폭행』『간통녀 청부폭행 5억 진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 등이 마치 청부폭행행위를 한 것 같은 단정적인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 공표됨에 의하여 원고 등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자료 또는 근거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 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면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보도기관이 과장 또는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부인사실을 조사하여 게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의자들의 실명이나 주소를 그 보도자료에 기하여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당성 판단과 따로이 그 보도자체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먼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그 각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등이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위 피의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 취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서초경찰서 형사계 수사담당관 등이 원고 등에 대한 구속영

장을 신청하면서 각 도하 신문기자들에게 취재를 요청하여 피의사실의 요지가 기재된 보도자료를 위 피고들에게 배부하여 위 보도자료 및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별지 기재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피의자 유 는 남편 이 이 1988. 9.자신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 이혼을 당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카바레에서 알게 된 피의자 정 등에게 '남편을 혼내고 위자료 5억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을 주겠다' 고 부탁한 바 있고, 남편 이 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행방을 감추자 1990. 5. 18. 21:40경 피의자 정 등과 함께 남편의 친구 윤 을 모 호텔로 불러내 이 의 행방을 대라며 위 윤 을 폭행하였다」로 되어 있음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어 이러한 보도자료에 위 피고들 작성의 별지 기재 기사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각 기사내용은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의 기사내용은 보도자료의 내용을 벗어나 기사의 앞머리에 『춤바람 주부』라는 큰 활자의 제목을 부가하고 그 내용에 원고 유 가 춤바람이 났다는 표현을 쓰는 등으로 전체적으로 원고 유 가 춤바람이 나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보도한 점,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우선 일간 경향신문에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2년 전부터 사교춤을 배운 뒤 카바레 등에서 알게 된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해오다 남편 이씨에게 발각」이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1990. 8. 19.자 주간경향에는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 유 등 및 위 윤 , 이 등과도 접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위 서초경찰서의 보도자료를 참조했다거나 비공식적인 수사기관의 확인절차를 밟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유 , 망 정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유 , 망 정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액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와 보도로 인하여 원고 유 및 망 정 이 정신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원고 유 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유 및 망 정 의 연령, 신분, 교육

정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이 사건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게재 정도 및 무죄판결 확정 후의 명예회복 조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유 에게 금 10,000,000원, 망 정 에게 금 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 유 에게 금 5,000,000원, 망 정 에게 금 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유 에게 금 7,000,000원, 망 정 에게 금 2,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망 정 이 1994. 10. 20. 사망한 사실,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조 , 자녀들인 원고 정 , 원고 정 , 원고 정 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정 , 원고 정 , 원고 정 이 각 상속분에 상응하여 망 정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유 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1,000,000원(계산근거: 3,000,000원×3/9),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666,666원씩(계산근거: 3,000,000원×2/9, 이하 원미만 버림),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유 에게 금 7,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666,666원(계산근거: 2,000,000원×3/9),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444,444원씩(계산근거: 2,000,000원×2/9),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 유 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666,666원(계산근거: 2,000,000원×3/9),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금 444,444원씩(계산근거: 2,000,000원×2/9)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0. 8. 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5. 5.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19. □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김 상 헌

판사 우 라 옥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1996. 2. 2.자 판결 (95나25819)
인천지방법원 1995. 6. 13.자 판결 (94가합16812)

事實槪要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1996년 2월 2일 유방확대 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방영한 「PD수첩」에 출연한 정 씨가 문화방송사 및 「PD수첩」프로듀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를 취재 방송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화면처리방법으로 원고의 영상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거나 뭉개거나 뒷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고 원고의 음성도 변조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았어야 하고 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모습을 비록 그림자처리 하였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눈, 코, 입모양과 머리모양이 섬세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원고의 음성은 전혀 변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PD수첩」측이 신분노출을 방지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1994년 7월 5일 방영당시 화면에 이목구비가 섬세하게 나타나 있고, 음성을 전혀 변조하지 않은 채 방송하여 그 방송을 시청한 주위 사람들이 쉽게 자신을 알아 볼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초상권 등이 침해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원고는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심 判 決 文

사 건 : 95나2581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정

인천 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종선, 김종세

피고, 피항소인 : 1. 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교양제작국

2.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성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최재경

변론종결 : 1995. 12. 22.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1995. 6. 13. 선고, 94가합16812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1.부터 1996. 2. 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영상,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3, 4 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 의 증언(뒤에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에서의 피고 정 본인 신문결과, 당심에서의 원고본인 신문결과, 원심과 당심에서의 각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

나는 위 이　　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결혼을 하였다가 1993. 3.경 이혼을 한 후 식당에서 주방장 등의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는 1955. 2.생의 여자로서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을 받고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1994. 4.경 미국 앨라버마주 버밍햄 지방법원에서 미국내 실리콘 백 제조회사에 대해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시술자들의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중 3%는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시술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2) 이에 우리 나라에서는 YMCA 시민중계실에서 그 접수와 소송대행을 맡게 되었고 그 접수과정에서 우리 나라에도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시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으며, 위와 같은 소식에 접한 원고는 1994. 5. 말경 위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몇마디 대답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대답 중 일부가 같은 달 25.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약 10초간 그 육성을 변조함이 없이 그 뒷모습과 함께 방송되었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3) 피고회사의 'PD 수첩'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취재하고, 이미 시술받은 사람들에게 YMCA 시민중계실을 통해 접수할 경우 현재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는 물론 향후 30년간의 부작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유방성형수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재를 시작하였는 바, 위 기획의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례를 찾던 중 원고가 이미 위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신청을 하였음을 알고 위 제작진의 일원인 섭외작가가 원고와 전화로 통화하여 인터뷰 승낙을 받아내게 되었다.

(4) 이에 피고회사 교양제작국 소속 프로듀서로서 위 'PD 수첩' 프로그램 제작진의 일원인 피고 정　　는 1994. 6. 4. 피고회사에서 원고를 취재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시술사실을 주위에 숨겨왔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 정　　에게 원고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원고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는 조건을 붙여 취재 및 방영을 승낙하였고 피고 정　　도 이를 약속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원고의 요구나 피고 정　　의 약속은 없었다.

(5) 피고 정　　는 원고를 취재한 후 1994. 7. 5. 위 'PD 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하면서 원고의 성명 대신 '김혜정'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화면은 원고의 우측에서 조명을 투사하여 벽(셋팅)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방영하고 목소리는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였으며, 원고를 취재한 방송은 위 프로그램의 총방송

시간 40여 분 중 1회 28초간, 2회 24초간 모두 52초간이었는데, 그 방송의 내용은 원고는 유방확대 성형수술의 후유증으로 현재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6) 그런데 이 사건 방송에 있어 원고의 모습이 비록 그림자처리 되었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우측 옆모습 즉 눈, 코, 입모양과 머리모양이 섬세하게 나타나고 원고의 음성이 전혀 변조되지 않음으로써 위 방송을 시청한 원고 주위의 가족, 친척, 친구들 중 여러 사람이 원고를 알아보고 원고의 수술사실을 거론하거나 원고에게 위 수술과 방송출연사실에 관하여 문의해 왔다.

(7) 한편 TV에 인터뷰를 방영하는 경우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하여서 화면처리하는 방법으로 피촬영자의 영상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거나 뭉개는 방법, 그림자를 촬영한 후 방영하는 방법, 뒷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는 방법 등이 있고 또한 간단한 기계처리에 의한 음성변조방법도 있는데 피고회사에서는 출연자들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 선택하게 하지 아니하고 담당 PD가 독자적 결정을 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 정　　는 원고에게 위 화면처리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음성변조를 원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위와 같은 방송방법을 채택하였다.

나.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PD 수첩' 프로그램에 자신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원고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피고 정　　도 이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정　　로서는 원고를 취재 방송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화면처리방법으로 원고의 영상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거나 뭉개거나 뒷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고 원고의 음성도 변조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았어야 하고 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모습을 비록 그림자처리 하였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눈, 코, 입모양과 머리모양이 섬세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원고의 음성은 전혀 변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이 위와 같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은, 공개된 사항이 고도의 비밀영역에 속하지

않고 공개된 집단이 소규모의 가족적 집단이고, 원고가 '뉴스데스크' 시간의 육성방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화인터뷰 도중 스스로 방송출연을 제의하고 시술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개된 곳에서의 논의를 감수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그밖에 이 사건 방송의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없으며, 원고가 손해를 본 것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유방은 여성의 성적부위의 하나로서 그 확대를 위한 성형수술은 여성의 비밀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의 비밀보존의 사가 있는 한 이를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부터도 비밀사항으로서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그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인정되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공개된 곳에서의 논의를 감수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밖에 위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방송의 공적인 목적 및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의 방법에 있어 피고 정 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한 이 사건 방송이 적법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나이, 직업, 결혼 및 이혼경력, 원고가 방송된 경위와 방송내용 및 방송시간, 방송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액은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2.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2.

재판장 판사 유 현
판사 임 숙 경
판사 김 창 석

1심 判決文

사 건 : 94가합16812 손해배상(기)

원 고 : 정
인천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피 고 : 1. 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교양제작국
2.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성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최재경

변론종결 : 1995. 5. 9.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방송의 경위

아래 인정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던 중인 1994. 5. 27.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 교양제작국 소속 프로듀서로서 「피디(PD)수첩」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제작진의 일원인 피고 정

로부터 피고회사가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방송할 계획으로 취재를 하고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6. 4. 피고회사에 방문하여 취재에 응하였다.

나. 피고 정 는 원고를 취재한 후 1994. 7. 5. 위 「피디(PD)수첩」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하면서 원고의 성명 대신 「김혜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화면은 원고의 우측에서 조명을 투사하여 벽(셋팅)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방영하였으나 목소리는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였으며, 원고를 취재한 방송은 위 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 40여 분 중 1회에 28초간, 2회 24초간 모두 52초간 방송이 되었는데, 그 방송의 내용은 원고는 위 수술의 후유증으로 현재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그가 위와 같이 취재에 응하면서 피고 정　　에게 자신의 신분이 주위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정　　는 원고가 신분노출을 꺼리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원고의 모습과 음성을 변조하여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모습을 비록 그림자처리 하였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이목구비가 섬세하게 나타나 있고, 더군다나 원고의 음성은 전혀 변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송하여 그 방송을 시청한 주위 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인격권, 초상권 등이 침해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 정　　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정　　의 사용자로서 피고 정　　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원고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헌법 제17조), 이러한 권리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물론이나(헌법 제21조 제4항, 제27조), 한편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헌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표현의 자유, 특히 TV 등 대중 언론매체에 의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유지와 현대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현대사회에서의 공중매체에 의한 보도 행위는 그 본질상 불가피하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되어 이러한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이나, 공중매체의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기능과 역할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개인이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방송이나 보도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으나 언론매체가 이러한 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언론매체측의 위 조건 등 이행상의 과실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

념이나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언론매체로 하여금 그 보도행위에 있어 이른바 숨쉴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갑제1호증의 1내지 4,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 및 피고 정 본인신문결과와 이 법원의 녹화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결혼을 하였다가 1993. 3.경 이혼을 한 후 식당에서 주방장 등의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는 1955. 2. 생의 여자로서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을 받고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위 부작용의 경우 대부분 삽입하였던 실리콘 백을 제거함으로써 원상회복되는 사실, 1994. 4.경 미국 앨라버마주 버밍햄 지방법원에서 미국 내 실리콘 백 제조회사에 대해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시술자들의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2억5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중 3%는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시술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YMCA 시민중계실에서 그 접수와 소송대행을 맡게 되었는데, 그 접수과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시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소식에 접한 원고는 1994. 5. 말경 위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신청을 하였으며, 그 신청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몇마디 대담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대담 중 일부가 같은 달 25. 피고회사의 「뉴스데스크」프로그램에 원고의 육성을 변조함이 없이 그대로 방영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는 사실, 피고회사의 「PD 수첩」 프로그램 제작진은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취재하고, 이미 시술받은 사람들에게 YMCA 시민중계실을 통해 접수할 경우 현재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는 물론 향후 30년간의 부작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유방성형수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재를 시작한 사실, 위 기획의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례를 찾던 중 원고가 이미 1994. 5. 말경 위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신청을 하였음을 알고 위 제작진의 일원인 섭외 작가가 원고와 전화로 통화하여 인터뷰 승낙을 받아내게 된 사실, 피고회사에는 인터뷰를 방영하는 경우 신분보장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내규 등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관례상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하여서는 가명을 사용하고, 화면은 피촬영자의 영상 중 중요부분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는 방법, 그림자를 촬영한 후 방영하는 방법, 뒷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는 방법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음성의 경우 방송출연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나 피고회사의 판단으로 신분노출이 되는 경우 어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을 변조하여 방송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 정 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이 원고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

는 조건을 달아 취재 및 방영을 승낙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원고의 요구나 피고 정　　의 약속은 없었던 사실(이에 반하여 피고 정　　가 원고에게 음성 변조 방송을 약속하였다는 증인 이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 정　　는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면서 출연자 중 미혼의 여성으로 무면허의사에 의한 불법시술자일 뿐더러 출연자 본인이 음성변조를 요구하는 출연자에 대하여는 가명을 사용하고 음성을 변조하여 방송을 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무면허 의사에 의한 불법적인 시술이 아니었고, 원고의 나이와 결혼 경력,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목소리까지 숨겨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한 사실. 그 방송 후 원고를 아는 일부 주위사람들이 방송된 사람이 원고가 아니냐는 등의 확인전화를 걸어 오게 되자 원고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소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는 그녀에게 유방성형수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도 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방송 중 원고를 취재한 부문이 비록 음성변조는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화면을 그림자처리 하였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그 방송을 시청한 사람 중 원고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들도 원고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의 나이, 직업, 결혼 및 이혼 경력 등과 원고가 그 부작용에 대하여 YMCA 시민중계실에 손해배상을 위한 접수를 하였고, 비록 피고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방송의 취재에 승낙을 하였고, 당원에 시술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것과 그 부작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곳에서의 논의를 감수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방송의 목적과 내용, 피고측에서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의 내용과 앞서 설시한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을 함에 있어 방송관례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피방영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1995. 6. 13. □

재판장　판사　이　홍　권

판사　조　효　상

판사　김　원　일

연기자협회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원고가 임의로 변조하여 '프로듀서' 지에 실은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피고 일요신문사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었으므로 원고(반소피고)는 5백만원을 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1996. 2. 15.자 판결 (95가합26099, 95가합97978)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1996년 2월 15일 원고(반소피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피고 일요신문사, 피고(반소원고) 이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에서 1.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 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요신문은 1995년 2월 19일자(실재 발행일 14일) 『이 폭탄발언』제하의 기사에서 연기자협회장 이 명의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된 진정서의 내용을 원고가 임의로 변조하여 '프로듀서' 지에 실은 것처럼 보도하였다. 한편, 같은 달 17일 프로듀서연합회보 특보에 『연기자협회장 이모 씨 한명회로 착각증?』이라는 제목으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는 표현을 써서 피고 이 는 야비하고 졸렬하게 원고에 대하여 무고성 투서를 한 사람이며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

런 투서를 한 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일요신문사와 이 를 상대로, 이 는 한국프로듀서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신문사는 피고 이 와의 인터뷰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마치 연기자협회에서 피고 이 명의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되었던 진정서의 내용을 원고가 임의로 변조하여 '프로듀서' 지에 실은 것처럼 보도하여 신문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위 진정서의 내용을 조작한 것처럼 인식케 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위 기사에 위와 같이 원고 소속 PD 김 의 반박주장을 통하여 원고의 해명을 실은 듯한 부분과 진정서를 사본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실수로 위 진정서 내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표현 즉 '행정오류' 라고 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기사를 일반독자가 보통의 주의로서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의례적인 변명 정도에 불과하며 위 진정서가 원고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위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을 불식시키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가 피고 신문사에 의하여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고 밝혔다.

또한 반소에 관하여는 '프로듀서연합회보에 '연기자협회장 이모 씨'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위 이모 씨가 피고 이 를 지칭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어떤 프로듀서의 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 에 대하여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 는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 이 의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된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기사의 게재, 반포행위는 피고 이 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며, 또한 위 연기자협회의 회장으로 있는 피고 이 를 야비하고 졸렬하게 원고에 대하여 무고성 투서를 한 사람,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런 투서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는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피고 이 의 사회적 공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고 판시했다.

한편 일요신문의 위 기사에 대해 1995년 3월 18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95서울중재47), 중재결과 불성립되어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론문 게재 결정(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1995년 7월 5일)을 받은 바 있다.

判決文

사　건 : 95가합26099(본소) 손해배상(기)
95가합9797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의 3 라이프오피스텔 1313호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 주식회사 일요신문사(日曜新聞社)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의 35
대표이사 심상기, 백승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서동우, 이후동, 전병하, 최병호, 한이봉, 정의종, 유욱, 박형연, 양시경, 도건철, 나승복, 강현, 박현욱, 이형석, 김도형, 유광현 , 주한길

피고(반소원고) : 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6의 9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변론종결 : 1996. 1. 25.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19. 부터 1996. 2.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　　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17.부터 1996. 2. 15.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이　　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이　　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사이에 생긴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 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 의,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 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1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반 소 : 원고는 피고 이 에게 금 100,000,000원 및 1995. 2. 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2, 3, 4, 갑제6호증의 2, 3, 4, 5, 의 각 기재 및 증인 조 , 박 , 박 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박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 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조 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7. 9. 5. 방송사 및 프로그램제작사에 재직 중인 프로듀서(PD)를 회원으로 하여 창립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이하 피고 신문사라고만 한다)는 주간지인 '일요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이며, 피고 이 는 방송 연기자들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한국연기자협회의 회장이다.

나. 피고 이 는 한국연기자협회(이하 연기자협회라고만 한다)에 등록된 회원이 아닌 자가 방송국 프로듀서에 의하여 발탁되어 방송에 출연하는 사례가 잦게 되면서 기존의 위 연기자협회 회원들과 비회원 및 프로듀서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자 위 협회 이사들과 상의를 거쳐 "위 연기자협회의 회원들은 프로듀서에 의하여 발탁된 위 협회 비회원 연기자들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PD와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 비회원들과 프로듀서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 또는 불륜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위 비회원들의 방송출연으로 인하여 시청율이 조작되고 국민문화의 질이 떨어지며 국민정서까지 마비시킬지도 모르니 상급지도부서인 공보처에서 위 협회 비회원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위 연기자협회의 회장인 위

피고명의의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어 위 피고의 관여없이 위 연기자협회 이사들이 위 진정서초안의 문구를 일부 다듬고 번호(1, 2, 3…)나 참고표(*)를 첨가하여 위 진정서를 완성한 후 1994. 12. 20.경 이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다.

다. 대통령 비서실은 위 같은 날 위 진정서의 처리를 공보처에 맡겼고, 위 공보처는 위 진정내용을 각 방송사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같은 달 23. 각 방송사에 위 진정서 사본과 함께 위 진정내용을 적절히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각 방송사는 같은 달 29.경 다시 위 진정내용을 각 방송사 드라마국에서 처리할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위 진정서 사본을 각 방송사 드라마국에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가 1995. 1. 28. 발행한 '프로듀서' 라는 협회보(통권제67호)에 방송사가 공보처로부터 받은 위 진정서 사본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라. 피고 신문사의 기자인 소외 조 , 박 는 1995. 2. 12.(일요일) 01:00경 피고 이 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피고 이 가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던 위 진정서와 위 '프로듀서지' 에 실린 위 진정서가 같은 것인지를 물어 봤고, 이에 위 진정서 초안이 위 연기자협회 이사들에 의하여 그 전체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다만 문구수정과 체계가 일부 변경되어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피고는 위 기자들에게 "위 진정서 초안을 작성할 때는 번호(1, 2, 3…)나 참고표(*)가 없었는데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위 진정서에는 위 번호나 참고표가 있고 그 내용의 순서가 일부 바뀐 것일 뿐 그 전체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는 내가 쓴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했을 뿐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위 진정서가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신문사는 같은달 19.자(실제 발행일자는 같은 달 14.) 일요신문(제144호) 제1면 표지에 「이 폭탄발언」이라는 큰 제목하에 'PD 연합회보 이 진정서 변조의혹', 'PD 연합회 vs 연기자협회 전면전 조짐' 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다시 제6면에서 '진정서 변조의혹', '연기자협회 vs PD 협회 힘 겨루기' 라는 소제목과 「먼저 그에게 PD연합회 회보를 실린 진정서 사본을 내밀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 몇 번을 되풀이해 읽어 본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PD 연합회에서 조작했다는 얘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내용이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내가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진정서 문안은 누가 작성했나. △… 집행부가 작성한 걸 내 이름으로 제출한 것이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피고 이 와의 인터뷰기사를 실었으며, 또 위 신문 8면에서 '연기자협회 진정서 변조의혹', '이 회장, 공개된 사본은 우리가 쓴 것 아니다', '변조됐다' 라는 소제목과 함께 「지난 1월 28일자로 발행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보 〈프로듀서〉에 게재된 연기자협회의 청

와대 투서가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이 밝힌 것으로 이 회장은 전재된 사본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내용의 위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실었고, 한편으로 위 기사에 뒤이어 위 같은 면에 '방송 길들이기냐 행정 오류' 라는 소제목과 함께 「이에 대해 프로듀서 연합회의 김 PD는 "공보처장관 명의로 KBS 사장에게 보내졌고 이를 최 부주간이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며 "그렇다면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한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라는 원고 소속 김 PD의 반박주장을 게재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신문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단체포함)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문사는 피고 이 와의 인터뷰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마치 위 연기자협회에서 피고 이 명의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되었던 위 진정서의 내용을 원고가 임의로 변조하여 위 '프로듀서' 지에 실은 것처럼 보도하여 위 신문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위 진정서의 내용을 조작한 것처럼 인식케 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위 기사에 위와 같이 원고 소속 PD 김 의 반박주장을 통하여 원고의 해명을 실은 듯한 부분과 진정서를 사본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실수로 위 진정서 내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표현 즉 '행정오류' 라고 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를 일반독자가 보통의 주의로서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의례적인 변명 정도에 불과하며 위 진정서가 원고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위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을 불식시키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가 피고 신문사에 의하여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신문사의 위법성조각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

잡지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 잡지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추측에 근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내용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5. 1. 28.자 발행의 '프로듀서'라는 협회보에 위 연기자협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다는 진정서 사본을 그대로 전재한 사실과 피고 신문사의 기자들이 피고 이 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피고 이 가 위 기자들에게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던 진정서의 초안과 위 '프로듀서'지에 실린 진정서는 번호(1, 2, 3…)나 참고표(*)가 있다는 점과 그 내용의 순서가 일부 바뀐 점이 다르나 그 전체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위 '프로듀서'지에 실린 진정서가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조 , 박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문사의 위 취재기자들은 위 이 와의 인터뷰 당시 위 이 로부터 위 연기자협회 사무실에 가면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던 진정서 원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위 인터뷰 다음날에 위 연기자협회 사무실에 가서 위 진정서원본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위 원본이 그 곳에 보관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같은 날 원고 연합회 회장인 김 PD를 만나 위 김 에게 위 '프로듀서'지에 실린 진정서와 위 이 가 애당초 작성하였다는 진정서 초안이 다르다는 취지의 위 이 의 말을 전하면서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김 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공보처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에 첨부된 진정서 사본을 위 기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위 진정서사본을 그대로 위 '프로듀서'지에 전재한 것이라는 답변을 한 사실, 위 취재기자들은 다시 한국방송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진정서의 사본을 확인한 결과 그 진정서의 내용이 위 '프로듀서'지에 실린 진정서와 그 내용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처나 대통령비서실에 보관되어 있는 진정서 사본에 대한 확인절차를 아예 포기하고 막연히 위 진정서를 정부기관이 민원처리과정에서 표현을 일부 순

화하거나 삭제하여 원고 등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막상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마치 위 연기자협회에서 피고 이 명의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였던 위 진정서의 내용을 원고가 임의로 변조하여 위 '프로듀서' 지에 실은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문사가 1995. 2. 14. 오전에 발행한 같은 달 19.자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가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신문사의 기사내용은 진실하다고 볼 수도 없고, 위와 같이 위 취재기자들이 위 김 로부터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공보처로부터 전달받은 진정서 사본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또한 한국방송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진정서의 사본과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가 그 내용이 같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이나 공보처에 보관된 진정서 사본에 대한 확인이나 피고 이 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절차도 취하지 아니하고 일간신문과는 달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주간신문인 피고 신문사발행의 위 일요신문에 마치 원고가 위 연기자협회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변조한 듯한 인상을 주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이상 피고 신문사로서는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 신문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배포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 신문사는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피고 신문사의 규모와 신문발행부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 신문사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이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 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이 는 원고가 위 '프로듀서' 지에 실은 진정서의 내용과 위 피고가 작성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또한 자신이 작성한 것과 다르다는 취지로 피고 신문사의 위 기자들에게 말함으로써 위 일요신문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던 진정서와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가 같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요구를 받고,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던 진정서의 초안과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는 번호(1, 2, 3…)나 참고표

(*)가 있다는 점과 그 내용의 순서가 일부 바뀐 점이 다르나 그 전체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가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신문사가 그 발행의 위 신문에 피고 이 의 위 인터뷰기사와 함께 마치 원고가 위 연기자협회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변조한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사실, 피고 이 가 애당초 작성한 진정서 초안은 피고 이 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 연기자협회 이사들에 의하여 그 문구가 일부 다듬어지고 번호(1, 2, 3…)나 참고표(*) 등이 첨가되어 1994. 12. 20.경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되었는데 피고 이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 신문사와의 위 인터뷰에 응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 이 가 위 진정서 초안이 그 전체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이 다만 문구수정과 체계가 일부 변경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위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여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와 위 피고가 애당초 작성한 진정서 초안이 다른 것 같다고 말하였을 뿐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가 변조되었고 또한 그 변조가 원고에 이루어 졌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이 의 위 인터뷰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 신문사가 함부로 피고 이 의 위 인터뷰내용을 과장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치 원고가 위 연기자협회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변조한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피고 이 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이 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을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피고 신문사의 1995. 2. 19.자 일요신문의 실제 발행일(같은 달 14.)이후인 같은 달 17. 발행의 '프로듀서연합회보 특보'에 '연기자협회장 이모 씨, 한명회로 착각증?' 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이른바 연예계비리 사건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름을 부은 역할은 두말할 것 없이 청와대에 무고성 투서를 한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 단체가 지난해 12월20일에 청와대에 보낸 공문이 알려지면서 연기자협회는 한때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기도…(중략) 이 투서는 적어도 이번 사건을 증폭시키는 역할은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이나 그 방법이 너무나 야비하고 졸렬한 것이어서 과연 뜻한 바의 목적을 달성할 지 의문. 게다가 정계진출설이 파다한 연기자협회 회장 이모 씨의 경우 이번 사건에서 그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의 거취와 관련해 이러저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 특정정당에도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는 다소 성급한 추측도 있다. 일이 이쯤되자 이모 씨 좌충우돌하여 진화에 나섰

는데. 한다고 한 것이 역시 그 수준에 맞게 오리발 작전.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투서는) 내가 쓴 게 아닌데…"라며 시치미를 뗀 것. 그는 이 인터뷰에서 한술 더 떠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연기자협회 집행부가 작성한 걸 내 이름으로 제출한 것이다." 며 앞뒤 안맞는 소리를 계속했다. 이런 작태를 본 모 프로듀서는 "그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일을 벌였다 망신만 당한다"고 일갈. 여기에 한마디쯤 덧붙인다면 "스스로를 혹시 드라마 속의 한명회쯤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나 자기 이름으로 낸 투서도 잡아 떼는 걸 보니 한명회는 커녕 남자도 아니었다"는 이야기다.」라는 기사를 게재, 반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는 프로듀서(PD)를 회원으로 하여 창립된 단체이고, 피고 이 는 위 연기자협회의 회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회보에 '연기자협회장 이모 씨'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위 '이모 씨'가 피고 이 를 지칭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어떤 프로듀서의 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 에 대하여 '과대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는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 이 의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된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기사의 게재, 반포행위는 피고 이 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며, 또한 위 연기자협회의 회장으로 있는 피고 이 를 야비하고 졸렬하게 원고에 대하여 무고성 투서를 한 사람,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런 투서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는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피고 이 의 사회적 공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회보에 실린 기사는 피고 이 가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서를 보내고, 위 진정서를 원고가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평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원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일반공중의 관심사인 사항에 대하여는 논평의 자유를 가지며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진실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한 그 평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의견인지, 사회의 다수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결과로서 피논평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논평자는 명예훼손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그 논평기사가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논평이 가해진 경우나 인신공격에 달하는 등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위 회보에 실린 기사 중 피고 이 에 대하여 '과대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 야비하고 졸렬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자체로 보아

피고 이　　의 인격을 비방하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서 논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이　　를 원고에 대하여 무고성 투서를 한 사람,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런 투서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는 사람으로 묘사한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불과할 뿐 원고의 의견이 표명된 논평이라고 볼 수는 없어 위 기사들이 정당한 사실에 기초한 논평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원고는 또, 위 회보의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기사 중 피고 이　　게 대하여 '과대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 라고 표현한 부분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전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임을 원고가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피고 이　　가 야비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무고성 투고를 하였다고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 이　　는 연기자협회에 등록된 회원이 아닌 자가 방송국 프로듀서에 의하여 발탁되어 방송에 출연하는 사례가 잦게 되면서 기존의 연기자협회 회원들과 비회원 및 프로듀서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자 위 협회 이사들과 상의를 거쳐 "위 비회원들과 프로듀서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 또는 불륜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위 비회원들의 방송출연으로 인하여 시청율이 조작되고 국민문화의 질이 떨어지며 국민정서까지 마비시킬지도 모르니 상급지도부서인 공보처에서 위 협회 비회원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위 연기자협회의 회장인 위 피고명의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7호증의 그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전거래관계 또는 불륜관계 및 시청율 조작' 등의 위 진정서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원고를 무고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무고했다고 원고가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 이　　를 위와 같은 투서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시치미를 뗀 사람으로 묘사한 점은, 피고 이　　가 애당초 작성한 위 진정서 초안이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위 연기자협회 이사들에 의하여 그 전체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이 다만 문구수정과 체계만 일부 변경되었는데 피고 이　　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위 진정서가 원고 발행의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후 피고 신문사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위 진정서 사본에는 번호나 참고표가 있고 그 내용의 순서가 일부 바뀐

것일 뿐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애당초 작성한 진정서 초안과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는 내가 쓴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했을 뿐 위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된 위 진정서와 피고 이 가 애당초 작성한 진정서 초안이 같은 내용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음에도 피고 신문사 발행의 신문에서는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내용이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내가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집행부가 작성한 걸 내 이름으로 제출한 것이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진다.' 라는 내용의 마치 피고 이 가 작성한 진정서 초안과 다른 내용의 진정서가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된 것처럼 묘사한 피고 이 의 인터뷰기사가 실렸고 원고가 이를 위 회보에 위 인터뷰기사를 전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이 피고 이 는 애당초 작성한 진정서 초안과 원고 발행의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가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문구와 그 체계만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음에도 마치 진정서 내용이 달라진 것처럼 피고 신문사 발행의 일요신문에 피고 이 의 인터뷰기사가 실리고 원고가 위 인터뷰기사를 위 회보에 전재한 것이므로 위 회보의 기사내용은 진실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 가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위 인터뷰에서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는 내가 쓴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은 진실이고, 원고는 주간신문인 피고 신문사 발행의 일요신문 기사 중 마치 피고 이 가 애당초 작성한 진정서 초안과 다른 내용의 진정서가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된 것처럼 묘사한 피고 이 의 인터뷰기사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회보에 위 인터뷰기사를 실음에 있어 위 이 의 인터뷰기사내용이 진실이며 또한 위 이 가 위와 같이 진정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고도 위 제출된 진정서가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회보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 기사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이 는, 원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그 위자료로서 금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우선 일부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로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 이 에 대하여 '과대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 야비하고 졸렬하다' 라고 표현한 기사와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무고성 투서를 하였다는 기사가 원고 발행의 위 회보에 게재, 반포되어 피고 이 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위 피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의 경력 및 사회적 지위, 위 기사의 내용과 그 게재경위, 위 회보의 발행부수와 구독자의 구성, 원고와 위 피고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위자료로 위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신문사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일요신문의 실제 발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일자인 1995. 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2.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 이 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회보의 발행일인 1995. 2.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6. 2.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신문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와 피고 이 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이 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신문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이 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15. □

재판장 판사 박 효 열

판사 양 태 경

판사 유 헌 종

비록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소수의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49명 중 일부라는 점, 특히 원고 중 2명은 전주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주변사람들 사이에서는 추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6. 5. 14.자 판결 (94가합91515)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996년 5월 14일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오 씨 외 14인이 조선일보사〈월간「필」(FEEL) 발행사〉와 필 기자 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조선일보는 원고 오 . 이 에게 각 1천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조선일보사의 필은 1994년 8월호『독점수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 고백』이라는 제하로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의 여학생이 운동권 선배와 연애 끝에 배신당한 후 호스티스 생활을 시작, 재벌회장과의 동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건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한 바 없고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를 승낙한 적이 없음에도 보도되어 주위로부터 사실확인을 요구받거나 터무니없는 억측에 시달림을 당하였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기사에서 원고들을 특정한 바 없고 원고들은 취재원과 같은 경력을 갖지 않아 서울대학교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이라는 특정 사실만으로는 일반인들이 원고들을 이 사건기사의 취재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기사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이고 특히 원고 오 , 이 은 전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인 점, 서울대 사회대에는 86학번 여학생들이 49명의 소수인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기사의 모델이 원고들일 수 있다고 추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이 사건기사가 보도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게재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으나 불성립되자(94서울중재214),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인용결정(94카기4881 서울지방법원 제50부 결정)을 받아냈다.

判決文

사 건 : 94가합91515 손해배상(기)

신 청 인 : 1. 오
서울 영등포구
2. 이
전주시
3. 김
서울 서초구
4. 김
서울 영등포구
5. 김
서울 은평구
6. 정
서울 서초구
7. 김
서울 관악구
8. 김
서울 은평구

9. 라

서울 동작구

10. 신

서울 마포구

11. 류

전주시

12. 김

서울 송파구

13. 김

구리시

14. 황

서울 서초구

15. 김

서울 동작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걸, 권규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유효석, 김병주

피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2. 신

위 같은 곳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이병선, 최승인, 장원찬

변론종결 : 1996. 4. 23.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오 , 이 에게 각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8. 1.부터 1994. 10. 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오 , 원고 이 과 피고들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오 , 이 에게 각 금 2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4, 5 내지 9,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위 갑제4호증의 6, 9는 각 일부기재에 한한다)와 증인 조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회사로 약칭한다)는 「조선일보」라는 국내 유력 일간지 및 「필」(FEEL) 등을 비롯한 각종 월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신 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필」 지의 기자이다.

(2) 위 「필」 지 1994. 8.호(통권 12호) 표지에는 다른 기사의 표제와 함께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고백』, 『서울대 사회대 입학 - 운동권 선배와의 연애 끝에 배신당함 - 휴학 - 호스티스생활 - 재벌 회장과 아파트에서 동거 - 복학 - 두번째 휴학』이라는 표제가, 49면 목차난에는 『독백수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고백』, 『서울대 사회대 입학 - 운동권 선배와의 연애 끝에 배신당함 -휴학 - 호스티스생활 - 재벌 회장과 아파트에서 동거 - 복학 - 두번째 휴학』이라는 목차가 각 게재되었고, 126면에는 『독점 수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이라는 제목으로 126면에서 131면까지 사이에 별지 기사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와 함께 127면에는 약간 벌린 입술부위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129면에는 배꼽부위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131면에는 얇은 속옷을 걸친 둔부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각 게재되었다.

(3) 피고 신 은 1994. 6. 말경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운동권 출신 여학생의 도덕적 타락과 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일반 독자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호기심을 만족시켜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킬 의도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할 기획안을 작성하여 위 「필」지의 부장인 소외 조 에게 제출하였고 위 조 을 비롯하여 위 「필」지의 주간, 차장 그리고 수석기자는 위 기획안에 대하여 토의를 거쳐 이 사건 기사를 위 「필」지에 보도할 것을 허락하였다.

(4) 위와 같은 보도 허락을 받은 피고 신 은 그 즈음 이 사건 기사를 작성(피고들은

피고 신　　이 실제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실제의 경험담을 취재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위 「필」지의 편집진에게 제출하였고, 위 「필」지의 편집진은 이 사건 기사를 위 1994. 8. 호 「필」지에 게재하여 같은 해 8.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전국에 걸쳐 약 100,000여부를 배포하였으며, 같은 해 7.29.자와 같은 해 8. 5.자 조선일보 10면 하단 광고난에 『서울대 재학 중 호스티스 생활한 여대생 충격적인 과거를(낱낱이) 공개한다』라는 기사제목으로 위 1994. 8.호 「필」지를 광고하였다.

(5) 한편, 서울대학교 사회대를 1986년에 입학(이하 86학번으로 약칭한다)한 여학생은 총 49명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모두 그 중의 일부이며, 원고 오　　, 원고 이　　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원고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한 바 없고, 피고 신　　의 이 사건 기사에 관한 취재에 응하였거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는데 승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가 위 「필」지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후로는 주위로부터 사실확인을 요구 (특히 원고 오　　, 이　　은 더욱 그러하다) 받거나 터무니 없는 억측에 시달림을 당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특정한 바가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취재원이 갖는 경력을 갖지 않아 이 사건 기사 중에 서울대학교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이라는 특정 사실만으로는 일반인들이 원고들을 이 사건 기사의 취재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기사는 단순한 오락거리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주체는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전 취지나 주위의 사정상 특정인을 추지(推知)할 수 있으면 족하고, 특히 잡지의 배포에 의한 사실적시라는 방법이 취하여진 때에는 그 독자 전원이 명예가 훼손된 특정인이 누구인가를 알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인을 알고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있어서 그 사실의 표현 전체나 특정인에 대한 예비지식을 종합해서 적시된 사실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를 추지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한편 일반적으로 취재원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수기형식의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재원의 특정에 관하여 이를 아예 추상화하거나 아니면 비록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한 특정방법을 통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을 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나아가 단순

히 독자들에게 가벼운 오락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가공의 사실을 수기형식으로 기사화하는 경우에도 독자들이 기사 중의 모델을 실재의 인물에 맞추어서 추측하는 수도 있으므로 기사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일반인들이 그 기사내용을 완전한 허구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승화시켜 특정인의 구체적 행동을 추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서울대학교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이고 특히 원고 오 , 원고 이 은 전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인 점, 서울대학교 사회대에는 86학번 여학생들이 49명의 소수인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모델이 원고들일 수 있다고 추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 사건 기사의 모델을 추지할 수 있는 요소로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전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 「특례재입학과 휴학의 경력을 가진 여학생」 등이 있는데, 비록 원고들이 특례재입학과 휴학의 경력을 가진 학생은 아닐지라도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 중에는 위와 같은 특례재입학과 휴학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아 이러한 요소는 원고들 주변사람들이 모델을 추지하는 데 거의 쓸모가 없는 요소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 중 모델을 추지할만한 요소로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이라는 요소와 「전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라는 요소라 할 것이다)이고, 이 사건 기사내용 중의 「학교」, 「대학」, 「출신지」, 「휴학」, 「특례재입학」, 「서클」 등의 요소와 「등장 인물의 구체성」 「앞 뒤가 완벽한 상황의 설정과 줄거리의 흐름」 등이라는 요소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오락거리라고 여길 정도로 완전한 허구로 승화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기사의 제목배치와 내용,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가 보도 공표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신 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위 「필」지에 이를 게재하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위 피고 및 위 「필」지의 편집진들인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필」지가 배포되고 광고됨으로써 원고들이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성별, 나이와 사회적 위치 및 특정의 정도, 피고회사의 규모와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및 그 게재경위 그리고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과 갑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그후 위 「필」지에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공표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오 , 이 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2,000,000원이 적정한 위자료 액수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오 , 원고 이 에게 각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1994. 8. 호 「필」지의 최초 배포일인 1994. 8. 1.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1996.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14.

재판장 판사 장 경 삼
판사 김 경 호
판사 박 범 계

기사내용

「나는 지금 또 휴학 중이다… 서울대 입학, 학교에서 별로 튀지도 않던 가난에 찌들린 집안의 여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떠들썩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년이 지났다.

고향 전주에 있는 모교의 정문에 내 이름이 걸려 있던 그 시절… 86년 3월 나는 그런 동생들을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대 뒤편 관악산 기슭의 기숙사. 그곳은 나의 해방지였다… 나는 사회대에서 꽤나 지명도 높은 서클에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점점 투사가 되어갔다… 거기서 나는 운동의 순수성을 깨뜨리고 말았다. 서클 선배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건 운명이었고 불행이었고 파멸의 시작이었다… 그의 별명은 〈딘레닌〉이었다… 첫경험. 남들은 아프다고 했지만 난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황홀했다… 내 몸은 마냥 뜨거웠고, 환희에 몸을 떨었다. 내 육체는 그런 구조를 가졌던 것이다. 내 의지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그렇게 뜨겁고, 끈적끈적한 육체… 나는 삶에 생기가 넘쳤고, 새학기 들어서는 더욱 열심히 운동을 했다. 박종철 군 사망과 호헌철폐 운동이 합쳐져 학교와 사회 모두 정신이 없었다… 나는 그 전위에서 튀는 행동대원이었다. 그 운동의 와중에서도 나와 그 선배는 사랑을 불태웠다. 내 몸은 점점 더 길들여져 갔고… 그해 6월 우리는

승리했고 여름은 온통 민주화의 열기로 뜨거웠다. 하지만 나는 기뻐할 수 없었다. 그 여름 승리의 환희를 채 느껴볼 틈도 없이 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느날 한 여자가 찾아왔다. 귀티가 줄줄 흐르는 그녀는 서울 모여대 4학년이었다…〈그이와 헤어져 주세요. 우린 결혼할 사이예요… 제 몸속에는 이미 그이의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단지 저주했다. 나의 운명, 그의 위선, 내가 배운 지식, 열정, 민족, 민주, 해방, 자유… 그 모든 걸 저주했다. 내가 그토록 애써 쌓아왔던 것들은 한 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 어디에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술만 마셨다… 자취집 근처에 있는 서너 평 남짓한 자그마한 카페에서 살다시피 했다. 40대 초반의 그 카페 여주인은 술 파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세상은 어렵게 살려는 사람에게만 어려운 거야. 쉬운 길은 얼마든지 있게 마련이거든〉 나는 쉬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녀의 웃음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얼마 후 나는 그 여자의 소개로 강남의 어떤 룸살롱으로 나갔다… 첫 출근날 나는 좀은 당황스러웠지만 훌륭히 영업을 해치웠다… 적당히 몸을 허락했다. 마담이 내가 서울대 여학생이라고 귀띔해준 모양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히히덕거리면서 연신 정말 서울대생이냐고 묻곤 했다… 그는 2차를 요구했다. 나는 〈좀 비싸다〉고 했다. 왜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서울대생이니까… 이때 이미 나는 프로가 되어 있었는 지도 몰랐다… 급기야 하루는 고급 요정에 차출까지 되었다… 그날 나는 제법 높은 분들을 모셨다. 관계와 법조계 사람들인 것 같았다. 뻔한 얘기지만 지체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남자들은 모두 똑같다. 처음엔 점잔을 빼던 그들도 나중에 술에 취하자 내 몸을 탐내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루는 건설업으로 유명한 재벌회장의 모임이 있었는데 내게 회장의 파트너가 되는 행운이 왔다… 얼마 후 그 회장은 아예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하고는 수시로 찾았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중년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더 이상 만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바로 이사를 했고, 회장과는 연락을 끊었다… 한동안 쉬었다…결국 옛날마담을 찾아 심심풀이겸 다시 룸살롱엘 나갔다… 하루는 세 명의 남자가 아주 거나하게 취해 찾아왔다. 한 명은 젊었고 두 명은 회사 중역급쯤 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난 첫눈에 그 젊은 남자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옛날 내 첫 사랑의 친구이자 동지였다… 그날 저녁 나는 그를 더 취하게 만들어 유혹했고, 결국 호텔로 같이 갔다… 거의 인사불성이 된 그는 연신 너털웃음을 지으며 10만원권 수표 다섯장을 주었다. 그리고는 나를 덮쳤다… 아침에 정신이 들자 그는 계속 쓴웃음을 지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난 그의 웃음 속에서 비굴함을 보았다… 복학의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그 기회를 이용해 학교로 다시 돌아갔다… 공부는 재미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결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의 과거를 숨겨가며 결혼할 생각은 없고, 또한 남자들의 위선에 더 이상 속아가며 살고 싶진 않기 때문이다」 □

취재원이 신빙성이 있고 사건기사가 일간신문에 게재될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인 점, 원고에게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6. 7. 2.자 판결 (95나39467)
서울지방법원 1995. 9. 15.자 판결 (94가합53636)

事實槪要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996년 7월 2일 광고 및 의상모델 진 씨가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사(문화일보 발행사) 및 소속 기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들이 공표한 것이 진실한 내용이 아니어서 일단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들의 항소를 인정, 원고가 승소한 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사건의 박○○ 씨가 「검찰수사단계에서 원고의 사진을 보면서 자신을 접대한 여자라고 계속 진술하고, 사건의 전모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수사검사도 이를 확인해 주고 공소장에도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재원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기사는 일간신문에 게재될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라는 점, 원고에게 기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해도 이 사건기사를 게재할 때까지의 시간 내에는 그 확인이 사실상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박○○을 접대한 여자 중의 한 명인 것으로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피고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진　　씨는 피고들이 문화일보 1994년 6월 9일자 사회면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 여자 탤런트 3명 거액받고 룸살롱-호텔출입』 제하의 기사에서 중견모델 진모 양(26)이 고급 룸살롱 및 갈비집 주인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대기업 사장 등을 빙자한 박○○ 씨를 호텔과 여관 등지에서 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박○○에 대한 수사기록에 동인을 접대한 여자의 성명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그 접대한 본인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중견모델로 볼 정도면 이 사건기사의 내용(원고에게 미칠 영향, 아울러 게재 시각을 다툴 정도의 급박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최소한 본인에게 연락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도해 본 다음에 기사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인데, 수사기록의 일부 기재와 담당수사검사의 말만 듣고 사실조사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　　을 원고의 예명이라 오인하고 이 사건기사를 게재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 1995년 9월 15일 판결)했다.

한편 원고는 이에 앞서 이 기사와 관련 1994년 6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으나 피고측이 원고가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과의 일괄타결을 요구하여 중재불성립되자(94서울중재160)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인용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 1994년 10월 27일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2심 判決文

사　건 : 95나3946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진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최창귀, 송달룡, 박종관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現代文化新聞)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68
대표이사 유인근
2. 이
서울 송파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병일, 이동학, 민병기

변론종결 : 1996. 5. 28.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5. 9. 15. 선고, 94가합53636 판결

주 문 :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6.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 1. 피고들의 언론보도 및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가. 언론보도 내용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5, 6, 18, 19, 23, 24, 29, 갑제 3호증의 1, 3, 4, 5, 7, 18, 19, 25, 26, 27, 갑제 4호증의 3, 4, 7, 10, 갑제 5호증, 갑제 6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법원의 피고 이 본인 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간신문인 문화일보를 발행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이 은 위 신문의 기자였는 바, 위 문화일보의 1994. 6. 9.자 사회면 좌측상단에는 피고 회사의 기자인 피고 이 이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라는 제목과 『여자탤런트 3명 거액받고 룸살롱-호텔 출입』이라는 소제목 아래 "탤런트 등 유명 연예인 3명이 고급 룸살롱 등에 거액의 돈을 받고 접대부 노릇을 해 온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 형사1부 양경석 검사가 9일 대기업 사장 등을 빙자해 룸살롱 여주인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돈을 뜯어내다 덜미가 잡힌 박○○ 씨(38 · 대구시 중구 종로1가)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유명 탤런트 김모(23), 최모(23), 진모(26) 양 등이 박씨에게 속은 룸살롱 여주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씨를 만나 호텔과 여관 등을 돌아다니며 접대를 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중략) 또 최양과 진양 등도 박씨에게 속은 강남구 역삼동 K룸살롱 주인과 C갈비집 주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씨를 만나 접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진모 양은 중견모델로 더 잘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으로 쓴 기사(이하 이 사건기사라고 한다)가 게재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67. 9. 7.생으로서 1989. 4. 경부터 모델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텔레비전 광고모델 및 의상모델로 활동하는 자로서, 갈비집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누구를 접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위 박○○을 접대하거나 호텔 등지를 함께 다닌 사실이 없었던 사실, 그런데 위 박○○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사기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을 접대한 여자는 사실은 소외 이△△이라는 광고모델이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본명 이외에도 이○○, 진 등의 이름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본명인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박○○으로서도 그녀의 본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느 이름이 본명이고 예명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였으므로 위 여자를 지칭할 때 때로는 이○○란 이름을 쓰기도 하고 이△△, 진 이란 이름을 사용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시한 잡지에 실려있는 원고 진 의 사진을 가리키며 자신을 접대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라고 진술한 사실, 그러자 위 박○○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도 공소장에 위 박○○을 접대한 여자 중의 1명이 진 (여 26세)이라고 기재하여 위 박○○을 사기죄로 기소한 사실, 피고 이 은 위 박○○에 대한 기소과정에서 위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어 이 사건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박○○을 접대한 연예인 중 1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를 진모(26) 양으로 지칭하여 이 사건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1) 우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중견모델인 진모 양이 갈비집 여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기피의자인 위 박○○을 만나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접대를 해 왔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2) 또한 기사에 표시된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때 그 특정을 위하여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과 배치 및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기사에는 원고의 이름이 완전히 명시된 것이 아니라 26세의 진씨 성을 가진 중견모델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기사가 게재될 당시 26세의 중견모델이고 원고의 성(姓)도 희성(稀姓)이라 할 수 있는 '진씨'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녀가 생활을 하는 방송이나 모델

업계에 종사하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기사에서 지칭하는 '진모(26) 양'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 여기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기사에 지칭된 피해자도, 원고로 특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기사로 인하여, 마치 원고가 갈비집 주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서 술집에서 접대하고 호텔을 출입한 연예인이나 광고모델 중의 한 명인 것처럼 적시가 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의 항변

가. 피고들은, 이 사건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하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무릇 신문이나 잡지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 때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 잡지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근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기사는 그 내용으로 보아 대기업의 접대비리 및 이에 연루된 유명연예인들의 잘못된 행태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접대비리에 편승하는 연예계의 풍토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므로 이 사건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먼저 이 사건기사가 모두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기사 내용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나아가 이 사건기사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이 그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의 5, 6, 16, 18, 19, 20, 22, 23, 24, 29, 갑제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제1심법원의 피고 이　　본인 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기사의 취재기자인 피고 이　　은 1994. 6. 1. 경 법조출입을 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1부의 한 검사로부터 "며칠 후 탤런트 김○○이 조사받을 것이 있어 옆방 검사실에 출두할 예정이다. 출두하게 되면 내가 이 기자에게 알려줄테니 함께 얼굴이나 구경하자"는 농담조의 말을 들었는데, 같은 달 9. 07:00경 서울지방법원 당직실에서 4~5일 전 소외 문화방송 뉴스데스크가 톱기사로 특종 보도한 재벌사칭 사기범인 소외 박○○에 대한 공소장을 열람하던 도중 위 박○○에게 속아 술집 주인들의 부탁을 받고 위 박○○을 접대해 준 여자들의 명단에 김○○, 최○○, 진 의 이름과 나이가 공소장에 기록된 것을 보고 위 김○○이 연예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당수사검사에게 찾아가 문의하였던 바, 그로부터 위 김○○이 탤런트임을 확인받고 더 나아가 진○○도 꽤 알려진 모델인 모양이더라는 말을 듣고서는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열람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박○○에 대한 경찰수사기록에 따르면, 위 박○○에게 접대할 여자를 소개하였다는 ○○갈비집 주인인 소외 김△△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위 여자가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여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고 다만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와 의견서에 위 여자의 이름이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박○○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처음 조사받을 때 위 여자의 이름을 '이○○'라고 진술하였으나(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며칠 뒤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이○○'라고 지칭한 위 여자는 예명이 '진 '이라는 영화배우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실은 경찰관이 자신에게 보여준 영화잡지에 게재된 원고 진 의 사진을 보고 확인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아울러 자신을 접대한 또다른 여자 중의 하나는 탤런트 김○○이라고까지 말한 사실, 그 후 위 박○○을 검찰에 제출한 두 차례의 진술서에서도 역시 자신을 접대한 위 여자는 광고모델인 '진 '이라는 여자가 분명하고 위 여자가 자신은 영화배우도 겸한다고 말하였으며 며칠 후에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영화촬영이 있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다만 위 여자가 '이△△'이라는 이름도 사용하며, 자신에게 위 여자를 보내준 위 장미갈비집 주인의 말에 따르면 위 여자는 대한항공(KAL)의 모델로서 김포공항에 걸려있는 광고판에 나오는 세 명의 여자 중 제일 좌측에 있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고 한 사실, 위 박○○이 작성한 위 진술서의 말미에는 원고에 관한 기사가 실린 잡지에서 발췌한 원고의 사진부분이 첨부되어 있었는 바(위 잡지의 사진이 원고본인의 사진이란 점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 박○○은 위 진술서를 작성할 때 첨부된 원고의 위 사진을 지칭하면서 위 여자가 자신을 접대한 '진 '이란 여자라고 한 사실, 이러한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위 박○○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위 '진 '이라고 하는 여자나 원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환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 박○○에 대한 공소장에다 위 박○○을 접대한 여자 중의 한 명으로 '진 (여 26세)'이

라고 기재한 사실, 그러자 피고 이　　은 위 공소장에 나타난 '진　　'이란 이름이 원고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담당수사검사로부터 확인하고서 이 사건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 본사사무실로 송고하여 이 사건기사에 게재되게 된 사실, 다만 피고 이　　은 이 사건기사를 작성하기전에 원고에게 위 박○○을 만나 접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화연락 등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김포공항에 걸려있는 광고판에 나오는 세 명의 여자들 중 좌측의 여자의 신원에 대해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기한 정보를 인용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 취재기자가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취재기자가 충분한 조사를 하여 나름대로의 진실확인작업을 한 뒤 기사화한 경우라든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이 용이하지는 아니하나 취재원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취재기자인 피고 이　　의 입장에서 볼 때,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에 동인을 접대한 여자 중의 한 명으로 지칭된 여자의 성명이 이○○, 진　　또는 이△△으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그 접대한 본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접대한 여자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확인해 줄 수 있는 위 박○○이 검찰수사단계에서 원고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를 접대한 여자가 위 사진 속의 여자라고 계속 진술하고 그 여자의 이름과 직업도 실제이름 및 직업과 같은 영화배우 겸 광고모델이라는 사실도 위 여자에게서 확인했다는 진술까지 덧붙이고 있어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덧붙여 위 사건의 전모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수사검사도 위 여자 중의 하나가 중견모델인 원고라고 확인해 주고 공소장에도 원고의 이름과 나이가 같은 '진　　(여 26세)'라고 기재한 점 등 그 취재원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기사는 그 성격상 일간신문에 게재될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라는 점, 위 기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원고에게 위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해도 이 사건기사를 게재할 때까지의 시간 내에는 그 확인이 사실상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에게 위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어도 원고로부터 곧바로 그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가사 원고가 위 박○○을 접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취재기자가 이를 사실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 이　　이 이 사건기사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그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김포공항 광고판의 모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박○○을 접대한 여자 중의 한 명인

것으로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기사를 작성, 게재함에 있어 원고라고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중견모델 진모(26) 양' 이라고 공표한 것이 진실한 내용이 아니어서 일단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2.

재판장 판사 이 근 웅
판사 주 한 일
판사 김 상 근

1심 判決文

사 건 : 94가합53636 손해배상(기)

원 고 : 진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최창귀, 송달룡

피 고 : 1.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現代文化新聞)
서울 중구 무교동 96
대표이사 이규행
2. 이
서울 중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이동학, 민병기

변론종결 : 1995. 6. 25.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6. 9.부터 1995. 9. 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6.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신문기사), 갑제2호증의 1(수사기록표지), 2(사건송치서), 3(압수물 총목록), 4(기록목록), 5(의견서), 6(수사결과보고서), 18(진술조서), 19(피의자신문조서), 23, 24(각 진술서), 28(소송기록 표지), 29(공소장), 갑제3호증의 1(고소장), 2(수사보고서), 3(진술서), 4(진술조서), 5(숙박등록카드), 6(비씨카드매출전표), 7(진술조서), 18(보도자료), 19(이력서), 20(월별잡지촬영현황표), 21(시즌별 활동내역), 22(사실증명), 23, 24(각 수사보고서), 25(진술조서), 26(진술서), 27(진술조서), 28(참고자료표지), 29 내지 41(각 진술서), 갑제4호증의 1(신청사건기록표지), 2(서증목록), 3(정정보도심판청구), 4(중재신청사건기록등본송부), 5(중재신청사건기록), 6(목록), 7(중재신청서), 8, 9(각 중재조서), 10(결정), 갑제5호증(신문기사), 갑제6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피고 이 본인 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 9. 7.생으로서 1989. 4. 모델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이래 텔레비전 광고모델 및 의상모델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일간신문인 문화일보 등을 발행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이 은 위 신문의 기자인 사실, 원고는 갈비집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누구를 접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소외 박○○을 접대하거나 호텔 등지를 함께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화일보의 1994. 6. 9.자 사회면 좌측상단에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라는 제목과 『여자탤런트 3명 거액받고 룸살롱-호텔 출입』이라는 소제목 아래 「탤런트 등 유명연예인 3명이 고급 룸살롱 등에 거액의 돈을 받고 접대부 노릇을 해 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

은 서울 지검 형사1부 양경석 검사가 9일 대기업 사장 등을 빙자해 룸살롱 여주인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돈을 뜯어내다 덜미가 잡힌 박○○ 씨(38 · 대구시 중구 종로1가)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유명 탤런트 김모(23), 최모(23), 진모(26) 양 등이 박 씨에게 속은 룸살롱 여주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씨를 만나 호텔과 여관 등을 돌아다니며 접대를 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중략) 또 최양과 진양 등도 박씨에게 속은 강남구 역삼동 K룸살롱 주인과 C갈비집 주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씨를 만나 접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진모 양은 중견 모델로 더 잘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기사라고 한다)가 게재된 사실, 위 박○○은 자신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실제로는 소외 이△△이 자신을 접대한 연예인이지만 위 이△△이 자신을 접대하면서 그 이름을 진　　이라며 원고의 이름을 모용하여 사용한 까닭에 위 이△△의 이름을 진　　으로 잘못 알고 수사과정에서 이 이△△의 이름을 진　　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접대행위를 한 연예인을 진　　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하여 위 박○○을 사기죄로 기소한 사실, 피고 이　　은 위 박○○에 대한 기소과정에서 위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어 이 사건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고를 위 박○○을 접대한 연예인으로 오해하고 원고를 진모(26) 양으로 지칭하여 이 사건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호증(불기소증명원), 을제2호증의 1(공소부제기사유고지), 2(사실과 이유)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 기사의 배치, 기사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기사에 26세의 진씨 성을 가진 중견 모델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방송이나 모델업계에 종사하는 26세의 여성으로서 적어도 그녀가 생활을 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기사에서 지칭하는 「진모(26) 양」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 여기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의 기사가 게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

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 잡지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이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 잡지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근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기한 정보를 인용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재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귀책사유를 결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기사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기사의 내용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 점은 앞서 본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이 사건기사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위 갑제2호증의 1, 2, 3, 4, 5, 6, 18, 19, 23, 2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기사의 취재기자인 피고 이

은 1994. 6. 1.경 법조 출입을 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의 한 검사로부터 「며칠 후 탤런트 김○○이 조사받을 것이 있어 옆방 검사실에 출두할 예정이다. 출두하게 되면 내가 이 기자에게 알려줄테니 함께 얼굴이나 구경하자」는 농담조의 말을 듣고, 같은 달 9. 07:00경 서울지방법원 당직실에서 4~5일 전 소외 문화방송 뉴스데스크가 톱기사로 특종 보도한 재벌사칭 사기범인 위 박○○에 대한 공소장을 열람하던 도중 위 박○○에게 속아 술집 주인들의 부탁을 받고 위 박○○을 접대해 준 여자들의 명단에 김○○, 최○○, 진 의 이름과 나이가 공소장에 기록된 것을 보고 위 김○○이 연

예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당수사검사에게 찾아가 문의하였던 바 그로부터 위 김○○이 탤런트임을 확인받고 더 나아가 진　　도 꽤 알려진 모델인 모양이더라는 말을 듣고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열람하면서,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 중 위 박○○이 자신을 접대했던 여자가 영화배우로서 자신의 예명이 진　　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1994. 6. 7.자 검찰 작성의 위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접대한 여자가 영화배우 겸 광고모델로서 이△△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였다는 내용과 위 박○○에게 접대부를 소개한 ○○갈비집 주인인 소외 김△△이 접대나가는 아가씨는 칼(KAL)청사의 모델로서 인사하는 세 명의 여자 중 제일 좌측에 있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는 내용이 각 기재된 위 박○○ 작성의 진술서(갑제2호증의 23, 24) 및 이에 첨부된 위 박○○이 사진 속의 여자가 진　　이라며 가리킨 사진(원고가 아닌 위 이△△의 사진임)을 보게 되었고, 이에 연예인들은 주로 예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고의 성명「진　」도 예명인 것으로 생각하여 위 박○○을 접대한 여자가 원고라고 오인하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에는 1994. 6. 3. 위 김△△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까지도 위 박○○을 접대한 사람의 이름은 이○○로 되어 있고, 위 박○○도 경찰에서부터 계속하여 자신을 접대한 여자를 이○○라고 진술하다가, 위 1994. 6. 7.자 위 박○○ 작성의 각 진술서에 비로소 자신을 접대한 여자가 진　　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또한 위 수사기록에는 위「이○○」를 소개한 위 김△△의 진술조서는 편철되어 있으나 그 접대한 본인인「이○○」에 대하여는 조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 피고 이　　은 원고의 집에 전화도 하여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으로서는 원고의 실제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에 동인을 접대한 여자의 성명이 이○○, 진　　또는 이△△으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그 접대한 본인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중견모델로 볼 정도이면 이 사건기사의 내용(원고에게 미칠 영향, 아울러 게재 시각을 다툴 정도의 급박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최소한 원고의 사진 등 관련자료를 찾아 위 수사기록에서 본 사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본인에게 연락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도해 본 다음에 기사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기록의 일부 기재와 담당수사검사의 말만 듣고 위 사실조사 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　　을 원고의 예명이라고 오인하고서 이 사건기사를 작성 게재하게 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책임

피고 이　　은 위 신문의 기자로서, 피고 회사는 위 피고의 사용인으로서 위 신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기사가 실리도록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책임

원고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신문에 이 사건기사가 실려 배포됨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력과 나이, 위 기사의 내용과 그 게재경위, 위 기사의 크기와 위 기사 게재 후 피고들이 정정기사를 낸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신문의 발행일인 1994. 6.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5. 9.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용에 의한 지연 손해금(원고는 위 신문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15. □

재판장　판사　이　원　국

판사　권　오　준

판사　김　복　형

보도내용이 전체 국민의 보건위생에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식품검사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내용 또한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1996. 7. 11.자 판결 (95가합15356)

事實槪要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996년 7월 11일 미국산 저알콜 맥아음료인 킹스베리(kingsbury)를 수입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주식회사 금호무역이 부산매일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각 기사의 내용이 원고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진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기사는, 이 사건 제품을 비롯한 미국산 맥아음료에 표백제인 아황산염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검역소에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입 통관되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내용은 바로 전체 국민의 보건위생에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식품검사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기사의 내용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그 보도내용 또한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기사를 게재한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함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했다.

부산매일신문은 1994년 9월 8, 9, 10, 11, 14.자에 『수입음료에 표백제』, 『표백제 함유 미산음료 매년 수천t 수입』, 『수입음료 그냥 통과시켜』, 『미산음료 표백제 등 함유 알고도 방치, 부산검역소 - 수입업체 유착 의혹』, 『국립검역소가 국민건강 외면, 표백제든 수입음료 파장』 등 제목의 기사로 원고의 제품인 수입 맥아음료 킹스베리(kingsbury)에서 표백제인 아황산염이 검출되었으며 부산 검역소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통관시켜 수입 맥아음료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우려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위 기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2억 2천8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5가합15356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금호무역(錦湖貿易)
부산 중구
대표이사 김수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호
소송복대리인 정철섭, 이기태, 정운

피　　고 : 주식회사 부산매일신문(釜山每日新聞)
부산 연제구 연산2동 1637의 1
대표이사 이안형, 김창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변론종결 : 1996. 5. 16.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8,038,750원을 지급하고, 부산매일신문 1면에 3일간 연속하여 5호 활자로 별지 기재 사죄광고를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4, 6(이상 을제1호증의 2와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박　　, 김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무역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 20. 설립되어 1993. 1.경부터 지.하이레만 양조회사(G.HEILEMAN BREWING COMPANY INC.)가 생산하는 미국산 저알콜 맥아음료인 킹스베리(Kingsbury,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 시판해 온 업체이고, 피고는 일간지인 부산매일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나. 피고 신문사는 위 부산매일신문의,

① 1994. 9. 8.자 제1면에 "수입음료에 표백제"라는 표제 아래 "부산 검역소, 맥주대용 「킹스베리」「슐리츠」 등서 검출, 유해 알고도 조치 미흡 … 유통, 소화 · 신경계 장애 등 유발 우려"라는 부제를 달아 "…(전략)… 7일 국립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주)금호무역이 지난 7. 22. 부산항을 통해 들여 온 미국산 수입 맥아음료 킹스베리(Kingsbury) 87.8t에서 표백제인 아황산염이 9.4ppm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식품학계에 따르면 아황산염은 다량 섭취할 경우 소화기계 장애, 다발성 신경염, 골수 위축, 성장장애 등 각종 무서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중략)… 이들 2개 업체는 특히 국내 식품위생법상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황산염 함유 사실을 감춘 채 통관수속을 밟으려다 검역소에 적발되었다. …(후략)…"라는 기사를,

② 같은 달 9.자 제23면에 "표백제 함유 미산 음료 매년 수천t 수입"이라는 표제 하에 "최근 금호무역과 (주)성화엔터프라이즈가 수입한 미국산 맥아음료(탄산음료)에서 표백제인 아황산염이 검출되어 수입음료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략)… 그동안 부산항을 통해서만도 한 해 수천톤씩 아황산염 잔류량에 대한 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략)… 부산항을 통해 지난 한해동안 수입된 외국산 맥아음료는 19,360여 t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6천여t이 유해성 우려가 있는 미국산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특히 이들 수입 미국산 맥아음료 중에는 국립부산검역소의 검사과정에서 아황산염이 검출된 (주)금호무역이 수입한 킹스베리 제품도 지난해 분 843t, 올해 분 821t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략)…"라는 기사를,

③ 같은 달 10.자 제1면에 "수입음료 그냥 통과시켜"라는 표제 아래 "부산검역소, 시약 없다 발암물질 검사포기"라는 부제를 달아 "…(전략)… 9일 국립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최근 외국산 맥아음료에 아황산염과 에리소르빈산염이 함유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7월부터 기존의 8개 항목에 이들 두 물질을 추가 검사항목으로 정했으나 표준시약이 없어 아황산염이 검출된 (본보 8일자 1면 머리기사 보도) 미국산 킹스베리, 슐리츠를 비롯,

6개 제품에 대해 에리소르빈산나트륨 검사없이 적합 판정을 내주었다고 한다. …(중략)… 부산 경성대 김　　교수는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은 발암물질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금속이나 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철저한 순도 시험을 통한 검사없이 음료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후략)…"라는 기사를,

④ 같은 달 11.자 제23면에 "미산음료 표백제 등 함유 알고도 방치, 부산검역소-수입업체 유착 의혹"이라는 표제 하에 "확인 후 2개월여 검사 않아"라는 부제를 달아 "…(전략)… 국립부산검역소가 외국산 맥아음료에서 표백제 메타중아황산칼륨(아황산염)과 산화방지제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이 들어 있는 사실을 지난 4월에 이미 확인하고서도 지난 6월말까지 2개월여 동안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제품에 대해 이들 항목의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수입업체와의 밀착 의혹을 사고 있다. …(후략)…"라는 기사를,

⑤ 같은 달 14.자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싣고, "국립검역소가 국민건강 외면, 표백제 든 수입 음료 파장"이라는 표제 아래, "「유해」 알고도 업체 반발 우려 「복지」 여전"이라는 부제를 달아 "…(전략)…미국산 맥아음료에 표백제인 유해성분 아황산염이 함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중략)… 식품검사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들 유해성분 함유사실을 제품에 표기할 경우 대리점 공급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20~30% 하락하게 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기 쉬워 사전에 이들 항목을 검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소문도 있다. …(후략)…"라는 기사를 각 게재하였는데, 위 각 기사 내용은 피고 신문사 소속 부산검역소 출입기자인 소외 김　　가 작성한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각 기사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피고 신문사는 위 각 기사를 보도, 공표함으로써 소비자 등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며, 원고회사는 이를 은폐한 채 식품검사 당국과 유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수입, 시판하는 부도덕한 업체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원고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신문사는 허위과장 보도를 한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위와 같은 기사를 악의적으로 편파취재한 위 김　　의 사용자로서, 원고회사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고, 훼손된 명예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각 기사의 내용 중 원고회사가 수입, 시판한 이 사건 제품에는 표백제

성분인 아황산염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회사는 아황산염 함유 사실을 감춘 채 통관수속을 밟으려다 적발되었으며, 검역소와 유착 등의 의혹이 있다는 부분 등은 그 내용 자체로서는 일응 원고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한편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러한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하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다. 공익성에 관한 판단

위 각 기사는, 이 사건 제품을 비롯한 미국산 맥아음료에 표백제인 아황산염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검역소에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입 통관되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내용은 바로 전체 국민의 보건위생에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안정성과 식품검사 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기사의 내용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그 보도 내용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기사를 게재한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위 김 가 경쟁업체의 사주를 받아 원고회사를 비방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취재보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4, 5, 8, 32, 33, 34, 3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박 의 일부 증언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진실성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3, 7 내지 36, 을제1호증의 3 내지 9, 13의 각 기재(다만 앞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은 식품공전상 탄산음료로 분류되어 국립부산검역소로부터 성상, 가스압, 납, 카드뮴, 주석,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등에 관한 성분규격검사만을 받고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되어 온 사실,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아황산염류는 소화관 점막 자극 등의 독성이 있으며 식품첨가물공전상 기타 식품(맥아음료 포함)에 대한 허용기준치가 30ppm이고, 정제되지 않은 에리소르빈산나트륨에는 중금속이나 비소 등이 검출될 수도 있는 사실,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과 산화방지제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 등의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그 함유된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의 2, 표시사항 및 기준, 2, 품목별 공통사항, 가, 식품 및 첨가물, 7) 원료명 및 함량, (다) 참조], 이 사건 제품은 그 제조 공정과정

에서 표백제(안정제)로 메타중아황산칼륨이 첨가되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제품의 공정과정에 관한 설명서(갑제4호증의 10)에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이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여 온 사실, 수입식품을 검사함에 있어서 수입하는 식품 중 국내에서 원래의 포장대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는(이 사건 제품은 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첨가물 등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식품위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의 4. 다.항 참조), 국립부산검역소에서는 그동안 위와 같이 식품공전상의 성분규격검사만을 하고 수입업체가 첨가물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1994. 3. 24. 소외 주식회사 두레산업은 미국산 맥아음료인 스트로(stroh) 94t를 수입하면서 국립부산검역소에 위 맥아음료에 에리소르빈산나트륨 20ppm과 메타중아황산칼륨 10ppm이 함유된 것으로 표시하여 수입신고를 한 바 있었는데도 국립부산검역소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6. 15.경 보건사회부 식품국으로부터 수입 맥아음료에 표시된 것 이외에 표백제 및 산화방지제 등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비로소 수입 맥아음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첨가물의 함유 여부를 검사하게 된 사실, 그 결과 소외 주식회사 성화엔터프라이즈가 같은 해 6. 18. 수입 신고한 미국산 맥아음료인 슐리츠(schlitz)에서 3.3ppm의 메타중아황산칼륨이 검출되었고, 원고회사가 같은 해 7. 22.과 같은 달 23. 수입한 이 사건 제품 52,722kg에서 9.4ppm의 메타중아황산칼륨이 각 검출되었는데, 호주산 맥아음료인 이글(Eagle) 등 미국 외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한 맥아음료에는 메타중아황산칼륨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 국립부산검역소는 다른 첨가물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에 대하여는 시약을 갖추지 못해 그 검사가 불가능하다 하여 같은 해 7. 29. 국립보건원에 그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그 곳에서도 역시 시약을 구매중이라는 회신을 받게 되어 검사가 지연되자 같은 해 8. 31. 검사 철회를 요청하여 종결처리된 사실, 한편 국립부산검역소는 같은 날 원고회사에 대하여 검출된 첨가물인 메타중아황산칼륨의 명칭과 용도를 이 사건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누락된 제품 유형(탄산음료)의 표시도 보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같은 해 9. 15. 이 사건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에 한글로 위 사항을 표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제품의 수입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의 객관적 사실과 위 각 기사의 보도내용을 견주어 살피건대, ① 먼저 위 각 기사의 본문 중 국립부산검역소가 외국산 맥아음료에서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과 산화방지제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이 들어 있는 사실을 1994. 4.경 확인하고서도 같은 해 6.말까지 수입 맥아음료에 대하여 첨가물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 이후 국립부산검역

소의 첨가물 검사 결과 이 사건 제품 등 미국산 맥아음료에서 메타중아황산칼륨(아황산염류의 일종)이 검출되었고, 식품위생법상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원고회사 등은 그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왔다는 내용, 국립부산검역소는 에리소르빈산나트륨도 검사 항목으로 정했으나 표준시약이 없어 그 검사 없이 이 사건 제품 등에 적합 판정을 내려주었다는 내용, 아황산염을 다량 섭취할 경우 소화기계 장애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은 발암물질은 아니나 중금속이나 비소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도시험을 거쳐 음료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모두 진실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② 다음 위 각 기사의 표제나 부제만을 두고 얼핏 보면 원고회사가 수입한 이 사건 제품이 바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는 수입 맥아음료에서 표백제 등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는데도 부산검역소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통관시켜 수입 맥아음료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압축하여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그 본문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은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이 정도의 과장된 표현은 표제의 성질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③ 1994. 9. 8.자 기사 본문 중 원고회사 등이 아황산염 함유 사실을 감춘 채 통관수속을 밟으려다 적발되었다는 부분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제품이 메타중아황산칼륨이 첨가되어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문제가 되어 국립부산검역소로부터 보완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④ 1994. 9. 11.자 기사 중 국립부산검역소와 수입업체 사이에 밀착 의혹을 사고 있다는 부분은, 그 기사의 전체 내용과 아울러 볼 때, 1994. 3. 24. 위 주식회사 두레산업이 미국산 맥아음료를 수입신고하면서 이에 첨가된 에리소르빈산과 메타중아황산칼륨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였음에도 국립부산검역소가 그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후 보건사회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서야 수입 맥아음료에 대하여 첨가물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진실된 사실에 기초하여 내린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그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의혹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밀착 의혹이 있다고 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된다 할 수 없으며, ⑤ 1994. 9. 14.자 기사 본문 중 아황산염 등을 검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소문도 있다는 부분은, 비록 위 부분만을 두고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보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원고회사를 특정하여 원고회사가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맥이나 그에 앞선 각 기사의 내용과 전체적으로 연관시켜 볼 때 국립부산검역소의 안이한 검사 행정을 지적하는 데

에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 ④와 같은 맥락의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 부분만을 들어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결국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원고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진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11.

재판장 판사 유 승 정
판사 조 규 현
판사 김 운 호

〈별지〉 정정보도문

가. 본보 1994. 9월 8, 9, 10, 11, 13, 14일자 수입 맥아음료 관련 기사 중, (주)금호무역에서 수입한 미국산 Kingsbury 제품은 미국 전역 및 캐나다, 사우디 등 세계 42개국에서 판매되는 맥아음료로서, 제품에 첨가된 메타중아황산칼륨(표백제)은 미국 식품검사국 기준을 통과하고, 국내 식품위생법상에도 기준치 이하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아황산염은 공업용 표백제로서 상기 제품에는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에리소르빈산나트륨(산화방지제)은 발암물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나. 또한, (주)금호무역이 국립부산검역소와 결탁하여 불법 수입 판매한 것처럼 보도하여, (주)금호무역이 마치 탈법을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인 것으로 독자들에게 잘못 인식되게 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합니다. □

피고가 제작 · 방영한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에 관여한 것으로 묘사한 내용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터무니없는 억측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가 있는 극적 재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서울지방법원 1996. 7. 25.자 판결 (95가합90717)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1996년 7월 25일 김 씨(망 김창룡의 딸)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한 취지가 광복50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통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와 같은 인물이 광복 후에 같은 민족의 손에 의하여 암살되었다는 왜곡된 역사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삼으려는 데 있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을 암시, 선동하고, 사후에 안두희가 수감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 뒤를 돌보아 준 것으로 묘사한 내용은 안두희의 진술 내용과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과거의 발언 내용 기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전혀 터무니없는 억측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가 있는 극적 재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원고는 나아가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에 관여하였다는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실에 대한 묘사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을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지휘봉을 들고 다니면서 하급자에게 거들먹거리며 거만하게 행동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망인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비디오 테이프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지휘봉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묘사는 실제의 사실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세부사실의 가감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위 김창룡이 거만하게 행동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묘사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는 1995년 8월 5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21:50부터 22:50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광복 50주년 특집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하였다. 방송내용 중 망 김창룡이 그 암살범인 안두희의 배후세력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있고, 이른바 88구락부의 구성원이었으며 김구 선생의 암살을 암시, 선동하였던 것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금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5가합90717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이병선

변론종결 : 1996. 6. 13.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수령한 다음날 9시 뉴스 시간 중에 이 사건 판결문을 낭독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 사실의 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8호증, 을제6호증의 1, 3,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비디오 테이프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1) 피고 공사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설을 설치, 운영 및 관리하며 국내외 방송의 실시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다.

(2) 피고 공사는 1995. 8. 5. 부터 매주 토, 일요일 21:50부터 22:50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광복 50주년 특집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하였다.

(3)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한 취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통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와 같은 인물이 광복 후에 같은 민족의 손에 의하여 암살되었다는 왜곡된 역사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삼으려는 데에 있었다.

(4) 이 사건 드라마 중 제1회(부제: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에서는 1949. 6. 26. 발생한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사건을 다루고 있는 바, 그 방영 내용 중 다음과 같이 망 김창룡이 그 암살범인 안두희의 배후 세력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있고, 제16회(부제: 김구가 살아있다면)에서 이 부분이 암살범 안두희의 회상 형식으로 다시 방영되었다.

① 망 김창룡이 당시 육군 소령으로서 서울지구 방첩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교통부장관인 망 허정, 국방부장관이던 망 신성모, 육군참모총장이던 채병덕, 육군 포병사령관이던 망 장은산, 육군 헌병부사령관이던 망 전병덕,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망 노덕술, 제헌의원이던 망 김준연 등과 같이 군, 관의 실력자들이 정보교류를 위하여 만나는 모임인 이른바 88구락부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1회 방영분).

② 망 김창룡이 1949. 초여름 경 암살범 안두희를 만나 "백범을 처치해야 한다구 했다

면서? 백범은 큰 나무야. 백범 밑에는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요. 나무가 크면 벌레가 많이 꼬이게 마련이야. 맞아요. 나무를 쓰러뜨려야 그 아래 숨어 있는 빨갱이들을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 법이지. 건투를 빈다."고 말함으로써 위 김구 선생의 암살을 암시, 선동하였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1회 방영분).

③ 망 김창룡이 암살 사건 직후 서울 소공동에 있던 당시 육군 서울지구 방첩대("대륙공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에 찾아가 그 곳에 수감되어 있던 암살범 안두희를 만나 "아! 안의사 수고했어. 가족들은 잘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말어"라고 말하며 그를 격려하고, 수사관들에게 "어이, 여기 안의사 특급으로 잘 모셔. 함부로 대하는 놈은 그날로 끝이야. 알았어!"라고 말하고, 그를 수사할 군 검찰관의 이름을 물어 보는 등으로 그의 뒤를 돌보아 주는 비호세력이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1회 방영분).

④ 암살범 안두희가 1992. 9. 23. 경기 가평군에 있는 사슴목장에서 소외 권 등의 사람들에게 "들어보라우. 미국 정보기관의 세뇌공작에 걸려들기로 했지만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선동한 것은 김창룡이여. 김창룡 특무대장."이라고 말하면서, 위 김창룡이 1949. 초여름 경 자신에게 "백범을 처치해야 한다구 했다면서? 백범은 큰 나무야. 백범 밑에는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요. 나무가 크면 벌레가 많이 꼬이게 마련이야. 맞아요. 나무를 쓰러뜨려야 그 아래 숨어 있는 빨갱이들을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 법이지. 건투를 빈다."고 말하는 장면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방영하여 김창룡이 암살을 암시, 선동하였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16회 방영분).

⑤ 암살범 안두희가 1992. 9. 23. 위 사슴목장에서 소외 권 등의 사람들에게 "암살의 대가로 이박사는 장기집권을 했고 미국은 남쪽이라도 차지했지만 권불십년이라고, 4. 19. 나고 이박사는 미국으로 망명갔지. 신성모 국방장관은 그 소식 듣고 그 자리에서 절명했지. 장은산 포병사령관은 이박사를 대통령 만든 사람은 자기라고 술김에 떠들어 대다 감옥에 가서 죽어서 나왔어. 김창룡이도 권력에 욕심을 내다 암살 당했지. 그 뒤로도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하나 둘 죽었어."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있다(16회 방영분).

⑥ 암살범 안두희가 1992. 9. 24. 서울 우당기념관에서 주요 일간지 기자 등이 모인 기자회견장에서 "암살 시나리오는 김지웅이 썼고 나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은 김창룡이었습니다. 장은산 씨는 주로 암살대를 지휘했고, 내 느낌으로는 김창룡, 전봉덕, 김지웅 등이 계획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라고 증언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있다(16회 방영분).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김창룡은 김구 선생 암살 당시 육군 소령으로서 군 내외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고 의정부에 주둔한 연대의 정보참모로서 그 직책상 거의 서울에 출입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며 김구 선생 암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 암살 당시에는 아직 창설되지도 않은 특무대장으로서 88구락부에 참여했으며, 1949. 초여름경 위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의 암살을 직접적으로 암시, 선동하고, 나중에 안두희가 체포된 뒤 그의 뒤를 돌보아 주는 등으로 김구 선생의 암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였고, 또 망 김창룡은 생전에 선글라스를 쓰거나 지휘봉을 들고 다닌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드라마에서 그가 항상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지휘봉을 들고 다니면서 하급자에게 거들먹거리며 거만하게 행동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과장하게 묘사함으로써 망 김창룡의 명예 및 그의 딸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원으로 위자하고 명예회복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판결문 전문을 피고의 9시 뉴스 방송에서 낭독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은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와 사실에 기초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재구성하고 여기에 드라마의 특성상 다소의 극적 내용을 가미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에 관련되었다는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한 것은 공영 방송으로서 광복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제작, 방영함으로써 그의 업적과 사상을 추모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며 과거를 돌이켜 봄으로써 역사에 대한 반성을 시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다.

3. 역사적 사실의 탐구,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1)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은 이 사건 방송 당시 이미 46년의 세월이 지나 역사적 사실이 되어 버렸는 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는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보다 자유롭게 탐구 또는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 탐구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는 이미 세월의 경과로 세인의 기억 속에서 잊혀

져 가는 역사적 인물 또는 그 유족의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가치보다 소중한 것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는 사건 현장의 검증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탐문 등을 통하여 그 진실 여부를 상당한 정도까지 조사할 수 있는 현재의 사실과는 달리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워 그 진위 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 역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드라마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극화한 창작물로서 그 제1부에서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바, 위 설시를 염두에 두고 과연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방영한 행위가 망인 또는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4.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 암살 사건에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엄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1)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이 안두희의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다른 배후 인물 또는 세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암살 사건 직후부터 의혹이 제기되어 오다가 1960. 5. 24. 소외 고 의 증언을 시작으로 하여 1960. 8. 중순부터 같은 해 9. 중순 사이에 걸쳐서 발표된 소외 , 사건 당시 헌병사령관이던 소외 장흥, 헌병부사령관이었던 전병덕, 한독당 조직부장이던 소외 김학규, 방첩대의 대위로서 위 안두희를 수사했던 소외 노엽, 포병부사령관이었던 소외 이기련, 위 안두희의 변호인이었던 , 포병사령부에 근무했던 소외 신 , 독립운동가인 소외 김승학 등의 증언을 통하여 망 김지웅이 고위층과의 연락을 맡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망 신성모,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망 채병덕, 포병사령관이던 망 장은산과 같이 망 김창룡이 그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었었고, 암살 사건에 관련된 소외 홍종만은 1974. 이 사건은 위 김지웅이 계획하고, 위 장은산이 지시하였으며, 위 신성모 등이 개입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안두희는 이러한 증언들을 부인하고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여 왔다.

(2) 안두희의 진술

그 뒤 위 안두희는 1992. 4. 12. 위 권 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마련된 동아일보 기자와의 회견에서 망 김창룡이 평소 자신에게 김구를 살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당시 김창룡의 세도와 위치를 감안하면 그와 같은 강조는 지시나 다름이 없었고, 암살 실행 후에 김창룡이 특무대 영창으로 면회를 와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술, 담배, 고기 등을 차입해 주는 등 뒤를 돌보아 주었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달 14. 저녁 엠비씨(MBC)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여서 암살 사건에 망 김창룡 외에도 당시 수도경찰청장이었던 망 , 시경국장이었던 망 , 수사과장이었던 망 , 사찰과장이었던 망 도 역시 암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해 6. 26. 김구 선생의 추모일에는 암살은 위 장은산이 직접 지시하였고, 위 장은산 및 위 김창룡은 평소 자신에게 김구를 암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해 9. 23. 위 권 에 의해 경기 가평군 소재 사슴목장으로 납치된 상태에서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 사건 드라마에 방송된 것과 동일한 내용인 망 김창룡이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김구 주위에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고 있다면서 김구를 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김구의 암살을 암시, 선동하였고, 위 김창룡이 김구 암살 직후에 방첩대에 수감되어 있던 자신에게 찾아와 격려하는 말을 하고,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편의를 돌보아 줄 것을 말하였고, 이승만 전(前) 대통령이 김구 암살에 개입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같은 달 24. 서울 우당기념관에서 위 권 의 일행이 동대문 경찰서에 연행된 후 주요 일간지 등의 기자들만이 모인 회견장에서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반복하였으나, 같은 달 25.에는 같은 달 23. 가평군에서의 증언 및 같은 달 24. 우당기념관에서의 증언이 모두 위 권 의 고문에 의한 허위의 내용이었다고 앞서의 증언을 번복하였다.

(3) 위와 같은 안두희의 증언 내용이 그 때마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크게 보도되는 등 새롭게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의 진상이 국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자, 국회에서 백범 김구 선생 암살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두희가 제출한 육성 녹음테이프 120개 및 그 때까지의 다른 기록이나 자료 등을 토대로 그 진상 규명에 나섰는 바, 1995. 12. 15.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망 김창룡이 김구 암살 이전에 암살 모의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암살 이후에 방첩대장으로서(위 보고서에는 특무대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수감되어 있는 안두희에게 특별 대우를 하고 수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으로 암살 사건

의 사후 처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위 신성모의 주동하에 채병덕, 장은산, 김지웅이 모인 모임인 이른바 88구락부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4) 망 김창룡은 위 암살 당시 직책이 육군 총사령부 소속으로 육군 제1연대 정보참모였다가 김구 암살 사건이 발생한 후 1949. 7. 14.부터 육군 정보국 방첩대장으로 부임하였으나, 1956. 동인이 사망할 당시의 신문보도(을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위 암살 사건이 발생하기 11일 전인 1949. 6. 15.에 벌써 방첩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5) 피고는 당시 조사, 확인 가능한 위와 같은 자료(특히 안두희의 위 증언)를 토대로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을 재구성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였으나, 과연 위 사건이 그 범행을 실행한 안두희의 단독범행이었는지, 그 배후에 조정 또는 비호하는 인물이나 세력이 있었는지, 나아가 망 김창룡이 이에 관련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위 안두희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는 없다.

5.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중대한 역사적 사실로서, 그 범행에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사망하여, 그 범행을 실행한 안두희의 진술과 과거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발언 내용, 기타 여러 조사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조사하는 외에는 달리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이 위 안두희는 자신의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기는 했으나 1992. 4. 14. 엠비씨(MBC)텔레비전 방송에서 사회자인 소외 박경재에게, 1992. 9. 24. 우당기념관에서 주요 일간지 등의 기자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위 김창룡이 김구 암살 사건에 사전부터 관련되어 있다고 각 진술하였고, 1960.부터 당시 직책상 이 사건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위 장흥, 전병덕 등에 의하여 망 김창룡이 계속하여 위 암살 사건의 배후인물로서 지목되어 왔으며, 국회의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도 위 김창룡이 이른바 88구락부의 구성원이었고 김구 암살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물론 안두희의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서 위 김창룡이 88구락부의 구성원으로서 김구 선생 암살 사건에 관련되어 사전에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의 암살을 암시, 선동하고, 사후에 안두희가 수감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 뒤를 돌보아 준 것으로 묘사한 내용은 위와 같은 안두희의 진술 내용과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과거의 발언 내용 기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전혀 터무니없는 억측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 있는 극적 재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그 제작 의도 등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더욱 위와 같이 망 김창룡이 위 사건의 배후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같은 내용의 안두희의 증언이 도하 모든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서 문제 삼는 내용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6. 부정적인 묘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나아가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에 관여하였다는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실에 대한 묘사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을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지휘봉을 들고 다니면서 하급자에게 거들먹거리며 거만하게 행동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서 망인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비디오 테이프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지휘봉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묘사는 실제의 사실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세부사실의 가감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위 김창룡이 거만하게 행동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묘사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25. □

재판장 판사 심 재 돈

판사 박 종 욱

판사 유 헌 종

원고의 피의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도 없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국가수사기관이 이를 공표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대법원 1996. 8. 20.자 판결 (94다29928)

事實槪要

대법원 제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996년 8월 20일 지난 91년 서울 마포구 가정집에서 9살짜리 여동생을 칼로 찌른 뒤 불에 태워 죽인 혐의로 붙잡혔다 풀려난 권○○ 군과 그 가족들이 피의사실 등을 공표한 수사관계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의 상당성 여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당성판단과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군과 가족들은 마포경찰서 소속 형사인 피고들이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원고에 대하여 유도심문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한 결과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그 허위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인 제반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범인이라고 단정하여 언론기관에 이를 공표하였는 바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원고들에 대

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위 피고들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강압적인 추궁과 유도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은 다음 이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진범으로 단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원고의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등 원고들의 가정환경에 문제가 많고 원고 권○○을 불량소년인 것처럼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설명,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들에게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측은 불복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피고들이 공표한 피의사실은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도 없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런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원고의 부모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실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경찰공무원인 피고들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측은 이에 불복 상고했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4다2992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1. 권
2. 권
3. 이
원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권 .
모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거남, 주수창, 김동우

피고,피상고인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안우만
소송수행자 홍성계, 성낙춘, 하명수, 옥영정, 조태구

피고, 상고인 : 2. 김

서울 송파구

3. 정

4. 진

피고 3, 4의 주소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의 11 서울 지방경찰청내

피고 2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 5. 17. 선고, 93나32639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김 , 정 , 진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 기관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김 를 수사책임자" 라고 판시한 것은 그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외 권 의 변사사건을 관할하는 마포경찰서의 최고 책임자인 서장으로서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에 있어서의 책임자라는 의미일 뿐 검사를 배제하고 수사의 최종적 책임자라는 의미로 판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책임자라도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김 를 수사책임자" 라고 판시한 것을 가리켜 원심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변사사건의 수사책임을 맡고 있던 마포경찰서장인 피고 김 , 위 경찰서 형사과장인 피고 정 과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 1반 주임인 피고 진 이 원고 권 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원고 권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비록 피의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배포된 후 직접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한 사람은 피고 정 혼자였지만 보도자료의 배포 자체는 피고 김 , 정 , 진 이 공동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반드시 각 불법행위자의 구

체적 행위를 개별적으로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김 . 진 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심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사실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이나, 비록 위와 같은 행위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김 , 정 , 진 이 위 사건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소속형사(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며,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1. 10. 5. 원고 권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10세)으로부터 자기가 위 권 (당시 초등학교 3학년으로 9세)을 부엌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하였다라는 내용의 자백을 받자, 위 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원고를 위 사건에 대한 범인으로 입건한 후 다음날인 10. 6. 마포경찰서에서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위 자백과 같은 내용의 위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피고 정 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하여 위 사건의 원인과 동기에 관하여 위 사건은 폭력 비디오에 빠져 있는 위 원고가 폭력 비디오를 모방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한 후, 위 피고들이 공표한 피의사실은 그 판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진실이라는 증명도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의 상당성 여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당성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논지와 같다 할 것이지만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발표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발표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수사결과를 발표한 1991. 10. 5.의 시점에서 피고 김 등이 원고 권 을 범인으로 오신한 데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하여는 그 당시 밝혀진 사실 외에도 그 후의 수사진전에 따라 드러난 객관적 사실, 수사 및

발표의 경위와 과정 등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기 위하여 발표 이후에 조사된 증거자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1991. 11. 17.자 노 의 경찰에서의 진술, 같은 해 12. 26. 자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삼은 것도 이와 같은 증거자료로 사용(위의 증거들은 모두 피고들에게 유리한 자료이다)된 것이어서 잘못이 없고, 원심이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조사된 증거자료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들의 각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 권 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한 결과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인으로까지 지목되기에 이른 위 원고 자신의 잘못도 참작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위 원고의 명예에 치명적 손해를 입은 점, 위 수사절차에서 자백을 받기에 이른 과정,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원심이 산정한 원고들의 각 위자료 수액은 상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위자료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김 , 정 , 진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20. □

재판장 대법관 김 석 수
대법관 정 귀 호
주 심 대법관 이 돈 희

2심 : 서울고등법원 1994. 5. 17.자 판결 (93나32639)
1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2.자 판결 (92가합23099)
2심 및 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3집 pp.154~176 참조

취재원이 수차례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고, 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신뢰할 만한 인물이며,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김일성 동상 사진을
제공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월간지로서 일간신문과는 달리
취재시간에도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서울지방법원 1996. 8. 22.자 판결 (94가합98592)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1996년 8월 22일 미국 국적의 기자인 문　　씨가 월간조선 발행사인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조선일보사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월간조선에 『문　　씨의 이른바 방북발언 보도에 대하여』 제하로 월간조선이 문　　씨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배상한다는 취지의 판결내용을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문　　씨는 피고 조선일보사가 월간조선 1994년 9월호 『김일성 장례식은 희대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 제하로 장례식에 참석한 한 재미교포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면

서 『문　　의 충성서약』이라는 소제목으로 「문　　씨가 위로연에서 '도쿄에서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김정일 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고 발언했다」고 보도하자 원고는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정정보도문 게재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변론에서 이 사건기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직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에서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한 어느 재미교포를 취재원으로 그의 체험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일성의 저의, 김일성 사망 후의 북한 전망 및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관련 부분은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기사 중 원고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이 기사전체의 분량과 비교할 때 미미하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취재원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원고의 '말' 지와의 대담기사, 북한 TV의 방송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관련 부분은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북한 TV방송 내용 중 원고가 위로연에 참석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언하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장례식에 김일성의 처 김성애와 아들 김　　이 참석하였는데도 양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피고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기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취재원이 수 차례에 걸쳐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왔고 학력,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신뢰할 만한 인물이며, 김일성 동상의 사진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월간지로서 일간신문과는 달리 취재시간도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판시했다.

判決文

사　건 : 94가합98592 손해배상(기)

원 고 : 문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VA. 22207 U.S.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송두환, 김기중, 안상운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동양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최광률, 최승인

변론종결 : 1996. 7. 11.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20.부터 1996. 8. 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조선' 제119면에 제목은 고딕체 3호 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5호 활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의 보도내용을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2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월간조선' 119쪽에 제목은 고딕체 특호활자로, 내용은 5호 활자로 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의 인정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 을제3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나. 원고는 소외 경향신문사에서 1966. 11. 14.부터 1971. 10. 7.까지 편집부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현재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국내에도 일간 신문이나 월간지에 상당수의 기사를 기고한 바 있고, 피고는 신문, 잡지 발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일간지인 '조선일보' 및 월간지인 '월간조선'을 발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피고 소속 월간조선부 기자인 소외 김　　이 취재하여 작성한 『김일성 장례식은 희대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월간조선' 1994.9호 제 119면부터 125면까지 사이에 게재하였는 바, 그 기사의 본문이 시작되기 앞서 『편집자주』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기사는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한 재일교포와의 국제전화를 통한 인터뷰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며 취재원인 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그 신분이나 기타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숨겼다'는 취지의 내용이 덧붙여져 있으며, 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1) 김일성의 장례식과 추도식은 희대의 코미디였다. 이런 비극적인 코미디를 나는 평생에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대성통곡하며 집단 공황증세를 보이다가도 '울지 말라'는 당의 지시가 있자 추도식에서는 울음을 뚝 그친 북한 동포들, 허름한 신발에 양말도 신지 못한 채 주석단에 올라가 농민대표로 추도사를 읽은 여성, 추도식이 끝난 뒤 위로연에서 "이제는 기러기떼가 제일 앞서 가는 기러기를 따라가듯 김정일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교포들….다양한 군상들이 펼치는 광경은 정말 희대의 코미디이자 희대의 비극이었다. 김일성이 2천만 주민을 이런 바보들로 만든 것은 역사와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이 사건 시작부분임, 119면 1단 ~ 120면 1단).

(2) 文　　의 충성서약(122면 1단 소제목 고딕체 활자)

교포들은 김일성의 시신 앞에서 큰절을 하고 아부성 발언을 쏟아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열린 위로연에서 文　　의 발언이 그 극치를 이뤘다. 文씨는 마이크를 잡더니 "도쿄에서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서거 소식을 알려주자 카터 대통령도 울었다. 이제 우리 7천만 인민은 기러기떼처럼 김정일 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그 광경은 북한에서 내가 본 또 하나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 그래서 이번 북한 체류는 길고 지루했다(122면 3단).

라. 이 사건 기사에는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등의 북한측의 고위층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실명이 등장하는 것은 오직 원고 한 사람 뿐이다.

마. 위 기사가 실린 '월간조선' 1994. 9.호는 국내에서는 1994. 8. 20.부터 서점을 통하여 판매되었다.

바. '월간조선'은 항공편으로 미국에서 매월 약 650부 가량이 판매되고 있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월간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그 시작 부분에 김일성의 장례식과 추도식은 한마디로 코미디였다는 취재원의 소감을 요약하면서 그 뒤에 추도식 당시의 북한 군중들의 태도와 농민대표로 조사를 읽은 여성의 모습, 기러기떼 운운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교포들이라는 내용을 열거하여 그러한 모습 때문에 취재원이 그와 같은 소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인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뒤에 『문　　의 충성서약』이라는 소제목 하에 원고의 발언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 열린 위로연에서 행해진 해외교포들의 아부성 발언 중의 극치였다는 설명과 같이 원고가 "도쿄에서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서거 소식을 알려주자 카터 대통령도 울었다. 이제 우리 7천만 인민은 기러기떼처럼 김정일 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을 싣고 있으며, 이 기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등의 북한측의 고위층 인사를 제외하고는 오직 원고 한 사람만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어, 일반의 독자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시작 부분과 원고의 발언 부분을 연결지어 원고가 김일성 추도식이 끝난 뒤의 위로연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가장 심한 아부성 발언을 하였으며 원고의 그러한 발언과 다른 정황들로 인하여 위 취재원은 김일성의 장례식이 한마디로 코미디라는 소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체적인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가 실린 피고 발행의 '월간조선' 1994. 9.호가 국내 및 미국 내의 독자들에게 배포됨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국내의 일간지 및 월간지에 상당수의 기사를 기고하는 등으로 국내에서도 기자로서 활동해 온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기사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직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에서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한 어느 재미교포의 체험기를 통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일성의 저의, 김일성 사망 후의 북한전망 및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 관련 부분은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관련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이 기사 전체의 분량과 비교할 때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직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에서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한 어느 재미교포의 체험기를 통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일성의 저의, 김일성 사망 후의 북한 전망 및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 소속의 기자인 소외 김 및 편집부장인 소외 조 가 위 재미교포를 만나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취재함에 있어 위 재미교포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왔고, 그때까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김일성 동상 사진 2매를 제공한 점 및 위 취재원의 학력,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또한 원고는 월간 '말' 지 1994. 9.호에 게재된 대담기사에서 도쿄에서 김일성 사망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위 위로연에 참석한 사실은 북한 TV에도 방송된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관련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사실이거나 피고로서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월간지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취재 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기사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또한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월간지와 같은 언론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추측에 근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기사의 원고관련 부분이 진실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취재원의 존재 및 정보 제공

원고가 1994. 7. 8. 도쿄에서 북한 김일성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같은 달 13. 북경을 통하여 평양에 도착하여 같은 달 19.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장례식과 같은 달 20. 평양에서 열린 추도식에 각 참석하였으며, 위 추도식 후에 평양목란관에서 열린 해외동포

들을 위한 위로연에 참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제6호증의 3(갑제2호증의 6과 같다), 4(갑제2호증의 7과 같다), 5 내지 7, 을8호증의 1, 2,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 , 조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월간조선부 기자인 소외 김 이 1994. 7. 경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성명 미상의 재미교포(이하 취재원이라고만 한다)와 국제전화 통화를 하여 이 사건기사 내용을 취재한 뒤 같은 해 8. 초순경 국내를 방문한 위 취재원을 서울 소재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하고 그로부터 김일성 동상 사진 2장 (을8호증의 1, 2)을 받은 사실 및 그 후 같은 달 초순경 위 김 은 피고 소속 월간조선부 편집부장인 소외 조 와 같이 위 취재원을 만나 이 사건기사의 내용 및 그외 북한의 정세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 위 김 은 위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기사가 위 취재원의 진술 내용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는 사실 [위 김 의 취재수첩(을제2호증의 6, 7)에는 원고가 '7천만 인민' 이 아니라 '7천만 동포'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취재원으로부터 사후에 제출받았다는 일기장(을제11호증)에는 김일성이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카터 미국 전(前) 대통령이 운 것이 아니라 원고가 울면서 카터 대통령에게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도쿄에서 김일성 사망소식을 듣고 울었고, 원고가 김일성 사망 소식과 관련하여 카터 전 대통령과 통화하였으며, 기러기떼처럼 김정일을 따라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주된 부분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위 김 및 위 조 는 위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이 사건 기사로 작성함에 있어 위 취재원이 계속적으로 북한에 출입하는 까닭에 그 신변 보호 등을 위하여 취재원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기사 첫머리 부분의 편집자 주에서 그를 재미교포 아닌 재일교포로, 국내에서 직접 만나 취재하였음에도 국제전화를 통하여 취재한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기사는 피고가 방북하여 김일성 장례식 및 추도식에 참석한 위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 여부

나아가 위 취재원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에 관하여 제공한 정보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1호증의 2, 3, 을 10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월간 '말' 지 1994. 9.호에 게재된 그 잡지 기자인 소외 신 과의 대담 기사 중에 도쿄에서 김일성 사망소식을 듣고 울었고, 김일성 추도식 행사 후에 3일 동안 앓아 누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원고가 위 '말' 지에 수 차례에 걸쳐서 기고한 북한 관련 기사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람됨됨이나 그들에 대한 북한 주민의 태도, 북한의 경제사

정 등에 관하여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바로 원고가 김일성 추도식행사 이후에 열린 해외동포들을 위한 위로연 석상에서 이 사건기사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였으리라고 속단할 수는 없고 [위 '말' 지 1994. 9.호에 게재된 원고의 발언은 "저는 7월 25일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 취재 준비를 위해 7월 8일 도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런 뜻밖의 사태(김일성 사망 소식을 뜻한다)에 접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둬 조국이 통일로 다가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염원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비보를 접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라는 내용으로서 그 문맥상 원고가 단순히 김일성 사망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추도의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남북통일의 밑받침이 될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이 사건기사 내용 중의 원고가 발언했다는 내용은 그 전체적인 문맥상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아부 내지는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말' 지에 실린 원고의 발언이 일부 이 사건기사 중의 원고가 발언했다는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이 사건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발언을 위 위로연에서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을제8호증의 1, 2의 각 사진들이 피고 주장과 같이 그때까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사진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취재원이 방북하여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이 사건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을 포함하여 취재원이 제공한 다른 부분의 내용도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당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위로연 장면을 방영한 북한 TV의 화면상 원고가 위 위로연에 참석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언하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을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6, 7, 갑제1호증의 2, 갑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일성의 장례식 및 추도식에 그의 처인 김 및 자인 김 이 참석하였고 다만 북한 TV 방영 화면에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인데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은 피고 발행의 '조선일보'를 포함한 국내 도하 각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 있다) 위 취재원은 위 양인이 장례식 및 추도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 취재원이 피고에게 제공한 정보 중 상당 부분에 객관적인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취재원이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을 방북하여 그 장례식 및 추도식에 참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제공한 정보 중 원고 관련 부분의 정확성, 진실성에 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그외 을제2호증의 2, 을제6호증의 3 내지 7, 을제7호증, 을제9호증, 을제11호증, 을제14호증의 1 내지 4,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 조 의 각 증언, 당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 위로연에서 이 사건기사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상당한 이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기사의 내용의 진실이 아니더라도 당시 피고에게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소속 기자인 소외 김 이 1994. 7.경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취재원과 국제전화 통화를 하여 이 사건기사 내용을 취재한 뒤 같은 해 8. 초순경 국내를 방문한 위 취재원을 2차례에 걸쳐서 만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하고 그로부터 김일성 동상 사진 2장을 받은 사실 및 그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기사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소속 편집부장인 소외 조 역시 위 취재원을 만나 그 진술 내용을 취재한 사실 및 이 사건기사가 위 취재원의 진술 내용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는 사실, 원고가 위 위로연에 참석한 사실, 원고가 월간 '말' 1994. 9. 호에 게재된 그 잡지 기자인 소외 신 과의 대담 기사 중에 도쿄에서 김일성 사망 소식을 듣고 울었고, 김일성 추도식 행사 후에 3일 동안 앓아 누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김 이나 조 가 이 사건기사 중 원고 관련부분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6, 7, 갑제1호증의 2, 갑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기사에는 김일성의 장례식 및 추도식에 그의 처인 김 및 자인 김 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양인이 참석하였고, 다만 북한 TV 방영 화면에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인 사실 및 위 양인의 참석 여부와 TV에 그 참석 모습이 방영되었는지의 여부는 김일성 사후의 북한의 권력구도와 관련하여 언론 및 북한전문가들사이에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국내의 일간신문에도 그 참석 사실 등이 보도된 사실 [피고 발행의 '조선일보' 1994. 7. 20.자(갑제3호증의 1) 및 같은 달 28.자 (갑제3호증의 3)에도 위 양인의 참석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김 및 조 는 이 사건기사를 취재함에 있어 김일성 사망 후의 북한 전망 및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 등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기사 내용 중 북한의 주요 지도층 인사로서 김일성 사후의 북한의 권력 구도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 및 김 의 김일성 장례식 및 추도식에의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기사 내용 중 다른 부분의 진실성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원고가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국내의 월간지 등에 기사를 기고하여 왔으

므로 위 김　　및 조　　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원고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단지 위 취재원이 그간 수 차례에 걸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왔고, 그 학력,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신뢰할 만한 인물이며,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김일성 동상 사진 2매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월간조선'은 월간지로서 일간신문이나 방송과는 달리 취재시간에도 상당한 여유가 있다는(위 김　　이 취재원과 국제전화상으로 최초로 연락을 한 것은 1994. 7.경이고 조　　와 같이 국내에서 취재원을 직접 만난 것도 1994. 8. 초순경으로 이 사건기사가 게재된 '월간조선' 1994. 9.호가 발매된 1994. 8. 20.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점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월간 '말' 지의 기사 및 북한 TV의 방영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말' 지 1994. 9.호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도쿄에서 김일성 사망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다만 위 대담기사의 문맥상 원고가 운 것은 피고 주장과 같이 김일성에 대한 추도의 마음에서라기 보다는 남북통일의 실현이 어려워졌다는 마음에서라고 해석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및 원고가 위로연에 참석한 모습이 북한 TV에 방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제된 기사 내용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을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기사가 게재된 '월간조선' 1994. 9.호는 위 '말' 지 1994. 9.호보다 먼저 발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김　　이나 조　　가 이 사건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이를 참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의 위로연 참석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북한 TV 방영 내용을 위 양인이 이 사건기사 작성 당시에 참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말' 지의 기사나 북한 TV의 방영 내용을 들어 위 김　　이나 조　　가 이 사건기사를 작성하는 당시에 원고 관련 부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피고에게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기사가 게재된 '월간조선' 1994. 9.호가 배포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을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표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명예회복의 방법

한편 위 손해배상만으로는 원고의 구제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와 함께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내용, 활자의 크기와 종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보도내용을 '월간조선'에 이 사건 기사에 준하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토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자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월간조선' 1994. 9.호가 발매된 1994. 8. 2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8.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조선' 제119면에 제목은 고딕체 3호 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5호 활자로 하여 별지 제1. 기재의 보도내용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22.

재판장 판사 심 재 돈
판사 박 종 욱
판사 유 현 종

〈별지 1〉

제　　목 : 문　　씨의 이른바 방북발언 보도에 관하여

내　　용 : 본사는 1994년 9월호 '월간조선' 의 119쪽부터 125쪽까지 『김일성 장례식은 희대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 바, 위 기사의 본문 내용 중 문　　씨가 1994년 7월 20일 평양시 소재 목란관에서 "도쿄에서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이제 우리 7천만 인민은 기러기떼처럼 김정일 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 문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문　　씨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제　　목 : 文　　씨의 이른바 방북발언에 대한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사는 1994년 9월호 '월간조선' 의 119쪽부터 125쪽까지 『김일성 장례식은 희대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의 본문 내용 중 文　　씨가 1994년 7월 20일 평양시 소재 목란관에서 발언한 것으로 본사가 보도한 "도쿄에서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서거 소식을 알려주자 카터 대통령도 울었다. 이제 우리 7천만 인민은 기러기떼처럼 김정일 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에 정정합니다. 또한 본사는 위 '월간조선' 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문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1억원을 문　　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적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6. 9. 6.자 판결 (95가합14198)

事實槪要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1996년 9월 6일 문화일보 편집담당 전무였던 최 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에서 「피고의 사건 사설내용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적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위법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겨레신문은 1995년 7월 24일자에 『문화일보 부당노동행위』라는 제목으로 문화노조 소식지를 인용하여 「(문화일보)노조는 문화일보사 회장과 편집담당 전무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했다. '회장의 지시 한마디로 정체불명 필자들의 글이 실리거나 연재되었다. 편집담당 전무는 문화부 기자들에게 비싼 미술품을 받아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아들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교육부 출입기자가 힘을 쓰게 했다고 한다. 전무는 또 지방주재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급 개발정보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가 이런 사실을 공개질의한 데 대해 당사자들은 마땅히 해명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론의 현장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에 원고는 사설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5가합14198 손해배상(기)

원　　고 : 최
서울 송파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　　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권근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환

변론종결 : 1996. 8. 16.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7.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문 송달 후 편집이 종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제3면 우측 상단에 판결문 전문을 본문활자로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신문기사), 을제1호증의 1, 2(각 언론노보), 을제2호증(문화노보), 을제3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증), 을제6호증의 1, 2(전국언론인명론 표지 및 내용), 을제7호증의 1 내지 4(각 신문기사), 증인 송·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공개질의서)의 각 기재, 증인 송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문화일보사(이하 문화일보사라고만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

무하면서 편집국장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는 일간신문인 한겨레신문 등을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2) 1995. 7. 14.경 문화일보사 내에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그 조합설립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위 문화일보사는 같은 달 15.경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결성에 관여한 일부 기자들에 대하여 기자직을 박탈하거나 무연고 지역의 주재기자로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은 위 문화일보사의 인사조치가 노동조합원에 대한 보복인사이자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궐기대회를 열어 이에 항의하고 위 인사발령의 철회를 요구하던 중 같은 달 20일경 발행한 문화노조 비상소식지 3호에서 "경영진에게 묻는다. 부정, 비리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라는 제목 하에 "최 편집담당전무에게 묻습니다. ① 최전무는 미술담당 등 문화부 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 등을 선물로 받아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② 최전무는 케이(K)대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이 장학금을 받게하기 위해 교육부 출입 기자에게 압력을 넣을 것을 지시, 관철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③ 지방주재 기자들에 따르면 최전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방의 고급 개발정보를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에게 공개질의를 하였다.

(3) 피고는 1995. 7. 24.자 발행의 한겨레신문 제3면 우측 상단 사설란 부분에 "문화일보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제목 하에 "(문화일보)노조는 문화일보사 회장과 편집담당 전무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했다. '회장의 지시 한마디로 정체불명 필자들의 글이 실리거나 연재되었다. 편집담당 전무는 문화부 기자들에게 비싼 미술품을 받아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아들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교육부 출입기자가 힘을 쓰게 했다고 한다. 전무는 또 지방주재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급 개발정보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가 이런 사실을 공개 질의한 데 대해 당사자들은 마땅히 해명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론의 현장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를 지칭하는 위 사설내용은 사실무근의 기사로서 피고는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를 전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설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가사 진실이 아니라 하더

라도 피고가 여러 가지 자료 및 정황에 기하여 위 사설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명예훼손의 성립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사설에서 표시한 '문화일보사의 편집담당전무'는 비록 그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문화일보사 내에서의 직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 사설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원고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설은 위 문화일보사의 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공개질의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공개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일반의 독자가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위 노동조합이 공개질의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권한을 남용하여 기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부도덕한 언론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설이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는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법성의 유무

그러나 신문 등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과연 이 사건 사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증인 송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8호증의 1 내지

3(각 성명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위 문화일보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노동조합원인 기자들에 대하여 한 인사조치는 당시 언론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에 위 문화일보사의 노동조합은 위 인사조치에 항의하면서 아울러 그 인사발령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경영진의 일원인 원고에게 직무에 관련된 부정 및 비리의혹에 관하여 답변을 촉구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설 모두에서 위와 같은 위 문화일보사의 인사조치로 인한 일련의 사태에 관하여 기술을 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공개질의 내용을 전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설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던 위 문화일보사의 인사조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아울러 언론기관인 위 문화일보사의 운영 및 직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기된 의문을 문화일보사 노동조합의 공개질의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다루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설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진실성 내지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각 진술조서), 을제9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 증인 송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2년경 위 문화일보의 편집국장을 담당하면서 당시 미술담당기자로 근무하는 소외 전 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 소외 장순업, 김영덕 등의 그림을 좋아하니 그와 같은 미술품을 싸게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1993. 3. 말경에는 문화일보 갤러리에 전시 중이던 약 금 6,000,000원 정도의 그림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하여 위 전 이 그 그림의 화가에게 의사타진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또한 원고는 1992. 3.경 당시 교육부출입기자로 근무하는 소외 황 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 원고의 아들 소외 최 이 광운대학을 다니는데 위 대학의 기획실장인 소외 최 을 잘 아느냐고 물으면서 위 최 이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하였으며, 그밖에 원고는 1995년경 지방주재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의 고급개발정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이 상당기간 동안 위 문화일보사의 기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고, 위 문화일보의 인사조치로 인하여 경영진과 노동조합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 위 문화일보의 노동조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그 진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위 공개질의

와 함께 위 전 이 원고로부터 유명화가의 그림을 싸게 사달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위 전 작성의 확인서(을제5호증)도 공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9호증의 2(진술조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제5호증의 1(진술조서), 2(장학금수혜증명서), 3 내지 6(각 기안용지), 7(교내아르바이트신청서), 8(자동차운전면허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인용한 위 문화일보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공개질의 내용은 과장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기초적 사실에 있어서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고 또 그 내용이 위 문화일보사 내부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기간 거론되던 중 위 노동조합에 의하여 공개질의되고, 이에 관한 일부 관련자료도 공개, 제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사설 내용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 적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위법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6. □

재판장 판사 홍 성 무
판사 이 상 윤
판사 최 주 영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도 전재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했으며, 피고 신문사는 연합통신의 책임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1996. 9. 18.자 판결 (95나419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5. 9. 15.자 판결 (95가합3509)

事實槪要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1996년 9월 18일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손　　씨가 주식회사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 부산일보사는 원고에게 5백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일보가 1992년 5월 7일자 사회면 『김영삼 대표 명예훼손 혐의 「인사이더월드」발행인 구속』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자 원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 부산일보는 변론을 통해 문제가 된 이 사건기사는 권위있고 신뢰할 만한 통신사인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받아 기사화한 것이고, 송고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일반 관행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사건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했고 또한 원고는 이미 연합통신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피

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는 이 사건기사의 경우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크레디티를 붙이거나, 전재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사건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피고가 이 사건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원고에게 확인하거나 원고의 전과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조회하는 등, 이 사건 기사의 진위에 관한 취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피고가 보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합통신의 기사에 의존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기사의 취재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위 주장을 물리쳤고 또 피고의 정정보도만으로는 원고의 정신상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책임은 연합통신의 책임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책임이라고 할 것이라며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1995년 9월 15일 판결을 통해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할 경우에는 그것이 신뢰할 만한 뉴스 수집기관이고, 피고로서는 그 뉴스가 허위인지를 몰랐으며 그 뉴스 자체의 문면상으로 그것이 부정확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하게 할 만한 사항이 없고, 또 피고가 수신한 내용을 실질적인 변경없이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패소판결(95가합35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 재판장 이홍기 부장판사)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기사를 송고한 연합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년 4월 6일 일부 승소판결(92가합48463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8부 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1992년 6월 2일자 서울신문 『민자대표 기사날조 손충무 피고인 석방』제하로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석방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그 제목만 본다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할 때 기사날조라는 것은 원고의 혐의 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93나22236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김선석 부장판사, 언론중재 1994년 겨울호 참조)했다.

2심 判 決 文

사　　건 : 95나4196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손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피항소인 : 부산일보(釜山日報)주식회사

부산 동구 수정동 1의 20

송달장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6층

대표이사 정한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 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재택, 최규봉, 송임호, 황연택, 김용균

변론종결 : 1996. 8. 21.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5. 9. 15. 선고, 95가합3509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 8.부터 1996. 9.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이외의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2. 5. 7. 그가 발행하는 '인사이더월드'라는 잡지에 미국 교포신문인 LA

데일리타임즈 발행인 소외 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기초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 위원에게 숨겨 놓은 딸이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되었다.

(2) 피고는 1992. 5. 7. 같은 날짜 피고 발행의 일간신문인 부산일보 사회면 4단 크기로 『김영삼 대표 명예훼손 혐의,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구속』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의 위 구속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기사 말미에 "손씨는 지난 '88년 신동아 그룹 최 회장이 통일교도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후 최회장에게 시가 7억원짜리 땅을 21억원에 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이하 이 사건기사라 한다)라고 보도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없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된 사람은 원고가 아닌 LA데일리 타임즈 발행인인 소외 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문제가 된 이 사건기사는 소외 주식회사 연합통신(이하 연합통신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송고받아 피고가 기사화한 것인데, 연합통신은 국내 대부분의 일간지들과 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각 신문사에 기사를 송고해 주는 권위있고 신뢰할 만한 통신사이며, 각 신문사가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일반 관행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기사를 게재한 것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일반적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나,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볼 때 신문사가 통신사와 통신 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그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면서도 그 전재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기 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기사는 김영삼 대표라는 공인(公人)의 사생활

에 관한 기사의 일부이고, 원고 또한 언론인으로서 오랫동안 종사하여 왔고, 그 당시 「인사이더월드」라는 잡지의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 자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에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을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연합통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연합통신은 우리 나라의 전국에 걸쳐 중앙지 20개사, 지방지 37개사의 각 신문사와 통신 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 피고 또한 지방신문사로서 연합통신과 통신 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피고의 연합통신이 제공하는 통신을 전재할 때에는 크레디트를 붙여서 그 전재사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크레디트를 붙이지 아니한 기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기사의 경우에는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도 크레디트를 붙이거나 전재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원고에게 확인하거나 원고의 전과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조회하는 등 이 사건기사의 진위에 관한 취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결국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면서도 그 기사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니, 연합통신이 전국에 걸쳐 각 신문사들과 통신 송수신을 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가 지방지인 관계로 보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 연합통신의 기사에 의존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1992. 5. 19. 부산일보 지상에 "연합통신이 이 사건 문제가 된 기사가 착오였기에 바로잡는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였고, 원고는 연합통신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주장 일자의 부산일보에 "한편 연합통신은 19일 지난 7일 오전 송고, 같은 날 본보 23면에 게재된 이 사건기사의 '손씨'는 LA데일리타임즈 발행인 씨의 착오였기에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연합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일부 승소판결에 따라 연합통신으로부터 이미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정정보도만으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명예가 회복되어 정신상의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원고의 책임은 연합통신의 책임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책임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연합통신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책임이 없어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전체 보도내용 중 이 사건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와 과정, 후에 정정기사가 보도된 점과 그 정정기사의 크기와 비중,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연합통신으로부터 손해배상으로 금 5,000,0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원고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및 피고가 전체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1992.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6. 9.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18.

재판장 판사 송 기 홍
판사 최 상 열
판사 홍 일 표

1심 判決文

사 건 : 95가합3509 손해배상(기)

원 고 : 손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 고 : 부산일보(釜山日報)주식회사
부산 동구 수정동 1의 10
송달장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6층
대표이사 정한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 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재택, 최규봉, 송임호, 황연택, 김용균

변론종결 : 1995. 8. 25.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피고는 1992. 5. 7. 소외 주식회사 연합통신으로부터 기사를 송고받아 같은 날짜 피고 발행 일간신문인 부산일보에 "김영삼 대표 명예훼손혐의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구속"이란 제하로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기사의 말미부분에 손씨는 지난 88년 신동아그룹 최

회장이 통일교도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후 최 회장에게 시가 7억원짜리 땅을 21억원에 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복역한 사실은 없었던 사실, 원고가 위 통신사를 상대로 위 기사송고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통신사로부터 송고받은 기사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확인취재를 하여 보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내의 전 일간지는 위 통신사와 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위 통신이 송고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일반

적인 관행으로서 위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보도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자료 또는 근거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할 경우에는 그것이 신뢰할 만한 뉴스 수집기관이고, 피고로서는 그 뉴스가 허위인지를 몰랐으며 그 뉴스 자체의 문면상으로 그것이 부정확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하게 할 만한 사항이 없고, 또 피고가 수신한 내용을 실질적인 변경없이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송부받은 주식회사 연합통신은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일간지들이 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그 기사를 송고받는 통신사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주식회사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받아 보도한 내용은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한 추측성 기사가 아닌 사실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도 송부받은 당일자 신문에 실질적인 변경없이 그대로 전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15. □

재판장 판사 이 흥 기

판사 이 건 배

판사 김 학 종

제보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던 이상, 제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1996. 10. 15.자 판결 (95가합9634)

事實槪要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996년 10월 15일 김해군 주촌면 최 씨가 국제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에서 「피고는 당사자인 원고에게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든지 그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보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제신문이 제보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던 이상, 위 제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신문은 1995년 3월 15일자 『창고 공장 불법임대 김해군 공무원 물의』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창고를 공장으로 불법임대하고 신고없이 축사를 신축하여 사육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기사가 허위보도이고 이로 인해 심대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995년 3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문제된 신축사슴축사는 현재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95부산중재6)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민사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판결에서 「신청인은 진실에 반하는 사건보도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여 재판부는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1996년 10월 15일 판결 95가합5821)

判決文

사　　건 : 95가합9634 정정보도

신 청 인 : 최

경남 김해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김능칠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제신문(國際新聞)

부산 연제구 거제동 76의 2

대표이사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문일

변론종결 : 1996. 9. 17.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30.부터 1996. 10. 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4. 29.까지 경남 김해군 주촌면 부면장으로 근무해 온 공무원이고, 피고는 일간지인 국제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나. 피고 신문사는 위 국제신문 1995. 3. 15.자 제28면에 『창고 공장 불법임대 김해군 공무원 물의』라는 표제 아래, 신청인을 최모 씨라고 표현하여 「김해군의 공무원이 창고를 공장으로 임대하고 신고하지 않고 축사를 짓는 등 불법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김해군과 주촌면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주촌면 간부직원인 최모 씨(51)가

산 자신의 감나무 밭에 있는 60평짜리 창고를 공장으로 불법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 또 자신의 감나무밭 산 기슭에 사슴을 사육하기 위해 50~60평의 축사를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 사용하고 있는데도 김해군 등 관계당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후략)」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는 피고 신문사의 김해군 출입기자인 소외 가 작성한 것이다.

다. 한편 위 기사에는 신청인이 단순히 최모 씨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원고와 생활을 같이 하는 주변사람들은 김해군의 공무원으로 주촌면 산 에 감나무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기사는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의 기사이고, 피고 신문사가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수많은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인격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결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기사는 원고가 자신의 창고를 공장으로 불법임대하였다는 부분과 자신의 토지에 법규에 따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사를 신축하였다는 내용으로 대별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지 여부에 관해 차례로 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기사의 진실성에 관한 판단

(1) 창고의 공장으로의 불법임대 여부

피고는, 원고가 경남 김해군 주촌면 산 지상의 창고를 소외 우진공업사에 공장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위 창고를 단순히 완제품의 제품보관창고로 임대해 준 것이고 공장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3내지6호증, 갑제9호증의 7내지 9, 같은 호증의 13내지 19, 같은 호증의 20 내지25, 갑제10, 16, 18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구 , 김 , 장 , 이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내삼리 산 임야 2328평방미터(위 임야는 1992. 9. 23. 같은 리 산 로 지번이 바뀌었다)에 축사 196.62평방미터(당초 위 임야에는 각 196.62평방미터의 축사 2동이 축조되었는데 그 중 축사 1동은 이 사건 창고로 되고 다른 축사 1동은 1991. 6. 24. 섬유합사공장으로 용도변경되어 1992. 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대창섬유에 임대되어 있다)를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0. 9. 27. 위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1994. 10. 4.부터 1995. 3.경까지 위 창고를 소외 우진공업사에게 완제품의 보관창고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호증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창고가 공장으로 임대되어 있다는 이 사건기사는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신고없이 축사를 신축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건축신고도 하지 않고 지상에 축사를 지어 이를 사슴 사육장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축사에 대하여 1994. 8. 6. 건축신고를 했으나 기사가 나갈 당시 축사가 완공되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던 것뿐이고, 가사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축사는 건축법상 건축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6호증(갑제9호증의 10과 같다), 갑제9호증의13, 갑제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4. 8. 6. 주촌면에 위 지상에 축사 및 퇴비사 각 36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변경신고없이 위 축사 및 퇴비사를 각 40평방미터로 증축하고 이외에 관리사 47평방미터와 화장실 4평방미터를 추가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합계 131평방미터를 신축한 사실, 원고는 위 증축 부분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1995. 4.경 증축부분을 포함한 전체 131평방미터에 대한 건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축사는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로 사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증축부분 59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신고없이 관리사 등을 지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당초의 축사부분 7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사전 신고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기사 역시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기사의 내용 중 일부분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기사는 피고 신문사의 기자인 소외 김 가 내삼리 일대의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마을주민의 제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하고, 당시 원고의 직속상관인 주촌면장 등을 만나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 , 김 , 김 , 김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 가 1995. 2. 23.경 동료 기자들인 소외 김 , 김 등을 통하여 이장인 소외 장 로부터 이 사건기사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위 장 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원고의 비위사실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원고의 직속상관으로 주촌면장인 김 을 만난 사실은 인

정이 되나, 한편 위 김　　는 위 김　　으로부터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고급간부인 원고가 신고를 안 했겠느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창고가 공장으로 임대되고 있는지 여부와 신축된 축사의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당사자인 원고에게 위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든지 그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 장필규의 제보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소외 김　　가 원고의 비위사실과 관련된 소외 장　　의 제보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던 이상 위 김　　가 위 제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갑제14호증의 1내지6의 각 기재, 증인 김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진실에 반하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1995. 2. 27.경부터 장기간에 걸친 김해군의 감사를 받고 결국 1995. 4. 29. 부면장에 대한 직위가 해제됨과 동시에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되는,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적인 인격 및 명예의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이와 지위, 이 사건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사회적, 신분적 불이익, 이 사건기사의 내용과 크기 및 게재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의 수액은 금 30,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추가 및 원인정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5. 5.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 10. 1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15. □

재판장　판사　이 기 중

판사　박 인 식

판사　장 희 권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친고죄와는 달리 그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4. 26.자 판결 (93도1689)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5. 20.자 판결 (92노5251)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4. 9.자 판결 (91고단9700)

事實槪要

대법원(주심 배만운 대법관)은 1994. 4. 26일 이○○를 피고로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상고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 지 여부가 주된 논점이 되었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3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는 달리 그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

비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피고 이○○는 에이즈에 걸린 접대부가 사회저명인사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어 복수한 후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작하였고 1심 공동피고인인 조○○, 이△△는 이 이야기를 아무 확인절차없이 , , 에 게재하였다.

이에 허위사실적시로 인해 망 김 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김 의 전 보좌관 최○○과 남 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법원은 검사의 기소 이후 고소인 차 (김 의 처), 김 (김 의 동생), 최 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인 남 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는 고소인들은 제1심 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뿐 피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준용되지 아니한다며 항소를 하였다. 2심 법원도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3도168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5. 20. 선고, 92노5251 판결

주 문 : 원심판결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가. 제1심은,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조○○, 이△△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인 망 김 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 의 전 보좌관 최 과 남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중 망 김 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고소가 있어

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죄이고, 피해자 최 과 남 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죄인데, 고소인 차 (김 의 처), 김 (김 의 동생), 최 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인 남 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 원심은, 위 고소인들은 제1심 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하여서만 고소를 취소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바 없고, 또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대하여만 그 적용이 있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이 반의사불벌죄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같은 조 제1,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233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만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는 고소불가분에 관한 위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최 , 남 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인 위 조○○, 이△△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것은 사실이나, 형법이 규정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다같이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의 일정한 법적효과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고, 비록 "고소"는 수사 또는 소송을 개시, 진행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효과의사를 가진 행위인데 반하여, "명시한 의사"는 일단 개시되고 성립한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 발전을 저지하려고 하는 소극적 효과의사를 가진 행위로써 그 지향하는 법적효과가 다소 상반된 것이기는 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의미하는 "명시한 의사"가 지향하는 법적효과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으며 법률의 규정을 보더라도 같은 법 제232조 제3항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제327조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명시한 의사"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부존재 또는 고소취소"를 소송법적 효과면에서도 공통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친고죄의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의 "명시한 의사"는 모두 실체적 심판의 조건이 되는 소송조건으로서, 단지 전자는 고소의 존재가 소송조건이 되나 후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소송조건으로 되

는 것으로 구별되는 이외에는 그 법적성질 및 소송법적 효과면에서도 공통점이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종래 친고죄의 운영상 결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창설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의 일종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유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고소권자가 지정한 범인만을 처벌할 경우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이 행사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국가소추권 및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법 233조가 고소와 고소취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이 원칙이 배제된다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는 결국 같은 법 제233조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하여도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같은 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제1심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같은 법 제233조의 적용 또는 준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형사소송법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금지에 관한 제233조 제1, 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의 불비인지는 일단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법이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범죄를 소추해서 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추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구태여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소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여 올 경우에 그때에 논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1953. 9. 18. 형법 개정시 구 형법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창설한 것으로서, 위의 이유 중 첫째의 것은 없고, 친고죄 중 두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유형의 경우 중 상대적으로 덜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는데도 이를 친고죄로 하는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이나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여 법이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한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수사, 소추, 처벌을 할 것이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는 구태여 소추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조건으로 하는 이유나 방법에 있어서는 같다고 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점에서는 친고죄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친고죄는 위에서 본 첫째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유형이 주로 있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면 되는 것이고,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범인을 특정하거나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친고죄에 고소나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친고죄의 이러한 특질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위의 첫째의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위와 같은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의사표시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게 할 수도 있고 범인에 대하여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며,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에 차등을 둔다고 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어느 경우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그 제232조 제 1, 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위 제 1, 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는 달리 그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원심판결 중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사자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26.

재판장 대법관 김 석 수
주 심 대법관 배 만 운
대법관 김 주 한
대법관 정 귀 호

2심 判 決 文

사 건 : 92노525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전 기자
항 소 인 : 검사
검 사 : 한찬식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4. 9. 선고, 91고단 9700판결
주 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주간 의 취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원심공동피고인 조○○, 같은 이△△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기사를 월간잡지인 12월호에 게재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망 김 및 최 , 남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위 망 김 의 친족인 고소인 차 와 김 이 각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인 최 , 남 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 바, 첫째 위 고소인들은 원심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하여만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위와 같이 고소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하여만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망 김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 위하여는 판결이유에서 고소불가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규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최 , 남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친고

죄에 있어서와 같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외한 원심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피고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이를 설시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아무런 이유 설시없이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으며, 셋째 이 사건 피해자 최 , 남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및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친고죄에 한하여만 고소불가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는 위 고소불가분에 관한 형사소송법 소정의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공범자의 일부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당원의 판단

가. 법률의 규정

그러므로 우선,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및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는 고소불가분에 관한 같은 법 제233조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남 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1992. 2. 21.에, 같은 최 은 같은 해 4. 6.에 각각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인 원심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우리 형법에서는 범죄를 기소하여 일반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특히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죄를 논할 수 있는 범죄유형으로서 이른바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위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 또는 후환의 두려움에서 고소를 주저하여 친고죄로 규정하여 놓아도 그 기능을 다하기가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비록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소추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범죄유형으로서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명시한 의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다같이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써 소송법상의 일정한 법적효과를 지향하고 있는 소송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공통점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전자의 '고소'는 수사 또는 소송을 개시·진행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효과의사를 가진 행위인데 반하여, 후자의 '명시한 의사'는 일단 개시되고 성립한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 발전을 저지하려고 하는 소극적 효과의사를 가진 행위로써 양자 상호간에 그 지향하는 법적효과가 다소 상반된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명시한 의사'가 지향하는 법적효과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에 있어서와 같으며, 또한 법률의 규정을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고소취소에 관한 같은 조 제1, 2항의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제327조에서는 제5호에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제6호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는 각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경우에는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명시한 의사'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부존재 또는 고소취소'는 그 소송법적 효과면에서도 공통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친고죄의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의 '명시한 의사'는 모두 실체적 심판의 조건이 되는 소송조건으로서, 단지 전자는 "고소의 존재"가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이나 후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소송조건으로 되는 경우로 구별되는 이외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그 법적 성질 및 소송법적 효과면에서도 공통점이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종래 친고죄의 운영상 결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새로 형법을 재정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창설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의 일종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유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고소불가분의 원칙

비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함에 반하여,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가 고소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고소권자가 지정한 범인만을 처벌할 경우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이 행사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국가소추권 및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법취지에서 형사소송법은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있어서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의 일종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유형이라고 보여지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친고죄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가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다른 공범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국가소추권 또는 형벌권의 행사가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되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위와 같은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하여도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라. 나아가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고소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조○○,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에 있어 그 판결이유에서 고소인 차 , 김 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공동피고인 조○○, 이△△에 대한 고소취소가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

정을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고소인 최 , 남 의 위 조○○, 이△△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이유설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피해자 망 김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친고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최 , 남 에 대한 명예훼손의 각 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위 망 김 의 친족인 고소인 차 , 김 및 피해자 최 , 남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적용 또는 준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여겨지고, 또한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다른 공범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데다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2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이유 설시의 불비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검사의 이 점 항소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5. 20

재판장 판사 김 연 태
판사 변 현 철
판사 오 종 윤

1심 判 決 文

사 건 : 91고단9700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나. 사자 명예훼손

피 고 인 : 1. 이○○ 전 주간 기자
2. 조○○ 기자
3. 이△△ 편집인
검 사 : 표 성 수

변호인: 변호사 박홍우, 정해원, 김병재, 김주현(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천기홍(피고인 2, 3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는 1989. 4. 19.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사기죄 및 혼인빙자간음죄 등의 범죄경력이 7회 더 있고, 1990.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주간 !"의 취재기자로 근무하고 같은 해 12. 15.부터 1991. 10. 30까지 주간 의 취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주로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글을 써 오던 자, 피고인 조○○은 1989. 4.경부터 1991. 3. 31경까지 월간지 의 취재기자로 근무하고, 같은 해 4. 1.경부터 주식회사 사에 근무하면서 같은 해 10. 1. 창간된 월간지 의 취재기자로 일하던 자, 피고인 이△△는 1979. 2경부터 1991. 2. 28.까지 월간지 , 의 편집부장으로 근무하고 같은 해 3. 1부터 주식회사 사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10. 1. 창간된 월간지 의 편집인으로 일하던 자인 바,

피고인 이○○는 1991.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사 국 사무실에서, 피고인 조○○, 이△△로부터 12월호에 실을만한 특종기사감이 없냐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소설을 쓰기 위하여 꾸민, 에이즈에 걸린 접대부가 사회저명인사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어 복수한 후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접대부의 친구, 어머니 등으로부터 확인한 실제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고, 접대부가 망 김 등과 성관계를 맺은 내용을 기록한 일기장과 저명인사들의 명단이 기록된 수첩이 있다고 말하고, 조○○ 등이 일기장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8. 공소외 에게 자신이 꾸민 내용대로 일기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동인이 작성한 일기장을 위 접대부가 작성한 것처럼 같은 달 14. 12:00경 서울 경찰서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조○○ 등에게 보여주어 복사케하고, 피고인 조○○ 동 이△△는 위 에이즈에 걸린 접대부의 복수극 내용이 이미 1990. 7. 12.자 과 지에 게재되었고 당시 위 기사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어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1991. 12월호에 의 머릿기사로 게재하려는 욕심으로 위 이○○의 말에 대한 아무런 추적취재도 하지 아니하고 에이즈에 걸린 접대부와 성관계를 맺었던 저명인사의 명단이 적힌 수첩의 존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녀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접촉하기는커녕 그 실존여부에 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가지지 못하였고 이○○로부터 받은 에이즈에 걸린 접대부의 일기장이라는 노트 중의

필체, 요일기재방법, 유명인의 신상에 대한 표현 등에서 진실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더구나 일기장 사본에 이름이 현출되어 있는 전 국회의원 망 김 (1991. 8. 19. 사망)은 사망 당시 신문 등지에서 지병인 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도되어 에이즈로 사망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결국 위 이○○의 말이 확인할 근거없는 허구의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환자 본인 또는 그 질병 자체보다는 에이즈 환자 본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상대방의 사회적 신분이나 사람 수 또는 그 질병의 현실화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의 흥미를 끌어냄과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접대부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과장하여 그들을 비방하려는 의도하에 이를 기사화하여 게재하기로 하는 등으로 상호 모의하여 피고인 조○○은 1991. 11. 24.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사 국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들은 내용과 일기장을 토대로 "에이즈 발병 후 2년동안 관계한 장관, 국회의원, 기업인, 변호사, 의사, 교수, 대학생 등 40명 명단 비밀일기 최초공개"라는 제목으로 "본지 기자 60일 추적취재", "대스타를 꿈꾸던 미모의 여배우가 유명인사의 노리개로 전락한 후 에이즈에 걸렸다. 그녀는 자신에게 몹쓸 병을 옮겨준 세상의 모든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2년간 40여명의 유명인사를 비롯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맺었다. 얼마전 그녀와 관계했던 유명인사가 비명에 죽음으로써 그녀의 에이즈 악령이 지금도 우리곁에 있음을 실증해 주었다… 본지는 유명인사와 관계를 기록했던 그녀의 일기와 명단이 적힌 수첩을 입수함으로써…"라고 부재를 기재하고, 본 내용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본지는 오랜 추적을 통해 에이즈 배우의 신상 일체, 발병 이후 2년간 남자들을 상대로 복수극을 펼치며 썼던 그녀의 일기,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유명인사들의 전화번호를 적은 수첩, 그녀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에이즈의 복수극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이름만 대면 단번에 알만한 유명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혀 있었다. 또 수첩에는 그들의 전화번호가 깨알같은 글씨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40여명에 달하는 유명인 명단은 고위 공무원에서 국회의원, 사장, 현직 법조인, 의사, 교수 등이었다." "2년간의 일기 속에서 그녀와 관계한 국회의원만 10명에 달한다."라고 기재하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구체화시킨 다음 계속해서 망 김 에 대하여 "그녀의 일기 중에는 상당량은 K의원과의 이야기가 적혀있다. 실제로 그녀는 유명 국회의원 K모 씨와 H 아파트에 방을 얻어놓고 1년간 동거를 했다고 정 씨는 증언하였다." "이들 중 한 명은 그 제물이 되어 얼마전 세상을 떠났다", "실제로 그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유명인사가 죽음을 당했으니…"라고 기재하고 이○○로부터 교부받은 일기장 사본들을 게재하면서 "…김○○ 한 때 사랑하며 죽자살자 같이 살았던 그 김. 그가 생각났다. 그의 보좌관인 최모를 통해 연락을 취해보았다. 모 여당 국

회의원이 되셨단다. 국회의원 좋지…", "드디어 만났던 내가 사랑했던 사람 김 그를 만났다. 그이 보좌관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어야지 그가 나를 도와주었으니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 나의 사랑 김○○ 너 또한 나로인해 …아깝지만 할 수 없지…", "…그의 보좌관인 최○○를 통해 다시 만났다. 나의 님을, 그러나 다시 연락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라고 된 것을 게재하고, 그 내용 중에 김 이라는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일부러 전체를 동그라미로 서너 번 치는 식으로만 지운 상태로 그대로 두고 일기장 사본 자체에는 단순히 김모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마치 이름 석자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동그라미 2개를 그려넣고 검게 칠하여 게재함으로써 실제 저명인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누구나 특정인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그 특정인이 에이즈에 감염된 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위 망 김 의 보좌관 최 이 김 과 에이즈에 걸린 접대부와의 성관계를 소개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피고인 이○○가 주간 1990. 7. 12.자에 같은 취지의 기사를 작성할 때 사용한 피해자 남 의 눈을 가린 신문 사진을 이○○로부터 승낙을 받아 복사하여 삽입하고 사진 밑에 "고급콜걸로 출입했던 D요정 앨범에서 입수한 그녀의 사진"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동인이 에이즈에 걸린 후 복수극을 벌인 주인공인 것처럼 묘사하고, 사진 식자화한 원고를 피고인 이△△, 이○○가 같이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12월호에 1권 220~228페이지에 싣도록 편집하고 책자 10만부를 인쇄하여 시중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망 김 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김 의 전 보좌관 최 과 남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망 김 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형법 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고, 피해자 최 과 남 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인들의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차 , 김 , 최 등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2. 4. 6.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인 남 은 같은 해 2. 21.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4. 9. □

판사 조 연 호

피고가 쓴 기사내용이 公共의 利益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무죄이다

대법원 1996. 8. 23.자 판결 (94도3191)

事實槪要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996년 8월 23일 대 캠퍼스 총학생회장 이 씨 의문사사건 보도와 관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문 이 기자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임수경 양 방북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 중 한사람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데 대한 의혹을 다룬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안기부 여직원인 도 씨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무죄선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는 신문 1989년 6일자 11면에 대 캠퍼스 총학생회장이던 이 씨의 의문사와 관련, 「이 씨 사망 전 안기부 요원 동행」제하로 이씨가 사망할 당시 안기부 요원인 도씨가 동행했다고 보도하면서 도씨가 이씨의 죽음에 관련된 듯한 취지의 내용을 보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뒤 93년 1심과 94년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4도319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죄명 : 명예훼손)
피고인 : 이 (신문기자)

주거 서울
본적 서울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1. 9. 선고, 93노8080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 1, 2점에 대하여

(1)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한겨레신문 민원사회부 기자로서 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 소속 타자수인 도 를 비방할 목적으로 1989. 10. 6.자 위 신문11면 머릿기사 『이 씨 사망 전 안기부 요원 동행』이라는 제목 아래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며 이 중 여자는 안기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며, 숨진 이씨가 배에 타기 직전 이씨를 보았다는 다방종업원 최 씨는 이씨가 동행한 여자는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도 아무개(23세)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선장 이 는 이씨와 배에 탄 남자는 백 아무개(22세)라고 말하고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는 요지의 허위기사를 작성, 이를 게재한 위 신문을 그날 전국일원에 보급하게 하여서 공연히 위 도 가 안기부 직원으로서 이 의 사망 직전 동행하고 이 의 죽음에 관여된 듯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적시의 보도내용 중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 이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다」, 「최 가 경찰에서 이 과 동행한 여자를 사진으로 보니 도 아무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가 이 과 함께 배에 탄 남자는 백 아무개라고 말하였다」,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고, 「이 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 와 안기부 요원인 도 였다」라는 부분은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1심 거

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보도 경위, 변사 전후의 이 의 행적과 밝혀진 사망원인, 도 와 백 가 용의자로 지목되게 된 경위나 목격자로 나타난 이 , 최 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그 진술의 번복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이 의 사망에 도 등이 관여된 듯한 강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사정 및 이 사건 보도내용이 에 학생운동권 대표가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 중 한사람이었던 이 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위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재하여 보도하게 한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 취지는 변사체로 발견된 위 이 이 사망 직전에 동행한 일행 중에 안기부직원 신분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이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불과한 것이지 이를 안기부 직원인 위 도 가 정치공작에 의하여 위 이 과 동행하다가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기사내용 전체가 허위보도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피고인이 신문기사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의 목격자로 지목된 공소의 최 가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위 도 가 이 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거부로 목격자인 이 와 최 의 진술조서를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면담한 공소외 이 는 수사기관에서 그때까지도 거룻배를 이용하여 이 을 변사체로 발견된 현장 부근까지 실어다 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이 과 동행한 일행 중에 여자 1명, 남자 1명이 있었는데 여자가 이 의 도선비까지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보도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취재현장에 내려가기 전에 변사사고 직후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을 하고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위 최 를 찾아낸 바 있는 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을 만나 조사내용을 전해들었고, 피고인에 앞서 이 의 변사사건을 취재하여 보도한 일이 있는 신문

기자 오 으로부터 위 최 와 이 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듣고, 아울러 위 최 의 경찰에서의 1회 진술조서 사본을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가 원심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기사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 최 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위 이 가 피고인에게 들려준 말을 보도하는 형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보도내용 중 「이 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인 백 아무개와 안기부 여직원인 도 아무개였다」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허위인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간신문의 기자인 점, 위 도 의 성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도 아무개」라고 기재한 점까지를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이 취재보도한 위 기사의 목적은 당시 이 의 변사사건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던 여러 의문점을 취재하여 이를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위 도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취재보도한 기사의 내용 중 일부는 허위가 아니고, 일부 기사내용은 허위이나 피고인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였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위 취재보도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기사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피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기사는 당시 평양에서 벌어진 .에 학생운동권 대표가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 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대 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 이 의 외딴 해수욕장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 와 안기부요원인 도 였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것이 결국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안기부의 추적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이 에까지 와서 사망하게 된 경위의 그 사망 원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터에 안기부 직원인 도 가 에서 까지 가는 배에 위 이 과 동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나아가 이 과 도 의 일행이 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까지 나왔으나 그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까닭에 피고인이 위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

1996. 8. 23. □

재판장 대법관 천 경 송
대법관 안 용 득
주 심 대법관 지 창 권
대법관 신 성 태

2심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1. 9.자 판결 (93노8080)
1심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1. 16.자 판결 (91고단4995)
2심 및 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3집 pp. 297~312 참조

Ⅳ. 헌법소원사례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의해 재판한다」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자 결정 (95헌바25)

事實槪要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용준 대법관)는 1996년 4월 25일 일보사측이 제기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 규정에 의해 재판한다」는 규정이 언론기관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본부 본부장인 박 씨가 일보에 대해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자(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95카합1256), 일보사측은 같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담당재판부는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일보사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인 일보사측은 청구이유에서 「정간물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이 아니라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져 〈정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 일반의 경우 원상회복에 관한 것이라면 정정보도청구는 이로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민법 제764조에 의한 청구와는 달

리 가처분절차 규정에 의해 재판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언론사측에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1년 9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한 바 있는(89헌마165결정)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다시 확인하고, 「피해자가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피해구제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고, 독자들이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데도 반하는 것이므로 가처분 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과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決定文

사　　건 : 95헌바25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일보사

대표이사

대리인 변호사

관련소송사건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카합 1256 정정보도게재

주　　문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3975호) 제1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3. 21.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　　일보에 청구외 박　　이 본부장으로 있는　　본부가 들에 대한 보조금을 가로채고 수혜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는 등으로 생명을 매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그러자 위 박　　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의 게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95카합1256), 청구인은 위 소송의 계속 중에 같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이 언론기관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

헌규정이라고 주장하여 동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95카기471).

(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5. 7. 14. 위 박 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4) 청구인은 1995. 7. 2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5. 8.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87. 11. 28. 제정, 법률 제397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인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②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 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5. 12. 30.) 제정되고 1996. 7. 1.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5146호에는 제19조 제목을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으로 하고 본항 중 「정정」을 「반론」으로 한다고 개정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단순히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반론권」이 아니라 법상의 문언 그대로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도내용의 실질적인 진위 여부를 따져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다.

(2)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 일반의 경우에 원상회복에 관한 것이라면 정정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된 특수한 경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 위 민법 제764조에 의한 청구와는 달리 정식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식절차라고 할 수 있는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

기간행물의 발행주체를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대석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결과 법원은 보도의 내용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반론문의 내용이 허위인지의 여부조차 가리지 아니하고 우선 신청인이 청구하는 반론문의 게재를 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민에 대하여는 진정한 알 권리 즉 진실한 사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1991. 9. 16.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나, 1994. 9. 15. 위와 같은 합헌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대부분이 교체되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있어야 한다.

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이미 1991. 9. 16. 법 제19조 제3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그 이래 헌법환경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

다. 공보처장관의 의견요지

(1) 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매스미디어가 거대한 자본과 인원을 확보하고 정보의 대량전달기술을 구사하는 막강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잘못된 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이 거대언론의 엄청난 공시효과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현실에서 보다 효과적인 언론피해 구제제도로서 도입된 반론권 즉 반론보도청구권이고, 이러한 반론권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은 언론사의 고의, 과실 등 종래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성여부도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법규정상 「정정보도청구」라는 문언은 법의 전체적인 취지나 다른 규정과의 조화적인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분명 「반론보도청구」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어야 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법문상의 표현이 잘못되었다 하여 동 법률에 규정된 권리의 성질까지도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반론권제도는 빠른 전파속도(속보성)와 넓은 도달범위(광역성)를 가진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실체적인 관리관계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정식재판절차에 의해서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대중매체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반론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취지에도 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도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하여 언론기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반론권제도는 그 본질상 원래의 보도내용의 허위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원래의 보도내용이 진실일 경우에 있어서 반론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반론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16조 제3항 단서조항), 언론의 자유보장과 불합리한 충돌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반론문의 내용이 허위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선 신청인이 청구하는 반론문의 게재를 명한다고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1991. 9. 16. 선고한 89헌마165결정에서 법 제19조 제3항이 합헌임을 선언(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이 있었다)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표현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 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2) 심판절차

법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심판규칙(1988. 3. 4. 대법원 규칙 제1003호, 이하 심판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직접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재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정정보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8조). 한편 법원의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되 별개의 본안소송이 있지 아니하는 관계로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심판대상조항 단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제소명령기간의 도과에 의한 취소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03조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심판규칙 제8조).

살피건대, 반론권의 제도는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전치요건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반론권제도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진실발견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법이 위와 같은 중재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심판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유별나게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심판규칙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서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되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쌍방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고(심판규칙 제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심판규칙 제7조 제3항) 담보의 제공만으로 소명을 대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0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심판규칙 제8조).

심판규칙의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보도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 제소명령기간 도과에 의한 취소, 소환신청기간 도과에 의한 취소가 본안소송이 따로 없는 관계로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복절차의 제한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 즉시 반박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반론은 그것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데도 반하는 것이 된다.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자체가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은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다. 또한 예외사유도 법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이 가능한 경우들이므로 반론권을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한 그 심리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본안절차에 따르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과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위 89헌마165 결정 이후에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으므로 위 결정의 주문 또한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결정의 판시이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법 제19조 제3항은 앞서 본 위 결정의 판시이유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이 주문표시에 관한 재판관 조승형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 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96. 4. 25. □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仲裁業務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 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是正勸告業務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是正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중재회의

• 중재회의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전국 15개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방송관련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事實的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은 후 6月이 經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 · 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言論社가 反論報道揭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 이상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 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的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의 내용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國家 ·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⑦ 國家 · 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代表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 ① 言論報道로 인한 紛爭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仲裁委員會는 40人 이상 8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公報處 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의 2 이상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 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로 하고 委員 중 5分의 1 이상은 言論界 人士 중에서 위촉한다.

③ 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되, 각각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④ 仲裁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⑤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擧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를 포함한다)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敎育公務員은 제외한다) 및 言論社에 소속된 現職 言論人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⑥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⑦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第18條(仲裁節次등) ① 被害者 또는 言論社는 言論報道로 인한 反論報道請求權 또는 民法 第764條에 의해 訂正報道 등을 구하는 權利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第16條 第1項이 정하는 期間(第16條 第1項의 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被害者와 言論社間 協議 不成立된 날부터 14日)안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 第16條 第2項 및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仲裁는 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仲裁部의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③ 仲裁部의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言論社에 仲裁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④ 仲裁는 申請接受日로부터 14日 이내에 하여야 하며 仲裁部의 長은 지체없이 仲裁期日을 지정하여 當事者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者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 取下한 것으로 보며, 言論社인 被申請人이 2回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 趣旨에 따라 反論報道 또는 訂正報道를 이행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성립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仲裁部는 職權으로 當事者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申請趣旨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仲裁決定을 할 수 있고, 仲裁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仲裁不成立 決定을 한다. 다만, 職權으로 仲裁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仲裁申請 接受日로부터 21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決定은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다만 當

事者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送達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仲裁部에 異議申請을 한 경우에는 그 決定은 效力을 상실한다.

⑧ 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⑨ 仲裁의 節次와 仲裁部의 구성방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방법과 節次, 仲裁委員會 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 ① 仲裁委員會의 仲裁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에 反論報道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反論報道請求의 訴는 第18條 第6項의 仲裁不誠立 決定 또는 第7項의 異議申請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被害者는 反論報道請求의 訴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民事訴訟法 第693條에 의한 申請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第18條 第1項의 規定은 民法 第764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④ 第1項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假處分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第16條 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反論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民事訴訟法 第697條 및 第705條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反論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19條의 2(不服節次) ①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에 대하여는 抗訴하는 이외에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不服節次에서 審理한 결과 反論報道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을 取消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 言論社가 이미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申請에 따라 取消裁判의 내용을 報道할 수 있음을 宣告하고, 申請에 따라 被害者로 하여금 言論社가 이미 이행한 反論報道와 取消裁判의 報道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損害의 賠償을 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第20條(追後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다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無罪判決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月 이내에 書面으로 言論社에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범위에 局限된다.

③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反論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보처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

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 ·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 · 관할 · 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 ① 放送에 公表된 事實的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은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 · 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的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放送周波數에 의하여 동일한 效果를 발행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國家 ·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⑧ 國家 · 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와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 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

종합유선방송법

第45條(反論報道請求權) ① 綜合有線放送에 公表된 사실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綜合有線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은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綜合有線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사실적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綜合有線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時間帶에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프로그램 供給者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供給者도 第6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⑩ 綜合有線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와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및 지역중재부 주소

사 무 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02)732-6031~4, 6011~3 725-0050 FAX. 730-9420 · 5487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18(백산빌딩 8층)	(051)759-7083~4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1-9(3 · 1빌딩 301호)	(053)755-0108~9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동명회관 A동 5층)	(062)676-0360~1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6(송림빌딩 703호)	(0331)211-9027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대양빌딩 6층)	(0361)55-2878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석교동 37-5(성화빌딩 302호)	(0431)52-1250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2(비사벌빌딩 8층)	(0652)88-001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39(동산빌딩 301호)	(0551)63-1787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현곡빌딩 4층)	(064)22-3328

國內言論關係判決集 第4輯

(言論仲裁 통권 63호 부록)

1997년 6월 20일 인쇄
1997년 6월 30일 발행

編著 言論仲裁委員會 調査研究室
發行 言 論 仲 裁 委 員 會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전 화 : 732-6031~4, 732-6011~3, 725-0050,
730-9498, 7317-571, 588
FAX : 730-9420, 5487

(이 책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